

1977 年 國富統計調查實務者會議

1. 構成経緯

가. 1977 年 國富統計調查支部長會議 (77.6.29) 에 서 本實務者會議
를 調査本部에 設置 하기로 하였음

나. 各調査支部의 推薦에 依拠 構成하여 第 1 次 本會議를 77.7.6
開催하였음.

2. 存続期間

1977.7.6 ~ 1979.12.31 (30 個月間)

3. 構 成

1977 年 國富統計調查本部의 幹事인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基準
課長이 議長이 되며 그 構成 要員 名單은 다음과 같음.

다 음

所屬機關	職 級	姓 名	備 考
經濟企劃院	書 記 官	金 景 中	議長 (調査本部 幹事)
	行政事務官	金 泰 憲	調査本部
	"	南 繁	家計資産調査支部
農水産部	"	申 定 均	77.7 ~ 78.2 } 個人企業
	"	崔 炳 烈	78.2 ~ 78.5 } 資産第 1 支部
	"	安 在 克	78.5 ~ 78.6 }

所屬機關	職 級	姓 名	備 考
韓 国 銀 行	調 查 役	金 在 洙	政府 및 對 外 資 產 調 查 支 部
韓國産業銀行	"	金 春 植	法 人 資 產 調 查 支 部
中 小 企 業 銀 行	"	尹 南 烈	個 人 企 業 資 產 調 查 第 2 支 部
國 民 銀 行	"	南 圭 弘	個 人 企 業 資 產 調 查 第 3 支 部

4. 機 能

本實務者會議 構成員은 調查本部의 要員으로 다음業務를 遂行 함.

가. 1977年 國富統計調查 基本計劃 樹立

나. 1977 年 國富統計調查 綜合指針書作成

다. 各種評價基準表의 作成指針設定 및 基準表檢討

라. 各調查部門別 細部計劃 (調查家結果表, 調查要領等) 檢討

마. 部門別 및 綜合結果分析

바. 其他 調查上 各種問題點 解決

< 제 1 차 >

1977.7.6

1. 준비작업일정 확정

별첨준비작업일정(안)을 검토하여 다음사항을 수정후 시행하기로 하였음.

가. 부문별모집단 파악

세분류별로 모집단수를 파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단수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할 경우 추계하도록 함

나. 각종 기준표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작성방법 결정

작성방향결정 및 자료수집 세부계획 수립으로 수정하였음

다. 예산(78년도)협의

7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 자료를 각지부별로 작성하여

7.15부터 본 회의에서 종합정리하도록 하였음

2. 종합지침서 작성

당국에서 제1회 국부통제조서 지침서를 기준으로 시안을 작성한후 차기회의에서 부문별로 실무요원이 분담하여 연구검토후 77.7.15부터 본 회의에서 종합검토, 보완하기로 하였음

3. 조사대상 분류기준 확정

각지부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7.15부터 본회의에서 누락, 중복분배에 대하여 종합조정토록 하였음

4. 기타사항

가. 각지부에 있는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각지부에서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부 및 조사본부에 비치하도록 하였음

- 나. 실무자 회의요원으로 사무관 또는 조사역급 1명을 선정한
명단을 77.7.9까지 공문으로 당국에 필착토록 요청하였음
- 다. 차기회의는 77.7.7 14:00에 조사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하였음

첨부 : 준비작업일정

< 별첨 >

1. 準備作業日程確定 (별표참조)

2. 綜合指針書作成

1) 국부의 개념

2) 조사목적

3) 조사범위

4) 조사개체 및 지역의 범위

5) 결과의 제표 및 공표

6) 조사사항

7) 조사방법

8) 조사담당기관

9) 조사기준시점 및 조사실시기간

10) 물가배율

11) 잔가율

3. 調査対象 分類基準 確定

1) 政府部門

2) 法人部門

3) 個人部門

4) 家計部門

① 非法人団体

② 国, 公, 私立学校

③ 個人部門의 産業分類

4. 資料整理

準備作業日程 (77.7.5~8.31)

業 務 名	調 査 本 部		支 部		備 考
	期 間	遂 行 事 項	期 間	遂 行 事 項	
1. 実務者会議構成	7.5	構 成			支部別事務官 正に調査役1名
2. 総合指針書作成	7.5~7.31 8.1~8.20 8.21~8.31	案作成 検討補完 確 定 (長官決議)			責任者会議. 統計委員会議
3. 調査対象分類基準確定	7.5~7.10 7.11~8.10	案作成 補完と確定			
4. 部門別母集団把握	8.1~8.20	検討と総合	7.5~7.31 8.1~8.20	母集団把握 補 完	
5. 調査票類, 調査要領, 結果表試案作成	8.1~8.20	検討と総合	7.5~7.31 8.1~8.20	試案作成 "	
6. 各種基準表作成と資料 資料蒐集と作成方法決定	8.1~8.20	検討と総合	7.5~7.31 8.1~8.20	資料蒐集 作成方法決定	
7. 業務推進実績検討	毎月6~10	検 討	毎月5	提 出	
8. 豫算(78年度)協議	7.5~8.31	協 議	7.5~8.31	要求資料提出	

< 제 2 차 >

1977.7.7

1. 제 1 회 국부통제실무자 회의결과 보고

2. 종합지침서 (시안) 작성

가.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부문별 문제점, 연구가 필요한 분야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차기회의에서 종합하여 부문별로 분담 연구 발표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였음.

나. 특히 차기회의까지 국부의 개념에 관하여 요원 각자가 연구하여 발표후 토론하기로 하였음

3. 자료교환

각지부에 있는 참고자료를 공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부별로 정리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였음

가.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제 1 회 국부조사시의 자료를 정리하여 발간 배부함

나. 국민은행에서는 1970년 일본의 국부조사 개요를 번역후 발간 배부함.

4. 차기회의 일정협의

가. 차기 본회의는 77.7.15 14:00에 당국에서 속개하기로 하였음

나. 차기회의에 제출할 각지부별 자료는 다음과 같음.

1) 종합지침서 검토내용

2) 각지부별 담당조사 대상 분류

3) 각지부별 78년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

5. 기타사항

국부통계조사 방법의 정립을 위하여는 각 지부별 77년도
추가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외연수 및 자
료수집 계획을 시행하여야할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 제 3 차 >

1977.7.15

1. 제 2 회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2. 종합지침서(시안) 검토

기 작성하여 배부한 종합지침서(시안)중 다음사항을 검토,
수정하고 연구과제를 분담하였음.

가. 검토부문

1) 국부의 개념

2) 조사목적

3) 조사범위

4) 조사객체 및 지역의 범위

나. 수정내용

조사객체 및 지역의 범위에서 다음사항을 수정하였음.

1) 영조물법인은 인적물적수단의 결합을 통하여 특정한 공공
목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공법상의 인격이 부여된 종
합적인 시설 즉 공공조합, 정부기업, 정부관리기업 등임.
이러한 사항은 소유 주체별 분류에서 이미 세분되었으므
로 삭제함.

2) 법인부문에 특별법상의 재단법인, 사단법정도 포함하였음

3) 개인기업 및 비법인단체의 정의를 "개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개인기업 및 법인격을 갖지않는
모든단체"로 수정하였음.

다. 국부의 개념

종합지침서(시안)을 보완한 국부의 개념(별첨 1 참조)을

작성하여 각 요원이 연구, 검토하여 차기회의에서 토론 후 확정토록 하였음.

라. 연구과제의 분담

연구과제	담당지부	내용	발표시기
1. 국부의 개념	전 원	안을검토후 발표토론	7.18
2. 자산의 분류	산업은행	세분류 및 정의	"
3. 조사의 객체 및 지역의 범위	한국은행	외국법인의 포함여부 중심	"

3. 각 지부별 담당조사대상 분류

가. 공공조합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의 조사대상범위에 대한 재 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동사항은 조사본부에서 조정(안)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음

- 1) 비영리 법인 중 국가로부터 목적이 부여되는 인적결합체이며 설립의 강제 혹은 가입의 강제성이 있는 비영리공공법인은 공공조합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별첨 2의 단체는 공공조합의 조사기관인 한국은행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산은 의견)
- 2) 공공조합은 비영리 법인에 속하므로(별첨 3참조) 현재의 분류인 일반정부에서 법인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공조합에 대한 조사는 한은에서 담당하지만 제표시에는 법인부문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한은과 산은의 업무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즉, 산은에서 담당하는 사립

학교는 국공립 학교와 유사하므로 한은에서 담당하고 한은의 공공조합은 산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한은의견)

나. 가계와 개인기업부문 및 농림수산부문의 분류한계는 관계기관 (통제국, 농수산부, 기은, 국민은)에서 검토하여 제 4 회 본회의 (7.20 예정)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4. 각 지부별 7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자료 본 자료를 차기회의에서 상호교환하여 지부별 설명자료를 보완토록 하였음.

5. 해외연수계획 착수

가. 제 2 회 국부조사 준비기간이 촉박하므로 조속한 해외연수 및 자료수집이 필요하므로 김춘식 조사역 (산은)이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본 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음.

나. 해외출장여비확보 및 확보예정내역은 다음과 같음.

기 관	인 원	비 고
한은, 산은, 기은, 국민은, 농수산부	각 2 명 1 명	산은만확보 확 보
계	9 명	

첨 부 : 1. 국부의 개념
2. 한은자료
3. 산은자료

<별첨 1>

國 富 의 概 念

國富(National Wealth)의 概念에 對하여는 아직 通念化된 定義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広意의 概念으로 國富를 定義하면 一國이 所有하고 있는 모든 財貨의 總合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空氣, 降雨量 太陽熱等の 自然資源도 包含된다.

그러나 國富統計結果를 經濟分析 手段으로 利用하게 됨에 따라 國富의 概念도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國民計定の 一分科로 限定시켜 定義하게 되었다.

즉 國民經濟内の 모든 經濟單位의 貸借對照表를 統合 調整(Consolidation)한 結果 算出되는 資産을 國富라고 規定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經濟單位 相互間の 貸借關係는 相計되어 控除된다.

따라서 國富란 一國의 各 經濟單位가 所有하고 있는 모든 經濟的인 資産을 一定 時點의 貨幣價值로 評價한 總額에 對外純資産(對外資産-對外負債)을 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概念은 再生産 可能한 有形資産과 함께 再生産 不可能한 有形資産도 包括하게 된다.

그런데 實際上 國富調査에 있어서 調査對象의 範圍는 國富調査의 目的과 資料의 利用 可能性 및 信賴性(Availability & Reliability)의 程度에 따라 調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國富調査는 國民經濟内に 所在하는 再生産可能한 有形資産(Reproducible tangible assets)의 總額에 對外純資産

(Net foreign claims)을 합한 国民資産을 그對象으로 限定하고 있다.

이제 上記 概念에 符合하는 国富資産의 条件을 詳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国富資産은 經濟的意味을 갖는 資産이어야 한다.

經濟的 意味을 갖는 資産이란 企業, 家計, 政府 및 非營利団体 등의 經濟主体가 經濟活動을 營為하기 위한 手段으로 保有하고 있는 財貨를 말한다.

企業이 經濟活動을 위하여 保有하고 있는 財貨에는, 工場, 機械設備, 車輛, 運搬具, 貯藏品 또는 原材料 등이 있으며 家計가 經濟活動을 營為하기 위한 것에는 生計를 目的으로 하는 것 即 家具, 冷蔵庫 등이 있다.

따라서 文化財 藝術品 玩物, 書籍 등은 그 保有하는 主된 目的이 經濟的 動機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調査對象에서 除外된다.

또한 軍事施設이나 戰備品 같은 軍用資産도 經濟的 意味의 資産이라 볼 수 없으므로 對象에서 除外된다.

結局 經濟的意味을 갖는 資産이란 生産活動에 直接 關係있는 資産과 國民生活을 營為함에 必要한 財貨라고 要約할 수 있다.

둘째, 國民經濟 全體의 立場에서 資本投下가 이루어진 資産이어야 한다.

國民經濟란 概念은 個別經濟에 對稱되는 것으로 個別經濟에서 資産으로 看做되는 것도 國民經濟의 立場에서는 資産이라고 認定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즉 用益權과 担保權과 같은 制限物權은 個別經濟인 制限物權者의

立場에서는 資産으로 認定되지만 이는 所有權의 制限을 隨伴하게 되어 財産所有者를 包含하는 國民經濟的 立場에서는 雙方의 權利義務가 相計되므로 資産으로 認定할 수 없다. 또한 現金, 預金, 받을어음, 貸出金等도 國民經濟的 立場에서는 그 債權債務가 相計되므로 國富로서의 資産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國民經濟內的 모든 無形資産은 對象에서 除外되게 된다.

國民經濟라는 概念속에 內包되어 있는 또 하나의 意味는 資産의 所在가 利益의 中心(Center of Interest)이 되는 經濟活動의 本拠地를 國民經濟內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株主나 社員의 一部 또는 全部가 外國人이라 할지라도 國民經濟內的 企業이면 國部調査對象에 包含시키고 本國人이 設立한 会社일지라도 外國法人인 경우 對象에서 除外시킨다.

세째, 再生産 可能的 資産이어야 한다.

즉 國富資産은 勞動力이나 資本이 投下되어 再生産이 可能的 것에 限하므로 自然狀態 그대로의 土地, 天然林 地下資源(sub-soil assets) 등은 對象에서 除外된다.

이와는 달리 埋立地나 拓地等の 造成土地와 改良土地는 資本과 勞動力이 投下된 것으로서 再生産이 可能하므로 對象에 包含된다.

네째, 客觀的으로 經濟的 評價가 可能的 資産이어야 한다. 空氣, 太陽熱, 海水等の 自然資源은 客觀的인 評價가 어려우므로 對象에서 除外된다. 人的資本(Human Capital)도 能力開發을 爲하여 具體的인 資本投下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날 有形固定資産만큼 重要하게 認識되고 있으나 客觀的인 經濟的 評價가 어려우므로 對象에서 除外한다.

다섯째, 對外的인 權利關係는 以上の 條件을 考慮하지 않고 國富
資産에 包含시킨다.

開放經濟 (Open Economy) 體制下에서 發生하는 對外的인 貸借關係
는 國內의 債權債務와는 달리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相計될 수 없으
므로 無形資産이라 하더라도 對外總資産으로서 國富에 包含시킨다.

<별첨 2>

所 有 主 體 別 分 類

1. 政 府

2. 企 業

3. 家 計

4. 非營利団体

가. 法人団体

1) 組合法人

가) 公共組合 (別紙참조)

나) 勞動組合

다) 共濟組合

라) 信用協同組合

2) 社團法人

3) 財團法人

나. 非法人団体

첨 부 : 公共組合의 例 1 부

(SNA 分類)

公 共 組 合

1. 山林組合
2. 農地改良組合
3. 農業協同組合
4. 水產業協同組合
5. 中小企業協同組合
6. 輸出組合
7. 韓國海運組合
8. 葉煙草生產組合
9. 建設共濟組合
10. 塩業組合
11. 人蔘組合

<별첨3>

영조물법인 : 인적 물적수단의 결합을 통하여 특정한 공공목적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공법상의 인격이 부여된 종합적시설, 공기업의 독자성인정 (행정간섭과 예산 기타의 제약으로부터 해방하여 재산과 책임의 귀속을 명백히 하는 기업합리화의 견지에서 이러한 형태의 공기업설립 경향이 두드러짐)

※ 조폐공사, 주택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국제관광공사, 농어촌 개발공사, 무역진흥공사, 도로공사, 농업진흥공사, 대한재보험공사, 방송공사, 공업단지개발공단, 직업훈련공단, 한은, 산은, 기은, 외환은, 증권거래소, 대한적십자사, 대한교원공제회

공사혼합회사, 성업공사

공공재단 : 공공복리를 목적으로하고 행정기관이 관여하나 인적결합이 아니다. 공재단의 목적. 조직. 재산관리는 정관에 의해 정해짐

공공조합 : 국가로부터 목적이 부여되는 인적결합체
설립의 강제, 혹은 가입의 강제

※ 농협·수협·기협등을 그 목적이 국가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고 강제적요소가 없으므로 공공조합으로 보지않는 경향

※ 농지개량조합, 산림계, 산림조합, 산림조합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반공연맹, 의료보험조합, 변호사회, 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 수협, 수협중앙회, 수출조합, 한국해운조합, 연연초생산조합, 건설공
제조합, 재향군인회, 원호대상자단체, 변리사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건축사협회, 공인회계사회, 대한재향군인회, 한국마사회, 염업조합,
건설협회, 측량협회, 한국선급협회, 대한관광협회중앙회

< 제 4 차 >

1977. 7. 18

1. 국부의 개념

제 1 회 국부통제조사 및 일본국부조사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별첨 1 과 같이 정립하였음.

2. 공공조합의 범위

가. 공공조합의 개념은 학설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기관의 성격에 따라 기관별로 구분하여야 함.

나. 따라서 제 1 회 국부통제조사시 공공조합의 범위와 한국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의 의견을 참작하여 조사본부에서 조정안(별첨 2)을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양 조사저부에서는 동 조정안에 따르기로 하였음.

3. 제 5 회 국부통제실무자 회의

가. 일 시 : 1977. 7. 20 10:00

나. 장 소 : 조사통제국

첨 부 : 1. 국부의 개념

2. 공공조합의 범위

국 富 의 概 念

第 2 回 国 富 統 計 調 査	第 1 回 国 富 統 計 調 査	日 本 の 国 富 調 査
国富를 넓은 意味로 말하면 한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資産의 合計 즉 各 經濟單位 (政府, 企業, 家計 等)의 資産 속에 포함되는 모든 客觀的인 財貨를 現在의 貨幣価値로 評價한 總額에 對外 純資産을 보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의 国富에는 첫째 : 經濟活動의 成果인 有形 資産 (建物在庫品等) 둘째 : 經濟活動에 依하여 생긴 財貨는 아니나 經濟活動의	国富를 넓은 意味로 말하면 한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資産의 合計 즉 各經濟單位 (政府, 企業, 家計 等)의 資産 속에 包含되는 모든 客觀的인 財貨를 現在의 貨幣 価値로 評價한 總額에 對外 純資産을 보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의 国富에는 첫째 經濟活動의 成果인 有形 資産 (建物在庫品 等) 둘째 經濟活動에 의하여 생긴 財貨는 아니나 經濟活動을	一般的인 富의 概念을 考察하는 가운데 一國의 富를 構成하는 要素는 市場化할 수 있고 財貨와 用役을 生産하는데 寄与하는 總資源이다. 그러나 国富調査 또는 国富 統計라고 한때 国富의 定義를 前述한 바와 같은 一般的이고 도 広範한 概念을 直接援用하는 것은 아니다. 国富調査를 實施하는 것은 國家間の 資源 比較, 一國國民經濟의 構造와 成長分析, 國民所得과의 關係

營爲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자연물로서의 土地, 埋藏鉱物 自然林 등의 天然資源,

셋째 : 對外 純資産 등이 包含된다.

그러나 오늘날에와서는 國富統計調査를 主로 經濟分析의 手段으로 利用하게 됨에 따라 概念自體의 範圍도 그 幅이 좁혀져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國民經濟의 한 分料로서의 國富를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國富資産을 다음과 같이 限定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國富로서의 資産을 우리나라 國

營爲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自然物로서의 土地 및 埋藏鉱物 自然林 등의 天然資源

셋째 對外純資産 등이 包含된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國富統計 調査의 目的이 主로 經濟分析의 手段에 있게 됨으로써 概念 自體의 範圍도 그 幅이 좁혀져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생각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各國의 研究成果를 參考하고 國民經濟의 한 分料 로서의 國富를 생각하여 國富資産을 다음과 같이 限定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國富로서의 資産은 우리나라 國

또는 開發計劃目的에 必要한 資源의 分布狀況등을 把握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國富의 概念은 이와 같은 利用目的에 더욱 有用토록 이를 設定하고 있다. 즉 國富 推計를 위하여 國富를 定義함에 있어서는 包括될 國富資産의 條件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國富資産은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産이어야 한다.

둘째 國民經濟 全體의 立場에서 본 資本投資라야 한다. 셋째 人間能力에 依하여 産

第 2 回 国富統計調査	第 1 回 国富統計調査	日本の 国富 調査
民經濟内に 存在하는 再生産可能한 有形資産의 總額에 對外純資産을 합한 国民資産에 限하며 国富資産의 條件을 詳述하면 다음과 같다. 즉, 国富資産은 1) 經濟的 意味을 갖는 資産이어야 한다. 2) 国民經濟全體의 立場에서 資本投下가 이루어진 有形資産에 限한다. 그러나 無形資産이라도 對外的인 權利關係는 例外로서 国富에 包含시킨다.	民經濟 속에 있는 모든 資産中에서 經濟活動에 依한 生産物로서 消費하지 않고 蓄積된 資産으로 再生産이 가능한 有形資産과 對外純資産이라야 한다. 즉 첫째 国富資産은 經濟的 意味을 갖는 資産이어야 한다. 둘째 国民經濟 團體의 立場에서 본 資本投下로서 有形資産에 限한다. 그러나 無形資産이라도 對外的인 權利關係는 例外로서 国富에 包含시킨다. 세째 再生産이 가능한 資産이어야 한다.	出된 資産中 有形資産에 限한다. 단 對外的인 權利關係는 例外로서 国富에 包含시킨다. 먼저 經濟的 意味을 갖는 資産이란 經濟主體가 經濟活動을 營為하기 위한 手段으로 가지고 있는 財貨를 말한다. 經濟主體에는 勿論 家計나 企業 政府 및 非營利團體까지 모든 包括 하게 된다. 企業이 經濟活動을 爲하여 保有하고 있는 財貨란 例를 들면 事務所 이라는가 工場 機械設備, 備品, 車輛運搬具, 製品, 貯藏品

3) 再生産이 可能한 資産이어야 한다.

4) 客觀的으로 經濟的 評價가 可能한 資産이어야 한다.

첫째로 經濟的 意味의 資産이란 政府企業, 家計 및 非營利團體等의 經濟主體가 生産이나 家計等의 經濟活動을 營為하기 위한 手段으로 가지고 있는 財貨를 말한다.

따라서 經濟財로서 看做하기 힘들고 客觀的 評價가 困難한 藝術品, 文化財, 善籍 등은 除外한다.

둘째로 國富로서의 資産은

먼저 經濟的 意味의 資産이란 政府, 企業 家計 및 非營利

團體의 經濟主體가 生産이나 家計等의 經濟活動을 營為하기 위한 手段으로 가지고 있는 財貨를 말한다. 따라서 經濟財로서 看做하기 힘들고 客觀的 評價가 困難한 藝術品 文化財. 書籍 등은 除外 된다

다음 國富로서의 資産은 國民經濟的인 立場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1)地上權과 같은 用益權은 土地所有者的 權能을 制限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個別 經濟에서는 資産이라 생각되지만

또는 原材料등이 있을 것이며 家計를 目的으로 하는것, 즉 住宅, 家具 衣類등을 말한다.

各 經濟主體가 經濟活動을 위한 手段으로 財貨를 取得하려면 資金 또는 資本이 必要된다. 이렇게 볼 때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産이란 各 經濟單位가 經濟活動을 위하여 投下한 資本을 具體化 된 形態라고 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骨董品이나 書畫등의 藝術品, 天然記念物 또는 其他 文化財가 價值 (Value)를 가지고 있음은 틀림 없으나 그

第2回 国富統計調査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の 国富調査
国民經濟 全體의 立場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1) 地上權과 같은 用益權은 土地所有者의 權能을 制限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個別 經濟에서는 資産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2) 鉱業權이나 工業所有權도 個別經濟에서는 그 独占的 權能을 資産으로 取扱할 수 있으나 国民經濟 全體에서 생각하면 資産으로서 国富에 包含할수 없다. 또한 (3) 現金, 豫金, 받아들임, 貸付金, 投資資體等은 国民經	国民經濟上の 資産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2) 鉱業權이나 工業所有權도 個別經濟에서는 그 独占的 權能을 資産으로 취급 할수 있으나 国民經濟 全體에서 생각하면 資産으로서 国富에 包含할수 없다 또한 (3) 現金 豫金, 받아들임, 貸付金, 投資 資本 等은 国民經濟的인 立場에서는 서로 相計되므로 国富로서의 資産으로는 볼수 없다. 단지 이들 無形의 權利關係가 国民經濟 相互間 즉 對外的 關係가 發生한 경우에는 国民經濟 全體의 資産으로서 国富에 包含시킨다.	価値를 經濟的 価値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除外하게 된다. 오늘날 이와 같은 物品도 商品化되고 더우기 그 去來가 企業化됨으로써 交換可能 商品으로서의 財貨의 性格을 多分히 지니고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그와 같은 価値는 評價上에서 客觀性을 欠如할 뿐아니라 그와 같은 価値創造를 위하여 投下된 資本이 国民經濟 全體面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經濟的 意味를 갖는다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

濟的인 立場에서는 서로 相計
되므로 國富로서의 資産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들 無形의 權利關係
가 國民經濟 相互間 즉 對外
의 關係가 發生한 境遇에는 國
民經濟 全體의 資産으로서 國
富에 包含시킨다.

셋째로 國富는 經濟活動에
依하여 投下된 資本의 具體的
形態의 表現이기 때문에 사람
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즉
再生産 可能한 것에 限한다.

따라서 自然으로서의 土地나
天然資源은 國富에서 除外된다.

셋째로 國富는 經濟活動에 의
하여 投下된 資本의 具體的 形
態의 表現이기 때문에 사람에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즉 再生
産 可能한 것에 한한다 따라서
自然으로서의 土地나 天然資源은
國富에서 除外된다 그러나 埋立
千拓등에 의한 造成土地와 改良
土地는 國富에 包含된다.

以上과 같이 이번 國富統計調
査에서의 國富의 概念은(1) 國民
經濟內에 所在하는 經濟活動의
所産으로서 再生産이 可能한 有
形資産과 (2)對外純資産으로 限定
되며 이중 有形資産을 經濟關係

따라서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産이란 生産活動에 直接關係
가 있는 資産과 國民生活를

營爲함에 必要한 財貨 고 要
約할 수 있다.

國民經濟란 概念은 個別經濟
와 区分됨을 意味하는데 그것
은 個別經濟에서 資産으로 看
做되는 것도 國民經濟面에서
볼때는 資産이 라고 볼수 없
는 것이 있음을 말한다. 여기
서 個人이 購入所藏하고 있는
財化가 모두 國富資産에 包括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國富에 包括될 資産은

第2回 国富統計調査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の 国富調査
그러나 埋立, 千拓等에 의한 造成土地와 改良土地는 国富에 包含된다. 넷째로 国富는 客觀的으로 經濟的인 評價가 可能하여야 하므로 土地나 天然資源은 国富에서 除外된다. 또한 人的資本도 能力開發을 爲하여 具體的인 資本投資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날 有形固定 資産만큼 重要하게 認識되고 있으나 客觀的인 經濟的 評價가 어려우므로 国富에서 除外된다.	에 있어서의 機能面에서 分類해 보면 (a) 生産活動과 直接關係에 있는 資産 (b) 國民經濟全體를 뒷받침하는 公共施設 (c) 國民生活를 維持 하는데 必要한 財貨等 3種으로 나눌수 있다.	그 資産을 取得키 위한 資本投下가 國民經濟面에서의 資本投下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國民經濟란 概念은 또 한가지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데 그것은 国富所在의 範圍를 規定한 것으로서 国富에 包括될 資産의 所在는 經濟活動의 本拠를 國民經濟內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国富는 國內의 經濟單位가 所有하는 資産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國內의 經濟單位는 國內의 居住者를 뜻하는데

이상과 같이 이번 國富統計
調査에서의 國富의 概念은,

(1) 國民經濟內에 存在하는
經濟活動의 結果로서 再生産이
가능한 有形資産과 (2) 對外
純資産으로 限定되며 이중
有形資産을 經濟關係에 있어서
의 機能面에서 分類하여 보면,

- (a) 生産活動과 直接關係
있는 資産
- (b) 國民經濟全體를 뒷받침
하는 公共施設
- (c) 國民生活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財貨等 3種으로
나눌 수 있다.

國內居住者 所有의 資産이란
所在面에서 볼때 國內에 있을
수도 있고 國外에 있을 수도
있다 國內居住者資産이 國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反對로
外國居住者의 資産이 國內에 있을수
있음을 뜻하며 國家와 國家間
의 關係로 볼때 前者는 對外에
대한 債權이 되어 國富에 加算
하게 되고 後者는 對外負債가
되어 除外하게 된다.

세째로 國富에 包含된 資産은
人間能力의 產物中 有形資産에
限한다고 하였는데 먼저 產物
이라는 것은 그 資産이 人力
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야 된다는

第2回 国富統計調査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의 国富調査
		말인데 具體的으로는 自然으로서의 土地나 天然資源도 一國의 富를 構成하고 있는것이 事實이지만 이것은 人力이 미치지 않은 것이고 資本投下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具體化된 經濟的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埋立地나 干拓地가 이들과 区分되는 것은 勞動力과 資本을 投下한 것이기 때문이다. 人間能力의 産物이란 人力으로 再生産이 可能함을 뜻하므로 国富資産은 再生産이 可能함을 뜻하므로 国富 資産은

再生産可能 資産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다음에 国富에 包含할 資産
은 有形資産에 限 한다고 하
였는데 이것은 實體的인 資産
만이 国富에 計上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地上權, 水利 및 營業權의
無形資産은 計上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資産은 私企業이나
또는 個別 經濟面에서 볼때
모두가 資産임에는 틀림없지만
国富調査에 包括시킬 資産으로
는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對外的 關係에서 國家와

第2回 国富統計調査	第2回 国富統計調査	日本 의 国富調査
		国家間에 存在하는 無形資産은 国民經濟 全體의 資産으로 看做하여 国富에 包含시킨다. 즉 無形資産은 對外關係에 限하여 例外로 한다. 以上에서 国富調査를 함에 있어 그에 含括될 資産의 性格 또는 限界를 中心으로 国富의 定義를 考察하여 보았는데 이것을 다시 要約하여 보면 「国富란 國內에 所在하는 再生産 可能的 有形資産의 總額에 對外 純債權을 合한 国民資産의 純額」이라고 할수 있다.

公 共 組 合 의 範 圍

第1 回国富統計調査	韓國銀行 意見	韓國産業銀行意見	調査本部 調整案
国家로 부터 그 存立 目的이 부여된 公法上の 法人	設立의 強制성이 있고, 組合員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出資에 依하여 運用되고 共同事業을 營為하는 團體	非營利 法人中 国家로 부터 目的이 부여되는 人的 結合體이며 設立의 強制 혹은 加入의 強制 性이 있는 非營利 公共 法人	
1. 大韓山林組合	1. 大韓山林組合	1. 大韓山林組合	
2. 土地改良組合	2. 土地改良組合	2. 土地改良組合	
3. 中小企業協同組合	3. 中小企業協同組合	3. 中小企業協同組合	
4. 輸出組合	4. 輸出組合	4. 輸出組合	
5. 建設共濟組合	5. 建設共濟組合	5. 建設共濟組合	
6. 韓國海運組合	6. 韓國海運組合	6. 韓國海運組合	

第1回 国富統計調査	韓国銀行意見	韓国産業銀行意見	調査本部 調整案
7. 農業協同組合	7. 農業協同組合	7. 農業協同組合	
8. 水産業協同組合	8. 水産業協同組合	8. 水産業協同組合	
9. 葉煙草生産組合	9. 葉煙草生産組合	9. 葉煙草生産組合	
	10. 医療保険組合	10. 医療保険組合	
	11. 韓国海運組合	11. 5 韓国海運組合	
	12. 塩業組合	12. 塩業組合	
	13. 人参組合	13. 人参組合	
10. 大韓商工会議所		14. 大韓商工会議所	
11. 韓国馬事会		15. 韓国馬事会	
12. 辯護士会		16. 辯護士会	
13. 在郷軍人会		17. 在郷軍人会	
14. 韓国反共聯盟		18. 韓国反共聯盟	
15. 軍事援護 対象者 団體		19. 軍事援護対象者 団體	

16. 大韓赤十字社
17. 大韓教育聯合會
18. 韓國生產性本部

20. 大韓赤十字社
21. 大韓教育聯合會
22. 辦理士會
23.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24. 建築士協會
25. 公認會計士會
26. 大韓建設協會
27. 測量協會
28. 韓國船主協會
29. 大韓觀光協會中央會
30. 文化院聯合會

KDB 案에 따라 全組合
 的 性格을 갖고 있는
 團體를 BOK에서 擔當
 하는 것이 可할것으로
 思慮됨
 (왜냐하면 1回調査와
 系列을 맞추기 容易
 할 것이기 때문임)

公共組合에 對한 調查本部의 意見

1. 第1回国富調査의 所有主體別 分類

I. 政府部門

11. 中央政府

111. 中央一般政府

112. 中央政府企業

12. 地方政府

121. 地方一般政府

122. 地方政府 教育機關

1221. 国民学校

1222. 中·高等学校

1223. 其他教育機關

13. 政府管理 企業

131. 国营企業

132. 金融 機關

14. 其 他

II. 法人部門

21. 營利法人

211. 株式会社

212. 其他法人

22. 非營利法人

“22” 非營利法人에는 다음 團體를 除外한 全非營利法人을 包含하였음.

大韓山林組合 土地改良組合 中小企業協同組合 韓國生產性本部 大韓商工會議所, 韓國馬事會, 輸出組合, 辯護事會, 在鄉軍人會, 建設共濟組合, 韓國海運組合, 大韓赤十字社, 大韓教育聯合會, 韓國反共聯盟 軍事援護對象者團體 農業協同組合 水產業協同組合 葉煙草生產組合

2. 日本國富調查(70年度)의 所有主體別分類

I. 政府部門

11. 國家機關

12. 地方公共團體

13. 公共物

14. 國營企業

15. 地方公營企業

II. 民間部門

21. 法人企業

22. 個人事業體

23. 民間非營利團體

24. 家計

" 12 " 地方公共團體는 다음과 같이 分類함.

121. 都道府縣

122. 市町村

123. 東京都特別區

124. 地方公共團體의 組合

125. 財産區

126. 地方開發事業團

3. 第2回國富調査의 所有主區別 分類

I. 一般政府

11. 中央政府

12. 地方自治團體 및 其他公共團體 (公共組合 包含함)

II. 政府企業

III. 政府管理企業

IV. 法人 (公共組合除外)

V.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VI. 一般家口

VII. 對外純資産

4. 調査本部의 意見

가. 公共組合을 政府部門에 包含하는것이 一般的임

(第1回調査 및 日本의 國富調査)

나. 公共組合의 概念은 學說에 따라 差異가 있으므로 機關의 性格에 따라 機關別로 区分하여야 할 것임.

다. 따라서 第2回 國富調査에서는 非營利團體를 다음과 같이 分類하여 調査支部別로 擔當토록 하는것이 妥當할 것임.

※ 非營利團體

1. 法人團體

11. 公共團體

12. 民間團體

2. 非法人團體 (民間團體)

11. 公共團體는 政府部門調查 支部에서 12 民間 法人團體
는 法人部門調查 支部에서 擔當함

라. 非營利法人 公共團體에 屬하는 團體의 名簿는 本
實務者 會議에서 決定함.

<제 5 차>

1977. 7. 20

1. 제 4 회 국부통제실무자회의 결 과보 고

공공조합의 범위중 변리사회 및 공인회계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한 공공단체라는 점에서 공공조합에의 포함여부는 확대 실무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2. 조사의 목적

제 1 회 국부통제조사 및 일본 국부조사의 목적을 검토하여 별첨 1 과 같이 결정하였음.

3. 자산의 범위

제 1 회 국부통제조사 및 일본 국부조사의 자산범위를 검토하여 별첨 2 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일본 국부조사시 제외대상자산중 귀금속 및 나무(立木)의 경우 구체적인 제외이유가 밝혀진 후 보완토록 하였음.

4. 조사객체 및 지역의 범위

별첨 3 과 같이 안을 작성하였으며 차기회의에서 검토, 보완하여 결정토록 하였음.

5. 제 6 회 국부통제 실무자회의

가. 일 시 : 1977. 7. 22 10:00

나. 장 소 : 조사통제국

첨부 : 1. 조사의 목적

2. 자산의 범위

3. 조사객체 및 지역의 범위 1 및 2 안

國 富 調 查 의 目 的

日 本 (1955년)	日 本 (1960년)	日 本 (1965년)	韓 国 (1968)	韓 国 (1977년)	備 考
1955年 国富調査의 目的은 国民經濟活動의 기초가 되는 国富의 現金額을 調査하여 그 分布 및 構成등의 實態를 把握함으로써 国家의 經濟構造를 밝히고 經濟政策을 입안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国富를 調査하는 目的은 1) 一定時점에 있어서의 各国 国力의 國際的 比較 2) 一國의 다른 時点間의 国富蓄積의 程度를 解明하여 經濟的 国力의 成長을 測定하고 3) 国富와 国民所得과의 關係를 밝혀 国民資本의 効率등을 測定하며 4) 国富의 構成 및 그 分布를 밝히는 것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번의 国富調査는 從來와 같이 国力의 成長이나 國際比較등을 행하다는 막연한 目的에서가 아니라 特別히 国民所得과의 關係를 解明하여 国家의 經濟政策을 立案하기 위한 基礎資料 獲得에 가장 큰 目的이 있다. 그리하여 調査의 方法에 대해서도 이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다음의 點을 考慮하였다. ①經濟活動의 成果로 蓄積된 資産에 選定 ②申告者의 評價→客觀的으로 統一된 評價 ③所有者別 經濟部門別	1962年 国富調査는 国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1960年 未 現在의 国富의 現在額을 調査 推計하여 그 水準 및 構造를 밝힘과 同時에 「1955年 国富調査」調査時点의 投資 實績의 경과를 把握하여 国民所得計定에 있어서 Flow의 投資와 Stock과의 關係를 밝혀 現在進行中인 国民經濟計算의 整備에 기여함은 勿論 經濟政策이나 經濟計劃을 立案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特別히 国民經濟計算에 關聯하여 国民所得計定과 결부된 国民貸借对照表의 作成에는 없어서는 안될 重要資料가 된다.	国民經濟計算 体系整備의 一環으로서 企業部門 資産을 調査하여 經濟計劃이나 經濟政策 등을 위한 基礎資料 提供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本調査의 目的은 1968년 12월 31일 現在로 国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富의 存在量을 把握함으로써 가. 經濟的 国力의 把握 (分布, 構成) 나. 国民所得과의 比較 및 国民計定の 補完 (資本系数, 国民貸借对照表) 다. 資本蓄積의 計測 年次間 比較) 라. 国家資源의 國際比較 (1人当資源) 마. 富의 分配 構成 (産業別 地域別) 등에 關한 基礎資料를 얻어 經濟開發計劃, 国家動員計劃, 国土建設計劃等 經濟施策立案 및 分析의 資料로 利用하는데 있다.	本調査의 目的은 1977年 12月31日 現在로 国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富의 存在量을 把握하여 가. 經濟的 国力을 把握하고 国家資源의 國際比較를 行하며 나. 資本蓄積의 程度를 計測하여 그간의 開發成果를 測定하고 다. 国民所得과의 關係를 究明하여 資本系数를 算出하고 라. 国民計定을 補完함으로써 經濟開發計劃, 国土建設計劃等 諸般 經濟施策立案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있다. 特別히 本調査는 才5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必 必한 資料를 適期에 提供하는데 目的이 있다.	調査目的中 ①資本系数算出 및 ②国民 R/S 作成에 特別히 重点을 둠.

資 産 の 範 圍

韓 国 68 年	韓 国 77 年	日 本 (70 年 調査)	備 考
가. 調査対象 資産의 範圍 이번 調査에서는 우리나라 住民이 所有하는 再生産 가능한 有形固定資産, 在庫資産, 家計資産 및 造成土地와 對外純資産을 調査対象으로 한다. 따라서 土地 自然林等 天然資源과 無形資産은 除外된다. 調査対象이 되는 有形固定資産은 建物, 構築物, 機械 및 藏置 船舶 車輛 및 運搬具, 工具, 器具 및 備品 建設仮計定에 計上되어 있는 未完成的 資産, 動物·植物이다. 在庫資産은 原料 半製品 및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貯藏品等 이며 有価証券은 除外한다. 그리고 國防部 所有資産中 防衛目的에 使用되는 資産은 調査対象 資産에서 除外한다. 나. 資産의 分類 1. 有形固定資産 11. 建 物 12. 構築物 13. 機械 및 藏置 14. 船 舶 15. 車輛 및 運搬具 16. 工具·器具 및 備品 17. 建設仮計定 18. 動 物 19. 植 物 2. 在庫資産 21. 原材料 22. 半製品 및 在工品 23. 完製品 및 商品 24. 貯藏品 3. 家計資産 (別個以外の 것) 4. 造成土地 5. 對外純資産	가. 調査対象資産의 範圍 이번 調査에서는 우리나라 住民이 所有하는 再生産 가능한 有形固定資産, 在庫資産, 家計資産 및 造成土地와 對外純資産을 調査対象으로 한다. 따라서 天然土地 自然林 等 天然資源과 無形資産은 除外된다. 調査対象이 되는 有形固定資産은 建物 構築物 機械 및 藏置, 船舶, 車輛 및 運搬具·工具 器具 및 備品·建設仮計定에 計上되어 있는 未完成的 資産·動物, 植物· 등이다. 在庫資産은 原料 半製品 및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 貯藏品 등이며 有価証券은 除外한다. 그리고 防衛目的에 使用되는 資産은 調査対象資産에서 除外한다. 나. 資産의 分類 1. 有形固定資産 11. 建 物 12. 構築物 13. 機械 및 藏置 14. 船 舶 15. 車輛 및 運搬具 16. 工具·器具 및 備品 17. 建設仮計定 18. 動 物 19. 植 物 2. 在庫資産 21. 原材料 22. 半製品 및 在工品 23. 完製品 및 商品 24. 貯藏品 3. 家計資産 (別個以外の 것) 4. 造成土地 5. 對外純資産	再生産 가능한 有形固定資産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經濟的 意味에 있어서의 資産으로 企業이나 家計等의 各經濟部門이 生産이나 生計등의 經濟活動을 營為해 나가기 위한 手段으로서 所有하고 있는 財貨로서 再生産이 가능한 有形 固定資産이다. 例컨데 企業이 事業活動을 進 行시키기 위해서 所有하고 있는 建物, 構築物, 機械 및 裝置, 器具, 備品등이다. 또 家計에 있어서는 生活을 營為하기 위한 住宅, 家財등의 資産이다. 但 經濟活動에 依 해 出生된 資産이라 하더라도 下記는 除外된다. ①書畫, 骨董품등의 芸術品, 文化財 및 天然記念 物 ②防衛目的에 使用中인 軍艦, 航空機, 具器 및 直接的인 軍需關聯施設 ③貴金屬類 (但 營業 本來의 目的에 使用되는 것은 除外) ④立木 (但 果樹 防風林과 같이 設備과 똑 같이 使用하기 위해 造成된 것은 除外)	日本の 70 年 調査에서 除外資産에 關한 研究 (除外 理由)가 이루어진 後 77年度 우리 나라 調査에 適用할 것임. 특히 貴金屬類와 立木에 대한 研究가 必要

調査客體 및 地域의 範圍 (1안)

調査의 対象客體는 国内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政府, 地方自治 団体 및 公共団体 政府關係機關, 法人団体 그리고 一般家口이다.

여기서 国内라 함은 調査基準時点 現在로 우리나라 主權이 現實 的으로 行使되고 있는 全 領域을 말하며 国内에 所在한다는 뜻은 法人의 境遇·우리나라의 法令에 의하여 設立되어 国内에 本社 本部 등의 事業活動의 場所의 本拠地를 가지고 있는 境遇를 말하며 法人의 構成員인 社員, 株主, 組合員 등의 全部 또는 大部分이 外國 人으로 構成되었더라도 或은 資本 또는 出資의 全部 또는 大部分 이 外國人의 出資에 의하여 運營되더라도 調査의 対象에 包含시킨 다. 또 国内에 事業活動의 本拠地를 가지고 있는 個人의 单独 또는 共同經營의 事業體는 그 經營者가 우리나라의 國籍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調査對象으로 한다.

이와 反對로 우리나라의 國籍을 가진 사람이 설립한 会社일지라도 外國法人인 境遇에는 調査對象에서 除外된다.

이와같은 境遇 우리나라 사람의 外國에 對한 出資나 外國인이 우리나라에 對한 出資等은 對外資産 또는 負債로서 別度 把握한다.

한편 一般家口에 있어서는 国内에 居住하는 一般家口는 모두 調査 對象의 客體로 對象範圍에 包含되나 外國의 外交官, 領事館 等 의 外國官吏나 駐韓 外國軍隊와 構成員의 家口는 調査對象에서 除外한다.

即 國富의 所在範圍를 明確히 하기 위하여 居住者와 非居住者를 区分하면 다음과 같다.

8 . 調 査 担 当 機 関

第2回 国富統計調査는 調査客体の 抛大性과 調査技術上の 諸問題等を 勘案하여 單一機關에서 実施하지 않고 經濟企劃院, 農水産部,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国民銀行이 다음과 같이 各 部門別로 分擔調査키로 한다.

調 査 指 針 書 (案)

二 次 調 査 指 針 書			備 考	一 次 調 査 指 針 書			備 考
調 査 擔 当 機 關	調 査 對 象 部 門	資 産		調 査 擔 当 機 關	調 査 對 象 部 門	資 産	
1. 政府 및 對外 資産 調査支部 (韓國銀行)	1. 一般政府 (가) 中央政府 (나)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	1. 國有財産法 所 定의 資産 2. 物品管理法所定 의 資産 1. 地方財政法上 公有財産 2. 地方財定法上物品 3. 公共團體(土地 改良組合, 農業協 同組合등)가 所有 하는 資産	(公 共 団 体) 1. 大韓山林組合 2. 土地改良組合 3. 中小企業協同組合 4. 輸出組合 5. 建設共濟組合 6. 韓國海運組合 7. 農業協同組合 8. 水産業協同組合 9. 葉煙草生産組合 10. 醫療保險組合 11. 塩業組合 12. 人參組合 13. 大韓商工會議所 14. 韓國馬事會 15. 辯護士會	1. 政府對外資産調 査支部 (韓國銀行)	1.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團體 및 其他 公 共 團體	1. 國有財産法 所 定의 資産 2. 物品管理法 所定의 資産 1. 地方財政法上 公有財産 2. 地方財政法上物品 3. 公共團體가 所有 하는 資産 4. 管造物 法人이 所有하는 資産 2. 政府企業 3. 社會間接資本施設	
	2. 政府企業 3. 社會間接資本	1. 道 路 2. 河 川				1. 道 路 2. 河 川	

二 次 調 査 指 針 書			備 考	一 次 調 査 指 針 書			備 考
調 査 擔 当 機 關	調 査 對 象 部 門 및 資 産			調 査 擔 当 機 關	調 査 對 象 部 門 및 資 産		
	部 門	資 産			部 門	資 産	
		3. 항 만 4. 其他의 社会間接 資本 4. 对外純資産	16. 在郷軍人会 17. 韓国反共聯盟 18. 大韓援護対象者団体 19. 大韓赤十字社 20. 大韓教育聯合会 21. 유네스코韓國委員會 22. 建築士協會 23. 大韓建設協會 24. 測量協會 25. 韓國船主協會 26. 大韓觀光協會中央会 27. 文化院聯合会 (28. 辯理士会) (29. 公認會計士会)			3. 항 만 4. 其他의 社会間接 資本 4. 对外純資産	
2. 法人資産調査支部 (韓國産業銀行)	1. 法 人 가. 營利法人 나. 非營利法人	1. 商法上の 營利 法人이 保有하고 있는 資産 2. 民法, 其他 法令 에 의하여 設立된	1. 모든 政府管理企業体 가 所有하고 있는 資産은 包含한다. 2. 政府 및 对外資産支 部の 公共団体資産은 除外한다.	2. 法人資産調査支部 (韓國産業銀行)	1. 法 人 가. 營利法人 나. 非營利法人	1. 商法上の 營利 法人이 保有하고 있는 資産 2. 民法 其他 法令 에 의하여 設立된	1. 모든 政府管理企 業체가 所有하고 있는 資産

二 次 調 査 指 針 書			備 考	一 次 調 査 指 針 書			備 考
調 査 擔 当 機 關	調 査 對 象 部 門 및 資 産			調 査 擔 当 機 關	調 査 對 象 部 門 및 資 産		
	部 門	資 産			部 門	資 産	
3. 個人企業 資産 調查支部 (農水産部) (中小企業銀行) (国民銀行)	1. 個人企業	社団, 財団, 其他 法人 및 組合等 의 非營利法人이 保有 하고 있는 資産	○ 第 1 支部 (農水産部) 1. 個人企業中 1) 農業, 狩獵業, 林業 및 漁業 2) 保管 및 倉庫業 2. 造成土地 ○ 第 2 支部 (中小企業銀行) 1. 個人企業体 1) 鉱 業 2) 製造業 3)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 4) 建設業 5) 都小売및음식숙박업	3. 個人企業資産 調查支部 (農水産部) (中小企業銀行) (国民銀行)	1. 個人企業	社団, 財団, 其他 法人이 保有하고 있는 資産	1. 農業 韓国標準産業 分類 01) 林業 및 伐木兼 02) 수렵업 03) 漁業 및 水産 양식업 04) 에 있어서는 規模 로 보아 企業性을 면 業체가 所有 하는 資産만을 調查한다. (별첨, 農林水産業의 個人 企業部門 調查對象 基準表 참조)
		1. 個人이 단독 또는 共同으로 經營 하고 있는 個人 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資産				1. 個人이 단독 또는 共同으로 經營하고 있는 工 場 商店等の 個人 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資産	

二 次 調 査 指 針 書			備 考	一 次 調 査 指 針 書			備 考
調 査 擔 当 機 關	調 査 對 象 部 門 및 資 産			調 査 擔 当 機 關	調 査 對 象 部 門 및 資 産		
	部 門	資 産			部 門	資 産	
			○ 第 3 支 部 (国 民 銀 行) 1 . 個 人 企 業 中 1) 運 輸 通 信 業 2) 金 融 , 保 險 , 不 動 産 및 用 役 業 3) 社 会 및 個 人 서 ー 비 스 業 農 業 및 수 립 業 (韓 国 標 準 產 業 分 類) 11) 林 業 12) 漁 業 에 있 어 서 는 규 모 로 보 아 企 業 性 을 띤 業 体 가 所 有 하 는 資 産 만 을 調 査 한 다 . 2 . 非 法 人 团 体 2 . 法 人 格 을 갖 지 않 는 모 든 团 体 가 保 有 하 고 있 는 資 産			2 . 非 法 人 团 体 2 . 法 人 格 을 갖 지 않 는 모 든 团 体 가 保 有 하 고 있 는 資 産	

二 次 調 査 指 針 書			備 考	一 次 調 査 指 針 書			備 考
調 査 擔 當 機 關	調 査 對 象 部 門 及 資 産			調 査 擔 當 機 關	調 査 對 象 部 門 及 資 産		
	部 門	資 産			部 門	資 産	
4. 家計資産調査支部 (經濟企劃院)	1. 一般家口	1. 一般家口 (農家 非農家) 가 保有 하고 있는 資産	1. 家口가 保有하고 있는 資産中 建物과 耐用 年數1 年以上的의 耐久材만을 調査對象 으로 한다.	4. 家計資産支部 (經濟企劃院)	1. 一般家口	1. 一般家口 (農家 非農家) 가 保有 하고 있는 資産	1. 家口가 保有하고 있는 資産中 建物과 耐久年數1 年以上的의 耐久材만을 調査對象 으로 한다. 2. 農業, 林業 및 伐 木業 수렵業 漁業 및 水産養植業에 있 어서는 규모로 보아 一般農家가 所有 하고 있는 資産을 調査 한 다. (별첨참조)

9. 調查基準時点 및 調査実施期間

部 門 別	調査擔当機關	調査方法	基準時点	業 務	77		78				79				備 考 (調査單位數)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政府 및 對外資産	韓國銀行	全數調査	77.12.31	事前準備 實 查 資料處理 分析 및 公表											約 15,200 個 機關
2. 法人資産	韓國産業銀行	全數調査	77.12.31	事前準備 實 查 資料處理 分析 및 公表											約 20,000 個 法人
3. 個人資産	農水産部	全數調査 및 標本調査	77.12.31	事前準備 實 查 資料處理 分析 및 公表											約 40,000 標本事業 體 3 個機關이 分擔調査
	中小企業銀行	標本調査	77.12.31	事前準備 實 查 資料處理 分析 및 公表											
	國民銀行	標本調査	77.12.31	事前準備 實 查 資料處理 分析 및 公表											
4. 家計資産	調査統計局	標本調査	77.12.31	事前準備 實 查 資料處理 分析 및 公表											約 21,000 個 家口

(居住者와 非居住者の 区分基準은 統計委員會의 新國民計定體系와 I.M.F의 國際收支 編制方式을 基準으로 하고 美商務省의 多數 決原則의 方式을 參考로 한것임)

가. 機 關

① 政府機關(大使館, 領事館, 軍事施設 等)은 治外法權이 주어지므로 居住者로 보며, 國內에 所在하는 外國의 政府機關은 마찬가지 理由로 非居住者로 본다.

② 國際機關

國際機關은 常住地 與否를 不問하고 非居住者로 取扱된다.

나. 法 人

① 外國法人의 國內支店

企業의 境遇 國內에 所在하는 모든 外國의 營利法人 및 非營利 團體의 支店, 代理店, 出張所 및 其他 事務所는 居住者로 본다. 그러나 外國의 本社 計定으로 代理 行爲를 하는 國內의 外國代理店 等은 非居住者이다.

② 內國法人의 海外支店

內國法人의 外國에 있는 支店, 支社 出張所 等이 非居住者가 되며 다만 國內의 本店計定으로 業務를 遂行할 境遇에는 居住者로 본다.

다. 個人 및 家計

① 外國에 駐在하는 外交公館員, 使節團員 軍人 및 家族은 居住者로 본다.

② 外國旅行이나 商業旅行을 目的으로 國內에 1年以上 滯留中인 外國人과 海外에 1年以內 滯留中인 內國人은 居住者로 본다.

③ 外國에 있는 事業體(內國法人의 外國支店 및 事務所 現地法人 國際機構包含)에 勤務하는 內國人은 非居者로 본다.

④ 國際機關에 從事하는 國內居住 外國人은 居住者로 본다.

이외는 反對로 大使館, 銀行, 會社 等の 海外事務所 支店等の 資産은 財産目録에 表示된 한 調査에 包含시킨다.

다음에 調査客體를 財貨의 所有形式으로 본 所有主體別로 보면 아래와 같다.

調査客體가 뚜렷이 区分된다.

가.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團體 및 其他公共團體

國家로부터 그 存立目的이 賦與된 公法上の 法人 즉 地方自治團體가 가지고 있는 地方財政法上 共有財産 및 物品과 土地改良組合, 水産協同給合等 公共組合이 所有하는 資産

나. 政府企業

다. 政府管理企業

重要 政府出資企業 및 銀行이 所有하는 資産

라. 法人

商法上の 營利法人과 民法 및 特別法上の 財團法人 社團法人

마.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個人이 單獨 또는 共同으로 經營하고 있는 個人企業 및 法人 權을 갖지 않는 모든 團體

바. 一般家口

사. 對外純資産

調 査 客 體 및 地 域 的 範 圍 (2 안)

1 次 調 査 時	日 本 的 境 遇	2 次 調 査 試 案
調査의 対象客體를 国内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i) 一般政府 ① 中央政府 ② 地方自治团体 및 公共团体 ii) 政府企業 iii) 政府管理企業 iv) 法 人 v) 個人企業 및 非法人团体 vi) 一般家口 및 vii) 對外純資産으로 하였다. 国内라 함은 調査基準時点 現在 우리나라 主權이 現實的 으로 行使되는 全領域을 말한다.	• 1955 年 調査의 客體로서 政府, 地方公共团体, 公社·公庫等の 政府關係機關, 法人, 其他团体, 個人企業, 一般世帯 및 對外純資産으로 区分함. 調査範圍의 規定은 大體로 U.N의 S.N.A에 依함. • 1960 年 調査의 客體로서 政府, 政府關係機關, 地方公共团体, 法人, 個人事業體等, 一般世帯, 對外純資産으로 区分하여 調査함. 国内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 이 所有하는 資産은 資産의	• 調査의 対象客體는 国内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政府, 地方自治团体 및 公共团体, 政府關係機關, 法人, 個人企業 및 非法人团体, 一般家口等이다. 이를 財貨의 所有形式에 依한 所有主體別로 区分하면 다음과 같다. 가.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团体 및 公共团体 国家로부터 그 存立目的 賦與된 公法上の 法人 即 地方自治团体가 가지고 있

法人의 境遇 우리나라 法領에
依해 設立되어 國內에 本社, 本
部等의 事業活動의 場所의 本拠
地를 가지고 있는 境遇를 調査
對象으로 하였다.

따라서 法人의 構成員의 全
部 또는 大部分이 外國人으로
構成되었더라도 或은 資本의
全部 또는 大部分이 外國人의
出資에 依해 運營되었더라도 國
內에 所在하는 法人의 境遇에
는 調査對象에 包含시켰다.

이와 反對로 우리나라 國籍을
가진 사람이 設立한 会社라
할지라도 外國法人인 境遇에는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一般家口에 있어서는 國內에
居住하는 一般家口는 모두 調査

所在를 不問하고 調査對象으로
하였으며, 國內에 所在하는 負債
이라도, 外國 居住者의 資産이면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1970年 調査의 客體로서 政
府, 地方公共團體, 公共物, 國營
企業, 地方公營企業, 法人企業,
家計, 民間非營利團體 및 對外
純資産으로 区分 調査하였다.
調査範圍의 規定에 있어서는
國籍에 關係없이 美商務省의
多數決原則의 方式을 따랐다.
즉 所有者의 常住居住地, 業務
遂行地, 僱傭主의 所在地의 3
가지 條件中 2個以上이 國內
에 있는 者를 居住者로 規定
하여 調査對象으로 하였다.

는 地方財政法上 公有財産
및 物品과 土地改良組合,
水産協同組合等 公共組合이
所有하는 資産

나. 政府企業

다. 政府管理企業

重要政府 出資企業 및 銀
行이 所有하는 資産

라. 法人

商法上의 營利法人과 民法
特別法上의 財團法人, 社團法人
마.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個人이 單獨 또는 共同으
로 經營하고 있는 個人企業
및 法人格을 갖지 않는 모
든 團體

바. 一般家口

사. 對外純資産

1 次 調 査 時	日 本 の 境 遇	2 次 調 査 試 案
対象에 包含시켰으나 外国의 大使館, 領使館等の 外国官吏나 駐屯外国軍의 家口는 調査対象에서 除外하였다. 이와는 反對로 大使館, 銀行, 会社 等の 海外事務所, 支店等の 資産은 財産目録에 表示된 한 調査対象에 包含시켰다.		・調査의 対象은 国内에 所在 또는 居住하여야 하는데, 国内라 함은 調査基準 時点 現在 우리나라 主權이 現實적으로 行使되고 있는 全領域을 말한다. ・政府機關의 境遇 国内에 所在 하는 것은 물론 調査対象에 包含되며, 外国에 所在하는 本國의 政府機關(大使館, 領使館, 軍事施設) 等도 治外法權이 주어 지므로 対象에 包含된다. 国内에 所在하는 外国의 政府機關은 마찬가지로 理由로 対象에서 除外되며, 國際機關도 所在地 与否를 不問하고 対象에서 除外된다.

· 法人의 境遇 우리나라 法에
依해 設立되어 國內에 利益의
中心이 되는 本部, 本社等の
事業活動의 場所의 本拠地를
가진 것을 對象으로 한다.

國內에 所在하는 外國法人은
물론 外國의 營利法人 및 非
營利團體의 國內支店, 代理店,
出張所 및 其他 事務所는 調
査對象에 包含시킨다.

한편 內國人이 外國에 設立한
現地法人 및 內國法人의 外國에
있는 支店, 支社, 出張所 등은
調査對象에서 除外된다.

· 家計의 境遇 國內에 居住하는
모든 一般家口는 調査對象이
된다.

1 次 調 査 時

日 本 の 境 遇

2 次 調 査 試 案

한편 国内에 居住하는 外国
의 外交公館員, 使節團員, 駐屯
軍人の 家口는 調査対象에서
除外되며, 反對로 外国에 駐在
하는 外交公館員, 使節團員, 軍人
等の 家口는 調査対象에 包含
된다. 또한 國際機關에 從事
하는 国内居住外国人은 対象에
包含시킨다.

< 제 6 차 >

1977. 7. 22

1. 제5회 국부통계실무자 회의 결과보고

2. 78년도 예산심의

기획관리실 및 예산국 담당실무자(시무관급)와 각지부 실무자 연석회의(기획관리실)에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제작성토록 하였으며, 예산서의 단기의 기준(정부기준 또는 각지부기준)은 본부에서 차기회의 까지 확정토록 하였음.

3. 해외연수 계획수립

법인지부에서 종합작성한 안(별첨)을 검토하여 다음 방향에 따라 수정제출토록 하였음.

가. 본 조사는 일본의 조사방법을 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본 국에는 각 지부별 1명씩 그리고 구주지역과 미주지역에 각 3명씩으로 인원을 구성

나. 연구 및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자는 동일지역에서 관계국의 세부사항까지 파악 연수토록 함.

다. 지부별 출장자의 관계기관별 연구 및 자료수집부문을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함.

4. 제7회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가. 일 시 : 1977. 7. 25 10:00

나. 장 소 : 조사통계국

다. 안 건 : 1) 종합지침서(시안)
2) 78년도 예산검토
3) 해외연수 계획

첨 부 : 해외연수계획(안)

1. 提 案

금번 정부는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富)의 존재량
및 그 분배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가. 經濟的 国力을 파악하고 國家資源의 국제비교를 행하며
나. 자본축적의 정도를 計測함과 동시에
다. 國民所得과의 關係(資本係數)를 규명하고
라. 국민대차대조표등 國民計定을 보완 함으로써
經濟開發計劃과 국가 동원 계획 및 국토건설계획등 제발경제시책
특히 才五次 經濟開發 五個年計劃 立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適
期에 제공할 목적으로 1977년 12월 31일 현재를 基準時点으로
한 才2回 國富(Nationd Wealth)調査를 실시하게 된바 본 조사
특유의 방대 성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 기획원 농수산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등 6個기관 공동으로
약 10億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되는 중대한 거
국적 사업임으로 본조사에 대한 理論과 實際 및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現實로서는 본조사의 원활하고 차질없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부조사 연수를 위한 해외 출장계획을 수립
실시코자 함.

2. 海外出張計劃

장소(国)	기 관	연 구 조 사 내 용	연구조사자	연구조사 일 수	비 고
日 本	경제기획청 일본개발은행 항만청 행정관리청 통상성 경제연구소	1. 국부의 概念 및 역사 2. 국부를 推計하였을時와 調査하였을 時の 문제점 3. 조사개체의 정의 및 범위(지역포함) 4. 자산평가 방법과 그 문제점 5. 국부와 국민계정과와의 관계 6. 국부조사의 방향과 그 문제점 7. 물가 배율표 작성방법과 사회간접자본 평가방법과 그 문제점 8. 정부 기업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국 부조사상의 문제점과 국부조사 결과표를 이용한 국민계정의 분석방법 9. 자산분류 및 비용 년수표 작성방법과 이에 따른 문제점 10. 조사표설계 및 제표상의 문제점	全 員 (12 명)	1977. 8.10 ~ 1977. 8.14 (15 일간)	

장 소 (國)	기 관	연 구 조 사 내 용	연구조사자	연구조사 일 수	비 고
		11. 표본설 제상의 문제점 가. 母集團 未推定時의 적절한 표본설제 방안 나. 표본설제과정 다. 조사불능분 (分) 의 推定과 그 처리 라. 표본설제시의 특성이 조사결과와 상이 했을시의 처리방법 12. 소유자 주의와 사용자주의 채택과 그 문제점 13. 토지평가방법과 그 문제점 14. 공용자산의 처리방법과 그 문제점 15. 기타 국부조사 및 추제상의 제 문제점 16. 통계행정과 체제 및 참고자료수집 17. 진가울의 계산방법과 그 문제점 18. 일반사업체 조사에 관한 조사방법 연구			

네델란드	중앙통제국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 日本과 통일사항 2. 국민소득제정의 작성요령과 평균자본제수 산출을 위한 국부추계의 방법과 필요성 3. Netherland 의 통제행정과 체제 및 참고자료수집 4. 기 타	3 명	1977. 8.18 ~ 1977. 9.17 (21일간)	
미 국	상 무 성	1. 日本과 통일사항 2. 국부추제(P.I) 방법과 그 문제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현재의 국부조사를 추제하는 방향모색 3. 미국통제행정과 체제 및 참고자료 수집 4. 기 타	2 명	"	현재 미국 상무성에서 연구실시되는 P.I 방법의 도입과 그문제점 연구검토
카나다	카나다 통제국	1. 日本과 통일사항 2. 재고자산평가 및 추정방법과 그 문제점 3. 카나다 통제행정과 체제 및 참고자료수집 4. 기 타	3 명	"	Hood -scott

장소(國)	기 관	연 구 조 사 내 용	연구조사자	연구조사 일 수	비 고
서 독	D I W (Deutsches Institute für Wirt- schaftfor- schung)	1. 日本과 통일사항 2. 국민소득제정과 결접히 맺어진 국민자본 제정을 위한 국부추제 방법과 그문제점 3. 고정 자산의 추정 방법과 그 문제점 4. 독일 통제행정과 체제 및 참고 자료 수집 5. 기 타	2 명	1977. 8.18 ~ 1977. 9.17 (21 일간)	Ferdi nand Greumng
오 스 트렐리아	연방센서스 통제국 (Common Wealth Bureau of Census and Statisti- cs)	1. 日本과 통일사항 2. 토지조성 및 개량공사 (정지, 조림, 해초잡초등의 구제 목초지 의 개선, 관개, 배수개량등) 등의 価額 推定方法과 그 문제점 3. 오스트렐리아 통제행정과 그 체제 및 참고자료수집 4. 기 타	2 명	"	T.H Coghlan 넵프스 Garland

<제 7 차>

1977. 7. 25

1. 제 6 회 국부통계조사 회의 결과를 보고 하였음.

2. 조사객체 및 지역의 범위

제 5 회 본회의에서 검토한 조사객체 및 지역의 범위에 관한 2개 안을 비교 검토하고

가. 다수결의 원칙

나. 본사와 해외지사 지점간의 회계처리상의 구분을 대비하여 정부 및 대외 순자산 조사지 부에서 단일안으로 정리토록 하였음.

3. 결과의 제표 및 공표 (별첨 1)

가. 결과표를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소분류까지 가능토록 하여 자본제수 산출에 전부분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개인부분의 표본설제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본제수와의 관계 및 표본 설제상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차기회의에서 확정토록 하였음.

산업분류의 신규 대비

	신	구
중 분 류	36	48
소 분 류	87	204

* 주 : 제 1 회 조사시에는 중분류 (48 분류) 까지 제표

나. 집계항목 분류부터 차기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4. 78년도 예산심의

예산서는 운행의 단기기준에 의거 자료를 정리하여 실무자 회의에서의 종합조정을 거쳐 당원기획관리실에 제출키로 하였음.

5. 해외연수 계획

별첨 2의 해외연수 계획(안)에 따라 조사본부에서 정리하여 확대 실무자회의 및 각지부 책임자 회의를 거쳐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6. 기타사항

정부 및 대외 순자산 조사지부의 “공공조합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본부와 법인 자산조사 지부에서 검토한후 필요할 경우 확대실무자 회의 및 각지부 책임자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7. 제 8 회 국부통제 실무자 회의

가. 일시 : 1977. 7.27 10:00

나. 장소 : 조사통계국 회의실

다. 안건 : 1) 종합지침서(시안)

2) 78년도 예산 검토

3) 해외연수 계획

첨부 : 1. 결과의 제표 및 공표

2. 해외연수 계획(안)

一次 国富調査 지침서	調査指針書 試案	二次国富調査 指針書
(製表의 原則)	(原 則)	가. 製表의 原則
1. 基本的인 製表는 매 調査客體마다 資産項目別로 集計하고 調査客體의 屬性에 따라 国富를 構成하는 有形資産全體에 대하여 所有者別과 經濟部門別 (공공 기업, 비영리 및 가계 부문)로 分類하였으며 企業部門을 다시 資産別로 分類하였다.	1. 調査結果의 製表는 첫째 調査目的에 符合되어야 하며 둘째 利用者の 편의를 도모하고 셋째 國際比較의 可能性을 높일 수 있도록 作成하여야 한다.	(1) 조사결과의 製表는 調査目的에 符合되는 동시에 利用者の 편의를 도모하도록 作成하여야 한다.
2. 有形固定資産은 再取得價格 (總国富)과 再調達價格 (純国富)으로 区分하여 製表하였다.	2. 基本的인 製表는 매 調査客體마다 資産項目別로 集計하고 調査客體의 屬性에 따라 国富를 構成하는 有形資産全體에 대하여 所有者別과 經濟部門別	(2) 基本的인 製表는 每 調査客體마다 資産項目別로 集計하고 調査客體의 屬性에 따라 国富를 構成하는 有形資産全體에 대하여 所有者別과 經濟部門別로 分類하고 企業部門은 다시 産業別로 分類作成 하여야 한다.

一次 国富調査 指針書	調査指針書 試案	二次 国富調査 指針書
3. 産業分類는 68年 한국표준 산업분류 (旧分類) 의 中分類別로 区分하고 調査되는 資産은 国富統計調査를 위한 国富資産分類表상의 小分類까지 集計製表되도록 하였다. 4. 地域別分類는 道別까지만 把握되도록 製表하였다. (製表結果의 處理) 1. 調査結果値가 製表된 內容은 利用者の 편의를 위하여 可能한 한 公表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各部門別 調査內容에 따라 結果表의 數가 다르다.	로 分類하고 企業部門은 다시 産業別로 分類하여야 한다. 3. 有形固定資産은 總国富와 純国富로 区分하여야 한다. 4. 産業分類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中분류別로 区分하고 調査되는 資産은 国富統計調査를 위한 国富資産分類表상의 小分類까지 집계 製表되어야 한다. 5. 地域別分類는 道別까지만 把握되도록 한다. 6. 資産의 部門別 分類調査되는 資産은 다음과 같이 所有주제별經濟部門別, 産業別 및 地域別로 分類된다.	(3)有形固定資産 評價額은 再調達價格 (純国富) 과 再取得價格 (總国富)으로 区分 製表하여야 한다. (4)産業分類는 韓國標準産業分類의 小分類別로 区分하고 調査되는 資産은 国富統計調査를 爲한 国富資産分類表상의 小分類까지 집계 製表되어야 한다. (5) 지역별 분류는 11個, 市, 道까지 把握, 製表되도록 한다. 나. 集計項目 分類 調査되는 資産은 다음과 같이 所有主體別, 經濟經濟部門別, 産業別 및 地域別로 分類된다.

2. 結果表의 數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총괄보고서 內容에는 再調達價格(純國富)에 의한 結果表를 中心으로 수록하여 公表하고 再取得價格(總國富)의 結果는 各支部別로 公表하도록 하였다.

1. 所有主體別分類

가)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團體 및 기타 공공團體

나) 政府企業

다) 政府管理企業

라) 法人

1) 營利法人

2) 非營利法人

마)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1) 個人企業

2) 非法人團體

바) 家計部門

사) 對外純資產

2. 經濟部門別分類

가) 공공部門

나) 企業部門

다) 非營利部門

(1) 所有主體別分類

가)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團體 및 其他 公共團體

나) 政府기업

다) 政府 管理企業

라) 法人

1) 營利法人

2) 非營利法人

마)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1) 個人企業

2) 非法人團體

바) 家計部門

사) 對外純資產

(2) 經濟部門別分類

가) 政府部門

나) 企業部門

다) 非營利 團體 部門

一次 国富調査 指針書	調査指針書 試案	二次 国富調査 指針書
	라) 家計部門 3. 産業別分類 한국표준산업분류의 中分類別로 分類製表한다. 4. 地域別 分類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각도 및 국별로 製表한다. (集計) 本調査의 集計는 各支部別로 機械集計한다. (公表) 1. 本 調査結果가 集計되는 즉시 통계위원회의 심의등 심의 과정을마친후 각조사기관 支部別로 速報를 發刊한다. 2. 本調査의 綜合結果報告書는 統一된 체재로 1979年말까지 發刊한다.	라) 家計部門 (3) 産業別 分類 韓國 標準産業分類의 小分類別로 分類 製表한다. (4) 地域別 分類 서울特別市 부산직할시 各道別로 製表한다. 다. 集計 本調査의 集計는 各支部別로 기계집계 한다. 라. 公表 (1) 本調査 結果가 집계되는 즉시 통계위원회의 심의등 심의 과정을 마친후 調査本部에서 결정하는 統一된 體制에 의하여 各支部別로 發刊한다.

〈별첨 2〉 國富調査研修를 爲한 海外出張計劃 (案)

1. 提 案

금번 정부는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富)의 존재량 및 그 분배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가. 經濟的 国力을 파악하고 國家資源의 국제 비교를 행하며
나. 자본축적의 정도를 計測함과 동시에
다. 國民所得의 關係 (資本系数)를 규명하고
라. 국민 대차 대조표 등 國民計定을 보완 함으로써
經濟開發計劃과 국가 동원 계획 및 국토건설 계획 등 제반 경제시책
특히 第五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 立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適
期에 제공할 목적으로 1977년 12월 31일 현재를 基準時点
으로 한 第2回 國富(National Wealth) 調査를 실시하게 된바
본조사 특유의 방대성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기획원 능
수산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6個
기관 공동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 되는 중대한 거국적 사업임으로 본조사에 대한 理論과 實
際 및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現實로서는 본조사의 원활하고도
차질 없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부조사 연
수를 위한 해외 출장계획을 수립 실시코자 함.

장 소(국)	기 관	연 구 조 사 내 용	연구조사 사 자	연구조사 일 수
日 本	經濟企 劃 庁	1. 국 부의 개념 및 역사 2. 국 부의 調査時와 推計時와의 문제점 3. 조사객체의 정의 및 범위 (지역 포함) 4. 자산 평가 방법과 그 문제점 5. 국부와 국민계정과의 관계 6. 국부조사의 방향과 문제점 7. 물가배율표 작성 및 사회간접자본 평가방법과 그 문제점 8. 정부, 기업, 가계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국부조사상의 문제점과 국부조사 결과표를 이용한 국민계정의 분석방법 9.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작성 방법과 이에 따른 문제점 10. 조사표 설계 및 제표상의 문제점 11. 소유자주의와 사용자 주의 채택과 그 문제점 12. 표본설제상의 문제점 가. 모집단 미추정시의 적절한 표본설제 방안 나. 표본설제 과정 다. 조사불능분의 추정과 그 처리 방법 라. 표본설제시의 특성이 조사결과와 상이했을시의 처리방법	4 명	1977.8. 16 ~19 77.9.2 4(40 일 간)

장소(국)	기 관	연 구 조 사 내 용	연구조사자	연구조 사일수
		13. 토지 평가 방법과 그 문제점 14. 공용자산의 처리방법과 그 문제점 15. 간가울의 계산방법과 그 문제점 16. 일본의 통제행정과 체제 17. 자본제수 산출을 위한 국부와 국민소득과의 관계 규명 방법 18. 기타 참고자료 수집		

2. 海外出張計劃

장소(국)	기 관	연 구 조 사 내 용	연구조 사 자	연구조 사 일수
	총리부통제국 행정 관리청 항만청 농림성 통계 국	1. 각종 경제제표 실제와 그 분석방법 2. 국세조사와 사업체 조사 방법 3. 정부자산부문에 있어서 대외 순 자산의 추계방법 4. 항만 시설의 평가 방법과 문제점 5. 대동식물의 분류방법과 농지조성평가 방법 및 그 문제점 6. 지정통계현황과 조사상의 문제점 7. 조사원의 훈련 현황 파악 8. 기타 참고 자료수집	2명	1977.8. 16~197 7.9.24 (40일간)
美 国	상무성	1. 日本과 동일사항 2. 국부추계(특히P·L)방법의 연구와 차기부머의 국부조 사시 본 추계 방법을 도입했을 경우의 문제점과 처 리방법 3. 국부를 이용한 국민계정의 보완방법과 처리 문제 4. 장단기 경제전망 예측과 분석 방법 5. 민간경제 및 비농업 부문의 생산량 추계방법		1977.8. 16~197 7.9.4 (20일간)

		6. 기타 참고 자료 수집		
	중앙조정기관 (Central co-ordinating Agency)	1. 日本과 동일 사항 2. 자산분류 방법과 그에 따른 용어 정의 설정 3. 각종 조사표의 설계방법과 editing coding 등 자료처리방법 4. 각종통계기준 및 정의 설정방법 5. 미국의 통계 행정과 체제 6. 기타 참고 자료 수집		1977.9. 5~1977 9.9 (5일간)
캐나다	연방통계국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1. 日本과 동일 사항 2. 재고자산 평가 및 추정방법과 그 문제점 3. 대외 순자산의 평가 방법과 문제점 4. 철도 도로등 사회간접 자본의 추계 방법 5. 표본설계방법과 그에 따른 자료 처리 문제 6. 캐나다 통계 행정과 체제 7. 기타 참고 자료 수집	2명	1977.9. 10~9.2 4(15일간)
		1. 日本과 동일 사항 2. 고정 자산 평가 방법과 정의 설정문제 3. 국부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장 소(국)	기 관	연 구 조 사 내 용	연구조 사 자	연구조 사일 수
영 국		4. 자본환원법에 의한 국부추제 방법 5. 토지 평가 방법과 자본계수 산출방법 6. 영국의 통제행정 및 체제 7. 기타 참고 자료 수집	2 명	1977.8. 16 ~ 19 77.9.4 (20 일간)
프 랑 스		1. 日本과 동일 사항 2. 상속세 통계 자료와 재산세 통계자료를 이용한 국부추제방법과 이에 따른 자본계수의 산출방법 3. 자산분류와 내용년수표 및 잔가율작성방법과 그 문제점 4. 조사표 설계 및 제표상의 문제점 5. 기타 참고 자료수집		1977.9. 5 ~ 9.24 (20 일간)
서 독	연방통계청 (Federal statisti- cal Office) 및 DIW (Deutsches Institute für Wirts- chaftsfor- schung)	1. 日本과 동일 사항 2. 국민소득계정과 밀접히 맺어진 국민자본계정을 위한 국부추제 방법과 그 문제점 3. 고정자산의 추정방법과 그 문제점 4. 자산재평가 방법 5. 독일 통제행정과 체제 6. 기타 참고 자료 수집	2 명	1977.8. 16 ~ 8.3 0 (15 일간)

네델란드	중앙통계국 (Central Statistical Bureau)	1. 日本과 통일사항 2. 국민소득 제정의 작성요령과 평균자본제수 산출을 위한 국부추계의 방법과 필요성 3. 고정자산평가방법과 이에 따른 장단기 경제지표의 작성 방법 4. Netherland의 통계행정과 체계 5. 기타 참고 자료 수집	1977.8. 31 ~ 9.14 (15일간)
스웨덴	중앙통계국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 日本과 통일사항 2. 토지조성 및 개량공사등의 価額推定方法과 그 문 제점 3.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추정방법 4.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상의 용어정의 및 작성 방법 5. 자본제수의 산출방법과 국민제정상의 추계문제 6. 사회간접자본의 추정방법 7. 스웨덴의 통계행정과 체계 8. 기타 참고 자료 수집	1977.9. 15 ~ 9.24 (10일간)

장 소(국)	기 관	연 구 조 사 내 용			연구조 사 자	연구조 사 일수
		※ 제 1 차 제 획 안	※ 제 2 차 제 획 안	※ 제 3 차 제 획 안		
		日 本 : 6 명	日 本 : 5 명	日 本 : 4 명 (3명)		
		미 국 } 카 나 다 } → 2명	미 국 } 카 나 다 } → 2명	미 국 } 카 나 다 } → 2명		
		영 국 } 프 랑 스 } → 2명	영 국 } 프 랑 스 } → 2명	영 국 } 프 랑 스 } → 2명		
		서 독 } 네델란드 } → 2명 스웨덴 }	서 독 } 네델란드 } → 3명 스웨덴 }	서 독 } 네델란드 } → 3명 (2명) 스웨덴 }		

<제 8 차>

1977.7.27

1. 제 7 회 국부통제조사 회의 결과를 보고 하였음.

2. 조사객 체 및 지역의 범위

제 6 회 본회의에서 토의되었던

가) 다수결의 원칙

나) 본사와 해외지사 지점간의 회계처리상의 구분을 대비하여 정부 및 대외 순자산 조사지부에서 단일안으로 작성한 안 (별첨 1)을 검토하여 결정하였음.

3. 결과의 제표 및 공표

제 6 회 본회의에서 일부 검토한 바 있는 결과의 제표 및 공표중 다음사항은 수정하였음.

가) 자본 제수와의 관계 및 표본설계상의 문제점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결과표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까지 작성토록 하였음.

나) 소유주체별 분류는 각지부별 보고서 작성을 감안하여 제 1 회 국부통제조사때와 동일하게 분류하였음.

4. 조사사항

제 1 회 국부통제조사와 비교하여 조사사항을 별첨 2 와 같이 결정 하였음.

5. 조사방법

본 항목에서는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잔가율 및 물가배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항목인 잔가율 및 물가배율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토록하여 별첨 3 과 같이 결정하였음.

6. 제 9 차 국부통제 실무자회의

가) 일 시 : 1977.7.29 10:00

나) 장 소 : 조사통제국

다) 안 전 : 종합지침서 (시안)

첨부 1. 조사객체 및 지역의 범위

2. 조사사항

3. 조사방법

< 별첨 1 >

調査客體 및 地域의 範圍

2次 調査試案

調査의 対象客體는 国内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政府,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 政府關係機關, 法人,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一般家口等이다. 이를 財貨의 所有形式에 依한 所有主體別로 区分하면 다음과 같다.

가.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

國家로부터 그 存立目的이 賦與된 公法上の 法人 即 地方自治團體가 가지고 있는 地方財政法上 公有財産 및 物品과 土地改良組合, 水産業協同組合 等 公共組合이 所有하는 資産

나. 政府企業

다. 政府管理企業

重要政府 出資企業 및 銀行이 所有하는 資産

라. 法人

商法上の 營利法人과 民法, 特別法上の 財團法人, 社團法人

마.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個人이 單獨 또는 共同으로 經營하고 있는 個人企業 및 法人格을 갖지 않는 모든團體

바. 一般家口

사. 對外純資産

調査의 対象은 国内에 所在 또는 居住하여야 하는데, 国内라

함은 調査基準 時點 現在 우리나라 主權이 現實的으로 行使되고 있는 全領域을 말한다.

居住者 및 非居住者의 区分基準으로서, 家計와 政府機關 및 國際機關에 對해서는 UN의 新國民 計定體系 및 IMF의 國際收支 編制方式을 主軸으로 하고 法人에 對해서는 所有者의 常住居住地, 業務遂行地, 雇用主의 所在地中 2 가지 以上の 條件을 具備할 境遇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로 判斷하는 多數決 原則을 適用하여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

가. 機 關

1) 政府機關

外國에 所在하는 本國의 政府機關(大使館, 領事館, 軍事施設等)은 治外法權이 주어지므로 居住者로 보며 國內에 所在하는 外國政府의 公館使節團은 마찬가지 理由로 非居住者로 본다.

2) 國際機關

國際機關은 常住地 與否를 不問하고 非居住者로 取扱된다.

나. 企 業

1) 外國法人의 國內支店

企業의 境遇, 國內에 所在하는 外國의 營利法人 및 非營利團體의 支店, 代理店, 出張所 및 其他 事務所는 居住者로 본다. 그러나 外國의 本社計定으로 代理行爲를 하는 代理店은 非居住者이다.

2) 內國法人의 海外支店

內國法人의 外國에 있는 支店, 支社, 出張所等은 非居住者가 되며, 다만 國內의 本社計定으로 業務를 遂行할 境遇에는 居住者로 본다.

다. 個人 및 家計

- 1) 外國에 駐在하는 外交公館員, 使節團員, 軍人 및 그 家族은 居住者로 한다.
- 2) 外國旅行이나 商業行爲를 目的으로 國內에 1年以上 滯留中인 外國人과 海外에 1年 以內 滯留中인 內國人은 居住者로 본다.
- 3) 外國에 있는 事業體(內國法人의 外國支店 및 事務所, 現地法人, 國際機構包含)에 勤務하는 內國人은 非居住者로 본다.
한편 外國法人의 國內支店等에 勤務하는 外國人은 居住者로 본다.
- 4) 國際機關에 從事하는 國內居住 外國人은 居住者로 본다.

試 案	調 整 案
調査事項은 첫째, 調査対象 客體의 概況을 把握키 위한 事項과 둘째, 資産再評價額을 求하기 위한 事項으로 大分할 수 있는바, 各調査支部擔當部門의 特殊性을 살려 調査項目을 設定한다. 但, 調査項目을 設定함에 있어 아래의 點을 留意하여야 한다, (1) 本 調査는 最終的으로 類別資産評價額만을 集計 発表하게 되므로 그 評價額을 求할 수 있도록 項目을 設定해야 한다. (2) 資産의 評價額에 있어서는 Gross Base에 依한 評價額과 Net Base에 依한 評價額이 各各 区分捕捉될수 있도록 設計되어야 한다.	調査対象客體를 把握하기 爲한 事項과 資産評價額을 求하기 위한 事項으로 하되 다음 事項에 留意하여 各 調査支部 擔當部門의 特性을 살려 調査事項을 設定한다. 1. 製表原則에 依한 類別 및 地域別 資産評價額을 求할 수 있도록 項目을 設定해야 한다. 2. 資産의 評價가 再調達價格과 再取得價格에 依한 評價額이 区分捕捉될 수 있도록 設計되어야 한다.

調 査 方 法

-75-

1 次 国 富 調 査 時	日本国富調査時	2 次 国 富 調 査 試 案
가. 一般的인 調查方法	가. 一般的인 調查方法	가. 一般的인 調查方法
1. 所有者主義方法	1. 所有者主義方法	1) 所有者主義에 依한 方法
2. 全數調查方法 및 標本調查方法並用	2. 全數 및 標本調查	原則的으로 調查되는 資産의 所有關係를 基準으로 한 所有者主義方法에 의하여 調査한다. 그러나 이 基準에 依한 調査가 調査資産의 經濟的인 寄与 또는 所得創出과 無關한 調査가 되지 않도록 당해 資産을 基礎로하여 實質的인 經濟活動을 하는 使用者를 基準으로 한 使用者主義가 援用되어야 한다.
3. 自計式 記入法과 他計式 記入法並用	3. 自計式	2) 全數 調査 및 標本調查方法 並用
나. 評價方法	나. 評價方法 1) 有形 固定資産	3) 自計式 및 他計式 並用
再取得價格 取得價格×物価倍率 (Gross), 再調達價格= 再取得價格×残価率 (Net)	取得價格×物価倍率=再取得價格 (Gross Base)	4) 既存資料에 의 한 間接
但 残価率: 定率法	再取得價格×残価率=再調達價格 (Net Base)	
鉱業用資産은 생산고비 례 법	※ 残価率: 定率法	

1 次 国 富 調 査 時	日 本 国 富 調 査 時	2 次 国 富 調 査 試 案		
2. 在庫資産		A. 一般政府	全数調査	・ 自 計 式
1) 各 企業의 評價額		B. 政府企業	"	"
2) 在庫資産의 評價方法은 調査基準時点에서 実施한 帳簿價格은 評價額으로 한다.		C. 政府管理企業體	"	"
그러나 調査時点		D. 法人資産	"	自計式과他計式
現在 在庫調査를 實施하지 않은 경우는		E. 個人企業및 非法人團體資産	標本調査	他 計 式
① 調査基準時点에서 가장 가까운 時点에 行한 在庫調査의 帳簿價格을		F. 一般家口	"	"
② 실지 在庫調査를 行한적이 없는 在庫는 調査基準時点의 帳簿上的 價格을		G. 對外純資産	既存統計 利用推計	既存 資 料
③ 帳簿가 없는것은 調査機關의 客觀的인 基準에 의거 時價로서 評價.		나. 有形 固定資産의 調査方法		
		原則的으로 各資産마다 個別的으로 再調査價格을 算出하도록 調査		
		1) 調査資産의 單位는 物理的으로 把握되는 1 個의 財貨가 아니고 그 財貨에 對한 投下時期가 다른 各各의 資本支出을 各各 1 個의 資産으로 생각하여 調査單位로 한다. 즉 同一資産을 同一時期에 多數로 一括 購入했을때는 하나의 調査單位로 한다.		
		2) 資産評價方法		

再取得價格 = 取得價格 × 物價率 (Gross Base)

再調達價格 = 再取得價格 × 殘價率 (Net Base)

그러나 取得時期가 不明한 境遇는 全部 時價로 評價한다.

다. 在庫資産의 調査方法

在庫資産의 評價方法은 調査基準時点에서 實施한 帳簿價格을 評價額으로 한다. 그러나 調査時点現在在庫調査를 實施하지 않을 境遇는

- 1) 調査基準時点에서 가장 가까운 調査時点이 行한 在庫調査의 帳簿價格을 評價하고
- 2) 실지 在庫調査를 行한 적이 없는 在庫는 調査基準時点의 帳簿上價格을 셈하고
- 3) 帳簿가 없는것은 調査機關의 客觀的인 基準에 의거 時價로 評價한다.

라. 조성토지 및 인공림

조성된 토지와 인공림에 대한 조사는 개인자산 제 1지부(농수산부)에서 原則적으로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하기로하고 기타, 이에 必要한 자료는 標本調査하여 補完하는 方法을 채택한다.

< 제 9 차 >

1977. 7. 29

1. 제 8 회 국부통계조사 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음.

2. 조사 담당기관

다음사항을 보완하고 별첨 1 과 같이 결정 하였음.

가) 법인 자산조사지부의 부문을 영리법인, 비영리부문으로 구분하였음.

나) 개인자산조사지부, 조사담당은 한국표준산업분류별로 분류하였음.

다) 정부 및 대외 순자산 조사 지부의 담당기관중 공공조합에는 제 5 회 본 회의 결과에 따라 명기하고 한국은행에서 “공공조합의 범위”에 관하여 제기한 이의는 확대 실무자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3. 조사기준 시점 및 조사실시기간

확대실무자 회의 (77. 6. 29) 에서 합의된 세부계획안과 비교하여 별첨 2 와 같이 결정하였음.

4. 물가배율

제 1 회 국부통계조사 및 일본의 국부조사의 물가배율을 비교검토하여 기본부문수는 1968년 물가배율표의 작성 부문인 25 개 부문으로 하고 필요시 세분할 수 있도록 하여 별첨 3 과 같이 결정 하였음.

5. 잔가율

별첨 4 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다만 “잔가의 한도는 자산의 취득시점으로 부터 경과년수가 내용 년수의 2 배에 도달할때의 잔가율을 1 %로 한다”는 자산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충분히 연구하여 잔가율 작성에 반영토록 하였음.

6. 농림수산업의 개인 기업 부문 조사 대상기준표

규모별 농가수 자료를 농수산부에서 준비하여 가계지부와 합의하여 기준표를 결정하도록 하였음(농수산부안 별첨 5)

7. 제 10 회 국무통계 실무자 회의

가) 일 시 : 1977.8.1. 10:00

나) 장 소 : 조사통계국 회의실

다) 안 전 : 종합지침서(안) 검토

첨 부 : 1. 조사담당기관

2. 조사기준시점 및 조사실시기관

3. 물가배율

4. 잔가율

5. 농림수산업 부문 개인 기업조사대상기준표

< 별첨 1 >

調査擔当機關

第2回 国富統計調査은 調査客體의 龍大性과 調査技術 上의 諸問題等을 甚案하여 單一機關에서 実施하지 않고 經濟企劃院 農水産部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이 다음과 같이 各部門別로 分擔調査키로 한다.

調査指針書 試案

一次調査指針書			二次調査指針書		
調査擔当機關	調査対象部門 및 資産		調査擔当機關	調査対象部門 및 資産	
	部 門	資 産		部 門	資 産
1. 政府對 外 資産 調査支部 (韓國銀行)	1. 一般政府	1. 國有財産法 所定の 資産	1. 政府對 外 資産調 査支部 (韓國銀行)	1. 一般政府	1. 國有財産法 所定の 資産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 團體 및 其他公共 團體	2. 物品管理法 所定の 資産 1. 地方財政法上 公有財産 2. 地方財政法上 物品 3. 公共團體가 所有하는 資産 4. 營造物法人이 所有하는 資産		(가) 中央政府 (나) 地方自治 團體 및 公共團體	2. 物品管理法 所定の 資産 1. 地方財政法上 公有財産 2. 地方財政法上 物品 3. 公共團體 (土地, 改良組合 農業協同組合 등) 가 所有 하는 資産

2. 法人資 産調査支 部 (韓國産業 銀行)	2. 政府企業		2. 政府企業		
	3. 社会間接 資本施設	1. 道 路	3. 社会間接 資本	1. 道 路	
		2. 河 川		2. 河 川	
		3. 항 만		3. 항 만	
		4. 其他의 社会間接資本		4. 其他의 社会間接資本施設	
4. 对外純資 産		4. 对外純資 産			
1. 法 人		1. 商法上의 營利法人이 保有하는 資産	1. 法 人	1. 商法上의 營利法人이 保有하고 있는 資産	1. 모든政府 管理企業體가 所有하고 있는 資産
2. 民法其他法令에 依하여 設立된 社團 財團其他法			2. 民法其他法令에 依하여 設立된 社團 財團其他法人및組		

一次調査指針書				二次調査指針書			
調査擔当機關	調査対象部門및資産			調査擔当機關	調査対象部門및資産		
	部 門	資 産			部 門	資 産	
		인이 保有하 고 있는 資 産				合等の 非營 利法人이 保 有하고 있는 資産	
3. 個人企 業資産調 査支部 (農水産部) (中小企業 銀行) (国民銀行)	1. 個人企業	1. 個人이 단독 또는 共同으로 經營하고 있는 工場 商店等の 個人企業이 保 有하고 있는 資産	1. 農業 (韓 国標準産業 分類 01) 林業및 伐木業 02) 수렵업 03) 漁業및 水産양 식업 04) 에 있 어서는 規模로보아	3. 個人企 業資産調 査支部 (農水産 部) (中 小企業銀 行) (国 民銀行)	1. 個人企業 中	1. 個人이 단 독 또는 共 同으로 經營 하고있는 個 人企業이 保 有하고있는 資産	1. 農業및수렵 업 (韓國標準 産業分類 11) 林業 (12) 漁業 에 있어서는규 모로 보아 企 業性を 띤 業體가 所有 하는資産만 을 調査한 다.

4. 家計資 産支部 (經濟企劃院)	1. 一般家口	1. 一般家口(農 家非農家)가 保有하고있는	1. 家口가保 有하고있는 資産中建物	1. 家計資 産調査支 部(經濟	1. 一般家口	1. 一般家口 (農家非農家) 가保有하고	1. 家口가保有 하고있는資産 中 建物과
	2. 非法人団 體	2. 法人格을 갖 지 않는 모든 團體가 保有 하고 있는 資産	2. 企業性을 띤 業體가 所有하는資 産만을調査 한다(별첨 農林水産業 의 個人企業 部門調査對 象基準表 참조)		2. 非法人 團體	2. 法人格을 갖지 않는 모 든團體가保有 하고있는資産	(별첨 農林 水産業의 個 人企業部門調 査對象基準表 참조)

一次調査指針書				二次調査指針書			
調査担当機関	調査対象部門 및 資産			調査担当機関	調査対象部門 및 資産		
	部	門	資 産		部	門	資 産
			資産 과耐久年数 1年以上의 耐久材만을 調査対象으 로한다. 2. 農業林業 및伐木業 수렵업, 漁 業및水産養 植業에 있 어서는 규 모로보아 一般農家가 所有하고 있는資産을 調査한다. (별첨참 조)	企劃院)			있는 資産 耐用年数 1 年 以上の 耐久 材만을調査對 象으로한다

조사기준지점 및 조사실시기간

부문별	조사 담당기관	조사 방법	기준 시점	업무	77		78				79				비고 (조사단위수)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정부및 대외 자산	한국은행	전수조사	77.12.31	사전준비 실사 자료처리 분석및공표											약 15,200 개기관
2. 법인자 산은행	한국산업 은행	전수조사	77.12.31	사전준비 실사 자료처리 분석및공표											약 20,000 개법인
3. 개인자 산	농수산부	전수조사 및표본조 사	77.12.31	사전준비 실사 자료처리 분석및공표											약 40,000 표본사업체를 3개기관이분 담조사

物 價 倍 率 表

1968 年 調 査 時	1970 年 日 本 의 物 價 倍 率	1977 年 調 査 時 의 案
物價倍率 国富評價에 있어서 主要 要件中 하나는 物價變動을 勘案시키는 物價倍率에 있다. 即 国富調査에 依한 国富評價는 諸資産이 同一基準時点으로 評價되어야하므로 資産의 取得時期와 評價時点間의 物價變動을 勘案하여 評價時点으로 統一시키는 節次가 必要하다. 이 修正의 基準이 되는 物價倍率의 作成單位는 資産類別로 細分되어야 하고 同時에 可及的 細分된 個別 物價倍率을 作成하는 것이 要望되고 있다. 그러나 国富	1. 分類基準 가. 「建物 및 建設附屬設備」 「構築物」: 構造 種類別 나. 「車輛 및 運搬具」 「工具 및 備品」 「大動植物」 : 品目分類別 다. 機械 및 裝置: 設備分類 및 品目分類別 2. 種 類 「建物 및 建物附屬設備」 「構築物」: 原價倍率 其 他: 原則적으로 實態倍率 3. 年度別 部門數 總年度數: 15 個年度別 部門	物價倍率 国富資産의 評價는 모든 資産이 同一基準時点으로 評價되어야 하므로 資産의 取得時期와 評價時点間의 物價變動을 調整하여 評價時点を 統一시키는 節次가 必要하다. 이 物價變動調整의 基準이 되는 物價倍率의 作成單位는 可能的 資産種類別로 細分하여 作成하는 것이 要望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国富統計調査에서는 利用 가능한 價格資料와 1968 年 物價倍率과의 連續性を 維持하기 위하여

1968 年 調査時	1970 日本의 物価 倍率	1977 年 調査時の 案
統計調査에서는 利用 가능한 価格資料와 集計能力等の 制約을 考慮하여	61.62 ... 69.70 (10)	(1) 物価倍率表의 部門分類는 国富統計資産分類와 包括範圍가 一致하도록 하며
(1) 物価倍率의 作成单位는 国富統計調査資産分類와 符合시킨다	45 ~ 54 . 55 ~ 56 ...	(2) 物価倍率表의 時系列은 1910년부터 1977 年까지 每年次別로 作成하며
(2) 物価倍率의 時系列은 1910 년부터 1977 年까지 每年次別로 作成한다.	59 ~ 60 (4)	(3) 基本 部門數는 1968 年 物価倍率表의 作成 部門인 25 個 部門으로 한다.
< 参考 >	1944 年 以前 (1)	
分類基準 : 構造 種類別・品目分類別	4. 項目別 部門數	
種 類 : 原価倍率	○ 機械 및 裝置 :	
年度別 部門數 : 59 個年度 (1910 ~ 1968)	品目分類 21 部門	
項目別 部門數 : 25 部門	設備分類 238 "	
	○ 其 他 : 58 "	
	建 物 19 車 輛 5	
	附屬設備 9 工 具 12	
	構築物 8 動植物 3	
	船 舶 3 建設仮計定 1	
	土 地 1	
	計 58 部門	

< 별첨 4 >

2 회 国富統計調査残価率

国富評価에서 말하는 残価率は (1 - 償却率) 을 가르킨다.

이번 国富統計調査에서는 定率法에 依한 資産의 耐用年数別 償却率을 算出한後 이에 対応한 그 資産의 經過年数에 따라 償却率을 1에서 控除한것을 残価率로한다. 残価의 限度는 資産의 取得時点으로부터 經過年数が 耐用年수에 도달할 때의 残価率을 10%로 하고 經過年수가 耐用年수의 2 倍에 倒達한때의 残価率は 1%로 한다.

	업종	주요내용	국부조사를 위한 개인기업규모
111	농업 (Agriculture and Livestock Production)	이 분류에는 전답, 온실, 비닐하우스등에서 곡식, 작물, 과일 종자, 채소, 화훼류, 특용작물등을 재배하고 가축 및 가금의 사육과 양봉 및 양잠에 종사하는 사업체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우유, 양모, 모미, 달걀, 꿀, 누에고치를 생산하는 기업체와 잔디, 꽃, 장식용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농장이나 농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체 가공하는 경우에 생산활동과 별도로 분리해서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여기에 포함한다.	
1111	작물생산업	전답, 온실, 비닐하우스, 과수원등에서 식량, 사료 및 소비용 작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작물생산과 축산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사업체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11111	보통작물생산업	인간주식용 식량과 동물용 작물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11112	과실생산업	감귤류, 사과, 포도, 핵과, 견과등 주로 인간소비용 과실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수3헥타 이상을 경영하고 이 주업으로 하는 자.
11113	채소작물생산업	잎 및 줄기야채, 열매야채, 뿌리야채와 같은 주로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닐하우스는 1,000 평 이상을 주로 경영하는자(노지재배로는 적합치 않음)
11114	공업작물생산업 (Growing of crops for manufacturing)	약용작물, 섬유작물, 유지작물, 기호작물, 향신료등 인간소비 및 산업용 제품원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약용작물 : 박하, 인삼, 구기차 섬유작물 : 대마, 아미, 모시, 왕골, 연초, 면화 유지작물 : 참깨, 들깨, 유채, 피마자, 해바라기 기호작물 : 커피, 차, 향신료 : 후추, 육두구, 소두구 기 타 : 사탕수수, 사탕무우, 양송이	양송이 500명이상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약용작물, 섬유작물, 유지작물 기호작물(차)등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업 종	주 요 내 용	국부조사를 위한 개인 기업규모
11115	화훼작물생산업 (Growing of Flowers and ornamental plants)	장식용 및 정원가꾸기용 화초잔디 및 관상수를 생산하기 위하여 꿀, 나무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립용 묘목생산업은 12101 (양묘업)에 분류한다.	0 노지하체 2,000명이상 0 비닐하우스 500명이상 0 노지 1,000명과
11116	조경업 (Landscape Ga- rdening)	조원서 서비스를 포함하여 건물주위 장식 또는 도로 정원, 공원, 운동장등 조정에 따른 관상수 잔디 관육 및 기타장 식용 식물을 심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닐하우스 200명 이상 보유자 과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11119	달리분류되지 않 은 작물생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작물생산의 산업활동을 말하며 비나솔 충전 재등의 식물성 원 재료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활동이 포 함된다. 수경성 식물 재배도 포함된다.	
11120	축 산 업 (Livestock Pro- duction)	목초지에 방목하거나 우리에 가두어 가축 및 가금을 사육 하여 인간소비에 필요한 우유, 고기, 달걀, 섬유, 모피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양잠 및 양봉 사업체도 포함한다.	
11121	낙 농 업 (Dairy Farmi- ng)	우유 및 우유제품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 및 젖양을 기르 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우유 40두, 유산양 100두이상을 주업 으로 경영하는자

		낙농 사업체에서 우유를 살균하여 병에 넣어 시판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한다.	
11122	육우사육법 (Breeding of Beef Cattle)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기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한우 및 육우의 육성 없는 번식 우40두 비육우 100두 이상을 주업으로 경영하 는 자.
11123	양돈업 (Breeding of pigs)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돼지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양돈200두 이상 을 주업으로 경 영하는 자
11124	기타 가축사육업 (Breeding of Other Domestic Animals)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축 사육업을 말하며 젓소, 젓양, 비육우, 돼지를 제외하고 고기, 모피, 털,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육사업 활동을 말한다. 고기나 모피를 목적으로 개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사업체는 포함하나 가구나 어떠한 사업체에서 산업활동용 또는 애완용으로 동물을 기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좌기업을 주업으 로 경영하는자
11125	가금 사육업 (Raising of Live Poultry)	고기와 알을 생산하기 위하여 닭, 오리, 거위, 칠면조등을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알을 생산하기 위한 채란제 3,000수 이상 닭 고기 생산을 위 한 육제 5,000수 이상 경영자

	업 종	주 요 내 용	국부조사를 위한 개인 기업규모
11126	양 잠 업 (Raising of Silkworm Coco- ons)	견 섬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누에를 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상전 2헥타 이상을 주 업으로 경영하는 자로 서 연간 1,400kg 이상 의 잠전을 생산하는자
11126-1	잠 종생 산업	잠종생산을 위하여 누에를 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농수산부장관의 잠종생 산업 허가를 받아 잠 종생산을 주업으로 경 영하는자
11127	양 봉 업 (Raising of Bees)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양봉근 200근 이상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11129	달 리 분류되지 않은 축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축산활동으로서 종축, 종금 사육 장, 애완용 동물, 사육장, 야생조수류 사육장 (수령용 제 외) 실험용 동물사육장이 포함된다.	좌기업을 주업으로 경 영하는자
11210	농 업서비스업 (Agricultural Services)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작물농업, 축산업 및 원예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작물의 수확, 탈곡, 포장, 염연초가공, 전 모 (양 모작기) 인공수정, 가금부화, 거세, 병아리감별, 구충 제살포, 씨뿌리기 및 공중방역, 과실 및 야채, 채취, 관제시설운용 파수전지, 관상목전지 등의 활동이 포함된 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운전자나 기계종사자와함께 임대해주는 농업용장비 임대업은 여기에 분류되나 기계만 임대해주는 사업체는 8420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분류	
11221	가금부화업 (Poultry raising)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가금부화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즉 가금 사육활동과 연관되지 않고 자기계정으로 가금을 부화하여 가금사육 업체에 주로 판매하는 사업체가 여기에 분류된다.	가금부화업등 농업서비스업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자.
11229	달리분류되지 않은 축산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양털깎기, 품종개량, 동물인공수정, 거세, 병아리감별, 잠종채 취등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로 말함.	좌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자
11290	달리분류되지 않은 농업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서비스업으로 완전히 분업화된 원예 서비스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11300	수렵업 (Hunting Trapping and Game propagation)	영리를 목적으로 야생조류를 잡거나 업사들을 위해 야생조류를 방사하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를 말함.	

	업종	주요내용	국부조사를 위한 개인 기업규모
12101	양묘업 (Forest Nurseries)	산림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조림용 수묘를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원용 묘목을 주로 재배하는데 종사하는 사업체는 11115 (화훼작물생산업)에 분류한다.	과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자
101	육림업 (Timber Tracts Conservation)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2109	달리분류되지 않은 영림업 (Forestry n.e.c)	산림에서 나무나 풀로부터 의약품, 식용, 또는 산업용 재료를 채취하는 활동과 숲가꾸기 및 수액을 증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또는 제약에 의거 주로 영림활동에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나무껍질채취, 산화소방서비스, 산삼, 약초채취, 야생버섯채취, 야생과실채취, 숲가꾸기, 수액증류, 및 농축 산림관리서비스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
12200	벌목업 (Logging)	산림지역에서 나무를 베어 재목과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30	어업 (Fishing)	영리를 목적으로 바다, 강 또는 호수에서 물고기, 갑	

		각류, 해조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산동식물을 채포, 채취 양식 또는 증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말한다.	
1301	원양 및 연근해어업 (Dcear and Coastal Fishing)	원양, 조해 및 연안에서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및 수산동물을 잡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기를 잡고 가공하는 데 종사하는 공장형태의 선박은 포함하나 단지 물고기 가공에만 종사하는 공장형태의 선박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체로 처리할 수 있을때에는 (해상통조림 및 가공저장업)에 분류된다.	
13011	원양어업 (Dcear Fishing)	원양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좌기업은 주업으로 경영하고자 개인 영
13012	연근해어업 (Coastal Fishing)	연근해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를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수산동물의 채포 및 채취활동은 제외한다.	업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함.
13013	갑각류 및 연체동물 채취업	근해 및 연안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하여 갑각류 및 연체동물을 잡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3014	수산동물포획업	원양, 근해 및 연안에서 선박 및 기타 포획도구를 사용하여 고래, 물개, 바다포범등 수산동물 (젓먹이 동물)을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업 종	주 요 내 용	국부조사를 위한 개인 기업규모
13019	달리분류되지 않은 원양 및 연근해어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양 및 연안어업으로서 바다에서 미역, 김과 같은 해조류, 해삼, 성게, 거북이, 진주모패, 스폰지, 산호등과 같은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좌기업을 주업으로 경영하고자 개인영업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함.
1302	달리분류되지 않은 어업	영리를 목적으로 내수면에서 물고기와 수산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고 바다나 민물에서 물고기, 해조류등을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어업관련 서비스도 포함된다.	〃
13021	내수면어업 (Inland Fishing)	강, 호수등 내수면에서 선박 및 기타 어도구를 사용해서 물고기 등을 잡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3022	양식업 (Fish Breeding)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물고기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해조류를 양식하고 부화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3029	기타어업 (Other Fishing)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어업으로서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어업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

< 제 10 차 >

1977. 8. 1

1. 제 9 회 국부통제 조사 회의 결과를 보고 하였음.

2. 종합지침서 (1 차안) 종합검토

가. 국부의 개념, 조사목적

실무자 회의에서 작성한 안을 검토하여 별첨 2 와 같이 수정 하였음.

나. 자산의 범위

자산분류에서 “가계자산”과 “조성토지”를 원안과 같이 독립시키는 안과 유형고정자산이라는 점에서 유형고정자산에 포함시키는 안이 토의되었으나 재무제표상의 유형고정자산 항목과 일치시키고 제 1 회 국부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는 점에서 가계자산과 조성토지를 유형고정자산과 별도의 분류를 채택하기로 하였음.

다. 결과의 제표 및 공표, 물가배율표 및 잔가율표

결과의 제표 및 공표, 물가배율표, 잔가율표에 관한 사항을 국민은행,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에서 각각 우선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종합검토하기로 하였음.

3. 기타사항

가. 본 종합지침서 (1 차안) 의 종합검토는 차기회의 (8 . 3 예정)

까지 완결하고 확대 실무자회의 (8. 8 예정) 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나. 제 11 회 국부통제 실무자회의

- 1) 일시 : 1977. 8. 3. 10:00
- 2) 장소 조사통계국
- 3) 안건 : 종합지침서 (1 차안) 종합검토

첨부 : 종합지침서(안)

<별첨> 종합지침서 (사안)

1. 國 富 의 概 念

-101-

第2回 國 富 統 計 調 査 (案)	第1回 國 富 統 計 調 査	日 本 の 國 富 調 査
國富를 넓은 意味로 말하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資産의 合計 즉 各 經濟單位 (政府企業, 家計 等)의 資産속에 포함되는 모든 客視的인 財貨를 現在의 貨幣價値로 評價한 總額에 對外 純資産을 보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의 國富에는 첫째 : 經濟活動의 成果인 有形資産 (建物 在庫品等) 둘째 : 經濟活動에 依하여 생긴 財貨는 아니나 經濟活動을 營為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自然物로서의 土地, 埋藏物, 自然	國富를 넓은 意味로 말하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資産의 合計 즉 各 經濟單位 (政府, 企業, 家計 等)의 資産속에 包含되는 모든 客視的인 財貨를 現在의 貨幣 價値로 評價한 總額에 對外 純資産을 보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의 國富에는 첫째 : 經濟活動의 成果인 有形資産 (建物在庫品 等) 둘째 : 經濟活動에 의하여 생긴 財貨는 아니나 經濟活動을 營為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自然物로서의 土地 및 埋藏物	一般的인 富의 概念을 考察하는 가운데 一國의 富를 構成하는 要素는 市場化 할 수 있고 財貨와 用役을 生産하는데 寄与하는 總資源이다. 그러나 國富調査 또는 國富總評라고 할 때 國富의 定義를 前述한 바와 같은 一般的이라고도 広範한 概念을 直接 援用하는 것은 아니다. 國富調査를 實施하는 것은 國家間의 資源比較, 一國 國民經濟의 構造와 成長分析, 國民所得과의 關係 또는 開發計劃 目的에

第2回 国富統計調査(案)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의 国富調査
등의 天然資源 셋째 : 對外 純資産 등이 包含된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国富統計調査를 主로 經濟分析의 手段으로 利用하게 됨에 따라 概念自體의 範圍도 그 幅이 좁혀져 國民經濟의 立場에서 國民經濟의 한 分科로서의 国富를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国富資産을 다음과 같이 限定시키코자 하는 것이다. 国富로서의 資産을 우리나라 國民經濟內에 存在하는 再生産 可能한 有形資産에 限하며 国富資産의 條件을 詳述하면 다음과 같다.	物 自然林 등의 天然資源 셋째 : 對外純資産 등이 包含된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国富統計調査의 目的이 主로 經濟分析의 手段에 있게 됨으로써 概念 自體의 範圍도 그 幅이 좁혀져 國民經濟의 立場에서 생각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各國의 研究成果를 参考하고 國民經濟의 한 分科로서의 国富를 생각하여 国富資産을 다음과 같이 限定시키코자 하는 것이다. 国富로서의 資産은 우리나라 國民經濟 속에 있는 모든 資産中에서 經濟活動에 依한 生産物로서 消費되지 않고 蓄積	必要한 資源의 分布狀況 등을 把握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国富의 概念은 이와 같은 利用目的에 더욱 有用토록 이를 設定하고 있다. 즉 国富推計를 위하여 国富를 定義함에 있어서는 包括될 国富資産의 條件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 国富資産은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産이어야 한다. 둘째 : 國民經濟 全體의 立場에서 본 資本投下라야 한다. 셋째 : 人間能力에 依하여 産出

즉 國富資產은

1) 經濟的 意味을 갖는 資產이어야 한다.

2) 國民經濟全體의 立場에서 資本投下가 이루어진 有形資產에 限한다.

그러나 無形資產이라도 對外的인 權利關係는 例外로서 國富에 包含시킨다.

3) 再生産이 可能한 資產이어야 한다.

4) 客觀的으로 經濟的 評價가 可能한 資產이어야 한다.

첫째로, 經濟的 意味의 資產이란 政府, 企業, 家計 및 非營利

된 資產으로 再生産이 可能한 有形資產과 對外純資產이라야 한다.

즉 첫째, 國富資產은 經濟的 意味을 갖는 資產이어야 한다.

둘째, 國民經濟 團體의 立場에서 본 資本投下로서 有形資產에 限한다. 그러나 無形資產이라도 對外的인 權利關係는 例外로서 國富에 包含시킨다.

셋째, 再生産이 可能한 資產이라야 한다.

먼저 經濟的 意味의 資產이란 政府, 企業, 家計 및 非營利 團體의 經濟主體가 生産이나 家計等의 經濟活動을 營爲하기 위한 手段으로 가지고 있는 財貨를 말한다. 따라서 經濟財로서 看做하기 힘난

된 資產中 有形資產에 限한다.

단, 對外的인 權利關係는 例外로서 國富에 包含시킨다.

먼저 經濟的 意味을 갖는 資產이란 經濟主體가 經濟活動을 營爲하기 위한 手段으로 가지고 있는 財貨를 말한다. 經濟主體에는 勿論 家計나 企業政府 및 非營利團體까지 모두 包括하게 된다.

企業이 經濟活動을 爲하여 保有하고 있는 財貨란 例를 들면 事務所라든가 工場, 機械設備備品, 車輛運搬具, 製品, 貯藏品 또는 原材料등이 있을 것이며 家計가 經濟活動을 營爲하기 위한 것이 라면 生計를 목적으로 하는 것,

第2回 国富統計調査(案)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の 国富調査
団体等の 經濟主体가 生産이나 家計等の 經濟活動을 營為하기 위한 手段으로 가지고 있는 財貨를 말한다. 따라서 經濟財로서 看做하기 힘들고 客觀的 評價가 困難한 芸術品, 文化財, 書籍 등은 除外한다. 둘째로, 国富로서의 資産은 國民經濟 全体의 立場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1) 地上權과 같은 用益權은 土地 所有者의 權能을 制限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個別 經濟에서는 資産이라 생각되지만 國民經濟上의 資産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고 客觀的 評價가 困難한 芸術的 文化財 書籍 등은 除外된다. 다음 国富로서의 資産은 國民經濟 的인 立場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1) 地上權과 같은 用益權은 土地所有者의 權能을 制限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個別經濟에서는 資産이라 생각되지만 國民經濟上의 資産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2) 鈛業權이나 工業所有權도 個別經濟에서는 그 独占的權能을 資産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國民經濟 全体에서 생각하면 資産으로서 国富에 包含할 수 없다. 또한 (3) 現金, 豫金, 받을 어음, 貸付金, 投資資本 등은 國民經濟 的인 立場에서는 서로 相計되므로 国富로서의 資産으로는 볼 수 없다.	즉, 住宅, 家具, 衣類 등을 말한다. 各 經濟主体가 經濟活動을 위한 手段으로 財貨를 取得하려면 資金 또는 資本이 所要된다. 이렇게 볼 때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産이란 各 經濟單位가 經濟活動을 위하여 投下한 資本을 具體化된 形態라고 表明할 수 있을 것이다. 骨董品이나 書畫 등의 藝術品, 天然記念物 또는 其他 文化財가 価値(Value)를 가지고 있음은 틀림없으나 그 価値를 經濟的 価値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除外하게 된다.

(2) 鉱業權이나 工業所有權도 個別經濟에서는 그 独占的 權能을 資産으로 取扱할 수 있으나 國民經濟 全体에서 생각하면 資産으로서 國富에 包含할 수 없다. 또한

(3) 現金, 豫金, 貸入金, 貸付金, 相計되므로 國富로서의 資産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들 無形의 權利關係가 國民經濟 相互間 즉 對外的 關係가 發生한 境遇에는 國民經濟 全体의 資産으로서 國富에 包含시킨다.

셋째로, 國富는 經濟活動에 依하여 投下된 資本의 具體的 形態의 表現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즉 再

단지 이들 無形의 權利 關係가 國民經濟 相互間 즉 對外的 關係가 發生한 경우에는 國民經濟 全体의 資産으로서 國富에 包含시킨다.

셋째로 國富는 經濟活動에 의하여 投下된 資本의 具體的 形態의 表現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즉 再生産 可能的한 것에 한한다. 따라서 自然으로서의 土地나 天然資源은 國富에서 除外된다. 그러나 埋立, 千拓 등에 의한 造成土地와 改良立地는 國富에 包含된다.

以上과 같이 이번 國富統計調査에서의 國富의 概念은 (1) 國民經濟內에 所在하는 經濟活動의 所産으로서 再生産이 可能的 有形資産

오늘날 이와같은 物品도 商品化되고 더우기 그 去來가 企業化됨으로써 交換可能 商品으로서의 財貨의 性格을 多分히 지니고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그와같은 價值는 評價上에서 客觀性을 欠如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價值創造를 위하여 投下된 資本이 國民經濟 全体面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經濟的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産이란 生産活動에 直接關係가 있는 資産과 國民生活을 營爲함에 必要的 財貨라고 要約할 수 있다.

第2回 国富統計調査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の 国富調査
生産 可能한 것에 限한다. 따라서 自然으로서의 土地나 天然資源은 国富에서 除外된다. 그러나 埋立, 干拓等에 의한 造成土地와 改良土地는 国富에 包含된다. 넷째로 国富는 客觀的으로 經濟的인 評價가 可能하여야 하므로 土地나 天然資源은 国富에서 除外된다. 또한 人的 資本도 能力開發을 爲하여 具體的인 資本投資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날 有形固定 資産만큼 重要하게 認識되고 있으나 客觀的인 經濟的 評價가 어려우므로 国富에서 除外된다. 이상과 같이 이번 国富統計	과 (2) 對外純資産으로 限定되며 이 중 有形資産을 經濟關係에 있어서의 機能面에서 分類해 보면 (a) 生産活動과 直接關係 있는 資産 (b) 国民經濟 全体를 뒷받침하는 公 共施設 (c) 国民生活를 維持하는데 必要한 財貨等 3種으로 나눌수 있다.	国民經濟란 概念은 個別經濟와 区分됨을 意味하는데 그것은 個別經濟에서 資産으로 看做되는 것도 国民經濟面에서 볼 때는 資産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個人이 購入 所藏하고 있는 財貨가 모두 国富資産에 包括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国富에 包括될 資産은 그 資産을 取得키 위한 資本投下가 国民經濟面에서의 資本投下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国民經濟란 概念은 또 한가지의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 데 그것은 国富所在의 範圍를 規定한 것으로서 国富에 包括될 資

調査에서의 国富의 概念은,

(1) 国民經濟內에 存在하는 經濟活動의 結果로서 再生産이 가능한 有形資産과 (2) 對外純資産으로 限定되며 이중 有形資産은 經濟關係에 있어서의 機能面에서 分類하여 보면,

(a) 生産活動과 直接關係

있는 資産

(b) 国民經濟全體를 뒷받침

하는 公共施設

(c) 国民生活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財貨等 3 種으로

나눌 수 있다.

産의 所在는 經濟活動의 本拠를 国民經濟內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国富는 國內의 經濟單位가 所有 資産으로 看做하여 国富에 包含시킨다. 즉 無形資産은 對外關係에 限하여 例外로 한다.

以上에서 国富調査를 함에 있어 그에 包括될 資産의 性格 또는 限界를 中心으로 国富의 定義를 考察하여 보았는데 이것을 다시 要約하여 보면 「国富란 國內에 所在하는 再生産 가능한 有形資産의 總額에 對外純債權을 合한 国民資産의 純額」이라고 할 수 있다.

2 . 調 査 目 的

第2回 国富統計調査(案)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의 国富調査
本 調査의 目的은 1977年 12月 31日 現在로 国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富의 存在量을 把握하여 가. 經濟的 国力을 把握하고 国家資力の 國際比較를 行하며 나. 資本蓄積의 程度를 計測하여 그간의 開發成果를 測定하고 다. 国民所得과의 關係를 究明하여 資本係數를 算出하고 라. 国民計定을 補完함으로써 經濟開發計劃 国土建設計劃 等 諸般 經濟施策立案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있다.	本 調査의 目的은 1968年 12월 31日 現在로 国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富의 存在量을 把握함으로써 가. 經濟的 国力의 把握(分布, 構成) 나. 国民所得과의 比較 및 国民計定の 補完(資本係數, 国民貸借 對照表) 다. 資本蓄積의 計測(年次間 比較) 라. 国民資源의 國際比較(1人當 資源) 마. 富의 分配 構成(産業別, 地域別) 等에 關한 基礎資料를 얻	1. 日本(1955年) 1955年 国富調査의 目的은 国民經濟活動의 기초가 되는 国富의 現金額을 調査하여 그 分布 및 構成 등의 實態를 把握함으로써 国家의 經濟構成을 밝히고 經濟政策을 立案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国富를 調査하는 目的은 1) 一定時점에 있어서의 各国 国力의 國際的

특히 本調査는 第5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必要한 資料를 適期에 提供하는데 目的이 있다.

어 經濟開發計劃 國家動員計劃 國土建設計劃 等 經濟施策立案 및 分析의 資料로 利用하는데 있다.

比較

- 2) 一國의 다른 時点間의 國富貯蓄의 程度를 解明하여 經濟的 國力의 成長을 測定하고
- 3) 國富와 國民所得과의 關係를 밝혀 國民資本의 效率 등을 測定하며
- 4) 國富의 構成 및 分布를 밝히는 것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의 國富調査는 從來와 같이 國力의 成長이나 國際比較등을 행한다는 막연한 目的에서가 아니라 特히 國民所得과의 關係를 解明하여 國家의 經濟政策을 立案하기 위한 基礎資料 獲得에 가

第 2 回 国富統計調査(案)	第 1 回 国富統計調査	日本의 国富調査
		장 큰 目的이 있다. 그리하여 調査의 方法에 대해서도 이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다음의 點을 考慮하였다. ① 經濟活動의 成果로 蓄積된 資産에 選定 ② 申告者의 評價→客觀적으로 統一된 評價 ③ 所有者別 經濟部門別 2. 日本(1960 年) 1960 年 国富調査는 國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1960 年末 現在의 国富의 現在額을 調査 推計하여 그 水準 및 構造를 밝힘과 同時에 「1955 年 国

富調査」調査時点以後の
投資実績의 경과를把握하
여 国民所得 計定에 있어
서 Flow의 投資와 Sto-
ck과의 關係를 밝혀 現
在進行中인 国民經濟計算의
整備에 기여 함은 勿論
經濟政策이나 經濟計劃을
立案하기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그 目的이 있
다. 特히 国民經濟計算에
關聯하여 国民所得 計定과
결부된 国民貸借对照表의
作成에는 없어서는 안 될
重要資料가 된다.

3. 日本(1965年)

国民經濟計算 体系整備의
一環으로서 企業部門 資産

第2回 国富統計調査(案)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의 国富調査
		을 調査하여 經濟計劃이 나 經濟政策 等を 위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3. 資 産 の 範 囲

第 2 回 国富統計調査(案)	第 1 回 国富統計調査	日本 の 国富調査
가. 調査対象資産의 範圍 이번 調査에서는 우리나라 住民이 所有하는 再生産 可能한 有形固定資産, 在庫資産, 家計資産 및 造成土地와 对外純資産을 調査対象으로 한다. 따라서 天然土地, 自然林等 天然資源과 無形資産은 除外된다. 調査対象이 되는 有形固定資産은 建物, 構築物, 機械 및 藏置, 船舶, 車輛 및 運搬具, 工具器具 및 備品 建設假定에 計上되어 있는 未完成의 資産, 動物, 植物등이다. 在庫資産은 原料 半製品 및	가. 調査対象 資産의 範圍 이번 調査에서는 우리나라 住民이 所有하는 再生産 可能한 有形固定資産, 在庫資産 家計資産 및 造成土地와 对外純資産을 調査対象으로 한다. 따라서 土地 自然林 等 天然資源과 無形資産은 除外된다. 調査対象이 되는 有形固定資産은 建物, 構築物, 機械 및 藏置, 船舶, 車輛 및 運搬具, 工具, 器構 및 備品, 建設假定에 計上되어 있는 未完成의 資産, 動物, 植物이다. 在庫資産은 原料, 半製品 및	再生産 가능한 有形固定資産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經濟的 意味에 있어서의 資産으로 企業이나 家計等の 各 經濟部門이 生産이나 生計등의 經濟活動을 營爲해 나가기 위한 手段으로서 所有하고 있는 財貨로서 再生産이 可能的한 有形固定資産이다. 例컨데 企業이 事業活動을 進行시키기 위해서 所有하고 있는 建物, 構築物, 機械 및 藏置, 器具등이다. 또 家計에 있어서는 生活을 營爲하기 위한 住宅, 家財등의 資産이다. 但, 經濟活動에 依해 出生된 資産이라 하더라도

第2回 国富統計調査(案)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の 国富調査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 貯藏品 등이며 有価証券은 除外한다. 그리고 防衛目的에 使用되는 資産은 調査対象資産에서 除外한다.	在工品, 完製品 및 商品, 貯藏品 등이며 有価証券은 除外한다. 그리고 国防部 所有資産中 防衛目的에 使用되는 資産은 調査対象資産에서 除外한다.	下記는 除外된다. ① 書画, 骨董品등의 芸術品, 文化財 및 天然記念物 ② 防衛目的에 使用中인 軍艦, 航空機, 兵器 및 直接的인 軍需 施設
나. 資産의 分類	나. 資産의 分類	③ 貴金屬類(但, 營業本來의 目的에 使用되는 것은 除外)
1. 有形固定資産	1. 有形固定資産	④ 立木(但, 果樹防凡林과 같이 設備와 똑 같이 使用하기 위해 造成된 것은 除外)
11. 建物	11. 建物	
12. 構築物	12. 構築物	
13. 機械 및 藏置	13. 機械 및 藏置	
14. 船舶	14. 船舶	
15. 車輛 및 運搬具	15. 車輛 및 運搬具	
16. 工具, 器具 및 備品	16. 工具, 器具 및 備品	
17. 建設假計定	17. 建物假計定	
18. 動物	18. 動物	
19. 植物	19. 植物	

2. 在庫資産

21. 原材料

22. 半製品 및 在工品

23. 完製品 및 商品

24. 貯藏品

3. 家計資産 (別個以外の 것)

4. 造成土地

5. 對外純資産

2. 在庫資産

21. 原材料

22. 半製品 및 在工品

23. 完製品 및 商品

24. 貯藏品

3. 家計資産 (別個以外の 것)

4. 造成土地

5. 對外純資産

4 . 調 査 客 體 및 地 域 의 範 圍

第2回 国富統計調査(案)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의 国富調査
○ 調査의 対象客體는 国内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政府,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 政府關係機關, 法人,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一般家口等이다. 이를 財貨의 所有形式에 依한 所有主體別로 区分하면 다음과 같다. 가.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 국가로 부터 그 存立目的이 賦与된 公法上の 法人 即 地方自治團體가 가지고	○ 調査의 対象客體를 国内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i) 一般政府 ① 中央政府 ②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 ii) 政府企業 iii) 政府管理企業 iv) 法人 v)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vi) 一般家口 vii) 對外 純資産으로 하였다. 国内라 함은 調査基準時點 現在 우리나라 主權이 現實적으로 行使되는 全領域을 말한다.	○ 1955年 調査의 客體로서 政府, 地方公共團體, 公社, 公庫等의 政府關係機關, 法人 其他團體, 個人企業, 一般世帯 및 對外純資産으로 区分한 調査範圍의 規定은 大體로 U.N의 S.N.A에 依함 1960年 調査의 客體로서 政府, 政府關係機關, 地方公共團體, 法人, 個人事業體 等 一般世帯, 對外純資産으로 区分하여 調査한 国内에 居住하고 있는 사람이 所有하는 資産은 資産의

있는 地方財政法上 公有財産 및 物品과 土地改良組合 水産業協同組合 等 公共組合이 所有하는 資産	法人의 境遇 우리나라 法令에 依해 設立되어 國內에 本社, 本部等의 事業活動의 場所의 本格地를 가지고 있는 境遇를 調査對象으로 하였다.	所在를 不問하고 調査對象으로 하였으며 國內에 所在하는 資産이라도 外國居住者의 資産이면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나. 政府企業 다. 政府管理企業 主要政府 出資企業 및 銀行이 所有하는 資産	따라서 法人의 構成員의 全部 또는 大部分이 外國人으로 構成되었더라도 혹은 資本의 全部 또는 大部分이 外國人의 出資에 依해 運營되더라도 國內에 所在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調査對象에 包含시켰다.	1970年 調査의 客體로서 政府 地方公共團體, 公共物, 國營企業, 地方公營企業 法人企業, 個人企業, 家計, 民間非營利團體 및 對外純資産으로 区分 調査하였다.
라. 法人 商法上の 營利法人과 民法 特別法上の 財團法人, 社團法人	이와 反對로 우리나라 國籍을 가진 사람이 設立한 会社라 할지라도 外國法人인 경우에는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調査範圍의 規定에 있어서는 國籍에 關係없이 美商務省의 多數決原則의 方法을 採랐다.
마. 個人企業 및 非法人 團體 個人이 單獨 또는 共同으로 經營하고 있는 個人企業 및 法人格을 갖지 않는 모든 團體	一般家口에 있어서는 國內에 居	즉 所有者의 常住居住地, 業務遂行地 雇傭主의 所住地의 3가지 條件中 2個以上이
바. 一般家口		

第2回 国富統計調査(案)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の国富調査
사. 对外純資産 調査의 対象은 国内에 所在 또는 居住하여야 하는데 国内라 함은 調査基準 時点 現在 우리나라 主權이 現實의으로 行使되고 있는 全領域을 말한다. 居住者 및 非居住者の 区分基準으로서 家計와 政府機關 및 國際機關에 對해서는 UN의 新國民, 計定體系 및 IMF의 國際收支 編制方式을 主軸으로 하고 法人에 對해서는 所有者의 常住居住地, 業務遂行地, 雇傭主의 所在地中 2가지 以上の 條件을 具備할 경우 居	住하는 一般家口는 모두 調査対象에 包含시켰으나 外國의 大使館, 領事館等의 外國官吏나 駐屯外國軍의 家口는 調査 対象에서 除外하였다. 이와는 反對로 大使館, 銀行, 会社等의 海外事務所, 支店等의 資産은 財産目録에 表示 또한 調査対象에 包含시켰다.	国内에 있는 者를 居住者로 規定하여 調査対象으로 하였다.

住者 또는 非居住者로 判斷하는 多数決
原則을 適用하여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

가. 機 關

1) 政府機關

外國에 所在하는 本國의 政府機關(大使
館, 領事館, 軍事施設等)은 治外法權이
주어지므로 居住者로 보며 國內에 所在
하는 外國政府의 公館使節團은 마찬가지로
理由로 非居住者로 본다.

2) 國際機關

國際機關은 常住地與否를 不問하고 非居
住者로 取扱된다.

나. 企 業

1) 外國法人의 國內支店

企業의 경우 - 國內에 所在하는 外國의
營利法人 및 非營利 團體의 支店, 代理
店, 出張所 및 其他 事務所는 居住者로
본다.

第2回 国富統計調査(案)	第1回 国富統計調査	日本の 国富調査
그러나 外國의 本社計定으로 代理行爲를 하는 代理店은 非居住者이다. 2)內國法人의 海外支店 內國法人의 外國에 있는 支店, 支社 出張所 등은 非居住者가 되며, 다만, 國內의 本社計定으로 事務를 遂行할 境遇에는 居住者로 본다. 아. 個人 및 家計 1)外國에 駐在하는 外交公館員, 使節團員 軍人 및 그 家族은 居住者로 본다. 2)外國旅行이나 商業行爲를 目的으로 國內에 1年以上 滯留中인 外國人과 海外에 1年以內 滯留中인 內國人은 居住者로 본다. 3)外國에 있는 事業體(內國法人의 外國支店 및 事務所 現地法人 國際機構包含)에 勤務하는 內國人은 非居住者로 본다. 한편 外國法人의 國內支店等에 勤務하는 外國人은 居住者로 본다. 4)國際機關에 從事하는 國內居住外國人은 居住者로 본다.		

5 . 結 果 의 製 表 및 公 表

二 次 国 富 統 計 調 査 (案)	1 回 国 富 統 計 調 査
가. 製表의 原則 (1) 조사결과 의 製表는 調査目的에 符合되는 동 시에 도모하도록 作成하여야 한다. (2) 基本的인 製表는 每調査客体마다 資産項目別 로 集計하고 調査客体的 屬性에 따라 国富를 構成하는 有形資産 全体에 대하여 所有者別과 經濟部門別로 分類하고, 企業部門은 다시 産業 別로 分類 作成하여야 한다. (3) 有形固定資産評價額은 再調達價格(純国富)로 区分 製表하여야 한다. (4) 産業分類는 韓國標準産業分類의 小分類別로 区分하고, 調査되는 資産은 国富統計調査를 爲한 国富資産分類表上的 小分類까지 집계, 製 表되어야 한다.	(原 則) 1. 調査結果의 製表는 첫째, 調査目的에 부합되어 야 하며, 둘째, 利用者の 편의를 도모 하고, 셋째, 國際比較의 可能度를 높일 수 있도록 作成하여야 한다. 2. 基本的인 製表는 每 調査客体마다 資産項目 別로 集計하고 調査客体的 屬性에 따라 国富를 構成하는 有形資産全体에 대하여 所有者別과 經濟部門別로 分類하고 企業部門은 다시 産業別 로 分類하여야 한다. 3. 有形固定資産은 總国富와 純国富로 区分하여야 한다. 4. 産業分類는 韓國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별로 区 分하고 調査되는 資産은 国富統計調査를 위한

二次国富統計調査(案)

(5) 지역별 분류는 11個市·道까지 파악, 製表되도록 한다.

나. 資産의 部門別 分類

調査되는 資産은 다음과 같이 所有主体別, 經濟部門別, 産業別 및 地域別로 分類된다.

(1) 所有主体別 分類

가)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団体 및 其他 公共団体

나) 政府企業

다) 政府管理企業

라) 法人企業

1) 營利法人

2) 非營利法人

마) 個人企業 및 非法人団体

1) 個人企業

2) 非法人団体

1 回 国富統計調査

国富資産分類表上の 小分類까지 집계 製표되어야 한다.

5. 地域別分類는 道別까지만 把握되도록 한다.

(資産의 部門別 分類)

調査되는 資産은 다음과 같이 所有者別, 經濟部門別, 産業別 및 地域別로 分類된다.

1. 所有主体別分類

(가)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団体 및 기타 公共団体

(나) 政府企業

(다) 政府管理企業

(라) 法人

1) 營利法人

2) 非營利法人

(마) 個人企業 및 非法人団体

1) 個人企業

2) 非法人団体

바) 家計部門

사) 對外純資産

(2) 經濟部門別 分類

가) 政府部門

나) 企業部門

다) 非營利 団体部門

라) 家計部門

(3) 産業別分類

韓國標準産業分類의 小分類別로 分類 製表한다.

(4) 地域別 分類

서울특별시, 부산시 各道別로 製表한다.

다. 集計

本 調査의 集計는 各支部別로 집계한다.

라. 公 表

(1) 本調査結果가 집계되는 즉시 통계위원회의 심의 등 심의과정을 마친후 調査本部에서 결정하는 統一된 体制에 의하여 各支部別로 發刊한다.

(2) 本調査의 綜合結果報告는 1979年末까지 調査本部에서 發刊한다.

(바) 家計部門

(사) 對外純資産

2. 經濟部門別 分類

(가) 公共部門

(나) 企業部門

(다) 非營利部門

(라) 家計部門

3. 産業別分類

한국표준산업분류의 中分類別로 分類 製表한다.

4. 地域別分類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各道 및 國별로 製表한다.

(集計)

本 調査의 集計는 各支部別로 機械集計한다.

(公 表)

1. 本調査結果가 集計되는 즉시 통계위원회의 심의 등 심의과정을 마친후 各 조사기관 支部別로 速報를 發刊한다.

2. 本調査의 綜合結果報告는 統一된 체제로 1979年末까지 發刊한다.

6 . 調 査 事 項

第 2 回 国 富 統 計 調 査 (案)	第 1 回 国 富 統 計 調 査
調査対象客体を 把握하기 爲한 事項과 資産評價額을 求하기 위한 事項으로 하되 다음 事項에 留意하여 各 調査支部 擔當部門의 特性을 살려 調査事項을 設定한다. 1. 製表原則에 依한 類別 및 地域別 資産評價額을 求할 수 있도록 項目을 設定해야 한다. 2. 資産의 評價가 再調達價格과 再取得價格에 依한 評價額이 区分 捕捉될 수 있도록 設計되어야 한다.	調査事項은 첫째, 調査対象客체의 概況을 把握키 위한 事項과, 둘째, 資産再評價額을 求하기 위한 事項으로 大分할 수 있는 바, 各 調査支部 擔當部門의 特殊性을 살려 調査項目을 設定한다. 但, 調査項目을 設定함에 있어 아래의 點을 留意하여야 한다. (1) 本 調査는 最終的으로 類別 資産評價額만을 集計發表하게 되므로 그 評價額을 求할 수 있도록 項目을 設定해야 한다. (2) 資産의 評價額에 있어서는 Gross Base에 依한 Net Bas에 依한 評價額이 各各 区分 捕捉될 수 있도록 設計되어야 한다.

7 . 調 查 方 法

-125-

2 次 国 富 統 計 調 査 (案)	1 次 国 富 統 計 調 査	日 本 の 国 富 調 査
가. 一般的인 調查方法 1) 所有者主義에 依한 方法 原則的으로 調查되는 資産의 所有關係를 基準으로 한 所有者主義의 方法에 의하여 調查한다. 그러나 이 基準에 依한 調查가 調查資産의 經濟的인 寄与 또는 所得創出과 無關한 調查가 되지 않도록 당해 資産을 基礎로 하여 實質的인 經濟活動을 하는 使用者를 基準으로 한 使用者主義가 援用되어야 한다.	가. 一般的인 調查方法 1. 所有者主義方法 2. 全數調查方法 및 標本調查方法並用 3. 自計式記入法과 他計式記入法並用 나. 評價方法 1. 有形固定資産 再取得價格 (取得價格×物価倍率) Gross 再調達價格 = 再取得價格×殘価率 (Net) 但, 殘価率; 定率法	가. 一般的인 調查方法 1. 所有者主義 2. 全數 및 標本調査 3. 自計式 나. 評價方法 1) 有形固定資産 取得價格×物価倍率 = 再取得價格 (Gross Base) 再取得價格×殘価率 = 再調達價格 (Net Base) ※殘価率; 定率法

2 次 国 富 統 計 調 査 (案)			1 次 国 富 統 計 調 査	日本의 国富調査
2) 全数調査 및 標本調査方法 並用			鉱業用資産은 생산고 비례법	
3) 自計式 및 他計式 並用			2. 在庫資産	
4) 既存資料에 依한 間接			1) 各 企業의 評價額	
A. 一般政府			2) 在庫資産의 評價方法은	
B. 政府企業			調査基準時点에서 実施	
C. 政府管理 企業體			한 帳簿價格은 評價額	
D. 法人資産			으로 한다. 그러나 調	
E. 個人企業 및 非 法人團體資産			査時点 現在 在庫調査	
F. 一般家口			를 實施하지 않는 경	
G. 對外純資産			우는	
나. 有形固定資産의 調査方法			① 調査基準時点에서 가	
原則적으로 各資産마다 個別的으로 再調			장 가까운 時点에	
達價格을 算出하도록 調査			행한 在庫調査의 帳	
1) 調査資産의 單位는 物理的으로 把握되			簿價格을	
는 1 個의 財貨가 아니고 그 財貨에			② 실지 在庫調査를 행	
			한적이 없는 在庫는	
			調査基準時点의 帳簿	

對한 投下 時期가 다른 各各의 資本支出을 各
各 1個의 資産으로 생각하여 調査單位로 한다.
즉 同一資産을 同一時期에 多數로 一括 購入했
을때는 하나의 調査單位로 한다.

2) 資産評價方法

再取得價格 = 取得價格 × 物價價率 (Gross Base)

再調達價格 = 再取得價格 × 殘價率 (Net Base)

그러나 取得時期가 不明한 境遇는 全部時價로
評價한다.

다. 在庫資産의 調査方法

在庫資産의 評價方法은 調査基準時点에서 實施한
帳簿價格을 評價額으로 한다. 그러나 調査時点 現
在 在庫調査를 實施하지 않을 境遇는

- 1) 調査基準時点에서 가장 가까운 調査時点이 行
한 在庫調査의 帳簿價格을 評價하고
- 2) 실지 在庫調査를 行한 적이 없는 在庫는 調
査基準時点의 帳簿上 價格을 셈하고

上의 價格을

③ 帳簿가 없는 것은 調
査機關의 客觀的인 基
準에 의거 時價로서
評價

2 次 国 富 統 計 調 査 (案)	1 次 国 富 統 計 調 査	日 本 の 国 富 調 査
3) 帳簿가 없는 것은 調査機關의 客觀的인 基準에 의거 時價로 評價한다. 라. 造成土地 및 人工林. 造成된 土地와 人工林에 對한 調査는 個人資産 제 1 지부 (농수산부)에서 原則的으로 기존 자료를 利用하여 推計하기로 하고 其他, 이에 必要한 資料는 標準調査하여 補完하는 方法을 採択한다.		

10 . 物 価 倍 率 表

第 2 回 国富統計調査(案)	第 1 回 国富統計調査	1970 年 日本의 国富調査
物 価 倍 率 国富資産의 評價는 모든 資産이 同一基準時点으로 評價되어야 하므로 資産의 取得時期와 評價時点間의 物価變動을 調整하여 評價時点을 統一시키는 節次가 必要하다. 이 物価變動調査의 基準이 되는 物価倍率의 作成單位는 可能な 資産種類別로 細分하여 作成하는 것이 要望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国富統計調査에서는 利用 가능한 價格資料와 1968 年 物価倍率과의 連續性を 維持하기	物 価 倍 率 国富評價에 있어서 主要要件中 하나는 物価變動을 勘案시키는 物価倍率에 있다. 即 国富調査에 依한 国富評價는 諸資産이 同一基準時点유로 評價되어야 하므로 資産의 取得時期와 評價時点間의 物価變動을 勘案하여 評價時点으로 統一시키는 節次가 必要하다. 이 修正의 基準이 되는 物価倍率의 作成單位는 資産類別로 細分되어야 하고 同時에 可及的 細分된 個別 物価倍率을 作成하는 것이 要望되고 있다. 그러나 国富統計調査에서	分 類 基 準 가. 「建物 및 建設附屬設備」 「構築物」: 構造種類別 나. 「車輛 및 運搬具」「工具 및 備品」「大動植物」: 品目分類別 다. 機械 및 裝置: 設備分類 및 品目分類別 2. 種 類 「建物 및 建物附屬設備」 「構築物」: 原価倍率 其他: 原則적으로 實態倍率 3. 年度別 部門數 總年度數: 15 個 年度別 部門

第 2 回 国富統計調査(案)	第 1 回 国富統計調査	1970 年 日本의 国富調査
위하여	는 利用可能한 価格資料와 集計能	61,62.....69,70 (10)
(1) 物価倍率表의 部門分類는 国	力等の 制約을 考慮하여	45~54 55~56....59~60 (4)
部統計資産分類와 包括範圍가	(1) 物価倍率의 作成單位는 国部統	1944 年度以前 (1)
一致하도록 하며	計調査資産分類와 符合시킨다.	4. 項目別 部門数
(2) 物価倍率表의 時系列은 1910	(2) 物価倍率의 時系列은 1910 年	○機械및 裝置: { 品目分類 21 部門
年 부터 1977 年까지 毎年	부터 1977 年까지 毎年次別로	設備分類 238 "
次別로 作成하며	作成한다.	○其 他 58 "
(3) 基本部門数는 1968 年 物価	< 参 考 >	建物 16
倍率表의 作成部門인 25 個	分類基準: 構造種類別 品目分類表	附屬設備 9
部門으로 한다.	種 類: 原価倍率	構 築 物 8
	年度別 部門数 59 個 年度	船 舶 3
	(1910 ~ 1968)	車 輦 5
	項目別 部門数: 25 部門	工 具 12
		動 植 物 3
		建設假計定 1
		土 地 1 計 58 部門

11 . 残 価 率 表

2 回 国富統計調査

国富評價에서 말하는 残価率は $(1 - \text{償却率})$ 을 가르킨다.

이번 国富統計調査에서는 定率法에 의한 資産의 耐用年数別 償却
率을 算出한 後 이에 対応한 그 資産의 經過年數에 따라 償却
率을 1에서 控除한 것을 残価率로 한다.

残価의 限度는 資産의 取得時点으로 부터 經過年數가 耐用年數에

도달할 때의 残価率을 10%로 하고

經過年數가 耐用年數의 2倍에 到達할 때의 残価率은 1%로 한다.

< 제 11 차 >

1977. 8. 3

1. 제 10 회 국무통계조사 회의결과를 보고하였음.

2. 종합지침서 (1 차안) 종합검토

가) 자산의 범위

자산분류에서 가계자산 (건물제외) 과 조성토지를 유형고정자산이라는 점에서 유형 고정자산에 포함하고 별첨 1 과 같이 결정하였음.

나) 결과의 제표 및 공표

집계의 부문별 분류에서 자산별 분류, 자산취득년도별 분류, 종업원 규모별 분류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결정하였음.

1) 산업별 분류

자산의 범위에 자산별 분류를 따라 분류 제표한다.

2) 자산취득년도별 분류

취득년도를 1950 년 이전, 1951 - 1961, 1962 - 1966, 1967 - 1971, 1972부터 1977 까지는 매년별로 하여 10 개로 분류하여 제표한다.

3) 종업원 규모별 분류

종업원수를 4 인이하, 5 - 9, 10 - 19, 20 - 49, 50 - 99, 100 - 199, 200 - 299, 300 - 499, 500 인 이상 9 가지로 분류하여 제표한다.

4) 기타분류

기본 분류 이외에 신품, 중고품별 분류, 가구원수별 분류, 자본 규모별 분류등은 필요할 경우 결과표(안) 작성시 반영토록 한다.
다. 조사 객체 및 지역의 범위, 조사사항, 조사방법

1 차안을 검토하여 별첨 2 와 같이 수정하였음.

라. 물가배율

1 차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였음.

1) 기본부문수는 1968 년 물가배율의 작성 부문인 25 개 부문으로 하되 부문별로 세분한다.

기본 부문수

건물 :	9	차량 및 운반구	3
건축물 :	9	기계 및 장치	1
선박 :	2	공구기구 및 비품	1

마. 잔가율

제 1 회 국부통계조사 및 일본의 국부조사의 잔가율을 비교 검토하여 별첨 3 과 같이 결정하였음.

3. 기타사항

용어 개념상 재조달 가격(순국부)을 순자산액(재조달가격)으로, 재취득 가격(총국부)은 총자산액(재취득 가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음.

4. 확대 실무자 회의 개최

가. 일 시 : 1977. 8. 9 14:00 (예정)

나. 장 소 : 조사통제국

다. 안 전 : 1) 제 2 회 국부통제조사 종합지침서(안)

2) 해외연수 계획

3) 공공조합의 범위

5. 제 12 회 국부통제 실무자 회의는 필요시 본부에서 소집하도록 하였음.

첨부 : 1. 자산의 분류

2. 종합지침서(안) 별책부록편 참조

3. 잔가율

자 산 분 류

< 별첨 1 >

제 1 차	제 2 차	日 本
1. 유형 고정 자산	1. 유형 고정 자산	A. 유형 고정 자산
11. 건 물	10. 건 물	1. 건물 및 건물 부속설비
12. 구축물	11. 구축물	2. 구축물
13. 기계 및 장치	12. 기계 및 장치	3. 기계 및 장치
14. 선 박	13. 선 박	4. 선 박
15. 차량 및 운반구	14. 차량 및 운반구	5. 차량 및 운반구
16. 공구, 기구 및 비품	15. 공구, 기구 및 비품	6. 공구 및 기구·비품
17. 건설가계업	16. 건설가계정	7. 대동식물
18. 동 물	17. 대동식물	8. 건설가계정
19. 식 물	18. 가계자산 (건물제외)	9. 토지조성, 개량
2. 재 고 자 산	19. 조성토지	10. 가 재
21. 원재료	2. 재 고 자 산	B. 재 고 자 산
22. 반제품 및 재공품	20. 원재료	1. 상품 또는 제품
23. 완제품 및 상품	21. 반제품 및 재공품	2. 반제품 또는 대공품

제 1 차	제 2 차	日 本
24. 저장품 3 . 가 계 자 산 4 . 조 성 토 지 5 . 대 외 순 자 산	22. 완제품 및 상품 23. 저장품 3 . 대 외 순 자 산	3. 원재료 4. 저장품 5. 불류불능 C. 대 외 순 자 산

殘 價 率

<별첨 3>

제 1 차 국 부 조 사	제 2 차 국 부 조 사	日 本 国 富 調 査
잔가율의 산출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년수별 상각율을 적용, 경과년수별로 잔가율을 산출하였다. 잔가의 한도는 자산의 취득시점으로 부터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에 도달할 때에 잔가율을 10%로 하고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2 배에 도달할때의 잔가율은 1. %로 하였다.	국부평가에서 재조달가액 (순자산액) 을 산출하는데 있어서의 결정요소는 상각방법의 선택여하에 달려있다. 이번 국부조사에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정율법에 의한 내용년수별 상각율을 산출한후 이에 대응한 해당자산의 경과년수에 따라 상각율을 1에서 공제한 것을 잔가율로 한다. 즉 국부평가에서 말하는 잔가율은 (1 - 상각율) 로 정의된다.	1970 년 국부조사에서 사용한 잔가율은 정율법에 의한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1. 잔가율의 계산식 $\text{잔가율} = (1 - d) ^ n$ $d = \text{정율법 상각율}$ $n = \text{경과년수}$ 2. 정율법 상각율의 계산식 내용년수 n년에 도달한 시점의 각 자산의 잔존비율에 대응해서 다음과 같은 정율법상각율을 계산하였다. $\text{정율법상각율} = 1 - A^{\frac{1}{n}}$ $A = \text{잔존비율}$

제 1 차 국 부 조 사	제 2 차 국 부 조 사	日 本 의 国 富 調 査
	잔가의 한도는 자산의 취득 시점으로 부터 경과년수가 내 용년수에 도달한 때의 잔가율 을 10%로 하고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2 배에 도달한때의 잔가율은 1%로 한다.	3. 최종잔존비율 내용년수를 경과한 자산에 있어서는 각자산의 상각율 에 의하여 잔가율까지 평 가. 단, 비농림 수산업의 동 물 에 있어서 최종잔존비율을 50%로 하여 평가.

<제 12 차 >

1977. 8. 11

1. 제 2 회 국부통제조사 종합지침서(안)검토

확대 실무자 회의 (77.8.10) 의 심의사항을 종합검토 정리 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국부의 개념

" 객관적으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 는 항목을 삭제하는 문제가 논의 되었으나 이번 국부 조사시 국부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하여 " 토지와 천연 자원은 국부에서 제외한다 " 만 삭제하고 원안과 같이 결정하였음.

나. 조사 객체 및 지역의 범위

원안과 같이 하되 조사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에서 연구하여 각지부에서 이용 하기로 하였음.

다. 결과의 제표 및 공표

자산 취득년도별 분류에서

취득년도를 " 1950 년이전 , 1951-1961 , 1962-1966 , 1967-1968 , 1969 년부터 1977 년 까지는 매년별로 하여 13 개로 분류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음

라. 기타사항

별첨 종합지침서(안) 수정 내용 참조

2. 제 13 회 실무자 회의 개최

가. 일시 : 1977.8.16 14:00

나. 장소 : 조사통제국

다. 안건 1) 제 2 회 국부통제조사 계획에 따른 문제점 정리

2) 농림수산업부문의 개인 기업 범위 설정

첨부 : 국부통제조사 종합지침서 (안)

1. 国富의 概念

国富를 넓은 意味로 말하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資産의 合計 즉 各 經濟單位(政府, 企業, 家計 等)의 資産 속 에 포함되는 모든 客觀的인 財貨를 現在의 貨幣價值로 評價한 總額에 對外純資産을 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意味의 国富에는

첫째; 經濟活動의 成果인 有形資産(建物 在庫品等)

둘째; 經濟活動에 依하여 생긴 財貨는 아니나 經濟活動을 營爲 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자연물로서의 土地, 埋藏物, 自然林 등의 天然資源

셋째; 對外 純資産 등이 包含된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国富統計調査를 主로 經濟分析의 手段으로 利用하게 됨에 따라 概念 自體의 範圍도 그 幅이 좁혀져 國民經濟的 立場에서 國民經濟의 한 分科로서의 国富를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国富資産을 다음과 같이 限定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国富로서의 資産을 우리나라 國民經濟內에 存在하는 再生産 가능한 有形資産의 總額에 對外 純資産을 合한 國民資産에 限하며 国富資産의 條件을 詳述하면 다음과 같다.

즉 国富資産은

1) 經濟的 意味를 갖는 資産이어야 한다.

經濟的 意味의 資産이란 政府, 企業, 家計 및 非營利團體 등의 經濟主體가 生産이나 家計 등의 經濟活動을 營爲하기

위한 手段으로 가지고 있는 財貨를 말한다. 따라서 經濟財로서 看做하기 힘들고 客觀的 評價가 困難한 藝術品, 文化財書籍等은 除外한다.

2) 國民經濟全體의 立場에서 資本投下가 이루어진 有形資產에 限한다.

그러나 無形資產이라도 對外的인 權利關係는 例外로서 國富에 包含시킨다. 即, 國富로서의 資產은 國民經濟 全體의 立場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 地上權과 같은 用益權은 土地所有者의 權能을 制限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個別 經濟에서는 資產이라 생각되지만 國民經濟上의 資產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 鉅業權이나 工業所有權도 個別經濟에서는 그 独占的 權能을 資產으로 取扱할 수 있으나 國民經濟 全體에서 생각하면 資產으로서 國富에 包含할 수 없다. 또한

다) 現金, 預金, 貸入金, 貸付金, 投資資本等은 國民經濟의인 立場에서는 서로 相計되므로 國富로서의 資產으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들 無形의 權利關係가 國民經濟相互間 즉, 對外的 關係가 發生한 境遇에는 國民經濟全體의 資產으로서 國富에 包含시킨다.

3) 再生産이 可能한 資產이어야 한다.

國富는 經濟活動에 依하여 投下된 資本의 具體的인

形態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즉 再生産 가능한 것에 限한다. 따라서 自然으로서의 土地나 天然資源은 国富에서 除外된다. 그러나 埋立 千拓等에 의한 土地의 造成과 改良部分은 国富에 包含된다.

4) 客觀的으로 經濟的 評價가 가능한 資産이어야 한다. 国富는 客觀的으로 經濟的인 評價가 可能하여야 하므로 人的 資本도 能力開發을 위하여 具體的인 資本投資가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날 有形固定資産만큼 重要하게 認識되고 있으나 客觀的인 經濟的 評價가 어려우므로 国富에서 除外된다.

이상과 같이 이번 国富統計調査에서의 国富의 概念은

- (1) 国民經濟內에 存在하는 經濟活動의 結果로서 再生産이 가능한 有形資産과 (2)對外純資産으로 限定되며. 이중 有形資産을 經濟的인 機能面에서 分類하여 보면
 - (a) 生産活動과 直接 關係있는 資産
 - (b) 国民經濟全體를 뒷받침하는 公共施設
 - (c) 国民生活을 維持하는데 必要的 財貨等 3 種으로 나눌 수 있다.

2. 調査目的

国富調査의 一般的인 目的은 国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富의 存在量을 把握하여

가. 經濟的 国力을 把握하고 國際比較를 行하며
나. 資本蓄積의 程度를 究明하여 資本係數를 算出하고
다. 國民所得과의 關係를 究明하여 資本係數를 算出하고
라. 國民計定을 完成함으로써 經濟開發計劃 國土建設計劃 等
諸般 經濟施策立案에 必要한 基礎資料를 提供하는데 있다.
특히 이번 調査는 國民所得計定에 있어서 Flow와 stock
과의 關係를 밝혀 現在 進行中인 國民經濟計算의 整備에
기여함은 勿論 第5次 經濟開發5 個年計劃에 必要한 資料를
適期에 提供하는데 目的이 있다.

3. 資産의 範圍

가. 調査對象資産의 範圍

이번 調査에서는 再生産 可能한 有形固定資産(家計資産 및
土地의 造成, 改良包含) 在庫資産 對外純資産을 調査對象
으로 한다. 따라서 失然土地, 自然林 등 天然資源과 無形
資産은 除外된다.

調査對象이 되는 有形固定資産은 建物, 構築物 機械 및
裝置, 船舶, 車輛 및 運搬具, 工具, 器具 및 備品 建設假計
定에 計上되어 있는 未完成의 資産 大動 植物 등이며
在庫資産은 原料 半製品 및 在工品 및 商品 貯藏品이다
그리고 防備目的에 사용되는 資産은 調査對象資産에서
除外한다.

나. 資産의 分類

1. 有形固定 資産

10. 建 物

11. 瀾 察 物

12. 機械 및 裝置

13. 船 舶

14. 車輛 및 運搬具

15. 工具, 器具 및 備品

16. 建設假計定

17. 大動植物

18. 家計資産 (建物除外)

19. 土地造成, 改良

2. 在庫資産

20. 原材料

21. 半製品 및 在工品

22. 完製品 및 商品

23. 貯藏品

3. 對外純資産

4. 調査客體 및 地域의 範圍

가. 調査客體의 範圍

調査의 対象客體는 國內에 所在 또는 居住하는 政府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 政府關係機關 法人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一般家口等이다 이를 財貨의 所有形式에
依한 所有主體別로 区分하면 다음과 같다.

1) 一般政府

가) 中央政府

나)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

國家로부터 그 存立目的이 賦與된 公法上の 法人 即
地方自治團體가 가지고 있는 地方財政法上 公有財産
및 物品과 土地改良組合 水産業協同組合이 所有하는
資産

2) 政府企業

3) 政府管理企業

主要政府 出資企業 및 銀行이 所有하는 資産

4) 法人

商法上の 營利法人과 民法 特別法上の 財團法人 社團 法人

5)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個人이 單獨 또는 共同으로 經營하고 있는 個人企業 및
法人格을 갖지 않는 모든 단체

6) 一般家口

7) 對外純資産

나. 調査地域의 範圍

調査의 対象은 國內에 所在 또는 居住하여야 하는데 國內
라함은 調査基準 時点 現在 우리나라 主權이 現實의으로
行使되고 있는 全領域을 말한다.

居住者 및 非居住者の 区分基準으로서 UN의 新國民計定體係 및 INF의 國際收支編制方式를 적용하며 特히 企業에 對해서 는 所有者의 常住居住地, 業務遂行地 고용주의 所在地中 2가지 以上の 條件을 具備할 경우 거주자 또는 比居住者로 판단하는 多數決 原則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 機關

가) 政府機關

外國에 所在하는 本國 政府의 公館 事關 단은 미참가지 理由로 非居住者로 본다.

나) 國際機關

國際機關은 常住地 여부를 不問하고 비거주자로 취급한다.

2) 企業

가) 外國法人의 國內支店

企業의 경우 國內에 所在하는 外國의 營利法人 및 非營利 團體의 支店(社) 대리점, 출장소 및 其他 事務所는 居住者로 본다 그러나 外國의 本社計定으로 代理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나) 內國法人의 海外支店

內國法人의 外國에 있는 支店, 支社,出張所 등을 비거주자가 되며 다만, 國內에 本社計定으로 業務를 수행할 경우에는 居住者로 본다.

3) 個人 및 家計

가) 外國에 주재하는 外交公館員 使節團員 軍人 및 그 家族은

居住者로 본다.

나) 外國旅行이나 상업은행위를 目的으로 國內에 1年以上 체류 중인 外國人과 海外에 1年以內 체류중인 內國人은 거주자로 본다.

다) 國際機關에 從事하는 國內居住 外國人은 居住者로 본다.

5. 結果의 製表 및 公表

가. 製表의 原則

- 1) 조사결과와 製表는 調査目的에 符合되는 동시에 利用者の 편의를 도모하도록 作成하여야 한다.
- 2) 基本的인 製表는 每調査客體마다 資産項目別로 集計하고 調査客體의 屬性에 따라 國富를 構成하는 有形資産 全體에 대하여 所有者別과 經濟部門別로 分類하고 企業部門은 다시 産業別로 分類 作成하여야 한다.
- 3) 有形固定資産評價額은 純資産額(再調達價格)과 總資産額(再取得價格)으로 区分製表하여야 한다.
- 4) 産業分類는 韓國標準産業分類의 小分類別로 区分製表하여야 한다.
- 5) 調査되는 資産은 國富統計調査를 위한 國富資産分類表上의 小分類까지 집계 製表되어야 한다.
- 6) 지역별 분류는 11個 市-道까지 파악 製表되도록 한다.

나. 集計의 部門別 分類

調査되는 資産은 다음과 같이 所有主體別 經濟部門別,

地域別等으로 分類된다.

1) 所有主識別分類

가) 一般政府

① 中央政府

②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

나) 政府企業

다) 政府管理企業

라) 法人企業

① 營利法人

② 非營利法人

마)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

① 個人企業

② 非法人團體

바) 家計部門

사) 對外純資產

2) 經濟部門別分類

가) 政府部門

나) 企業部門

라) 家計部門

3) 産業別分類

韓國標準産業分類의 小分類別로 分類 製表한다

4) 地域別 分類

서울특별시 부산시 各道別로 製表한다.

5) 資産別分類

「資産의 範圍」의 資産別分類에 따라 小分類까지 分類한다.

6) 資産取得年度別 分類

取得年度를 1950年 以前 1951-1961, 1962-1966
1961-1968, 1969년부터 1977년까지는 每年別로하여
13個로 分類한다.

7) 従業員 規模別 分類

従業員 4人以下 5-9,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500人 以上 9가지를 基本分類로 하고
部門別로 細分한다.

8) 其他分類

基本部門 分類以外에 新品, 中古品 別分類, 家口員數別分類
等은 必要한 境遇 結果表(表) 作成時 反映토록 한다.

다. 集計

本 調査의 集計는 各支部別로 集計한다.

라. 公表

- (1) 本 調査結果가 집계되는 즉시 통계위원회의 심의등 심의과정
을 마친후 調査本部에서 결정하는 統一된 體制에 의하여
各支部別로 發刊한다.
- (2) 本 調査의 綜合結果報告書는 1979年末까지 調査本部에서
發刊한다.

6. 調査事項

調査対象客體를 把握하기 위한 事項과 資産評價額을 求하기 위한 事項으로 하되 다음 事項에 留意하여 各 調査支部 擔當部門의 特性을 살려 調査事項을 設定한다.

- 1) 製表原則에 依한 類別 및 地域別 資産評價額을 求할 수 있도록 項目을 設定하여야 한다.
- 2) 資産의 評價가 純資産額(再調達價格)과 總資産額(再取得價格)에 依한 評價額이 区分 捕捉될 수 있도록 設計되어야 한다.
- 3) 土地造成 改良에 관한 調査事項을 各部門別 調査에 包含하여 聚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調査方法

가. 一般的인 調査方法

1) 所有者主義에 依한 方法

原則적으로 調査되는 資産의 所有關係를 基準으로 한 所有者主義의 方法에 의하여 調査한다. 그러나 이 基準에 의한 調査가 調査資産의 經濟的인 寄与 또는 所得創出과 無關한 調査가 되지 않도록 당해 資産을 기초로하여 實質的인 經濟活動을 하는 使用者를 基準으로한 使用者 主義가 並用되어야 한다.

2) 全數調査 및 標本調査方法 並用

3) 自計式 및 他計式 並用

4) 既存資料에 依한 間接推計

1. 一般政府	全 数 調 査	自 計 式
2. 政府企業	"	"
3. 政府管理企業體	"	"
4. 法人資産	全 数 調 査	自計式과 他計式
5. 個人企業및 非法人 團體資産	標 本 調 査	他 計 式
6. 一般家口	"	"
7. 對外純資産	既存統計利用推計	既 存 資 料
8. 土地造成 改良	既存統計利用推計 및 別途 調査	既存資料및 自他 計式

나. 有形固定資産의 調査方法

原則的으로 各資産마다 個別的으로 總資産額(再調達價格을 算出하도록 調査한다.

1) 調査資産의 單位는 物理的으로 把握되는 1個의 財貨가아니고 그 財貨에 對한 投下 時期가 다른 各各의 資本支出을 各各 1個의 資産으로 생각하여 調査單位로 한다.

즉 同一資産을 同一時期에 多數로 一括購入했을 때는 하나의 調査單位로 한다.

2) 資産評價方法

總資産額(再取得價格) = 取得價格 × 物価償率 (Gross Base)

純資産額(再調達價格) = 總資産額 × 残償率 (Net Base)

取得時期와 取得価額中 取得價格을 알 수 없을 境遇에는 總資産額에 經過年數에 따르는 殘価率을 곱하여 구하고 取得時期와 取得價格을 全部 알 수 없을 경우에는 時価로 評價한다 이때 時価로 評價한 分에 對하여는 總資産額과 純資産額에 各各 包含시킨다.

다. 在庫資産의 調査方法

在庫資産의 評價方法은 調査基準時点에서 實施한 帳簿價格을 評價額으로 한다 그러나 調査時点 現在 在庫調査를 實施하지 않을 境遇는

- 1) 調査基準時点에서 가장 가까운 調査時点에 行한 在庫調査의 帳簿價格으로 評價하고
- 2) 실지 在庫調査를 行한 적이 없는 在庫는 調査基準時点의 帳簿上 價格을 셈하고
- 3) 帳簿가 없는 것은 調査機關의 客觀的인 基準에 의거 時価로 評價한다.

라. 土地造成・改良 및 人工林

造成 및 改良된 土地와 人工林에 對한 調査는 個人資産 제 1 지부 (농수산부)에서 原則的으로 기존 자료를 利用하여 推計하기로 하고 其他 이에 必要한 資料는 別途調査하여 補完하는 方法을 採択한다.

土地造成・改良의 評價는 埋立 干拓, 整地 및 土地改良에 所要된 造成費, 改良費에 限하며 土地購入費는 除外된다

3. 調査擔当機關

第2回 国富統計調査는 調査客體의 龍大性과 調査技術上의 諸問題등을 勘案하여 單一機關에서 實施하지 않고 經濟企劃院, 農水産部,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이 다음과 같이 各 部門別로 分擔 調査키로 한다.

調査擔当機關	調査対象部門 및 資産		備 考
	部 門	資 産	
1. 政府 및 對 外資産調 査支部 (韓國銀行)	1. 一般政府 (가)中央政府 (나)地方自治 團體 및 公 共團體	1. 固有資産法 所定의 資産 2. 物品管理法 所定의 資産 1. 地方財政法上 公有財産 2. 地方財政法上 物品 3. 公共團體 가, 所有하는 資産	(公共團體) 1. 大韓山林組合 2. 土地改良組合 3. 中小企業協同組合 4. 輸出組合 5. 建設共濟組合 6. 韓國海運組合 7. 農業協同組合 8. 水産業協同組合 9. 葉煙草生産組合 10. 醫療保險組合 11. 塩業組合 12. 人蔘組合 13. 大韓商工會議所 14. 韓國馬事會
	2. 政府企業		
	3. 社会間接資 本	1. 道 路	

調査担当機関	調査対象部門と資産		備考
	部 門	資 産	
	4. 対外純資産	2. 河 川 3. 港 湾 4. 其他의 社会 間接資本	15. 辯護士会 16. 在郷軍人会 17. 韓国反共聯盟 18. 軍事援護対象 者團體 19. 大韓赤十字社 20. 大韓教育聯 合会 21. 유네스코韓國 委員會 22. 建築士協會 23. 大韓建設協會 24. 測量協會 25. 韓國船主協會 26. 大韓觀光協會 中央会 27. 文化 聯合会 28. 辯理士会 29. 公認會計士会

調査擔当機關	調査対象部門및資産		備 考
	部 門	資 産	
		1. 商法上の營 利法人이 保 有하고 있는 資産 2. 民法, 其他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 財団, 其他 法 人및 組合등의 非營利法人이 保有하고 있는 資産	1. 모든 政府管理 企業體가 所有하 고 있는 資産을 包含한다. 2. 政府및 對外資 産支部의 公共団 體資産은 除外 한다.
3. 個人企業資 産調査支部 (農水産部) (中小企業銀 行) (國民銀行)	1. 個人企業	1. 個人이 단독 또는 共同으로 經營하고 있 는 個人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資産	○第1支部(農水産 部) 1. 個人企業中 1) 農業, 狩獵業 林業 및 漁業 2) 保管및倉庫業 2. 土地造成 및 改良人工林

調査擔当機関	調査対象部門 및 資産		備考
	部 門	資 産	
			○ 第 2 支 部 (中 小企業銀行) 1. 個人企業中 1) 鉱 業 2) 製造業 3) 電氣가 스 및 水道事業 4. 建築業 5. 都小売 및 음식숙박업 ○ 第 3 支 部 (国民 銀行) 1. 個人企業中 1) 通輸通信業 2) 金融 不動産 및 用役業 ○ 韓国標準産業分 類上의 11) 農業및 畜 업

調査擔当機関	調査対象部門 및 資産		備考
	部 門	資 産	
			12) 林業 13) 漁業에 있어서 는 규모로 보아 企業性을 띤 業體가 所有하 는 資産만을 調査한다.
	2. 非法人團體	2. 法人格을 갖 지 않는 모든 團體가 保有하 고 있는 資産	
4. 家計資産 調査支部 (經濟企劃院)	1. 一般家口	1. 一般家口(農 家 非農家)가 保有하고 있는 資産	1. 家口가 保有하고 있는 資産中 建物과 耐用年數 1年以上의 耐 久材만을 調査對 象으로 한다.

10. 物価倍率表

国富資産의 評價는 모든 資産이 同一基準時点으로 評價되어야 하므로 資産의 取得時期와 評價時点間의 物価變動을 調整하여 評價時点을 統一시키는 節次가 必要하다.

이 物価變動調整의 基準이 되는 物価倍率의 作成單位는 可能的한 資産種類別로 細分하여 作成하는 것이 要望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国富統計調査에서는 利用可能的한 価格資料와 1968年 物価倍率과의 連續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 (1) 物価倍率表의 部門分類는 国富統計資産分類와 包括範圍가 一致하도록 하며
- (2) 物価倍率表의 時系列은 1910년부터 1977년까지 每年次別로 作成하며
- (3) 基本部門數인 1968年 物価倍率表의 作成部門인 25個 部門으로 하되 部門別로 細分한다.

基本部門數

建 物	9	車輛 및 通搬具	3
構築物	9	機械 및 裝置	1
船 舶	9	工具器具 및 備品	1

11. 残 価 率 表

国富評價에서 純資産額(純国富)을 算出하는데 있어서의 決定要素는 償却方法의 選択如何에 달려 있다.

이번 国富調査에서는 法人稅法施行規則 別表의 定率表에 依한 耐用年數別 償却率을 算出한 後 이에 対応한 것을 残価率로 한다.

즉 国富評價에서 말하는 残価率은 $(1 - \text{償価率})$ 로 定義된다.

残価의 限度는 資産의 取得時點으로부터 經過年數가 耐用年數에 到達한 때의 残価率을 10%로 하고 經過年數가 耐用年數의 2 倍에 到達한 해의 残価率은 1%로 한다.

<제 13 차>

1977. 8. 16

1. 제 2 회 국부통제조사를 위한 연구사항 종합

제 2 회 국부통제조사 지침서 작성과 각 지부별 조사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연구과제를 정리(별첨 참조)하여 앞으로 본 실무자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함과 동시에 해외 연수시 동 과제별 검토가 될수 있도록 하였음.

2. 가계와 농림어업 개인 사업체 구분 기준 검토

가. 가계자산 부문과 개인 기업자산 부문간의 조사대상 범위설정의 원칙은 관제기관에서 작성하는 최근 통제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로 하였음.

나.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구분은 77년도 가축통제조사결과에 의거 가계자산조사 지부에서 검토한 후 본 회의의 심의를 거치기로 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관제자료를 농수산부에서 수집하여 협의토록 하였음.

3. 78년도 예산 심의

가. 예산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각 조사지부별로 78년도 사업내역을 설명 하였으면 요구 예산에 대한 조정작업을 추진하였음.

나. 최종 예산 조정작업은 조사본부에서 예산 당국과의 협의하에 수행하기로 하였음.

4. 제 14 회 실무자 회의

차기 회의는 조사본부 또는 각조사지부의 필요시 개최하기로 하였음.

첨 부 : 제 2 회 국부통제조사를 위한 연구 사항

제 2 회 국부통제조사를 위한 연구사항

1. 자산의 범위와 분류방법

가. 유형고정자산중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 및 주된 이유

(예 : 골동품, 서적, 전비품, 지하자원, 귀금속류, 토지, 입목등)

1) 특히 서적, 귀금속류를 가계자산으로만 파악하는 이유

2) 가계가 가지고 있는 대동식물 제외 이유

나. 이동행상의 지역별 분류방법

다. 현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분류된 자산분류로서는 자산분류항목이 부족함. 따라서 일본의 경우 기본법령의 자산분류를 이용한 방법 및 그 원칙

라. 가계자산의 경우 자산분류를 건물(주택) 및 가계재산으로만 구분하는 이유와 대지의 조성, 개량비를 파악하지 않는 이유

마. 사업체와 가계자산의 분리기준과 내직(가계에 포함된 개인기업)의 처리문제

2. 조사객체 및 지역의 범위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정의에 따른 다수 결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조사시 나타나는 제문제점 처리방법

(기업의 경우 회계처리상 구분과의 관계)

나. 대외 순자산의 처리방법과 조사상의 문제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과 대외순자산평가 범위와의 관계)

3. 결과의 제표 및 공표

가. 자산의 취득년도별 분류방법과 문제점

나. 기본부문분류이외에 신품 중고품분류, 가구원수별분류등 집계작성시 나타나는 문제점과 처리방법

다. 일본의 경우 가계부문자산중 주택 및 자동차에서 기계용이의에 사업용과 공용도 조사하였는데 이에 분류 및 집계방법

라. 가계자산에서 지정조사품목이외에 추가가입란의 품목에 대한 조사기준 및 집계처리 방법

마. 임차자산 평가액의 결과표 반영방법

4. 조사방법

가. 소유자주의와 사용자주의를 병용하였는데 조사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처리문제

나. 가계내구재를 조사할때 조사품목선정 기준 및 기업조사 대상품목과 일치시켜 조사하는지 여부

다. 기업체 조사시 동기업체내의 사업체별(업종별)로 Stock를 조사하는지 여부. 만약 조사한다면 사업체별 분류를 위하여 이용자료를 별도조사 하는지 여부

라. 반내구재조사는 의의, 침구, 장신구, 식기, 주방용품, 교양, 오락가정용 잡품의 4개 종류로 구분하여 1개조사구를 4군으로 나누어 각각 이중 1개 종류만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구의 분할방법 및 추계방법

마. 도소매업의 경우 수많은 종류의 재고품에 대한 조사문제

바. 표본설계 및 추출의 구체적인 방법

사. 주택의 부지면적을 조사하는 이유와 조사방법 및 집계방법

5. 평 가 방 법

가. 사회간접자본을 여타 유형고정자산과 상이한 평가방법을 이용
하는지의 여부

나. P.I 법을 이용한 평가방법에 원시취득가액의 불명시 보완방법

다. P.I 법에서 매년 투하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물가변동의
적용방법

라. P.I 법에 의한 Gross 평가액 Net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

마. 건물의 증·개축등 자본적 지출의 조사방법 및 평가제표 방법

바. 가계부문조사의 경우 연간수입액조사 목적과 세대수환산방법
(일본의 경우)을 다음과 같이 한 이유

$$\text{환산세대수} = \text{보통가구} + \frac{\text{준세대인원}}{3}$$

6. 국부통계의 이용

가. 국부에서 flow 로서의 투자와 Stock 와의 관계분석 방법

나. 국부통계를 GNP 추계 (특히 New S N A) 등 제국민계정과
연관분석방법

다. 소유자주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결과로 자본계수 산출 가능
성여부 (가능하면 자료의 조정방법과 제상방법)

7. 물 가 배 율

가. 물가배율의 일종인 실태배율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방법

나. 원가배율과 실태배율의 지수차이 및 그 조정방법

다. 자산종류에 따른 부분적인 실패배율 적용뿐 아니라 최 근년
치는 실패배율, 과거년치는 원가배율로 하는 혼합지수작성 가
능여부

라. 원가배율 작성시 부문별 구성항목명칭 및 구성비 산출방법

마. 물가배율 작성시 이용한 가격자료명과 각 지표간의 시계열
연결방법

바. 기체 및 장치의 작품목분류와 각설비분류의 기준 및 내용

사. 수개년을 통합해서 단일물가 배율을 산출할 경우의 물가배율
통합방법

아. 물가배율지수에 대한 타당성 검증방법

8. 잔 가 율

가. 내용년수와 일치하거나 초과하여 존재하는 자산의 잔가율 책
정방법과 그 이론적 근거

나. 잔존비율과 잔가율의 차이점

$$\text{잔가율} = (1 - d)^n$$

$$\text{상각율} = 1 - A^{\frac{1}{n}} \quad A = \text{잔존비율}$$

다. 일본의 경우 비농림수산업의 동물에 있어서는 최종잔존비율을
50%로 하여 평가하는데 그 이유

라. 잔가율 작성에 있어서 자산재형시가와 1960년대 이전의 결 과
년수와 잔가율을 달리 적용하였을 뿐아니라 2개년도 간에
평균한 결 과 년수를 적용하였는데 그 이유와 적용방법

마. 내용년수와 감가상각율은 각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대로 이용
하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책점 평가하는지 여부

바. 일본의 경우 잔가의 한도가 자산의 취득시점으로부터 결과년
수가 내용년수에 도달한 때의 잔가율을 10%로 하고 결과
년수가 내용년수의 2배에 도달한 때의 잔가율을 1%로 한
다고 했으나 그 기준과 자본적 지출의 반영여부 및 그
방법

<제 14차>

1977. 9. 15

1. 본 국부통계와 자본계수 산출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는 자본계수 산출을 위하여 I-O 표의 부문분류와 직접연결이 가능토록 하거나 별도의 생산액 조사가 병행되어야 함.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77.9.25 까지 수립하여 종합하기로 하였음.

가. 생산액 자료로 I-O 표상의 생산액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국부통계의 부문분류와 I-O의 부문분류를 연결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한국은행에서 연구함.

나. I-O 표상의 생산액을 이용하기 곤란할 경우 별도의 생산액 조사가 필요한 바 본 국부통계조사에 첨부하여 조사하는 방안과 별도의 표본조사(78년도 생산액을 79년도에 조사)를 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은행에서 연구함.

2. 해외 출장을 위한 자료정리

각 조사담당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일본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에서 영문과 국문으로 정리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음.

3. 조사표류, 조사요령서, 결과표 1차시안

각 조사부문별 조사표류, 조사요령서, 결과표 1차시안은 각 기관별로 작성하였으나 부분적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각 기관별로 각 시안을 교환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음.

4. 농림어업부문의 개인기업범위 설정

농수산부에서 담당하는 개인기업중 농림어업부문과 당국에서 담당하는 가계부문의 구분 기준설정을 논의 하였던 바,
가. 농가, 어가의 농업, 어업경영부문은 개인기업부문에 포함되어야 함. (일본의 경우 동일)

나. 그러나 소규모 농어가의 농업, 어업 경영부문은 기제부문에서 파악하여 개인기업부문에 포함토록 함.

다. 따라서 농업, 어업경영 규모(사육가축수별, 과수원 규모별 등)에 따라 가계부문에서 조사할 범위(표본설제상 최소총화 단위)를 당국 물가통제과(가계자산조사자부)에서 설정하여 차기회의에서 조정하기로 하였음.

5. 기타사항

가. 한국은행에서 정부부문 시험조사(77.10.20경)시 각 정부기관(약 100기관)에 당국에서 협조요청하여 줄 것을 건의

나. 미국 및 일본 지역의 해외출장에 이어 금융기관(4개기관)의 잔여 해외여비로 구주지역에 출장하여 제2회 국부통제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이론 및 방법론의 습득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 하였음.

6. 제 15 차 국부통제실무자 회의

가. 일 시 : 1977.9.20 10:00

나. 장 소 : 조사통제국

다. 안 건 : 각 부문별 조사표류, 조사요령서, 결과표시안을 상호 교환검토 보완.

<제 15차>

1977. 9. 20

1. 해외출장을 위한 자료종합

각 조사담당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일본 및 미국별로 종합(별첨)하였음.

(9.22 중 정리제출예정)

2. 농림 어업부문의 개인기업범위 설정

가. 농림어업부문의 개인기업은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가구단위까지를 기업으로 간주함(일본의 경우 동일)

나. 제1회 조사시에는 당국에서 가계부문을 담당하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자산을 조사하는 바 소규모 농어가의 농림어업용자산을 첨부하여 농림어업 부문의 개인기업 결과에 포함하였음

다. 제2회 조사시에는 농림어업 부문의 개인기업자산조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였음.

(제1안)

규모가 큰 농림어업 사업체(약 5천개 사업체)의 경우는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사업체(농어가 포함)의 경우는 농가 및 어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출한 농가경제조사의 표본(225 조사구, 3,375 가구)과 어가경제조사의 표본(50 조사구, 520 가구)을 중심으로 표본조사하여 전수추정함. (농수산부에서 전담)

(제2안)

① 농림 어업사업체의 규모별 최소총화 단위에 속하는 사업체(주로 농어가)의 경우에는 당국의 기체부문조사에 첨부하여 조사함.

② 가계부문조사에서 담당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대하여 농수산부에서 별도 표본 또는 전수조사하여 전수추정함.

(당국과 농수산부에서 분담)

(제 3 안)

제 1 안 및 제 2 안 각각의 경우 동식물 및 주요기계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존자료에 의거 간접추계하는 방법을 병행함.

(결 론)

개인기업 부문중 농림어업 사업체의 자산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부에서 전담하는 제 1 안을 택하고 제 3 안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산업소분류별, 지역별, 자산분류별 등으로 조사결과의 세분, 표본규모의 재조정과 같은 문제가 내재되었을 것으로 보아 농수산부와 당국 물가통제과에서 별도 연구토록 하여 차기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조정토록 하였음.

3. 부문별 조사표류, 조사요령서, 결과표 1차시안의 교환검토

각 지부에서 작성하여 상호교환한 조사표류, 조사요령서, 결과표 1차시안을 각 지부별로 검토하여 해당부문의 보완은 물론 관계지부의 안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을 매회의시마다 발표, 토의하여 전체의 방법체제를 보완하기로 하였음.

4. 제 16 차 국부통계 실무자 회의

가. 일 시 : 1977. 9.23 10:00

나. 장 소 : 조사통제국

다. 안 건 : 1) 농림어업부문의 개인기업자산조사 방안확정

2) 부문별 조사표류, 조사요령서, 결과표 1차시안의
상호교환 검토사항 조정

첨 부 : 해외출장을 위한 자료

< 별첨 >

PROBLEMS FOR MEASURING THE NATIONAL WEALTH

1. Recent trends of the national wealth survey in Japan.
2. Uses of the National wealth survey.
3. 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wealth and national account.
4. Problems of estimate investigation in the national wealth survey
5. Survey method
 - 1) Method of population confirmation
 - 2) Method and contents of sectional sample design
 - 3) Method of population confirmation in non-corporation institution (religious associations, old boys' associations etc)
 - 4) The application results and problems of self enumeration method in private enterprises and households survey
 - 5) Table estimate method by perpetual inventory method in public facilities and materials available
 - 6) Survey method of social overhead capital and materials available
 - 7) Survey method of net foreign claim and materials available
 - 8) Estimate method of artificial forests and materials available

6. Definition and scope of survey assets

- 1) Definition of land manufacture and improvement
- 2) Definition of animals and plants
- 3) Scope of assets for defense object
- 4) Classification standard of assets which are excluded from survey objects in reproduceable tangible assets
 - * Precious metals, books, antiques etc.
- 5) Scope of social overhead capital in survey objects
- 6) Scope of harbour facilities in survey object

7. Evaluation of assets

- 1) Calculation method of average prices in lease assets evaluation
- 2) Evaluation method of gross and net assets when acquired price and time is uncertain
- 3) Evaluation method of land formation and improvement
- 4) Evaluation method of animals and plants
- 5) Application method of sectional use ration

8. Classification of collective articles

- 1) Collectioning and handling method of survey results for lent and borrowed assets
- 2) Assets classification object by acquisition year

- 3) Classification standard in 9 blocks
 - 4) Object of confirming of average expected life time of use and average year elapsed
 - 5) Classification and collection method of new and second hand assets
9. Formation method of attached table for national wealth survey
- 1) Assets classification table
 - 2) Table of the residual cost ratio
 - 3) Table of price ratio
10. Design content of the questionnaires
11. Others
- 1) Statistical survey structure and organization in Japan
 - 2) The realities of statistical examiner
 - 3) Statistical structure and organization for national wealth survey
 - 4) Characteristics of 1960, 1965, 1970, 1975 national wealth survey in Japan
 - 5) Application scope of E.D.P System for statistical research
 - 6) Outline of Japanese enterprises research

- 7) Special measures to get positive co-operation by people in statistical research.

* Necessary materials

1. Materials of 1970 national wealth survey
 - 1) Synthetic report and sectional report
 - 2) Questionnaires
 - 3) Survey guide
 - 4) Handbook and teaching materials for examiner
 - 5) Attached statistical table
 - 6) Other attached materials
2. Survey report of Japanese enterprises

Problems For Measuring The National Wealth

1. The method of computing "direct price indexes" and its extent of application
(実態倍率의 算出方法과 2 通用範圍)
2. The method of adjusting the different results between "Direct price indexes" and "cost indexes"
(実態倍率과 原価倍率 結果表의 調整方法)
3. The method of integrating price indexes of several year in order to compute a single standard price index
(单一標準指數算出을 爲한 數個年度의 價格指數統合 方法)
4.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direct price indexes" in recent years with "cost indexes" in past years
5. The kinds of tangible assets excluded from the national wealth survey and the main reasons to be excluded
6. The method of estimating assets on the occasion of not knowing the aquisition costs
(取得價格을 모를 경우의 資産評價問題)
7. The problem of adjusting price changes in past years for annual capital expenditures in using P.I. method
8. The problem of computing net capital stock from gorss capital stock in using P.I. method
9. The difference on the coverage of assets by service life and by price between government sector and business sector
耐用年數別 價格別 資産範圍의
(especially for tools and furniture)
(政府部門과 企業部門의 差異)
10. The procedure of P.I. method used in estimating social overhead capital at 1970 national wealth survey in Japan.

가. 인구분야

1. 국부의 범위와 이용

- 1) 천연자원의 조사범위와 토지를 포함할 경우의 조사방법
- 2) 국내외 영주자의 소유자산
- 3) 장기 휴업체의 자산
- 4) 국민대 차대조표와 국부자료의 국민소득 제정에 대한관계

2. 자산평가

- 1) 국부의 조사시와 추계시 장단점
- 2) P, I. 법의 구체적 내용
- 3) 공용자산의 분류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산정
- 4) 토지평가 방법
- 5) 제평가 방법의 장단점

3. 표본설계와 추정

- 1) 모집단 미확정시의 적절한 표본설계 방안
- 2) 표본설계 과정

나. 기 타

- 1) 국부조사의 체계와 진행과정
- 2) 미국 국부추정의 연혁

A. Studing Issues

1. Scope and Uses of Wealth Data

- 1) The survey scope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survey method in occasion of containing the land
- 2) The owned assets of the permanent residents at home and abroad
- 3) The assets of the firms not operating for the long period
- 4)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Balance Sheet and Wealth Estimates to National Income Accounts

2. Appraisal of Assets

- 1) Merits and demerits of censuses and estimates in rational wealth survey
- 2) Contents of "Perpetual Inventory Method" in detail
- 3) Classification of common - used assets and Estimation of the "lengths-of-life" of fixed assets
- 4) Valuation method of land
- 5) Merits and demerits of various valuation methods

3. Sample design and Estimation

- 1) The appropriate procedures for sample design when the population is not confined

2) The proceedings of sample design

B. Others

1) Estimating agency system and process of the wealth
survey

2) Historical Estimates of Wealth in the United
States

國富統計調査上の 諸問題

1. 大部分의 경우 國富調査는 所有者主義 原則에 따라 實地 調査가 行하여짐으로써 資本係數의 算出等 實際 資料 利用上에 問題가 發生할 터인데 이경우, 이들 資料를 如何히 調整하고 있는지 그 具體的인 方法 및 그 實例는
2. 現 國富調査의 新SNA와의 整合性提高를 위한 具體的인 方案
3. 取得原価法에 의해서 國富資産을 評價함으로써 發生하는 諸誤差를 減少시키기 위한 方案
4. 資産의 取得時点으로부터의 經過年數가 耐用年數에 達한 때의 殘価率을 10%로 하고 經過年數가 耐用年數의 2倍에 達한 때의 殘価率을 1%로 定하는 理論的根拠 및 그 妥當性
5. 國富統計調査를 위하여 別途의 資産分類를 作成하는지, 만일 別途로 作成한다면 稅法上의 資産分類와는 어떠한 關係가 있는지
6. 國富統計調査를 위한 資産種類別 耐用年數와 稅法上의 資産種類別 耐用年數의 一致 如否
7. 土地의 改良, 造成의 定義 및 調査 또는 推定方法
8. 市場性을 갖는 書畵 또는 骨董品등을 國富의 調査對象資産에 包含시키는지
9. 國富 Census 間隔年度에 있어서의 諸推計方法
10. Penpetual Inventory Method의 具體的 方法 (數式等)
11. 國富의 對象資産으로서 貴金屬類의 除外如否, 特히 家計資産의 경우

12. 經濟單位에 따라 調査對象資産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 例컨
대 法人資産에는 包含되나 家計資産에는 包含되지 않는 資産이
있는지
13. 所有資産과 使用資産의 併行 調査如否
14. 日本의 경우 物価倍率表 및 残価率表 作成에 있어서 取得年度
가 10年以上된 (즉 60年以前) 경우 2個年 平均概念을 導入한
理由는
15. 国富統計調査 結果値의 活用範圍 및 그 例示
16. Complete Survey 結果와 Sample Survey 結果의 total error
의 크기의 比較 例(調査單位別)
17. PES를 반드시 實施하는지, 이 경우 Sampling Method 및 誤
差의 測定方法

<제 16 차 >

1977. 9. 23 10:15-17:35

1. 농림어업부문의 개인기업 자산조사 방법확정

가. 농림어업부문의 개인기업 자산조사는 농수산부에서 전담토록 하며 규모가 큰 농림어업 사업체의 경우는 접수 조사하고, 소규모 사업체(농어가 포함)의 경우는 농가 및 어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추출한 농가경제조사와 표본과 어가경제조사의 표본을 중심으로 표본조사하여 전수추정하기로 하였음.

나. 동산물 및 주요기계기구에 관한 사항은 기존자료에 의거 간접추계하고 실시항목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병행하도록 하였음.
다. 따라서 당국에서 담당하는 가계부문 조사에서는 순수한 가계 자산조사만 담당하기로 하였음.

2. 조사담당부문의 일부조정

제 2 차책임자회의(77.6.29)에서 결정한 제 2 회 국부통제조사 계획 및 제 3 차책임자회의(77.8.31)에서 결정한 제 2 회 국부통제조사 종합지침서의 조사담당기관별 업무분담중 농수산부에서 담당하기로 한 개인기업중 창고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은행에서 담당하기로 하였음.

가. 창고업은 산업분류상 대분류 7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 속하므로 운수 통신업과 함께 단일기관에서 조사 제표하는 것이 효과적임.

나. 보관창고업을 농수산부에서 담당토록한 것은 우리나라의 보관창고업이 주로 농수산물의 보관이라는 점에서 업무 분장하였으나 농수산물 보관창고업은 주로 농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사

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개인기업의 보관창고업 사업체는 주로 비농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농수산물부와 관련이 적음.
다. 따라서 운수업 및 통신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은행에서 대분류 7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3. 가계부문 조사표 1 차시안 검토

가. 가구자산을 시가로만 파악할 경우 조사원과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될 우려가 크므로 가계자산에 대한 평균내용년수와 평균가격을 별도로 산출 적용하는 방법(일본 1970년 국부조사시 채택방법)을 연구토록 하였음.

나. 최초의 시험조사(10월 중순예정)에서 시가 접근방법과 평균가격 적용방법을 검토 비교하여 평가방법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4. 제 17 차 국부통계실무자 회의

가. 일 시 : 1977.9.29 10:00

나. 장 소 : 조사통계국 회의실

다. 안 전 : 정부 및 개인기업부문 세부조사 계획 1 차시안 검토

< 제 17 차 >

1977.9.29

1. 第 16 차 국부통계조사 실무자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음.

2. 자본계수 산출을 위한 업종별 생산액 작성방법

가. 자본계수 산출을 위한 업종별 생산액 작성방법으로 국부통계조사에 첨부 조사하는 방법과 별도조사로 실시하는 방법 및 I-O 표에 이용된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바 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국부통계조사에 첨부조사할 경우 조사업무상 6년간의 총생산액 또는 총매출액과 같이 한개의 조사항목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자료의 신빙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함

2) 별도 조사방법의 경우는 국부통계결과가 작성된 후 분석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별도 표본조사하여야 함.

본 방법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별도조사도 하나의 대규모조사가 불가피하므로 경제성이 적음.

3) I-O 표에 이용된 생산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부통계조사의 산업소분류와 I-O 표의 부문분류의 연결(산업소분류의 일부 조정으로 가능)로 가능함. 또한 한국은행에서

I-O 표를 위한 부문별투입, 산출액조사를 78년말 기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료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음.

4) 따라서 자본계수산출을 위한 업종별 생산액자료는 I-O 표에 이용된 생산액 자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음.

나. 자본계수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자본 및 산출액의 산정, 부문분류의 조정, 자본계수의 계산 방법 및 이용방법등)을

한국은행에서 별도 연구보고서로 작성하여 77.10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였음.

3.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1차시안의 검토

개인기업부문 조사표 1차시안(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소관)을 검토하였던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시가의 파악

- 1) 유형고정자산의 순자산액 파악방법은 ①취득시기, 취득가격을 조사하여 물가배율과 잔가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②시가를 조사하여 직접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 2) 종합지침서의 경우에는 취득시기의 취득가격을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두항목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시가조사토록 하였음.
- 3) 법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장부에 따라 자산별 취득시기 및 취득가격이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으나 개인기업의 경우는 주로 기억에 의존하여야 하므로 제1회 조사시에는 시가에 의존하였음.
- 4) 제2회 조사시에는 시기파악이 조사원의 자의에 크게 의존하므로 개인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가를 지양하고 물가배율 및 잔가율에 의거 평가하는 방법을 지향할 예정이므로 시험조사시 자산별 취득시기 및 취득가격조사에 중점을 두도록 함.
- 5) 그러나 최초의 시험조사에서는 시가의 병행조사도 함께 시도하여 양조사방법상의 차이와 본조사에서 시가조사방법의 병용의 가능성을 파악하기로 하였음.

나. 대여자산과 임차자산의 파악

- 1) 본 조사는 소유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자주의를 원용하고 있으므로 자본계수의 산출을 위하여 소유자산을 조사하고 동 자산에 대한 사용자자산과 대여자산을 파악하여야 함.
 - 2) 대여자산의 경우 대여받은 사업자에 대한 부문별, 산업별, 지역별 등의 분류로 집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소유자가 대여받은 사업자에 대한 각종 항목의 파악이 곤란할 경우 누락이나 중복의 염려가 있으며 집계시 부문별로 타부문까지 전분류에 걸쳐 집계하여 종합하여야 하는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음.
 - 3) 또한 위 나)항의 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체별 임차 사용자산을 별도로 조사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 경우는 소유자주의 및 사용자주의를 혼용하게 되며 임차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격의 완전한 파악이 곤란할 것임(일본의 경우 이 방법을 택하고 있음)
 - 4) 따라서 제 1차 시험조사의 경우에는 대여자산과 임차자산의 파악을 병행하여 조사상의 문제점을 종합검토하기로 하였음.
- 다. 업종별 자본계수산출을 위하여 조사단위를 사업체로 하되 2종이상의 업종에 해당할 경우 생산액 또는 판매액에 따라 그 사업체의 유형고정자산을 업종별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라. 토지조성 및 토지개발비에 관한 조사항목은 일본의 70년도 조사에 준하여야 하므로 차후개념 및 조사방법이

결정된 후 별도 시험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음.

마.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함께 사용되는 자산에 있어서는 건물만
사용비율에 따라 파악하도록 하고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주
사용처로 파악하기로 하였음.

바. 시험조사결과 분석시 참고용 조사항목은 본 조사의 말미에
수록하도록 하였음.

4. 주의사항

가. 본회의에서 검토하지 못한 정부부문, 법인부문의 1차시안은
차기회의(77.10.5 예정)에서 다루기로 하였으며

나. 확대실무자회의(77.10.10 예정) 및 책임자회의(77.10.12 예
정)의 안건으로 다음사항을 상정하기로 하였음,

1) 제2회 국부통계조사 담당부문의 일부조정

2) 자본계수 산출을 위한 업종별 생산액 작성방법에 관한 연
구 중간보고

3)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1차시안의 검토결과

< 제 18 차 >

1977. 10. 5

1. 제 17 차 국부통제조사 실무자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음.

2. 부문별조사표 1차시안 검토

정부부문 (한국은행) 법인부문 (한국산업은행) 및 개인기업부문 (농수산부, 중소기업은행)의 조사표 (1차시안)를 검토하였던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자산재평가 자료의 이용

정부기관 및 법인에 있어서 자산재평가 자료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도 조사항목으로 추가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1) 자산의 경과년수가 오래되었을 경우 취득시기의 정확한 취득가격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이 부정확할 경우 물가배율 적용에 따른 재취득가격 평가가 곤란함.
- 2) 취득시기 및 취득가격만 조사할 경우 동일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반영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를 조사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음.

나. 사업체의 생산품에 따른 업종의 재분류

산업소분류에 따라 사업체를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다음 목적으로 동 사업체의 생산량 또는 업종별 수입에 따라 타 분류에 해당되는 비율을 시험조사에 첨부토록 하였음.

- 1) 개인기업의 경우 모집단을 산업소분류별로 분류하여 표본추출하였으므로 산업소분류별 모집단 사업체의 정확도를 측정

2) 자본재수 작성시 부문별 생산액에 대응할 수 있는 부문별 자본축적량 계산에 이용

다. 중고품취득의 경우 동자산의 경과년수조사

중고품에 있어서도 자산의 경과년수가 명확하게 파악되어야만
물가배율 및 잔가율을 적용하여 총자산액 및 순자산액을 평
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일본 70년 국부조사의 경우 중고품
자산에 관한 조사항목은 취득시기 및 취득가격에 한하였으며
취득시 자산의 경과년수는 제외되었음. 따라서 제1차 시험
조사에서는 중고품의 취득시 경과년수를 함께 조사하고, 동결
과와 일본의 조사방법을 종합하여 차후 조정하기로 하였음.

3. 부문별결과표 1차시안 검토

결과표는 제2회 국부통계조사 종합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조사담당기관별로 설계하도록 하였음.

가. 조사결과표의 제표는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동시에 이용자의 편
의를 도모하도록 작성

나. 기본적인 제표는 매조사 객체마다 자산항목별로 집계하고 조
사객체의 속성에 따라 국부를 구성하는 유형자산 전체에 대
하여 소유자별과 경제부문별로 분류하고 기업부문을 다시 산
업별로 분류작성

다. 유형고정자산 평가액은 순자산액과 총자산액으로 구분제표

라.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소분류별로 구분제표

마. 조사되는 자산은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국부자산 분류표상의
소분류까지 집계제표

4. 기타사항

가. 본회의에서 검토 수정된 결과표 및 조사표(1차시안)를 각 지부별로 30부씩 유인하여 77.9.7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나. 각 지부별 업무진도 보고를 기일내에 제출토록 하였음.

다. 확대실무자회의를 77.10.10에 책임자회의를 77.10.12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 제 19 차 >

1977.10.13

제 4 차 책임자회의 (77.10.12) 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무요원 각자가 분담하여 다음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차기회의 (77.10.17) 에 제출, 검토하기로 하였음.

1. 자문위원회 개최

가. 제 1 회 자문위원회를 77.10.21 에 개최토록 함.

나. 동 자문위원회에는 각지부장이 참석토록 하고 실무자회의 요원이 배석하도록 함.

다. 동 자문위원회의 안건은 제 2 회 국부통계조사의 개요,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자문위원회 운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함. (국민은행, 남규홍 조사역)

2. 경제장관 간담회 보고

제 2 회 국부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기관간의 협조를 위하여 본 조사의 개요를 보고하고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명백하게 하여 앞으로의 시험조사는 물론본조사에서 상호협조가 원활하도록 함. (한국은행 김 재수 조사역)

3. 국부통계 홍보계획

제 4 차 책임자회의 의결에 따라 각기관 공동으로 77 년도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나, 한국은행외에는 별도의 예산 책정이 되어있지 않아 다음안에 따라 추진토록 함.

가. 제 1 안

별도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타예산의 전용 가능성을 확인 (77.10.17 까지 파악예정) 한 후 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함

나. 제 2 안

기관별 예산전용이 불가능할 경우 조사본부에서 개괄적인 홍보를 한 후 각지부에서는 필요의 예산확보에 따라 본부의 홍보를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다. 제 3 안

별도 예산 전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된 한국은행에서만 부산, 경남지역 (시험조사지역) 에 국한하여 홍보활동을 하도록 함.

4. 2 차 해외출장 계획

4 개은행의 통계요원에 대한 2 차 해외출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1 차안을 수립 하되 차후 조정 하도록 함.

가. 지역 : 유럽 (스웨덴, 화란, 호주)

나. 기간 : 20 일 (11 월 말 또는 12 월 초 출국)

다. 인원 : 총 4 명 (각기관 1 명씩)

(한국산업은행 김 춘식 조사역)

5. 제 20 차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가. 일시 : 1977.10.17 10:00

나. 장소 : 조사통계국 회의실

< 제 20 차 >

1977. 10. 17

1. 국부통계 홍보계획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홍보계획 전반에 관한 계획을 10.18 까지 수립하기로 하였음. (한국은행 김 재수 조사역 담당)

가. 홍보는 조사본부에서 총괄하고 경비는 각지부에서 분담함.

나. 지상광고

중앙지에 국부통계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고 필요할 경우 지부가 개별적으로 별도의 홍보계획(지방지 활용등)을 수립 시행함.

다. 뉴스 활용

신문, TV, 라디오 뉴스에 기사화할 수 있도록 원고를 작성
라. 홍보일정

각지부별 시험조사 실시(10.24 시작)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2차 해외출장 계획

4개은행의 통계요원에 대한 2차 해외출장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1차안을 작성토록 하였음. (한국산업은행 김 춘식 조사역 담당)

가. 지역: 유럽(서독, 화란, 또는 스웨덴) 호주

나. 기간: 15 - 20일간(11월말 출국)

다. 인원: 한지역에 2 - 3명

3. 경제장관 회의보고 및 자문위원회개최 안건 작성

한국은행 김 재수 조사역, 국민은행 남 규홍 조사역이 작성한
안을 중심으로 조사본부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4. 제 21 차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가. 일 시 : 1977.10.19 10:00

나. 장 소 : 조사통계국 회의실

< 제 21 차 >

1977.10.19

1. 국부통제조사를 위한 홍보계획

가. 시험조사를 위한 홍보

1) 시험조사 개요

기 관 별	시험조사대상처	시험조사기간
한국은행	86개 기관	11. 7 - 11.30
한국산업은행	-	-
농수산부	220개 기업 (농가포함)	11.28 - 12.10
중소기업은행	415개 기업	10.24 - 11.12
국민은행	350개 기업	11월중 예정
조사통제국	-	-
계	1,071개처	

2) 시험조사를 위한 홍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가) 조사대상처 1천개에 대한 협조요망을 위하여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홍보활동은 경제성이 낮음.

나) 시험조사를 위한 대상처의 협조는 별도의 홍보없이 수행되었던 것이 상례임.

3) 따라서 시험조사를 위한 별도의 홍보활동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한국은행의 경우 시험조사 대상처가 부산, 경남지역에 국한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지방지에 한하여 자체예산으로 홍보하도록 함.

나. 본조사를 위한 홍보

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는 조사대상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므로 단기간에 최대의 홍보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따라서 다음과 같이 77년말과 78년 3월초에 본조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함.

1) 1차홍보

본 조사가 77.12.31을 기준으로 실시되므로 77년도 각지부 예산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요망됨.

가) 시 기 : 1977.12월중순

나) 방 법 : ①중앙지(7종)에 공고

②각종 매스컴을 통한 기사화

③TV대담

다) 경 비 : 약 6백만원 (기관당 약 1백만원 분담)

라) 경비집행방법 : 책임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본부에서 일괄 집행

2) 2차홍보

부문별 실시일정이 3월부터 8월까지이므로 다음과 같이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가) 시 기 : 1978.3월 초 (78.6월 말 소규모로 재강조)

나) 방 법 : ①총리지시 및 담화문 활용

②전 매스컴을 동원

③가두, 유기장등 각종 홍보수단 활용

다) 경 비 : 약 1,500만원 (78년도 요구예산 총액)

라) 경비집행방법 : 1차홍보시와 동일

다. 종합홍보계획 수립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홍보계획 (안)을 본 실무자회의에서 작성하여 차기 책임자회의에 상정할 예정임.

3. 2차 해외출장 계획

한국산업은행 김 춘식 조사역이 다음과 같이 작성한 2차 해외출장 계획을 조사본부에서 검토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가. 지 역 : 일본, 유럽 (서독, 화란 및 스웨덴) 호주

나. 기 간 : 15 ~ 20일간 (11월중순 출국)

다. 인 원 : 8명

4. 경제장관협의회 보고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제장관 협의회에 협조 요청하기로 하였음.

가) 정부자산 부문조사시 각기관의 협조가 원활하도록 함.

나) 78년도 예산을 각지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요청

< 제 22 차 >

1977. 10. 26

1. 국부통계를 위한 홍보계획

가.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는 77.12월중에 1 차로 시작하여 본 조사실시 직전에 2 차, 본조사 실시중에 3 차로 3 차에 걸쳐 수행하도록 함.

나. 1 차는 77년 12월중에 하되 약 6 백만원 정도 (기관별 약 1 백만원 부담)의 예산으로 77.12.31 기준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를 78년 3월부터 실시함을 홍보함

다. 2 차는 본조사 실시직전 (78.3월경)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모든 홍보수단 (담화문, 매스컴, 포스터, 가두선전, 기념우표등)을 동원하여 정부기관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의 협조를 얻도록 함.

라. 3 차는 본조사가 약 6 개월에 걸쳐 실시되므로 법인부문조사가 시작되는 6월경에 2 차 홍보효과를 재현시키고 법인사업체에 대한 홍보중심으로하여 전체적인 홍보활동을 마무리 지음,

마. 이상의 기본방향에 따라 실무요원이 분담하여 시안을 작성 (77.10.29 까지) 하여 본 실무자회의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책임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상정키로 하였음.

바. 기관별 실시계획 기간

부 문	담 당 기 관	실 시 기 간
정 부	한국은행	78.5 - 78.7
법 인	한국산업은행	78.7 - 78.8
개 인 기 업	농수산부	78.5
	중소기업은행	78.5 - 78.6
	국민은행	78.5 - 78.6
가 계	조사통계국	78.3 - 78.4

2. 자본제수 작성방법

제 4 차 책임자회의 (77.10.12) 에 보고한 자본제수 작성방법 연구는 한국은행의 작업 (현재 탈고중임) 이 끝나는 대로 본 실무자회의를 거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책임자회의 보고사항으로 상정키로 하였음.

3. 국부관계요원의 상호활용 방안

가. 각지부별로 국부통계에 관한 요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집중적인 업무가 수행될 때에는 기술 및 이론적인 실무가 부족하며

나. 담당부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타부문의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담당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 각지부에서는 본부요원 (실무자회의 구성원) 을 포함하여 타지부의 국부통계요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책임자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음.

< 제 23 차 >

1977.11.3

1. 국부통계를 위한 홍보계획

가.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는 77.12월중 1차로 시작하여 78.3월중 2차 78.6월중 3차로 세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나. 1차는 약 600만원(기관별 100만원 부담)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현재 한국은행 150만원확보, 조사통계국 100만원은 전용 신청중에 있고 나머지 다른기관은 77년중 홍보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예산 전용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음 회의시까지 기관별 확보가능 예산을 확인하여 1차홍보활동을 수행키로 하였음.

다. 1차홍보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신문, 텔레비죤, 라디오에 기사화할 수 있는 원고는 중소기업은행 윤 남열 조사역, 신문의 광고문과 3차홍보계획은 한국산업은행 김 춘식 조사역이 담당하여 안을 작성하고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홍보계획(별첨)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할 사항은 각지부별로 검토하여 차기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음.

2. 자본계수 작성방법

가. 한국은행에서 자본계수 산출을 위한 연구보고서 요약편(77.11.5예정) 및 종합편(77.11.12예정)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3. 해외출장

가. 재 2 차 해외출장 계획에 따라 기일내에 출발할 수 있도록 제반 필요한 사항을 조사본부의 협조를 얻어 각지부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음.

나. 해외출장 후 각지부가 그결과를 이용하여 국부통제조사 업무수행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귀국보고서(50부)와 해외에서 구입한 자료(책자, 유인물등)를 조사본부에 제출하여 집중관리토록 하였음.

4. 기타사항

11월중순경 개최예정인 책임자회의에 다음과 같은 안을 상정키로 하였음.

가. 국부통제를 위한 홍보계획(안)

나. 타지부 요원 활용방안

다. 자본제수 작성방법 연구보고

첨부: 국부통제를 위한 홍보계획

< 별첨 >

홍 보 계 획

1. 계몽선전 목적

77.12.31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제2회 국부통제조사는 10년에 한번 실시하는 범국민적인 조사이며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등 제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알려 모든 정부 및 민간기관과 온국민의 참여와 협조 의식을 고취시켜 순조로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계몽선전 목표

가. 전 행정기관 및 공공사회단체등 국가의 모든기관이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내국민 계몽선전에 참여토록 한다.

나. 조사의 결과는 제반정책수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이 조사가 중요한 조사임을 인식시킨다.

다. 조사에서 얻어지는 개개의 자료는 과세나 범죄수사등에 결코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통제법이 절대로 보장한다는 안도감을 갖도록 한다.

라. 계몽선전은 국민으로 하여금 이해와 협조심을 유발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 협조토록 한다.

3. 계몽선전시기

제2회 국부통제조사의 기준일은 77.12.31이며 조사기간은 부문별로 78.3월부터 78.8월까지 실시되므로 다음과 같이 3차에 걸쳐 실시한다.

가. 제 1 차 : 1977.12 중순

나. 제 2 차 : 1978.3 월

다. 제 3 차 : 1978.6 월

4. 제몽선전 방법

가. 특별조치

1) 조사대상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에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 친서하달

2) 전국요소에 국무총리 담화문 게시

나. 기념담배 (한산도 및 거북선) 발매

다. 가두선전

1) 광화문 아취 및 시내육교 현판설치

2) 현수막 설치

3) 입간판 설치

라. 매스컴을 통한 제몽선전

1) 신문 (중앙 및 지방지)

가) 실시공고

나) 보도, 해설, 사설

다) 담화문 광고

2) 라디오 (중앙 및 지방방송)

가) 뉴-스, 해설보도, 공지사항, 스포츠

나) 대담방송

3) 텔레비존 (중앙 및 지방방송)

가) 뉴-스, 해설보도, 공지사항, 스포츠

나) 대담방송

다) 자 막

마. 교통기관을 통한 계몽선전

1) 열차 (전철포함) 방송

2) 전국 영업용버스에 선전지 부착 운행

5. 계몽선전 협조기관

가. 주 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나. 행정협조기관

내무부, 문화공보부, 교통부, 전매청, 철도청

다. 민간협조기관

1) 언론보도기관 (신문사, 라디오 및 TV 방송국)

2) 전국 여객운수 조합

6. 시행 및 협조기관별 실시사항 요약

가. 주관기관 (6개 담당기관)

1) 제2회 국부통계 조사본부

2) 전반적인 계몽선전 계획 수립 및 집행조정

3) 중앙관계 협조기관과의 협의 및 각 시도 시행계획 지도감독

4) 각종 계몽선전 자료작성 및 배부

나. 내무부

각 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지시
(반상회를 통한 홍보등)

다. 문화공보부

- 1) 언론 보도기관을 통한 계몽선전
- 2) 국영라디오 및 텔레비존 방송국에 대한 협조의뢰

라. 교통부

영업용버스에 차량선전지 부착 운행지시(시내, 시외버스)

마. 전매청

기념담배(거북선 및 한산도)발매

바. 철도청

열차방송을 통한 계몽선전

사. 민간 협조기관

- 1) 각 신문사

보도기사, 해설, 사설, 광고, 공고등

- 2) 국민영 방송국(라디오, TV)

뉴스, 해설보도, 공지사항, 스포츠, 대담방송등

- 3) 여객운수 조합연합회

전국 영업용버스에 차량선전지 부착운행

다) 자 막

마. 교통기관을 통한 계몽선전

1) 열차 (전철포함) 방송

2) 전국 영업용버스에 선전지 부착 운행

5. 계몽선전 협조기관

가. 주 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나. 행정협조기관

내무부, 문화공보부, 교통부, 전매청, 철도청

다. 민간협조기관

1) 언론보도기관 (신문사, 라디오 및 TV 방송국)

2) 전국 여객운수 조합

6. 시행 및 협조기관별 실시사항 요약

가. 주관기관 (6개 담당기관)

1) 제2회 국부통계 조사본부

2) 전반적인 계몽선전 계획 수립 및 집행조정

3) 중앙관계 협조기관과의 협의 및 각 시도 시행계획 지도감독

4) 각종 계몽선전 자료작성 및 배부

나. 내무부

각 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지시
(반상회를 통한 홍보등)

다. 문화공보부

- 1) 언론 보도기관을 통한 계몽선전
- 2) 국영라디오 및 텔레비존 방송국에 대한 협조의뢰

라. 교통부

영업용버스에 차량선전지 부착 운행지시 (시내, 시외버스)

마. 전매청

기념담배 (거북선 및 한산도) 발매

바. 철도청

열차방송을 통한 계몽선전

사. 민간 협조기관

- 1) 각 신문사

보도기사, 해설, 사설, 광고, 공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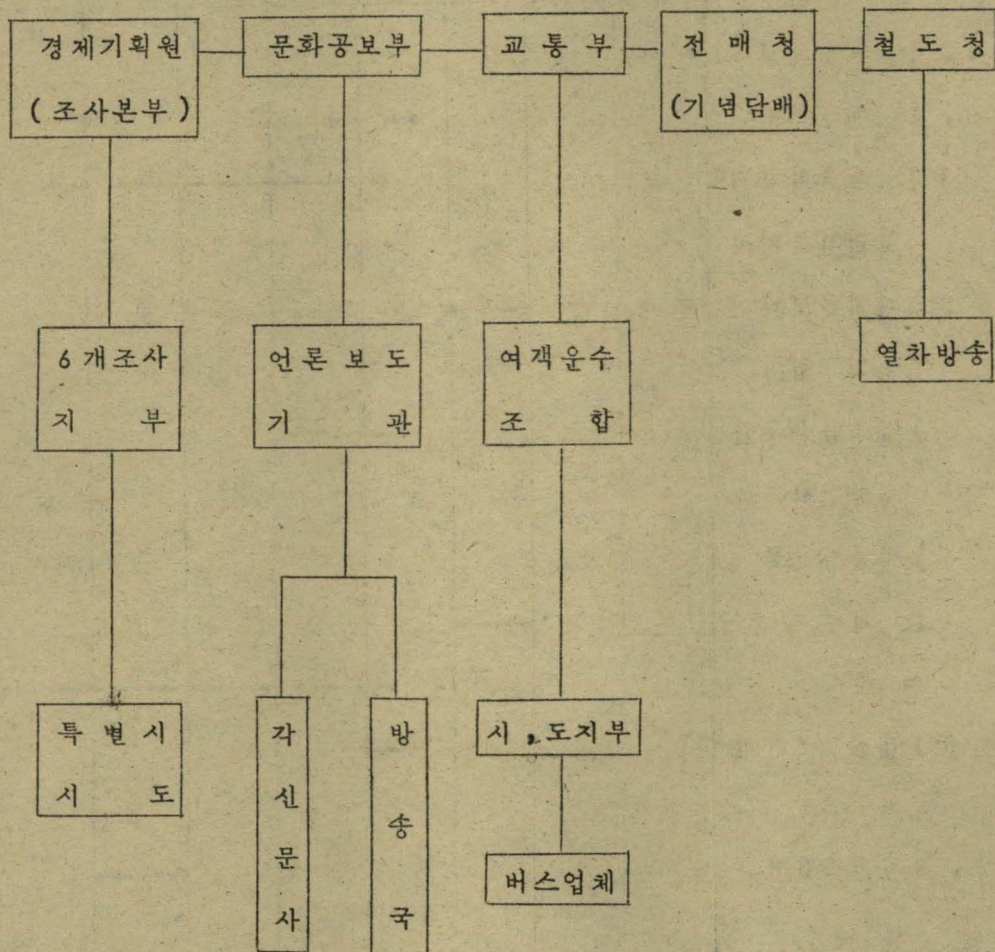
- 2) 국민영 방송국 (라디오, T V)

뉴스, 해설보도, 공지사항, 스포츠, 대담방송등

- 3) 여객운수 조합연합회

전국 영업용버스에 차량선전지 부착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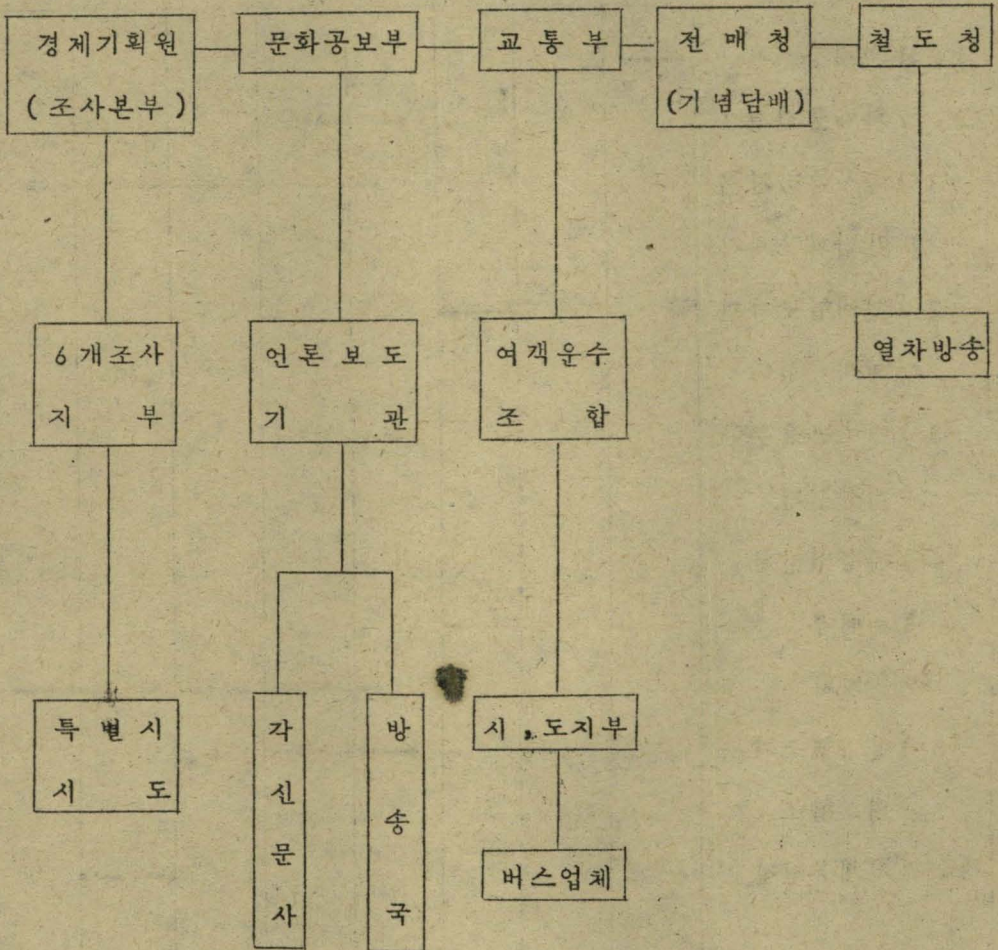
7. 계몽선전조직



8. 계몽선전 추진일정

시행항	추진일정							
	77. 12	78. 1	2	3	4	5	6	7
1. 1차계몽선전	←→							
2. 2차계몽선전				←→				
1) 국무총리친서 및 담화문게시				←→				→
2) 관계협조기관 과의 협의			←→					
3) 매스컴을 통한 계몽선전				←→				
4) 계몽선전물								
① 배부			←→					
② 게시				←→				→
5) 민간협조기관 의 협조				←→				
3. 3차계몽선전							←→	

7. 제몽선전조직



8. 계몽선전 추진일정

시 행 항	추진 일정							
	77. 12	78. 1	2	3	4	5	6	7
1. 1차계몽선전	↔							
2. 2차계몽선전				↔				
1) 국무총리친서 및 담화문게시				↔				↔
2) 관계협조기관 과의 협의			↔					
3) 매스컴을 통한 계몽선전				↔				
4) 계몽선전물								
① 배부			↔					
② 게시				↔				↔
5) 민간협조기관 의 협조				↔				
3. 3차계몽선전							↔	

<제 24 차>

1977. 11. 9

1. 종합제몽선전 계획

제 23 차 회의시 작성한 계획(안)을 검토하고 일부 수정 보완 하였음.

(별첨 1 참조)

2. 1 차 제몽선전 준비

1 차 제몽선전 계획에 따라 신문지상 공고문안과(별첨 2) 매스컴을 통한 기사문안(별첨 3)을 작성하였음.

별첨 : 1. 종합제몽선전 계획 수정내용

2. 지상공고문안

3. 매스컴 기사문안

< 별첨 1 >

수 정 내 용

1. 제몽선전 방법

(1 차 계획)

제 2 회 국부통제조사를 77.12.31 을 기준으로 실시함을 공고 하
고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78.2월 까지 부문별로 실시하는 시
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요청
가. 공 고

1) 중앙신문 (한국, 조선, 동아, 경향, 서울, 중앙, 신아) 에 공고

2) 공고문안 : 별첨 2 참조

나. 매스컴을 통한 기사화

1) 신문, TV, 라디오를 통하여 보도

2) 기사문안 : 별첨 3 참조

(2 차 계획)

78.3월 부터 부문별로 실시되는 본 조사를 위하여 집중적
이 고 전 홍보수단을 망라한 제몽선전을 실시

가. 특별조치

1) 조사대상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에 국무총리 또
는 부총리 친서하달

2) 전국요소에 국무총리 담화문 제시

나. 기념담배 (한산도 및 거북선) 발매

다. 가두선전

1) 현판설치

2) 현수막 설치

3) 입각판 설치

라. 매스콤을 통한 제몽선전

1) 신문 (중앙 및 지방지)

가) 실시공고

나) 보도, 해설, 사설

다) 담화문 광고

2) 라디오 (중앙 및 지방방송)

가) 뉴스, 해설보도, 공지사항, 스포츠

나) 대담방송

3) 텔레비죤 (중앙 및 지방방송)

가) 뉴스, 해설보도, 공지사항, 스포츠

나) 대담방송

다) 자막

마. 교통기관을 통한 제몽선전

1) 열차 (전철포함) 방송

2) 전국 영업용 버스에 선전지 부착운행

(3 차 계획)

본 조사의 실시기간이 부문별로 1 ~ 3개월에 이르고, 법인 부문은 78.7-8월에 실시되므로 2차 홍보효과를 재현시키고 법인 부문조사를 위하여 추가홍보

가. 조사대상 법인 사업체에 국무총리 또는 부총리 친서 하달

나. 매스콤을 통한 제몽선전

1) 중앙신문에 공고

2) 신문, 라디오, TV를 통한 해설

<별첨 2>공고문안

국부통계조사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이런 정부에서는 1968년에 이어 197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 2차 국부통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내년도의 본 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부통계조사는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존재량을 파악하여 경제개발계획 및 제정책 수립에 불가결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국부통계조사는 그간의 경제개발 성과를 측정하고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투자량을 산출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더욱 의의가 큰 것입니다.

이 조사는 그 규모의 방대성과 기술상의 문제 때문에 단일기관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경제기획원 조사통제국의 주관아래 자산 소유 주체별로 나누어 한국은행이 정부소요자산을, 한국산업은행이 법인소유자산을, 농수산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이 개인기업소유자산을, 조사통제국이 가계소유자산을 각각 분담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사 담당기관은 이 조사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1월부터 78.2월까지 수회의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실제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의 조사대상처로 선정된 기관 사업체 및 가계에서 조사 담당기관의 조사원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자료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에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며,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보호되오니 이 조사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양찰하시어 조사대상처를 방문하게 될 조사원의 면접요청에 협조하십시오으로써 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第2次 國富統計 調査実施

政府에서는 1968年 第1次 國富統計調査以來 두 번째로 1977年 12月31日을 基準으로한 第2次 國富統計調査를 準備하고 있다.

國富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經濟單位 即, 政府, 企業, 家計等이 保有하고 있는 資産의 合計를 貨幣価値로 換算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即 國富에는 우리나라 國民이 保有하고 있는 建物 機械 및 裝置, 車輛, 船舶, 備品 및 家計資産等이 모두 包含되어 있다.

이와 같은 國富에 關한 資料는 經濟的 國力の 把握과 國富資産의 國際比較를 可能하게 함은 勿論 産業別 資本係數의 產出과 年次別 資本蓄積을 計測하여 各種經濟開發計劃을 樹立하는데 있어서 必要不可欠한 分析資料로 利用되고 있다.

특히 第2次 國富統計調査가 完了되면 그 동안의 國富資産 變動狀況은 勿論 開發成果를 測定하고 나아가서 部門別 可用資源의 規模가 밝혀짐으로서 第5次 經濟開發5個年 計劃樹立의 基礎資料를 適期에 提供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調査는 그 規模가 매우 龐大하고 調査技術上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單一機關만으로는 實施가 困難하여 經濟企劃院의 主管下에 韓國銀行은 政府 및 對外資産을 韓國産業銀行은 法人資産을 農水産部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은 個人企業資産을 그리고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은 家計資産을 調査하게 되었다.

經濟企劃院에 依하면 準備作業으로 1977年 11月부터 1978年 2月
까지 2~3次에 걸친 試驗調査를 各 擔當構關別로 實施하여 調査
上의 問題點을 把握하고 그 解決策 模索하고자 하는데 現在 各 調
查擔當機關에서는 第1次試驗調査를 이미 實施하고 있거나 準備를
서두르고 있다.

試驗調査가 完了되고 調査企劃上의 諸般問題點이 解決되면 來年 3
月부터는 本調査가 全國적으로 實施될 予定인바 다음表에서와 같이
調査對象으로 選定된 總 100,000 餘個의 政府機關, 法人, 個人企業 --
一般家計에 對해 이들 各者가 保有하고 있는 資産內容을 調査할것이
다.

部 門	調 查 機 關	調 查 方 法	調 查 對 象 處 數
政 府 機 關		全 數 調 查	約 15,000 機關
法 人		全 數 調 查	約 20,000 法人
個 人 企 業		標 本 調 查	約 1 百 萬 企 業 中 標本 40,000 企業
一 般 家 計		標 本 調 查	約 680 萬 家 口 中 標本 21,000 家口

調査對象處가 保有하고 있는 모든資産을 資産別로 取得價格 取得
時期等이 調査되면 有形固定資産의 경우 取得價格에 殘価率과 物價
倍率을 適用하여 純資産額과 總資産額으로 再評價하며 在庫資産은
調査基準時點의 帳簿價格으로 하고 動植物 및 土地造成은 別途의
評價基準表에 依拠再評價하여 우리나라의 總國富와 純國富를 作成하
게 된다.

<제 25 차>

· 1977. 11. 16

1. 기관간의 국부통계요원 활용 (안) 작성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과 기술을 보완하고, 또한 타기관의 경험을 습득하여 담당 기관에 반영함으로써 부문별 업무추진상 차질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부통계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의 국부통계요원 활용안 (별첨 참조) 을 작성하였음.

2. 부문별 시험조사용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 종합검토

(별도 보관 조사표류 및 조사지침서 참조)

가. 농수산부,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조사통계국의 시험조사용 조사표 및 조사지침서를 종합검토하였던 바 제 3 차 책임자회의에서 채택한 1 차안에 따라 작성, 실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나. 총 국부는 소유자 주의원칙에 따라 각 소유주체별 소유자산을 합제한것이 되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일부자산의 누락이 예상되어 이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자회의에서 별도 연구 보완토록 하였음.

1) 주택의 일부를 영업용(주로 소매영업)으로 임대하여 주었을 경우 개인기업 부문에서 사업용 건물이 누락되고, 가계 부문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이론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 해석되나 사실상 조사되지 않음.

2) 위 1)항과 유사한 사항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동시에 사업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여하고 있는 비가계용자산(공작기계등)의 경우 소유자주의 원칙에 의한 조사에서 사실상 누락이 예상됨.

3. 해외 자료의 정리

미국 및 일본에 출장하여 수집한 각종 참고자료를 정리하였으며 다음 자료는 번역하여 이용토록 하였음.

가. 소화 45년 국부조사 조사추계의 실태와 문제점

나. " 표본추출법

다. " 를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록

첨부: 기관간의 국부통제요원 활용안)

<별첨>

기관간의 국부통제요원 활용(안)

1. 목 적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부문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과 기술을 보완하고, 또한 타 기관의 경험을 습득하여 담당기관에 반영함으로써 부문별 업무추진상 차질이 없도록 할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부통제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필요성

가. 업무의 유사성

기관별 담당부문에 대한 조사업무는 자산소유주체만이 상이할 뿐 조사대상자산, 조사방법등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상호보완할 필요가 있음.

나. 이론 및 기술의 제한

각 기관의 국부통제요원은 대부분 최초로 국부통제조사에 참여하므로 국부에 관한 이론과 조사업무상의 경험 및 기술이 부족한 실정임.

다. 요원의 부족

기관별 국부통제요원의 확보상황은 경상업무 추진상 최소의 인원에 불과하므로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자체 인원만으로 수행하기에는 절대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음.

3. 방 안

가. 각 기관에서는 국부통제조사를 위한 업무추진상 자체요원만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상 보충이 필요할 경우에는 타 기관의 업무계획상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요원을 활용토록 하고

나. 또한 각 기관은 담당업무 수행에 참고가 필요할 경우 타 기관업무에 참여하여 동 시행방법을 습득활용토록 함.

<제 26 차>

1977. 11. 25

1. 자본계수 작성에 따라 국부통제조사에 대한 보완사항을 1차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사용자주의에 따른 자본스톡의 작성

자본계수 작성을 위하여 기업부문별로 소유자 및 사용자별 자산액을 산출할 계획임.

나. 자산분류 Commodity Base에 의하여 분류

원천별 자본 계수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자산분류를 Commodity Base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부통제조사에서 87개 업종별 분류와 47개의 품목별 자산분류틀 동시에 충족시키기에는 표본조사인 제인기업부문에서 무리가 있음. 그러나 현재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중에 있는 자산분류(안)가 완성되면 실무자회의 검토과정에서 조정의 가능성을 파악토록 하였음.

다. 생산액 자료산출을 위한 Sample Survey의 병행

I-O 자료, GNP자료, 센서스자료등의 생산액 자료보다는 국부통제조사시 일부사업체(표본)에 대하여는 생산액도 동시에 조사하여 동일기준에 따른 자본계수의 산출이 바람직한 일이나 별도의 조사로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확보예정 조사원의 부족, 업무추진상 준비기간의 부족등)가 예상되며 특히 개인기업의 경우 본 조사가 2단계회추출법에 의한 조사인데 그 조사대상 사업체를 재추출할 경우 자료의 신빙성 확보는 극히 곤란할것임.

라. 사업체 별 조사시 생산액 비율에 따라 자산의 업종분류
자본계수 작성상의 생산액 자료와 대비하기 위한 정확한 업
종 별 **자본소득**의 산출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이나 타업종(주
업종이 아닌)의 생산액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곤란 할
뿐더러 개인기업의 경우 주업종에 따라 사업체가 표본 추출
되었으므로 주업종외의 업종의 자산액이 작성된다 하더라도
모수추정하였을 경우 자료의 신빙성 확보에는 문제가 있을것
임. 그러나 1차 시험조사에서 이사항은 시도되었으므로 앞으
로 시험조사결과에 대한 분석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
음.

2. 1차 계몽선 전시의 기사문안 수정

확 대실무자 회의(77.11.24) 결정에 따라 1차 계몽선 전시의 기
사문안을 별첨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음.

첨부. 기사문안

1977年 國富統計調査実施

政府에서는 國民經濟活動의 基礎가 되는 富의 存在量을 把握하여 經濟的 国力을 測定하고 經濟開發計劃을 비롯한 諸般 政策樹立 및 第5次 經濟開發5個年計劃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로 利用키 위하여 1977年 12月 31日을 基準時点으로 하는 國富統計調査를 오는 3月 10日부터 8月 20日까지 약 6個月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1979. 12. 31까지 綜合報告書를 發刊 公表할 予定이다.

이번 調査는 全資産을 專門分野別로 各 機關 (6個機關)이 分擔하여 調査하게 되는데 그 時期는 다음과 같다.

部 門	調査擔當機關	調査時期	備考
總 括	調査統計局		
政府및 對外純資産	韓國銀行	78.4.24-7.31	
法 人	韓國産業銀行	78.7.11-8.20	
個 人	農 水 産 部	78.7.11-8.20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家 計	調査統計局	78.3.10-4.10	

調査対象으로는

가. 国民經濟内に 所在하는 再生産 可能的 有形固定資産 在庫資産

및 對外 純資産과

나. 国内에 所在 (또는 居住) 하는 中央政府 地方自治團體 公共團體

政府投資機關, 法人, 個人企業 및 一般家口이며

다. 調査対象資産內容과 件數는 다음과 같다.

部 門	對 象 資 産
政 府	国有財産法 物品管理法 및 地方財政法 所管資産 과 教育委員會 所管資産 ※ 国有財資 : 약 5 백 만 건 ※ 物 品 : 약 7 億 6 천 만 건
企 業 (個人 및 法人)	有形固定資産 및 在庫資産 ※ 事業體当 : 약 700 種
家 計	家計資産 (耐久 및 半耐久財) ※ 家口當最大 : 약 900 品目

이번 國富統計 調査가 完了되면 所有資産中心으로 所有主體別
資産項目別, 地域別, 資産項目別, 業種別, 資産項目別, 取得年度別, 資産
項目別 等으로 資産額을 總資産額과 純資産額으로 評價하여 富의
分配狀態把握, 開發成果測定, 國民貸借對照表의 作成等에 直接 利用되
며 特히 企業部門에 있어서는 使用資産中心으로 業種別 資産項目別
資産額을 總資産額과 純資産額으로 評價하여 業種別 資本係數, 源泉
別 資本係數等을 作成하여 第5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等 各種 政策
樹立에 直接 利用될 것이다.

< 제 27 차 >

1977.12.7 14:00 - 16:50

1. 다음과 같은 안건을 각지부별로 작성하여 77.12.12 한 조사본부에 제출하여 실무자회의에서 검토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음.

가. 2차 홍보계획 수립

- | | |
|---|---------------|
| 1) 종합시행계획 | } (조사본부에서 담당) |
| 2) 국무총리친서 및 담화문(안) 작성 | |
| 3) 대담방송(TV, 라디오)시나리오작성(국민은행 남 규 홍 조사역 담당) | |

나. 자본계수작성에 따른 국부통계조사 내용조정

자본계수작성을 위한 국부통계조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을 작성키로 하였음(한국은행 김 재수 조사역 담당)

1)

사용자주의에 따른 자본스톡의 작성

2) 자산분류를 Commodity Base에 의하여 분류(Sample Survey 방안도입)

3) 사업체의 자산을 산업별 생산액 비율로 분할

4) 산업분류의 일부조정

다만, "자산분류를 Commodity Base에 의하여 분류"에 관한 사항은 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안)이 작성되는 12.14 이후에 검토하도록 함.

다. 소유자주의의 경우 누락예상 부문의 보완

(중소기업은행 윤 남열 조사역 담당)

총국부는 소유자주의 원칙에 따라 각 소유주체별로 소유자산을 합한 것이 되어야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부자산의 누락이 예상되어 이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연구 보완토록 하였음.

1)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임대하여 주었을 경우 가계부문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 해석되나 사실상 조사되지 않았음.

2)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가계용 자산(공장, 기계등)을 개인 또는 사업체에 대여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주의 원칙에 의한 조사에서 사실상 누락이 예상된다

라. 기타사항

1) 개인기업부문 공동실시 기관인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통합 조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가) 유형고정자산 파악방법(시가 또는 재조달가격중 주접근방법의 조정)

나)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의 통일

2) 중고품을 구입한 경우 중고품 구입시 취득가격, 경과년수를 명확하게 파악되어야만 물가배율, 잔가율을 적용하여 총자산액 및 순자산액을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중고품 취득시 동자산에 대한 경과년수가 대부분 파악되지 않아 중고품 취득시 취득가격을 반으로 평가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실무자회의에서 검토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음.

< 제 28 차 >

1977. 12. 12

1. 2차 홍보계획 수립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국무총리 담화문(안)을 검토한 결과 별첨(1)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으나 단일안으로 확정하기에 미흡하므로 77.12.14까지 각 지부별로 검토하여 실무자회의에서 재조정하기로 하였음.

2. 자본계수작성에 따른 국부통계조사의 내용조정

가. 산업분류의 일부조정

한국은행에서 자본계수작성을 위한 산업분류(시안)와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비교하여 ①업종의 상위성 ②75년 I-O표의 부문별 총생산액 ③성장성있는 산업 ④68년도 산업별 자본계수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안(별첨(2))을 실무자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별첨 3과 같이 조정하였으며 차기회의에서 재검토하여 확대실무자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음.

나. 사업체의 자산을 산업별 생산액 비율로 분할

개인기업의 경우는 주업종에 따른 표본조사에 의존하고 자산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취급품목이 다양하므로 법인기업체에 한하여 생산액을 업종의 비율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기타사항

가) 1차 홍보계획의 신문지상공고에 대한 공문응신을 12.15까

지 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였음.

나. 27차 실무자회의 개최

1) 일 시 : 77.12.14 14:00

2) 장 소 : 국부통계조사 본부

3) 안 전 :

가) 국무총리 친서 및 담화문(안) 작성

나) 자본계수작성에 따른 국부통계조사의 내용조정

다) 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안) 검토

첨부 : 1. 국무총리 담화문(안)

2. 산업분류(시안)

3. 산업분류(조정안)

< 별첨 1 >

답 화 문

국부통계조사 (国富統計調査) 실시에 즈음하여 ~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정부에서는 1977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국부통계조사를 금년 3월 20일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국부통계조사는 1968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존재량을 파악하여 경제개발계획을 비롯한 제정책수립에 이용되는 중요한 기본통계조사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한 지난 9년간의 경제개발성과를 측정하고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투자량을 산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방대한 자산이 전부 조사되어야 하므로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에 전문분야별로 분담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국부통계조사는 나라살림을 늘려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얻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국민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조사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으로 그 비밀을 절대 보장하오니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시거나 방문하는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안심하시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확하고 진실한 자료를 제공하셔야만 이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별첨 2 >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산업분류(시안)

번호	KSIC No	산 업 분 류 명	항목 구분	비 고
1	1111	작 물 생 산 업	세	161,398
2	1112	축 산 업	세	
3	112	농 업 서 어 비 스 업	소	
4	12	임 업	중	
5	130	어 업	소	
6	210	석 탄 광 업	소	
7	230	금 속 광 업	소	
8	290	기 타 광 업	소	
9	3111~ 3113	도살, 낙농, 파실, 가공업	세	
10	3114	해산물통조림및가공저장업	세	
11	3116	도 정 및 제 분 업	세	
12	3117	빵 제 품 및 국 수 제 조 업	세	
13	3118	설 탕 제 조 업	세	
14	3115	동 식 물 유 지 제 조 업	세	
15	3121	기 타 식 료 품 및 사 료 제 조 업	세	
16	3131~8	주 류 제 조 업	세	
17	3134	청 량 음 료 제 조 업	세	

번호	KSIC No	산업분류별	항목 구분	비고
18	3140	연 초 제 조 업	소	
19	3211	방 적 및 제 사 업	세	
20	3216	직 조 업	세	
21	3217	표 백 , 염 색 , 정 리 업	세	
22	3212~3215 3219	기 타 섬 유 제 조 업	세	
23	322	의 복 제 조 업	소	
24	323	가 죽 제 품 제 조 업	소	
25	324	신 발 제 조 업	소	
26	331	목 재 및 폴 크 제 조 업	소	
27	332	기 구 및 장 치 물 제 조 업	소	
28	341	지 류 및 지 제 품 제 조 업	소	
29	342	인 쇄 출 판 및 관 련 사 업	소	
30	3511, 35125 35129	산 업 용 화 학 물 제 조 업	세	
31	35121~ 35124	비 료	세 세	123,668
32	3522	의 약 품 제 조 업	세	
33	3523	비 업	세	
34	3513	합 성 수 지 , 프 라 스 탁 물 길 인 조 섬 유 제 조 업	세	
35	3521	기 타 화 학 제 품 제 조 업	세	
36	3530	석 유 정 제 업	세	
37	35401	연 탄 제 조 업 기 타 석 유 및 석 탄 제 품 제 조 업	세 세	
38	355	고 무 제 품 제 조 업	소	
39	356	프 라 스 틱 제 품 제 조 업	소	

번호	KSIC NO.	산 업 분 류 명	항목 구분	비 고
40	361	도 자 기 . 토 기 제 조 업	소	
41	362	유 리 및 유 리 제 품 제 조 업	소	
42	369	기 타 비 금 속 광 물 제 품 제 조 업	소	
43	371	제 1 차 철 강 산 업	소	
44	372	제 1 차 비 철 금 속 산 업	소	
45	381	조 립 금 속 제 품 제 조 업	소	
46	382	기 제 제 조 업	소	
47	383	전 기 기 제 기 구 제 조 업	소	
48	3841	선 박 전 조 및 수 인 업	세	
49	3842	철 도 장 비 제 조 업	세	
50	3843	자 동 차 제 조 업	세	
51	3844~3849	기 타 수 송 기 제 제 조 업	세	
52	385	과 학 . 측 정 과 학 제 품 제 조 업	소	
53	390	기 타 제 조 업	소	
54	511	전 물 전 설 업	소	
55	512	토 목 전 설 업	소	
56	52	전 문 직 별 전 설 업	중	229,213 (기 타 전 설)
57	410	전 기 개 스 및 증 기 업	소	
58	420	수 도 사 업	소	
59	61	도 매 업	중	1,857,899 일반도매업 (백화점)
60	62	소 매 업	중	상품중개 무역업
61	631	음 식 점 업	소	
62	632	숙 박 업	소	

번호	KSIC No.	산업분류명	항문 구분	비고
63	7111	철도운수업	세	
64	7112~7116	도로운수업	세	
65	712	수상운수업	소	
66	713	항공운수업	소	
67	719	운수관련서비스업	소	
68	72	통신업	소	
69	810	금융업	소	
70	820	보험업	소	
71	830	부동산업 (주택소유포함)	소	
72	84	용역업	중	136,575 용역업 기계장비임대업
73	911	중앙정부사무	소	
74	912	지방정부사무	소	
75	931,932	교육·학술연구기관	소	
76	933	의료·보건·수의서비스업	소	
77	920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소	
78	934,935,939	기타사회서비스업	소	
79	94	오락및문화서비스업	중	95,093 수선업 세탁업 가사서비스업
80	95	대개인및가사서비스업	중	209,664 기타개인서비스업
81	00	분류불명	중	259,140

※ 중 8
소 43
세 28
세세 2

(별첨 3) 극부통제 조사를 위한 산업분류 (조정안)

시				조			
번호		산업분류명	항목 구분	번호		산업분류명	항목 구분
9	3111-3113	도살, 낙농, 과실 가공업	세		3111-3114	도살, 낙농과실 해삼물 통조림 및 가공저장업	세
10	3114	해삼물 통조림 및 가공저장업	세				
14	3115	동식물유지 제조업	세		3115, 3121	기타 식료품 제조업	세
15	3121	기타 식료품 및 사료 제조업	세				
12	3117	빵제품 및 국수 제조 업	세		3117 3119	빵제품, 국수 및 설탕, 과자, 제조업	세
16	3113-8	주류제조업	세		313	음료품 제조업	소
17	3134	청량음료제조업	세				
19	3211	방직 및 제사업	세		3211 3216	방직업	세
20	3216	직조업	세				
21	3217	표백, 염색, 정리 업	세		3212-15 3217		
22	3212-15 3219	기타 섬유제조업	세		3219	기타 석유제조업	세
30	3511 35125 35129	산업용 화학물 제조 업	세		3511, 3513 35125 35129	산업용 화학물 합성 수지 플라스틱물 질 인조 섬유 제조 업	세
34	3513	합성수지, 프라스 틱물질 인조 섬유 제조업	세				
33	3523	비누, 세정제 화장 품 제조업	세		3521 3523 3529	기타 화학제품 제조 업	세
35	3521 3529	기타 화학제품 제조 업	세				

<제 29 차 >

1977. 12. 14

1. 국무총리 담화문 작성

제 28 차 회의를 작성한 국무총리 담화문(안)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별첨 1 참조)

2. 산업분류의 일부조정

자본제수 작성을 위하여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 일부를 별첨(2)와 같이 조정하였음.

한국표준산업소분류	조 정 안
87	74

3. 기타사항

가. 자본제수 작성을 위한 국부통제조사의 내용조정을 12.23

개최 예정인 자문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음.

나. 30 차 실무자 회의개최

1) 일 시 : 77.12.15 14:00

2) 장 소 : 국부통제조사본부

3) 안 건 : 국부통제 자문위원회 안건 작성

첨 부 : 1. 국무총리 담화문(안)

2. 산업분류 조정(안)

<별첨1>

국무총리답화문 (안)

一 국부통제조사(國富統計調査)

실시에 즈음하여 一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정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1977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국부통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부통제조사는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富)의 존재량을 파악하여 경제적 국력을 측정하고, 경제개발계획을 비롯한 제반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기본통제조사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그간의 경제개발성과를 분석하여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에 이용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정부기관, 기업체, 각종단체, 가계등을 망라한 모든 경제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부 조사되어야 하므로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이 전문분야별로 분담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국부통제조사는 각기관과 국민개개인의 전재산을 조사하여야 하는 방대한 국가적 사업이므로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제공하시는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으로 그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시거나 방문하는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978년 3월 일

국무총리 ○ ○ ○

< 별첨 2 >

한국표준산업 분류조정 (안)

대분류	항 목 명	중분류	항 목 명	소분류	항 목 명	K S I S N O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11	농업 및 수렵업	111	작물 생산업	1111
				112	축 산 업	1112
				113	농업서비스 및 수렵업	112, 113
		12	임 업	120	임 업	121, 122
		13	어 업	130	어 업	130
2	광 업	21	석탄광업	210	석탄광업	210
				220	금속광업	230
				290	기타광업	290
3	제 조 업	31	음료품 및 담배 제조업	311	도살, 고기, 낙농과실, 해삼물 통조림 및 가공저장업	3111- 3114
				312	도정 및 제분업	3116
				313	빵제품, 설탕과자 및 국수제조업	3117 3119
				314	설탕 제조업	3118
				315	음료품 제조업	313

대분류	항 목 명	중분류	항 목 목	소분류	항 목 명	K S I S N O
				316	담배 제조업	314
				317	동식물유지 기타 식료품 및 사료제조업	3121 3122 3115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321	방직, 세사 및 직조업 · 의복제외	3211 3216
				322	기타 섬유제조업	3212 - 3215 3217, 3219
				323	의복제조업 · 신발제외	322
				324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 제품제조업, 신발과의복제외	323
				325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프라스틱 신발제외	324

33	나무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포함	331	목재 및 톱크제조업, 가구 제외	331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금속가구제외	332
34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인쇄및출판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341
		342	인쇄출판 및 관련산업	342
35	화학물과화학석유 석탄고무 및 프라 스틱제품 제조업	351	산업용화학물, 제조업, 비료, 유리제외	3511, 35125 3513, 35121-
		352	비 료 제 조 업	35124
		353	의약품 제조업	3522
		35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521, 3523, 3529
		355	석유 정 제업	353
		356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54
		357	고무제품 제조업	355

대분류	항 목 명	중분류	항 목 명	소분류	항 목 명	K S I S N O
				358	달티분류되지 않은 프라 스틱 제품 제조업	356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제외	361	도자기 토기제조업	361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62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69
		37	제 1 차 금속산업	371	제 1 차 철강산업	371
				372	제 1 차 비철금속산업	372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381
				382	기계제조업, 전기제외	382
				38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383
				384	선박건조 및 수선업	3841
				385	철도장비제조업	3842
				386	자동차 제조업	3843
				387	기타수송기계제조업	3844
						3845
						3849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문과학	385
					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및	
					광학제품제조업	
		39	기타 제조업	390	기타 제조업	390
4	전기개스및	41	전기개스 및 중기업	410	전기개스 및 중기업	410
	수도사업	42	수 도 사 업	420	수 도 사 업	420
5	건 설 업	51	종 합 건 설 업	511	건 물 건 설 업	511
		52	전문직별 건설업	512	토 목 건 설 업	512
				520	전문직별 건설업	521-529
6	도, 소매및	61	도 매 업	610	도 매 업	611-613
	음식숙박업	62	소 매 업	620	소 매 업	621, 622
		63	음식 및 숙박업	631	음 식 점 업	631
			신설	632	숙 박 업	632
7	운수, 창고	71	운수 및 창고업	711	철도 운수업	7111
	및 통신업			712	도로 운수업	7112-7116
				713	수상 운수업	712
				714	항공 운수업	713
				719	기타운수관련서비스업	719

대분류	항 목 명	중분류	항 목 명	소분류	항 목 명	K S I S N O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72	통 신 업	720	통 신 업	720
		81	금 용 업	810	금 용 업	810
		82	보 험 업	820	보 험 업	820
		83	부 동 산 업	830	부 동 산 업	830
		84	용 역 업	840	용 역 업	841,842
9	사회 및 개인서비스 업	91	공공행정및국방	911	중앙정부 사무	911
				912	지방정부 사무	912
		92	위생및유사서비스업	92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20
		93	사회서비스업	931	교육학술연구기관서비스업	931
						932
				932	의료보건, 수의서비스업	933
				933	기타 사회서비스업	934,935 939
		94	오락 및 문화 서비스업	940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941,942 949
		95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	950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951-953 959
0	분류불능	00	분 류 불 능	000	분 류 불 능	000

<제 30. 31 차>

1977. 12. 15

12. 16

1. 자본제수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 2 회 국부통제조사계획의 보완방안을 작성하여 안전을 검토한 결과 국부통제자문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음.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조정 (별첨 1 참조)

나. 사용자 주의에 의한 Stock 작성 (별첨 2 참조)

다. 조사대상처별 업종분류 (별첨 3 참조)

2.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78.1월중에 국부통제 자문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음.

가.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안)

현재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중에 있는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안) 중 자산분류를 원천별 자본제수 작성이 가능하도록 Commodity Base 에 의한 분류가 가능토록 보완하기로 하였음.

나. 부문별 1차 시험조사결과

부문별로 실시한 1차 시험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가계 부문조사의 표본설계 원칙

가계부문 자산의 지역별 제표는 가계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 도별 자산표보다는 서울, 부산, 도청소재지, 읍부, 군부의 지역 특성별 자산표를 집계하는데 중점을 두어 표본을 설계조사하도록 하며 총괄편에 필요한 시, 도별 자료의 경우에는 자산

중분류별로 수록되고 가계자산의 분류는 건물, **개개** 재산으로만 되어 있으므로 지역 특성별 자료를 이용 각 특성 지역별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액에 각 시, 도의 해당지역 가구수를 곱한 값을 합계하는 방법으로 제표하되 구체적인 설계방법은 차후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4. 제 32 차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 1977.12.20 10:00

나. 장 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다. 안 건 : 자문위원회 안건 검토

- 첨부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조정
 2. 사용자주의에 의한 Stock 작성
 3. 조사대상처별 업종별 분류

< 별첨 1 >

산업 대분류별 증감 대비표

	산업대 분류명	한국표준 산업소분류	국부조사용 산업소분류	증 감
1	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	6	5	△ 1
2	광 업	4	3	△ 1
3	제 조 업	28	38	10
4	전기개스 및 수도사업	2	2	-
5	건 설 업	11	3	△ 8
6	도, 소매업및음식, 숙박업	7	4	△ 3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	6	1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5	4	△ 1
9	사회및개인서비스업	17	8	△ 9
1.0	분류 불능산업	1	1	-
	총 계	86	74	△ 12

한국표준산업 소분류 조정내역

한국표준산업 소분류		국부조사용 산업소분류(조정안)		
KSIC NO	산업분류명		산업분류명	KSIC NO
111	농업	111	작물생산업	1111
		112	축산업	1112
112	농업서비스업	113	농업서비스 및 수렵업	112,113
113	수렵업			
121	영림업	120	임업	12
122	벌목업			
220	원유 및 천연가스채취업	-	-	-
311-	식료품제조업	311	도살고기, 낙농과실, 해산물 통조림 및 가공저장업	3111-
312		312	도정 및 제분업	3114
		313	빵제품, 설탕과자 및 국수제조업	3116
		314	설탕제조업	3117
		315	동식물 유지 기타식료품 및 사료제조업	3119
				3118
				3115
				3121
321	섬유제조업	321	방직 제사 및 직조업	3211,3216
		322	기타 섬유제조업	3212-3215
				3217,3219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3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비료유리제조업 제외)	3511,
				35125,35129
				3513

한국표준산업소분류		국부조사용 산업소분류 (조정안)		
KSIC NO	산업분류명		산업분류명	KSIC NO
		352	비료제조업	35121- 35124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53	의약품 제조업	3522
		354	기타 화학품 제조업	3521, 3523 3529
384	운수장비 제조업	384	선박 건조 및 제조업	3841
		385	철도장비 제조업	3842
		386	자동차 제조업	3843
		387	기타 수송 기계 제조업	3844, 3845 3849
521	연관, 난방 및 관련공사업	520	전문직별 건설업	52
522	도장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업			
523	전기 공사업			
524	석공 및 미장공 사업			
525	목공사업			
526	지붕 잇기 및 합석공사업			
527	구조강 전립업			
528	방수, 방습 및 내화공사업			
52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문직별 건설업			

한국표준산업 소분류		국부조사용 산업소분류 (조정안)		
KSIC NO	산업분류명		산업분류명	KSIC NO
611	일 반 도 매 업	610	도 매 업	61
612	상 품 중 개 업			
613	무 역 업			
621	일 반 소 매 업	620	소 매 업	62
622	중 합 소 매 업			
711	육 상 운 수 업	712	철 도 운 수 업 도 로 운 수 업	7111 7112-7116
841	용역업, 기계장비 임대 업 제외	840	용 역 업	84
842	기계 및 장비 임대업			
931	교육 서어비스업	931	교육학술연구기관	931
932	학술 연구 기관		서어비스업	932
934	기 타 사회복리 기구	933	기 타 사회서어비스	934, 935
935	기업, 전문 및 노동단 체		업	939
939	기 타사회석어비스업			
941	영 화 및 기 타 연에서 어비스업	940	오락 및 문화 서 어비스업	94
942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및 달리분류 되지않은 기타 문화 서어비스업			

한국 표준산업소 분류		국부조사용산업소분류		
KSIC NO	산업분류명		산업분류명	KSIC NO
949	달리분류되지 않은 오 락서서비스업			
951	달리분류되지 않은 수 선업	950	개인및가사서비스업	95
952	세탁 및 염색업			
953	가사 서비스업			
959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0	국제및 기타 외국기관	-	-	-

< 별첨 2 >

사용자주의에 의한 자본 Stock 작성 (안)

1. 현 황

가. 제 1 회 국 부 통계 조 사 에 서 법 인 기 업 은 자 산 의 사 용 자 주 의 에
의 한 자 본 S t o c k 집 계 를 소 유 자 주 의 에 의 하 여 조 사 한 소 유
자 산 자 료 상 의 대 여 자 산 액 을 부 문 별 로 조 정 하 여 산 출 하 는
방 식 을 택 하 고 개 인 기 업 은 임 차 자 산 을 조 사 하 여 소 유 자 주 의 및
사 용 자 주 의 에 따 른 자 료 를 작 성 하 였 음.

나. 제 2 회 국 부 통계 조 사 를 위 한 시 험 조 사 에 서 는 가 계 부 문 을 제 외
한 전 지 부 에 서 각 부 문 별 로 임 차 자 산 에 대 한 조 사 를 실 시 하
고 있 음.

2. 필 요 성

자 본 계 수 작 성 을 위 하 여 는 자 본 S t o c k 를 그 본 질 적 기 능 인
생 산 능 력 면 에 서 파 악 할 때 소 유 측 면 보 다 는 사 용 측 면 에 관 계 가
깊 으 므 로 기 업 부 문 의 자 산 을 사 용 자 를 중 심 으 로 집 계 하 여 야 함.

3. 방 안

가. 자 본 계 수 작 성 을위 한 자 본 스 톡 은 기 업 부 문 에 한 하 므 로 기 업
부 문 의 경 우 다 음 과 같 이 조 사 하 도 록 함.

1) 소 유 자 산 은 ' 자 기 사 용 자 산 ' 과 ' 대 여 자 산 ' 으 로 구 별 하
여 조 사 함.

2) 임 차 자 산 은 건 물 의 경 우 에 는 물 량, 임 차 년 도, 임 차 시 신 품
중 고 품 구 분, 임 차 시 중 고 의 경 우 경 과 년 수 를 그 밖 의 자 산

은 취득가격을 추가조사함.

단, 취득가격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는 시가를 조사하여 총국부, 순국부에 포함 시킴.

나. 추계방법

총국부 = 소유자산의 총계

소유자산 = 자기 사용자산 + 대여자산

사용자산 = 소요자산 - 대여자산 + 임차자산

다. 임차자산의 평가

건물 : 건물 평가기준표상 단가 × 물량 = Gross

Gross × 잔가율 = Net

기타 : 재조달 가격 평가방식에 준함.

(취득가격 × 물가배율 × 잔가율)

시가 = Net = Gross

< 별첨 3 >

조사대상처별 업종분류 (안)

1. 현 황

○ 제 1 회 국부통계조사시 자산의 산업분류는 기업부문 (법인 및 개인기업)의 주생산품에 해당되는 자산에 그 기업의 전체 자본 Stock을 분류하였음.

○ 제 2 회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시험조사시에는 법인 및 개인기업은 모두 제품별 생산액과 경제활동별 수입액을 조사하고 그 비율에 따라 자본 Stock를 산업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음.

2. 필요성

기업 부문을 주제품의 업종에만 의존하여 산업분류를 하는 경우 부제품이나 부수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업종이 반영되지 않아 업종별 자본계수 산출에 정확을 기할 수 없으므로 부제품이나 부수적인 활동도 업종분류에 반영하고자함, (자본계수 작성을 위한 생산액 자료인 I-O자료의 경우 생산품목별로 업종분류하였음).

3. 방 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법인기업 및 정부기업은 산업별 생산액 (판매액) 또는 경제활동별 수입액을 조사하여 자본 Stock를 생산비율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고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회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제품의 업종에 따라 전체 자본 Stock를 업종분류 하도록 함.

가. 주업종에 따른 모집단으로 표본설계 하였음.

나. 개인기업의 경우 자산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생산액에 따라 취급업종을 분류할 경우 부업종에 해당하는 자본 Stock는 극소할것임.

<제 32차>

1977.12.20

1. 자본계수 작성을 의하여 제 2 회 국부통계조사에 반영할 사항을 검토 보완하여 차기 확대실무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이 확정하였음.

첨 부 : 1. 국부통계조사의 내용조정

가. 사용 자주의에 의한 자본스톡 작성 (안)

나. 조사대상처 별 업 종분류 (안)

다.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산업분류의 조정 (안)

라. 자산분류에 Commodity Base 에 의한 분류 보완 (안)

<별첨> 사용자주의에 의한 자본스톡 작성 (안)

1. 현 황

- 가. 제 1 회 국부통제조사에서는 법인기업의 경우 소유자주의에 의거 조사, 제표되었으며 개인기업의 경우 소유자산에 병행하여 임차자산도 조사되었으나 소유자산에 한하여 제표 하였음.
- 나. 제 2 회 국부통제조사를 위한 시험조사에서는 각 부문별로 임차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 필요성

자본제수 작성을 위하여는 자본스톡을 그 본질적 기능인 생산 능력면에서 파악할 때 소유측면 보다는 사용측면에 관계가 깊으므로 기업부문의 자산을 사용자 중심의 집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방 안

- 가. 자본제수 작성을 위한 자본스톡은 기업부문에 한하므로 기업부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조사하도록 함.

- 1) 소유자산은 “자기사용자산”과 “대여자산”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2) 임차자산은 건물의 경우 “물량”, “임차년도”, “임차시설, 중고구분”을 조사하고 건물이외의 자산의 경우 “신품가격”을 추가조사함.

나. 추계방법

총국부 = 소유자산의 총계

소유자 산 = 자기사용자산 + 대여자산

사용자산 = 자기사용자산 (소유자산 - 대여자산) + 임차자산

다. 임차자산의 평가

1) 건물의 경우

재취득가액 = 건물 평가기준표상 단가 × 물량

재조달가액 = 재취득가액 × 잔가율

2) 건물의 자산의 경우

재취득가액 = 신품가액

재조달가액 = 재취득가액 (신품가액) × 잔가율

단, 임차시 중고품의 경우 내용년수는 임차시 내용년수가
높에 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차후 경과년수를 합산하여
산출토록함.

조사대상처별업종분류 (안)

1. 현 황

가. 제 1 회 국부통제조사시 자산의 산업분류를 기업부문 (법인 및
개인기업)에서는 주업종에 따라 사업체의 자산을 일괄 분류
하였음.

나. 제 2 회 국부통제조사를 위한 시험조사시에는 개인기업의 경우
동일사업체의 경우 취급업종에 따라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비율로 조사하여 한 사업체의 자산을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며 법인 부문에서도 시험조사할 예정임.

2. 필요성

기업부문을 주업종에 만 의존하여 산업을 분류할 경우 부수적인 경제활동에 관한 업종의 자산이 업종별 자본스톡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업종별 자본계수 산출을 위하여 부수적인 업종에 대한 분류가 가능토록 하여 업종별 자본스톡의 정확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방 안

가. 제 1 안

한사업체가 영위하는 업종이 다수일 경우에는 동 사업체의 자산을 공정 에 따라 업종별 자산액을 조사하여야 하나 공정 에 따른 자산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함.

나. 제 2 안

1) 사업체별로 업종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비율을 조사하여 동사업체의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음.

가) 한 사업체의 생산품의 종류가 많을 경우 조사원이 산업 분류에 따라 정확한 분류를 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곤란 함.

나)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비율만 조사한다는 것은 정확을 기 하기 곤란함.

다) 업종별 자본계수 (스톡과 후로의 관계)가 상이함에도 자 산을 일률적으로 구분하게 되므로 정확한 배분이 곤란함.

라)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주업종에 따른 모집단을 이용하여

표본설계를 하였음.

다. 결 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법인기업 및 정부기업에 한하여 제 2안에 의거 사업체별 자산액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법인의 경우 78.2월에 실시예정인 시험조사결과에 따라 조사대상처별로 업종을 분류토록함.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산업분류의 조정 (안)

1. 현 황

가. 제 1 회 국부통계조사시 산업분류는 구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라 47개업종으로 분류하였음

나. 제 2 회 국부통계조사 종합지침에서는 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라 87개업종으로 분류토록 하였음.

2. 필 요 성

가. 산업 부문별 자본계수 산출을 위하여는 기존의 생산액 자료인 GNP, I-O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본스톡의 업종분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별 생산활동은 업종에 따라 그 차이가 극심하므로 ①업종별 생산액 ②업종의 상위성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방 안

가. 제 1 안

한국은행의 자본제수 작성방법연구 결과에 따라 작성된 산업분류의 조정(시안)을 업종별 생산액, 상위성, 성장성, 자본제수(68년)등을 고려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 2 회 국부통계조사시 업종분류로 이용토록 함.

나. 제 2 안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조정하여 제 1 안과 같이 업종분류를 재 작성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수반하므로 산업소분류에 따라 제표하고 자본제수 작성을 이용자가 적의 조정 이용토록 함.

-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조정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나 국부통계조사 실시때 마다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업종분류의 연결이 곤란할것임.
-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분류와 연결되므로 조정할 경우 업종별국부의 국제비교가 곤란함.
- 3) 개인기업중 제조업의 경우 모집단 자료중 종업원 5인이 하 사업체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세분하였을 경우 모집단의 정확한 분류가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개인기업의 표본설계와 조사대상처수의 증대로 업무량의 증대를 초래함.

산업대분류별증감대비표

	산업대분류명	한국표준산업소분류	국부조사용산업소분류	증 감	비 고
1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6	5	△ 1	
2	광업	4	4		
3	제조업	28	38	10	
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2	2	-	
5	건설업	11	3	△ 8	
6	도, 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7	4	△ 3	
7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	6	1	
8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5	4	△ 1	
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7	8	△ 9	
10	분류 불능산업	1	1	-	
	총 계	86	75	△ 12	

한국표준산업 소분류의 조정내역

한국표준산업소분류		국부조사용산업소분류			총생산액	비 고
KSIC NO	산업분류명		산업분류명	KSIC NO		
111	농업	111	작물 생산업	1111	2,189,389,6	
		112	축산업	1112	278,583,9	
112	농업서비스업	113	농업서비스 및 수렵업	112,113	42,112,3	
113	수렵업					수렵업자 없음.
121	영림업	120	임업	12	141,398,3	121: 23,786,2
122	벌목업					122: 137,612,1
311-	식료품제조업	311	도살, 고기, 낙농, 과일	3111-	345,565,1	3111:
312	도살: 3111		해산물 통조림 및 가	3114		195,131,8
	과실: 3113		공저장업			3112:
	낙농: 3112					51,777,7
	해산물, 통조림가					3113:
	공저장업: 3114					30,468,5
						3114:
						88,187,1

	빵국수제조업 : 3117 설탕과자 : 3119 기타식료품제조업 : 3121 동식물제조업 : 3115	312 도정 및 제분업 313 빵제품, 설탕과자 및 국수제조업 314 설탕 제조업 317 동식물유지 기타식료품 및 사료제조업	3116 202,056,4 3117 164,421,8 3119 3118 152,338,7 3115 194,715,7 3121	3119 자료없음.
321	섬유제조업 방직 및 제사업 : 3211 직조업 : 3216	321 방직 제사 및 직조업 322 기타 섬유 제조업	3211 1,070,931,7 3216 3212-3215 459,383,9 3217-3219	3211 : 637,139,7 3216 : 433,792
352	산업용화학물 제조업	351 산업용화학물 제조업 (비료제조업제외) 352 비료 제조업	3511, 3512 5 821,590,4 35129, 3513 35121- 123,668,0 35124	

한국표준산업소분류		국 부조사용 산업소분류			총생산액	비 고
KSIC NO	산업분류명		산업분류명	KSIC NO		
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353	의약품 제조업	3522	145,818,6	
		354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3521,3523	164,994,8	
				3529		
384	운수장비 제조업	384	선박 건조 및 제조업	3841	161,967,1	
		385	철도장비 제조업	3842	28,576,4	
		386	자동차 제조업	3843	204,388,2	
		387	기타수송기계 제조업	3844,3845	27,212,6	
				3849		
521	연관, 난방및 관련공	520	전문직별 건설업	52		자료없음.
522	도장도배및 실내장식 공사업					
523	전기 공사업					
524	석공 및 미장공사업					
525	목 공 사 업					
526	지붕잇기 및 함석공 사업					

527	구조 강 전립업					
528	방수, 방습및 내화 공 사업					
529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문직별 건설업					
611	일반도매업	610	도 매 업	61		
612	상품중개업					
613	무 역 업					1,857,899,8
621	일반도매업	620	소 매 업	62		
622	종합소매업					
711	육상운수업	711	철 도 운 수 업	7111	92,763,2	
		713	도 로 운 수 업	7112-7116	591,316,6	
841	용역업, 기 계장비임 대업 제외	840	용 역 업	84	136,575,8	
842	기 계및 장비임대업					
931	교육 서어비스업	931	교육학술연구기관	931	412,991,9	
932	학술 연구기관		서어비스업	932		

한국표준산업소분류		국부조사용 산업소분류			총 생산액	비 고
KSIC NO	산업분류명		산업분류명	KSIC NO		
934	기타사회복지 기구	933	기타사회서비스업	934	63,195,1	
935	기업, 전문및노동단체			935		
939	기타 사회서비스업			939		
941	영화및기타연예비서 서비스업	940	오락 및 문화서비스	94	95,093,2	
942	도서관, 박물관, 식물 원 동물원 및 달리분류 되지않은 기타문화 서비스업					
949	달리분류되지않은 오락 서비스업					
951	달리분류되지 않은 수 선업	950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95	566,970,1	
952	세탁 및 염색업					
953	가사 서비스업					
959	기타 개인서비스업					
960	국제 및 기타외국 기 관	-	-	-		

국 부 조 사 용 산 업 분 류

대분류	항 목 명	중분류	항 목 명	소분류	항 목 명	KSIS NO
1	농업, 수렵 업, 임업및 어업	11	농업 및 수렵업	111	작물 생산업	1111
				112	축 산 업	1112
				113	농업서 어비스 및 수렵업	112 113
		12	임 업	120	임 업	121, 122
		13	어 업	130	어 업	130
2	광 업	21	석 탄 광 업	210	석 탄 광 업	210
		23	금 속 광 업	230	금 속 광 업	230
		29	기 타 광 업	290	기 타 광 업	290
		22	원유및천연개스업	220	원유 및 천연 개스업	220
3	제 조 업	31	음료품및 담배 제조업	311	도살, 고기, 낙농과실, 해산물 통조림 및 가공저 장업	3111- 3114
				312	도정 및 세분업	3116
				313	빵제품, 설 탕 과자및 국수제조업	3117 3119
				314	설탕 제조업	3118
				315	음료품 제조업	313
				316	담배 제조업	314
				317	동식물유지 기타 식료품 및 사료 제조업	3121 3122 3115

대분류	항 목 명	중분류	항 목 명	소분류	항 목 명	KSIS NO
3	제 조 업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321	방직, 제사 및 직조 업, 의복제외	3211 3216
				322	기 타 섬 유제조업	3212- 3215 3217, 3219
				323	의복제조업, 신발 제외	322
				324	가죽, 대용 가죽및 모피제품 제조업, 신발과외복 제외	323
				325	신발제조업, 성형 고무또는프라스틱 신발제외	324
		33	나무및나무제 품제조업 가 구포함	331	목재및목크제조업 가구제외	331
				332	가구및장치물제조 업, 금속 가구 제외	332
		34	종이및종이제품 제조업인쇄 및 출판업	341	종이및 종이 제품제 조업	341
				342	인쇄출판및 관련산 업	342

대분류	항 목 명	중분류	항 목 명	소분류	항 목 명	K S I S N O
		35	화학물과 화학석유석탄 고무및프라 스틱제품제조업	351	산업용화학물, 제조업, 비료, 유리 제외	3511, 35125 3513,
				352	비료제조업	35121- 35124
				353	의약품제조업	3522
				354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3521, 3523, 3529
				355	석유정제업	353
				356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354
				357	고무제품제조업	355
				358	달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제조업	356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석유및석탄제품 제외	361	도자기 토기 제조업	361
				362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362

대분류	항목명	중분류	항 목 명	소분류	항 목 명	KSIS NO
3	제 조 업	37	제 1 차금 속산 업	369	기 타 비 금 속광물 제품 제 조업	369
				371	제 1 차 철 강산업	371
				372	제 1 차 비철금속 산업	372
				381	조립금속제품제조 업, 기 계및 장비제외	381
				382	기 계제 조업, 전 기 제 외	382
				383	전기 기 계기구 제 조업	383
				384	선박 건조및 수선 업	3841
				385	철도장비제 조업	3842
				386	자동차제 조업	3843
				387	기 타수송기 계제조 업	3844, 3845
				388	달 리분류되 지않은 전 문과학측 정및제 어장 비와사 진및 광 학제품제 조업	385
		39	기 타 제조업	390	기 타제조업	390

대분류	항 목 명	중분류	항 목 명	소분류	항 목 명	KSIS NO
4	전기개스및 수도사업	41	전기개스및 중기업	410	전기개스및중기업	410
		42	수도사업	420	수 도 사 업	420
5	전 설 업	51	종합건설업	511	건물건설업	511
		52	전문직별전 설업	512	토목건설업	512
				520	전문직별 건설업	521-529
6	도, 소매및 음식숙박업	61	도 매 업	610	도 매 업	611-613
		62	소 매 업	620	소 매 업	621-622
		63	음식및숙박 업신설	631	음식점업	631
				632	숙박업	632
7	운수창고 및 통신업	71	운수및창고업	711	철도 운수업	7111
				712	도로운수업	7112-7116
				713	수상운수업	712
				714	항공운수업	713
				719	기타운수관련서어비 스업	719
		72	통 신 업	720	통 신 업	720

대분류	항 목 명	중분류	항 목 명	소분류	항 목 명	KSIS NO
8	금융 보험	81	금 용 업	810	금 용 업	810
	부동산 및	82	보 험 업	820	보 험 업	820
	용역업	83	부동 산 업	830	부 동 산 업	830
		84	용 역 업	840	용 역 업	841, 842
9	사회및개인	91	공공행정 및	911	중앙정 부 사 무	911
	서어비스업		국방	912	지 방정 부 사 무	912
		92	위생및유사시	920	위 생 및 유사서	920
			서어비스업		어 비스업	
		93	사회서어비스	931	교 육 학 술 연 구 기 관	931
			업		서 어 비 스 업	932
				932	의 료 보 건, 수 의	933
					서 어 비 스 업	
				933	기 타 사 회 서 어 비	934, 935
					스 업	939
		94	오락및문화서	940	오 락 및 문 학 서 어 비	941, 942
			어비스업		스 업	949
0	분류불능	00	개인및가사서	950	개 인 및 가 사 서 어 비	951-953
			어비스업		스 업	959
0	분류불능	00	분류불능	000	분 류 불 능	000

자산분류에 Commodity Base에 의한 분류보완(안)

1. 현 황

가. 제 1 회 국부통제조 사시 자산분류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별표 “고정 자산 내용년수”에 준하였음.

나. 제 2 회 국부통제조사용 자산분류도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표에 준하되 일본의 자산분류등을 참고하여 작성할 예정임.

2. 필요성

자산분류를 Commodity Base에 의한 분류가 가능토록 하여야만 원천 별자본계수 산출이 가능할것임.

3. 방 안

현재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중에 있는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를 Commodity Base에 의한 분류도 가능하도록 하여 78.1월 중에 국부통제실무자회의 및 확대실무자회의를 거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도록함.

<제 33차 >

1978.1.9

1.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한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안) 중 공통자산에 관한 분류를 검토하였던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공구, 기구 및 비품의 품목분류

1) 공구, 기구 및 비품의 품목분류는 다양하므로 정부기관의 경우 68년도 조사에서 일괄장부가격을 조사하여 총자산액과 순자산액에 합산하였음.

2) 그러나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품목분류가 세분될수록 조사대상 자산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됨.

3) 따라서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품목별로 조사평가토록하되 정부기관과 같이 품목별 조사가 곤란할 경우 총자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하므로 일부 부문에 한하여 통합조사방법을 강구토록함.

나. "113수리 및 치수시설"의 명칭 조정

68년도 조사시에는 이 사항을 "수리 및 급수시설"로 되었으나 제방등 하수시설이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수정하였으나 일본의 경우 동일분류명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113수리, 치수 및 급수시설"로 조정하였음.

다. 기계 및 장치에 관한 분류는 차기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2. 기타사항

가. 다음사항을 각지 부별로 작성하여 78.1.11-1.12까지 본회의에 제출하여 검토 조정하기로 하였음.

1)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안)과 68년도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일본의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의 대비표(한국산업은행)

2)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안)을 기본으로 하여 Data Base에 따른 재분류 가능성 검토(한국은행)

3) 각종 기준표 작성의 세부적인 time schedule

○ 물가배율표, 건물평가기준표 (한국은행)

○ 잔가율표,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한국산업은행)

○ 대동식물 평가기준표, 토지평가기준표 (농수산부)

4) 1차 시험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된 조사표 및 결과표 양식(안)

(각기관 공통)

5) 각지 부별 본조사까지의 세부적인 time schedule

(각기관 공통)

나. 차기 실무자회의 개최

1) 일 시 : 78.1.11 10:00

2) 장 소 : 국부통제조사본부

3) 안 전 :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안) 검토

첨부 :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안) 별책부록편 참조

< 제 34차 >

1978.1.11

1. 기제 및 장치에 관한 분류를 검토하였던 바 문제점이 없었음.

2. Commodity Base에 의한 분류 가능성 검토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한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안)에 대한 Commodity Base에 의한 분류 가능성을 한국은행에서 검토한 결과(별첨 1)를 본회의에서 검토하였던 바 비생산부문인 주택 산업의 명확한 자산 파악이 가능하도록 New SNA분류에 따라 기숙사 및 아파트용 건물을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하고 기타사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안과 같이 하기로 하였음.

가. 소분류 건물부속설비 (103)를 주거용과 비거주용으로 분류하는 사항은 건물부속설비의 자산항목별 구성비가 1.4% (68년도 결과)에 지나지 않고 소규모의 경우 건물평가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으며 업무량이 증가 된다는 이유로 원안과 같이 함.

나. 소분류동물 (171)중 소를 한우와 젖소로 구분하는 사항은 한우, 젖소의 자산이 각각 재고자산, 산업용 자산으로 분석된다는 원칙하에 분류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한우는 산업용 자산에 해당되므로 원안과 같이 함.

3. 기제 및 장치 자산분류검토

농수산부에서 농림 어업용 자산을 별첨 (2)와 같이 세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자산분류, 내용년수 작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농수산부 자체내에서 작성하고 있는 농업용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한 안을 작성하여 농림어업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1.16 한 본회의에 제출 검토기로 하였음.

4. 기타사항

35 차 국 부통제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 1978.1.12 14:00

나. 장 소 : 국부통제조사본부

다. 안 전 :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안) 검토

각종기준표 작성의 Time Schedule 검토

첨부 : 1. Commodity Base에 의한 분류

2. 농업용자산분류

< 별첨 1 >

Commodity Base에 의한 分類可能性 檢討

1. 分類方法

資産을 細目 (資産分類番号 6 digit) 別로 集計함으로써 用途에 따라 統合利用할 수 있도록함.

2. 要改善事項

- (1) 寄宿舍 및 「아파트」用 建物を 住宅으로 分類함. 즉 建物 分類集計를 住宅과 非住宅으로 区分할 수 있도록 할것.
- (2) 小分類建物附屬設備(103)은 住居用과 非住居用으로 区分할것.
- (3) 小分類 動物 (171)中 소는 韓牛와 젖소로 区分할것.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用 途 및 設 備
1 農 業 狩 獵 業 林 業 및 漁 業	11 農 業 狩 獵 業	111 農 業	作物生産및畜産設備

자 산 분 류

細 目	備 考	資産分類番号	耐用年数
主로 金屬製 인것		121101	17
其他 의 것			
(1) 原 動 機			
① 엔 진			
② 발 동 기			
(2) 경 운 機			
①기 본작업기 5종포함			
② “ (추 레라 1 톤)			
③본 체 (작업기종제외)			
④작 업 기			
(3) 트 랙 터			
① 본 체			
②작업기 (46마력용)			
③ 작업기 (19마력용)			
(4) 移 秧 機			
①移秧機 2組			
②移秧機 3組			
(5) 防 除 機 具			
①동력분무기			
②동력살 분기			
③인 력분 무기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用 途 及 設 備

細 目	備 考	資 産 分 類 番 号	耐 用 年 数
(6) 揚 水 機 具			
① 양 수 기			
② 타설식 펌프			
(7) 收 穫 用 機 具			
① 콤 바 인			
② 바 인 더			
③ 탈 곡 기			
(8) 飼 料 加 工 機			
① 절 단 기			
② 분쇄 기			
(9) 穀 物 加 工 機			
① 건 조 기			
② 정 미 기			
③ 현 미 기			
④ 정 맥 기			
⑤ 석 발 기			
(10) 짚 加 工 機			
① 가 마 니 틀			
② 새 끼 틀			

< 제 35 차 >

1978. 1. 12

1.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안)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음.

가. 주택, 비주거용 건물자산 검토

1) New SNA의 주택, 비주거용 건물분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주택은 주로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건물만 말하며 잠정적으로 머물게되는 호텔, 여관, 음식점, 기숙사 기타 이와 비슷한 건물은 비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있음.

2) 또한 한국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GNP 추제도 이러한 분류규정을 따르고 있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국민계정도 New SNA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하므로 이번 국부조사의 자산분류도 동일하게 하는것이 타당함.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에서 이러한 분류방식으로 1.16 까지 주택, 비주거용 건물을 재정리 하기로 하였음.

나. 농업용 자산 검토

농업용 자산의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를 각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부에서 1.14 까지 작성하여 본 회의에서 검토 보완하기로 하였음.

다. 이상의 수정사항을 보완하여 차기회의 (78.1.16 개최 예정)에서 종합 재검토한후 책임자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음.

2. 자산의 범위

가. 제 2 회 국부통제조사의 자산범위는 내용년수만 1년 이상으로 제한 하고 있으나 조사의 편의성에 따라 1970년 일본의 국부조사와 같이 가격의 하한선 (별첨)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자산지부 (한은)의 건의가 있었음.

나. 그러나 일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 133조에 따라 가격 제한을 하고 있으나 실사과정에서는 각 법인기업의 장부에 준하였으므로 (개인기업 동일) 동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국부자료 No 3, 일본 국부통제 관제 자료, P66-P67 및 P85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격에 관한 제한이 없음.

다. 따라서 제 2 회 국부통제조사에서는 정부, 법인의 경우 장부에 수록된 자산을 전수조사토록 하고, 개인기업의 경우 자산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년수 1년이상 (법인세법 규정상의 내용임)인 유형고정 자산을 품목별로 조사토록 하며 가재의 경우 일본과 동일한 방법인 나열된 품목에 따라 조사하기로 하였음.

3. 기타사항

가. 부문별조사표 및 결과표(안) 제출

각 조사지부에서는 담당부문별로 1 차 시험조사결과에 따라

수정보완한 조사표 및 결과표(안)을 78.1.16 까지 조사본부
에 제출토록 하였음.

나. 제 36 차 국부통계실무자회의 개최

1) 일시 : 78.1.16 10:00

2) 장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3) 안건 :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중합 검토

각기관별 조사표 및 결과표 검토

참 부 : 조사대상자산의 내용년수 및 가격의 제한

< 별첨 >

調查對象資産의 耐用年數 및 價格의 制限

	1970年 日 本	1968年 韓 国
政府部門	有形 固定資産 耐用年數：1年以上 取得価額：千円以上 物 品：千円以上	
法人企業	有形 固定資産 耐用年數：1年以上 取得価額：1萬円以上 (64.4以後：3円以上) (70.4 "：5萬円以上)	
個人企業	農林水産業：有固資 耐用年數：1年以上 非農林水産業：有 固 資 耐用年數：1年以上 取得価額：1萬円以上 (64.4와70.4 上과同)	有形固定資産 耐用年數：1年以上
家 計 国营企業	家計資産中耐用年數1年以上 (住宅 耐久財：約160 半耐久財：約400) 有形固定資産：내용년 수：1年以上 취득가액：1萬円以上 (64.4以後：3 ") (72.5以後：5 ") 在庫資産：在庫額 또는 帳簿価額	住 宅 耐久消費財：3천원以上(30) 耐久生産財(10) 動 植 物(7) ◎ 장 부 품 목

<제 36 차>

1978. 1. 16

1.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안)

한국산업은행에서 작성한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안)에 대하여 검토 수정한 사항을 별첨 1과 같이 정리하여 책임자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음.

2. 각 기관별 업무추진 세부일정 조정

각 기관별로 제출한 업무추진 세부일정표를 기본으로 하여 조사본부의 업무일정을 별첨 2와 같이 조정하였음. 단, 국민은행은 본조사 실시기간의 변경사유를 공문으로 조사본부에 제출키로 하였음.

3. 국부통제자료처리

79년도 수행될 국부통제조사 자료처리는 당국의 자료처리 수용능력상 도저히 전부문에 걸쳐 담당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안을 당국제표과와 협의하기로 하였음.

가. 제 1안

당국 자료처리 능력범위 내에서 전산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관중 일부에 대하여는 당국에서 전담처리하고 여타기관은 자체적으로 자료처리토록 함.

나. 제 2안

자료처리 과정인 Punch 및 tape에 수록까지 각기관별로 작업하고 당국에서는 제표만 담당토록 함.

4. 기타사항

가. 각 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 (안)을 접수하여 차기 실무자 회의 시 검토하기로 하였음.

나. 37 차 국부통제 실무자회의 개최

1) 일시 : 78.1.18 14:00

2) 장소 : 국부통제 조사본부

3) 조사표 및 결과표 검토

첨부 : 1. 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 수정내용

2. 조사본부 업무일정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構 造 및 用 途
1. 有形 固定資産	10. 建 物 一般的으로 土地 에 定着하여 주 위를 기둥으로 構成하고 隔壁지 붕으로 外界와 斷絶한 構造物로 사람이 居住 및 使用등의 目的으 로 建築한것과 建物使用의 必要 上 또는 使用을 편리하게 할 目 的으로 建物附屬 設備을 除外한 建物 本體를 말 한다. 建物本體에는 建物 의 基礎기둥 壁 대들보階段 窓 마루, 지붕 및	101 住居用 사람이 居住할 目 的이나 生活을 영위하는데 適合 한 構造로 建築 된 建物 또는 그 一部, 즉 住宅, 旅館「호텔」料理 店 아파트, 寄宿 舍 企業體등의 合 宿所등을 말한다.	A. 鉄筋「콘크리 트」造 또는 鉄 骨, 鉄筋「콘크리 트」造 B. 연 와 造 C. 石 造 D. 「블럭」造 E. 鉄 骨 造 F. 土 壁 造 G. 木 造 H. 木 骨 木骨「몰탈」造 I. 簡易木造 또는 簡易木骨, 木骨 「몰탈」造
		102	A.

耐用年數表修正內容

細目	資產分類 番 號	耐用年數
一般住宅	101101	60
「아파트」用 建物	101102	50
一般住宅	101201	50
「아파트」用 建物	101202	45
一般住宅	101301	50
「아파트」用 建物	101302	45
一般住宅	101401	50
「아파트」用 建物	101402	45
一般住宅	101501	50
「아파트」用 建物	101502	45
住 宅	101601	25
住 宅	101701	25
「아파트」用 建物	101702	23
住 宅	101801	25
「아파트」用 建物	101802	25
觀光「호텔」(觀光事業進興法에 依하여 政府 에 登錄된것에 限한다)	101900 102101	2 40
旅館, 一般호텔, 料理店, 寄宿舍 및 이와類 似的 合宿所	102102	50
事務所, 店舖와 下記以外用의 建物	102103	60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構 造 및 用 途
	從物인 建具(미 닫이 門 선 반등 建物 本體와 不 可分의 内部造作 物)와 店舖「식 터」가 包含된다.	102 非住居用 住居用以外的 모든 建物(事務所店舖劇 場 舞도場, 病院, 工場, 倉庫, 車庫 등 을 말한다. 事務所 店舖, 理髮 所등이 住居用 建 物과 檢 용되어 있 을 경우에는 使用 面積크기에 따라 住居用 非住居用으 로 分類한다. 使用面積의 区分이 不分明한 경우에는 全體를 非住居用으 로 看做한다.	A. 鉄筋「콘크리 트」造 또는 鉄 骨, 鉄筋「콘크리 트」造 B. 연 와 造 C. 石 造

細目	資 産 分 類 番 号	耐 用 年 数
貸席, 劇場, 映画館, 舞臺場, 病院, 学校, 體育場,	102104	50
映画製作用「스테이지」室内「스케이트」場	102105	50
漁市場 및 車庫用建物		
變電所, 發電所, 工場倉庫, 停車場 및 車庫用建物		
가, 劇藥, 化工藥品등을 使用되는 工場으로 서 腐蝕하기 쉬운建物	102106	35
나, 倉庫事業의 倉庫用建物	102107	50
다, 其 他	102108	55
旅館, 一般호텔, 料理店, 寄宿舍 및 이와 類似한 合宿所	102201	45
事務所, 店舖와 下記以外用의 建物	102202	50
貸席, 劇場, 映画館, 舞臺場, 病院, 学校, 體育 館	102203	45
映画製作用「스테이지」室内「스케이트」場, 漁 市場 및 公衆浴場用建物	102204	45
變電所, 發電所, 工場, 倉庫, 停車場 및 車庫 用建物		
가, 劇藥, 化工藥品등을 使用하는 工場으로 서 腐蝕하기 쉬운建物	102205	30
나, 倉庫事業의 倉庫用建物	102206	35
다, 其 他	102207	40
旅館, 一般호텔, 料理店, 寄宿舍 및 이와 類似한 合宿所	102301	45
事務所, 店舖와 下記以外의 建物	102302	50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構造及用途
			D. 骨 造 E. 鉄 骨 造

細目	資産分類番号	耐用年数
貸席, 劇場, 映画館, 舞臺場, 病院, 学校, 體育館	102303	45
映画製作用「스테이지」室内「스케이트」場, 漁市場 및 公衆沐浴場用 建物	102304	45
變電所, 發電所, 工場 停車場 및 車庫用建物 가. 劇藥 化工藥品등을 使用하는 工場으로서 腐蝕하기 쉬운 建物	102305	30
나. 倉庫事業의 倉庫用 建物	102306	35
다. 其 他	102307	40
旅館, 一般호텔, 料理店, 寄宿舍 및 이와類似한 合宿所	101401	45
事務所 店舖와 下記以外用의 建物	102402	50
貸席, 劇場, 映画館, 舞臺場, 病院, 学校, 體育館	102403	45
映画製作用「스테이지」 室内「스케이트」場 漁市場 및 公衆沐浴場用 建物	102404	45
變電所, 發電所, 工場, 倉庫, 停車場 및 車庫用 建物		
가. 劇藥 化工藥品등을 使用하는 工場으로 腐蝕하기 쉬운 建物	102405	30
나. 倉庫事業의 倉庫用 建物	102406	35
다. 其 他	102407	40
旅館, 一般호텔, 料理店, 寄宿舍 및 이와類似한 合宿所	102501	45
事務所, 店舖와 下記以外用의 建物	102502	50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構造と用途
			F. 土壁造 G. 木造

細目	産業分類番号	耐用年数
貸席, 劇場, 映画館, 舞臺場, 病院, 學校, 體育館	102503	45
映画製作用「스테이지」室内「스케이트」場 漁市場 및 公衆沐浴場用 建物	102504	45
變電所, 發電所工場, 倉庫, 停車場 및 車庫用 建物		
가, 劇藥 化工藥品등을 使用하는 工場으로 腐蝕하기 쉬운 建物	102505	25
나. 倉庫事業의 倉庫用 建物	102506	35
다. 其 他	102507	40
事務所 店舖와 下記以外用의 建物	102601	25
工場 및 倉庫用 建物		
가, 劇藥, 塩, 지리礎石 기타 潮解性이 있는 固體를 裝置하기 위한 建物	102602	10
나, 其 他	102603	15
旅館, 一般호텔, 料理店, 寄宿舍 및 이와類似한 合宿所	102701	23
事務所 店舖와 下記以外用의 建物	102702	25
貸席, 劇場, 映画館, 舞臺場, 病院, 學校, 體育館	102703	23
映画製作用「스테이지」및 漁市場 公衆沐浴場用 建物	102704	23
變電所, 發電所, 工場, 倉庫, 停車場 및 車庫用 建物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構造 및 用途
			H. 木骨, 木骨「물 탈」造

細目	産業分類番号	耐用年数
가. 劇藥, 化工藥品 등을 使用 하는 工場으로 腐蝕하기 쉬운 建物	102705	10
나. 倉庫事業의 倉庫用 建物	102706	15
다. 其 他	102707	15
旅館, 一般호텔, 料理店, 寄宿舍 및 이와類似한 合宿所	102801	25
事務所, 店舖와 下記以外用의 建物	102802	25
貸席, 劇場 映画館, 舞臺場, 病院, 學校, 體育館	102803	25
映画製作用 「스테이지」 및 漁市場 公衆 沐浴場用 建物	102804	20
變電所, 發電所, 工場, 倉庫, 停車場 및 車庫 用 建物		
가. 劇藥, 化工藥品 등을 使用 하는 工場으로서 腐蝕하기 쉬운 建物	102805	8
나. 倉庫事業의 倉庫用 建物	102806	15
다. 其 他	102807	15

< 별첨 2 >

조 사 본 부 업 무 일 정

1. 부문별 조사세부계획

부 문	업 무 내 용	일 정	비 고
1. 종합검토	1. 시안 작성	-1.16	
	2. 심의, 검토		
	○ (확대) 실무자 회의	1.16-1.20	
	○ 관계기관 협의	1.21-1.28	
	○ 자문위원회	2.3	
	○ 책임자회의	2.7	
2. 가 제	1. 안 작성 (표본포함)	-1.31	
	2. 심의, 검토		책임자회의는
	○ (확대) 실무자회의	2.1-2.4	종합검토시
	○ 통제위원회	2.10	(2.7) 로대체
	3. 확 정	2.15	
3. 정 부	1. 안 작성	-3.5	정 부기 관은
개 인	2. 심의, 검토		2.28까지
(농수산부 및 중소기업은)	○ (확대) 실무자회의	3.2-3.12	
	○ 자문위원회	3.18	
	○ 책임자회의	3.22	
	○ 통제분과회의	3.29	
	○ 통제위원회의	4.6	
	3. 확 정	4.9	

부 분	업 무 내 용	일 정	비 고
4. 법 인 개인 (국 민은행)	1. 안 작성 2. 심의, 검토 ○ (확대) 실무자회의 ○ 자문위원회 ○ 책임자회의 ○ 통계분과회의 ○ 통계위원회 3. 확 정	- 5.10 5.11-5.14 5.20 5.24 5.31 6. 7 6.11	

2. 각종 기준표 작성일정

업 무 내 용	일 정	비 고
1.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		
1) 안 작성	- 1.7	
2) 심의, 검토 ○ (확대) 실무자회의 ○ 책임자회의 ○ 통계분과회의 ○ 통계위원회	1.9-1.16 1.20 1.31 2.10	가계 부문계획 안과함께 검토
3) 확 정	2.15	
2. 잔가율표 대동식물 평가기준표		
1) 계획안 작성	- 2.20	

업 무 내 용	일 정	비 고
○ (확대) 실무자 회의	2.21-2.28	
○ 자문위원회	3.8	
2) 안 작성	-5.11	
○ (확대) 실무자 회의	5.11-5.15	
○ 자문위원회	5.20	법인 및 개인 (국민 은) 외 검 토일정과 동일
○ 책임자회의	5.24	
○ 통제분과회의	5.31	
○ 통제위원회의	6.7	
3) 확 정	6.11	
3. 물 가배 율 표		
건물평 가 기준 표		
1) 계획안 작성	-2.20	
○ (확대) 실무자 회의	2.21-2.28	
○ 자문위원회	3.8	
2) 안 작성	-5.31	
3) 심의, 검토		
○ (확대) 실무자 회의	6.1 -6.4	
○ 자문위원회	6.10	
○ 책임자회의	6.15	
○ 통제분과회의	6.22	
○ 통제위원회의	6.29	
4) 확 정	7.2	

< 제 37 차 >

1978. 1. 18

1. 조사표 및 결과표 검토

각 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 법인, 가계 부문 (조사본부 담당), 개인 부문 (국민은행 담당) 2개 반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가계 부문 조사표, 결과표 및 개인 부문 결과표 일부를 수정하였음.

잔여분에 대하여는 1. 19에 속개되는 본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음.

2. 비영리단체 자산의 구분

종합 보고의 소유주체별 결과표 작성시 개인기업부문에서 비영리 개인단체에 관한 모집단 파악이 곤란하고 동 자산의 크기가 극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인기업에 포함시켜 결과표를 작성하는 안과 경제활동측면에서 볼 때 New SNA 분류에서 구분되어 있고 정부부문, 법인부문에서는 비영리단체 자산이 포착되므로 분리시켜 결과표를 작성하는 안이 제기 되었음. 따라서 이를 차기 실무자회의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조정하기로 하였음.

3. 임업 (인공림) 자산의 조사방법

임업자산의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대별됨.

가. 임업 전체자산을 산림청에서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간접 추계하고

나. 각 소유주체별로 각기관이 분담조사

따라서 이를 1. 19 실무자회의에서 산림청 관계 직원의 자문을 구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음.

4. 국부통제조사 세부 계획서 및 종합지침서 보완

책임자회의 결과로 각지부에 통보된 제2회 국부통제조사 세부 계획서(77. 7. 1) 및 종합지침서(77. 9. 2) 내용중 변경된 사항을 각 기관별로 작성 1. 19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하여 검토한 후 차기 책임자 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음.

5. 기타사항

제 38 차 국부통제 실무자회의

가) 일시 : 78. 1. 19 14:00

나) 장소 : 국부통제조사본부

다) 안건 : 각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 검토
세부 계획서 및 종합지침서 검토

< 제 38 차 >

1978. 1. 19

1. 인공림의 범위 및 조사방법

인공림의 범위 및 조사방법에 관하여 산림청 관계 직원의 자문을 구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이를 농수산부에서 산림실태조사 (산림청에서 항공사진에 의한 조사, 75년도 실시 및 80년도 실시예정) 결과를 기초로 간접 추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음.

가. 인공림의 개념 및 범위

“인공림”이란 임야지에 정지작업을 하여 인력, 물량을 투하하여 조성된 조림임. 단 인력을 통하여 직접 식목은 하지 않았지만 사후관리 철저히 하였을 경우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인공림으로 간주 할 수 있음.

나. 인공림의 현황

국 유 림	민 유 림	
	공 유 림	사 유 림
○산림청에서 관리 (전산림의 20%)	○각시도에서 관리 (전산림의 5%)	○개인이 관리 (전산림의 75%)
○현황파악이 가능	○현황파악이 곤란	○현황파악이 불가능

다. 인공림 파악의 제약성

1) 정지 작업을 하여 식목한 경우라도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현 조립 면적을 서류에 의존하여 파악할 수 없음(일정한 장소에 2-3차에 걸쳐 식목한 경우가 발생)

2) 성공적으로 관리가 잘 되었다하더라도 그후 개간사업, 공업단지등의 건설로 그 조립면적은 유동적임.

3) 소유주체별로 파악하고자 할 때 식목, 육림등에 따라 대집행이 있으므로 인공림의 소유가 불명한 사례가 있음.

4) 조립실적 및 평가를 연차별로 작성되어야 하나 정부상에는 1960년 대 이전의 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태임.

2. 임업, 수렵업, 양묘업, 육림업, 벌목업, 제탄업 등의 범위

농수산부의 자문에 응하여 임업부문의 조사대상 사업체 범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구 분	업 체 수	산 출 근 거
1. 수 렫 업	(없음)	금 렫
2. 양 묘 업	133	양협회원 133명중 양묘가 주업인 자는 1개도 3-5명 추산
3. 육 림 업	46	산림가 500명 (모범 62, 법인 6, 우수 207, 자영 225) 중 직업이 임업인 자는 46명 (생업이 임업인자에 한하여 조사)
4. 벌 목 업	(없음)	벌목을 대형화로 하였든 임산협회원은 전부 법인이었고 소형화 벌목업은 제제소의 경영자이므로 제조업에서 자산이 파악됨.

구 분	업 체 수	산 출 근 거
5. 달리 분류 되지않는 영림업	총 1,200	(1) 제탄업 155 명 (한국목탄생산협회회원) (2) 수지생산 및 증류- 21 명 (한국수지생산협회원 22 명중 법인 1 명을 제외) (3) 표고재배업 - 총 1 천명추산 (산원회원) (1 인평균 총 80 m^3 재배) ※송이채취, 굴피채취, 갈정채취 등은 산원 계통 생산수집 되므로 종사자는 고용원 으로 인정됨

3. 국부통계 조사자료 처리

Tape 관리, 종합결과표 작성면에서 볼 때 당국에서 일괄 전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기관별로 자료를 Tape 에 수록 하고 당국에서 부문별로 일괄 제표하는 방안을 당국의 제표과 와 협의하여 책임자 회의에 상정기로 하였음.

4. 제 39 차 실무자 회의 개최

가. 일시 : 78. 1. 20 10:00

나. 장소 : 국부통계 조사본부

다. 안건 : 1) 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 검토

2) 제 2 회 국부통계 세부 계획서 및 종합지침서 검토

< 제 39 차 >

1978. 1.20

1.21

1. 제 2 회 국부통제조사 종합지침서 검토

종합지침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책임자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별첨 1 참조)

가. 토지조성 및 개량

1) 건물의 경우 공사중인 것은 건물가제정에 포함하는 것과같이
토지에 투하된 조성비 및 개량비가 마땅히 계상되어야만 하
나 조성 및 개량한 토지소유자가 바뀔 경우 토지조성비 및
개량비가 파악되지 않는 모순이 있음. 또한 국민대차대조표의
분류에서도 토지 조성비를 포함하는 토지(시가개념으로 평가)
는 재생산불가능한 자산에 분류하고 있음. (별첨 2 참조)

2) 따라서 이번 국부통제 조사에서는 "토지조성 및 개량"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다만 각부분별로 토지종류(대지, 임야지,
논, 밭, 기타)별로 면적을 조사하여 국민대차대조표 완성을
위한 토지가 기존자료에 의거 간접추계되면 소유주체별로 배
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소유자산의 평가방법

임차자산의 증고품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내용년수의 $1/2$
이 경과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는 방법과 같이 소유자산
중 증고품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시 경과년수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이를 적용 하자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소유자산중

중고품 취득시 경과년수를 모를경우는 대부분 경과년수가 오래된 것으로 예상되어 자산이 고평가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소유자산에 한하여는 중고품 취득시까지 경과년수를 추적하여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경과년수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품가격과 잔존가액(시가)을 조사하여 각각 총자산액과 순자산액에 포함하기로 하였음.

다. 비법인 단체 자산

종합지침서에는 비법인 단체의 소유자산을 별도 조사하여 구분 제표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들 단체가 운영하는 자산은 개인기업에서 누락없이 포착되고 이와같은 단체가 자체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은 극소하므로 별도로 구분 제표할 의미가 없음. 따라서 소유 주체별 결과표 작성시에는 개인기업에 포함하여 제표(일본의 경우 동일)토록 하되 경제부문별 결과표 작성시 별도 구분하여 비영리단체 부문에 포함하여 New-SNA의 분류방식에 일치토록 하였음.

2. 세부 계획서 검토

제2회 국부통계조사 세부계획서(77. 7. 5)를 검토한 결과 별첨과 같이 수정하여 책임자 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음(별첨3참조)

3. 각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 검토

각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를 검토하여 일부 수정하였고 수정된 사항에 각지부별로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를 작성. 1. 23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제출 종합하기로 하였음.

4. 기타사항

제 40 차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 78. 1.23 10:00

나. 장 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다. 안 건 : 각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 검토

첨부 : 1. 종합지침서 (수정내용)

2. 세부 계획서 (수정내용)

3. 토지조성 및 개량에 관한 고찰

〈별첨 1〉 綜合 指針 書 (修 正 內 容)

1. 調查事項 (土地造成 및 改良)

政府 및 法人部門에 있어서는 土地에 關하여 土地種類別 (塋地, 林野地, 논, 밭, 其他) 面積 및 最近再評價額을 調查하여야 한다.

2. 所有主体別 分類

가. 一般政府

1) 中央政府

2)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

나. 政府企業

다. 政府管理企業

라. 法人

1) 營利法人

2) 非營利法人

마. 個人企業 (非法人團體包含)

바. 家計部門

사. 對外純資產

3. 調查方法

1. 一般政府	全 數 調 査	自 計 式
2. 政府企業	"	"
3. 政府管理企業體	"	"
4. 法人資產	"	自計式及他計式

5. 個人企業 및 非法人 団体資産	標 本 調 査	他 計 式
6. 一 般 家 口	"	"
7. 對 外 純 資 産	既存統計利用推計	既 存 資 料
8. 土 地 및 森 林	" (一部部門의 경우 全數 또는 標本 調査)	"

4. 評價方法

가. 中古品 및 資産再評價資産의 評價方法

中古品 및 資産再評價資産에 대한 再取得價格 및 再調達價格
의 評價는 다음 方法에 依한다.

G : 基準時 再取得價格

N : 基準時 再調達價格

P : 取得時價格

R : 取得後 經過年數에 따르는 物價倍率

r : " " " 殘價率

가) 基準時 再取得價格

$$G = P \times \frac{1}{0.3161} \times R$$

但, 0.3161은 經過年數가 耐用年數가 ½이 經過한 後의
殘價率임

나) 基準時 再調達價格

$$N = P \times R \times r$$

나. 賃借資産의 調査 및 評價方法

가) 企業部門에 限하여 使用者主義에 의한 業種別 製表를 위하여 賃借資産에 對한 物量 賃借時期 新·中古区分 新品價格 (建物除外)를 調査한다.

나) 評價方法은

再取得價格 = 新品價格

(建物の 경우 建物評價基準表에 準한 評價額)

再調達價格 = 再取得價格 (新品價格) × 殘価率

但, 殘価率을 爲한 耐用年數는 賃借時 新品의 경우 賃借後 經過年數로 賃借時 中古品の 경우 賃借時 經過年數를 耐用年數에 ½로 하고 賃借後 經過年數를 合算한 年數로 한다.

〈별첨 2〉 細部計劃書(修正內容)

1. 調査期間

- 政府資産 : 1978. 4.24 ~ 7.31
- 法人資産 : 1978. 7.11 ~ 8.20
- 個人資産 : 1978. 7.11 ~ 8.10
(但, 農林魚業部門 : 78. 5.10 ~ 6.20)
- 家計資産 : 1978. 3.10 ~ 4.10

2. 調査対象

가. 国民經濟內에 所在하는 再生産 可能한 有形資産(土地包含)과 對外純資産을 調査対象 資産으로 함.

나. 國內에 所在 (또는 居住) 하는 政府, 地方自治団体, 公共団体, 政府投資機關, 法人, 個人企業, 非法人団体 및 一般家口를 調査対象客체로 함.

3. 機關別業務分掌

調査擔当機關	調 査 部 門	備 考
1. 韓國銀行	1) 政府 및 對外資産 部門	
2. 韓國産業銀行	2) 法人, 資産部門	
3. 農水産部	1) 農林水産業部門, 個人企業 및 非法人団体資産 2) 土地 및 人工林	
4. 中小企業 銀行	1) 鉱業, 製造業, 電氣業 建設業, 都小売飲食宿泊部門 個人企業 및 非法人団体資産	

5. 國民銀行	1) 運輸保管通信業 金融保險 不動產業, 其他 서비스業部門 個人企業 및 非法人團體資產	
6. 調查統計局	1) 家計資產	調查의 總括 및 綜合調整

4. 部門別調查對象客體 (概略)

部 門 別	母 集 團	調 查 對 象
1. 政 府 部 門	15,200 機關 (또는 事業體)	15,200
2. 法 人 部 門	20,000 事業體	20,000
3. 個 人 部 門		
가. 農 林 水 產 業	2,500,000 事業體	約 40,000 標 本 事業體를 3 個機關이 分擔調査
나. 非 農 林 水 產 業	1,218,700 "	
① 鎭 業	4,000 "	
② 製 造 業	90,000 "	
③ 電 氣 外 上 業	100 "	
④ 建 設 業	3,600 "	
⑤ 都小売飲食宿泊業	750,000 "	
⑥ 運輸保管通信業	6,000 "	
⑦ 金融保險不動產業	15,000 "	
⑧. 娯 樂 上 業	350,000 "	
4. 家 計 部 門	6,800,000 家口	10,500(標本)

<별첨 3> 「土地造成 및 改良」에 關한 考案

(日本의 境遇를 中心으로)

1) 定 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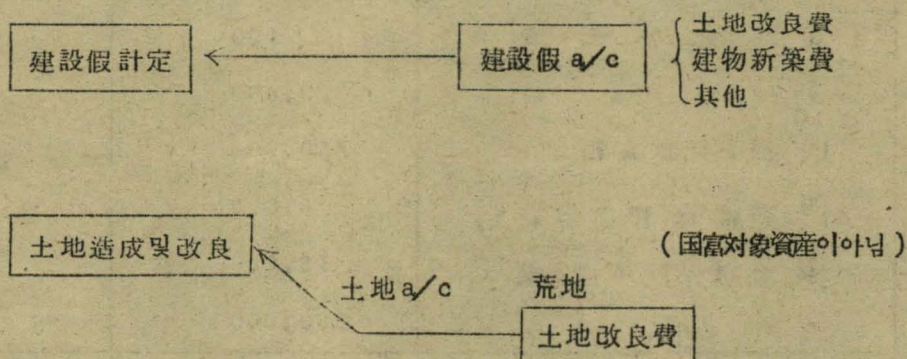
調査対象企業체의 土地 a/c 에 計上된 自己所有土地에 對한 改良 및 造成한 金額으로서 調査時点 現在 帳簿에 記帳되어 있어 把握되는 部分

2) 背 景

調査対象企業체의 建設假計定은 金額 國富項目으로 捕捉되므로 同 計定中에 包含되어 있는 「土地 改良費」도 國富對象 資産이 됨.

한편 土地 a/c 에 計上되어 있는 「土地改良費」도 建設假計定の 「土地改良費」와 同一한 內容이므로 別途로 國富資産項目으로 判斷하여 「土地造成 및 改良」項目에 計上하였음.

<參 考>



3) 問題点

上記와 같은 方法에는 다음과 같은 問題点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됨.

- ①当初 土地를 改良이나 造成한 土地所有主가 바뀌면 土地改良費가 把握되지 않으므로 全体 国富額이 減少되는 現象을 빚음.

A 企 業				B 企 業	
荒 地	100	→ 売 却 →		土地買入	110
土地改良費	10				
計	110				

国 富 資 産		国 富 資 産	
土地改良 및 造成 10		없 음	

- ②国民貸借対照表의 編制나 기타 必要에 依하여 “再生産不可能한 資産”을 調査時 其中的 「土地」(land)와 「土地造成및改良」이 重複됨.

(U · N에서 勸告하는 国民貸借対照表의 標準樣式에는 土地造成費를 包含하는 土地는 再生産 不可能한 資産에 分類하고 있음.

<別添의 国民貸借対照表의 構成項目 I 의 2.1 参照>

同趣旨에 따르면 再生産可能한 有形資産만을 調査하는 日本이나 우리나라의 国富調査対象에서는 土地改良 및 造成은 包含되지 않는 것이 妥当함)

國民貸借對照表의 構成項目

I. STOCKS AND FIXED ASSETS

1. Reproducible tangible assets

1.1 Stocks

1.1.1 Goods producing industries

1.1.1.1. Materials and supplies

1.1.1.2 Work-in-progress

1.1.1.3 Livestock except breeding stock and the like

1.1.1.4 Finished goods

1.1.2 Wholesale and retail trade

1.1.3. Other industries

1.1.4 Stock of government services

1.2 Fixed assets

1.2.1 Residential buildings

1.2.2 Non-residential buildings

1.2.3 Other construction works

1.2.4 Transport equipment

1.2.5 Machinery and equipment

1.2.6 Breeding stock, draught animal, dairy Cattle etc.

2. Non-reproducible assets

2.1 Land

2.2 Timber tracts and forests

2.3 Subsoil assets and extraction sites

2.4 Fisheries

2.5 Historic monuments

II.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1. Gold and IMF special drawing rights
2. Currency and transferable deposits
3. Other deposits
4. Bills and bonds, short-term
5. Bonds, long-term
6. Corporate equities including capital participations
7. Short-term loans, n.e.c
8. Long-term loans, n.e.c
9. Net equity of households on life insurance reserves and on pension funds
10. Proprietor's net equity in enterprises
11. Trade credit and advances
12. Other accounts receivable and payable
13. Other

III. CONSUMER DURABLES

1. Furniture, fixtures, Carpets and other floor coverings

2. Heating and cooking appliances, refrigerators,
washing machines and similar major household
appliances, including fittings
3. Personal transport equipment
4. Wireless and television sets and gramophones
5. Photographic equipment musical instruments,
boats and other major recreational durables

< 제 40 차 >

1978. 1.23

1. 각부문별 조사표 검토

각 부문별 조사표를 최종검토하고 담당기관별로 재정리하여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별첨 1 참조)

2. 가계의 임대자산에 관한 조사방법 검토

가. 문제의 제기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건물·거제등)을 임대하였을 경우 소유자주의에 의한 조사이므로 임차한 사용주체 (정부·기업등)에서는 누락되고, 가구에서는 주택과 가재에 한하여 조사되므로 전 국부에서 누락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 되었음.

나. 해결방안

- 1) 가계에서 자산 (다른가계에 임대한 자산 제외)을 임대하여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체로 분류하여 개인 기업자산조사 지부에서 파악하여야 하고,
- 2) 다만 주거용 건물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가계에서 조사토록 함. 이 경우에 있어서도 주택의 일부를 겸용 (소매업등)할 때에는 건물 소유가계에서 직접 경영할 경우 개인기업부문에서 파악)에는 제외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계부문조사에서 별도 추제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설계토록함. (주택의 일부를 타목적으로 임대하는 것까지 임대업으로 분류 할 수 없기 때문임)

3) 일본의 토지자산 추제 방법의 검토

토지의 소유 주체별 구분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신 국민제정체제 완성을 위한 토지자산의 추제 방
법(별첨 2)을 검토 하였음.

첨부 : 1. 각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별첨부록편참조

2. 일본의 토지자산 추제 방법

再生産不可能한 有形資産에는 土地를 爲始하여 森林, 鉾山, 漁場, 歷史的記念物이 包含된다. 1970年 國富調査에서는 이들 資産이 除外되었기 때문에 別途로 推計하였다.

여기에서 土地資産의 推計에 關하여 새로 開發된 推計方法과 試算結果에 대하여 說明한다.

1. 課稅地

(推計方法)

UN基準에서는 土地를 建物, 構築物의 敷地, 耕地, 其他로 3區分한다. 森林의 土地는 國際報告에서는 森林에 包含시켜야 하지만 여기서는 土地에서 推計한다.

推計方法은 地域別, 地目別로 面積에 單価 (市場價格)를 곱하는 方式으로 行한다.

(1) 宅地

全國評價額은 各都道府縣評價額의 合計額으로 하고 各都道府縣評價額은 都市 (東京都의 特別區包含)에 드는 評價額과 町村에 드는 評價額의 合計額으로 한다.

都市의 評價額은 干先 都市別로 住宅地面積에 單価를 곱하여 住宅地區評價額을 算出한다. 使用되는 資料로 面積은 固定資産概要調査, 單価는 地価公示價格(國土庁) 및 都道府縣地下調査價格으로 한다.

다음에는 住宅地區評價額을 中核으로 固定資産概要調査의 價格差를 利用하여 商業地區, 工業地區, 村落地區의 評價額을 算出

하여 住宅地区評價額에 加算한다.

町村의 評價額도 이 方式에 따른다. 이것을 推計式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

(註) 1970~1974 年の 宅地評價額の 系列은 地価公示 및 都道府縣地価調査의 対象地点이 不充分하므로 地価指數에 따라 遡及推計한다. 即 1975 年期初에 있어서의 宅地の 平均単価에 1975 年을 100으로 한 地価指數를 곱하여 各其 対応하는 面積을 곱하여 各年の 評價額을 推計한다. 使用되는 地価指數는 全国市街地価格指數를 基礎로 作成한 地域別 宅地指數로 한다.
< 推計式 >

$$S_i = \left\{ \sum_{r=1}^n S_{ij} \cdot P_{ij} \right\} \Delta (1 + B_i + r_i + g_i)$$

$$(1 + \xi_i)$$

$$S = \sum_{i=1}^{47} S_i$$

i : 都道府縣을 表示하는 記号

j : 都市를 表示하는 記号

S_{ij} : 固定資産概要調査(土地)에 記載되고 있는 該当都市의
1975 年 住宅地区의 面積

P_{ij} : 地価公示價格 및 都道府縣地価調査價格으로 부터 算出
한 該当都市의 1975 年 住宅地区 平均單価

Δ : 住宅地区單価補正率 (0.9)

B_i : 住宅地区부터 商業地区까지의 都道府縣別 推計比率

r_i : 住宅地区부터 工業地区까지의 都道府縣別 推計比率

g_i : 住宅地区부터 村落地区까지의 都道府縣別 推計比率

z_i : 都市에 드는 評價額을 基礎로 한 町村까지의 推計比率

n : 該当都道府縣內的 都市의 數

S_i : 該当都道府縣의 宅地에 드는 評價額

S : 全國의 宅地評價額 (1975 年期初)

(2) 畚, 田, 林地

全國評價額은 各都道府縣評價額의 合計額으로 하고 各都道府縣評價額은 一般的인 畚, 田, 林地에 드는 評價額과 宅地介在의 畚, 田, 山林에 드는 評價額의 合計額으로 한다. 推計式은 다음과 같다.

< 推計式 >

$$S_i = (SA \cdot PA + SB \cdot PB + SC \cdot PC) + (S_i \cdot \theta_i' + S_i \theta_i'' + S_i \theta_i''')$$

$$S = \sum_{i=1}^{47} S_i$$

SA·SB·SC : 固定資産概要調書(土地)에 記載되고 있는 該当都道府縣의 一般的인 畚·田 山林의 面積

PA PB PC : 該当都道府縣의 一般的인 畚, 田 山林에 드는 平均單價

S_i : 該当都道府縣의 (1)에 依한 宅地評價額 $\theta_i', \theta_i'', \theta_i'''$: 該当都道府縣의 宅地評價額을 基礎로 한 宅地介在의 畚, 田, 山林에의 評價額의 推計比率

S_i : 該当都道府縣의 畓, 田, 山林에 드는 評價額

S' : 全國의 畓, 田, 山林에 드는 評價額

- (3) 塩田, 鉾泉地, 池沼, 牧場, 原野, 雜種地 全國評價額은 各都道府縣評價額의 合計로 하고 各都道府縣評價額은 該当都道府縣의 畓田, 山林의 評價額을 基礎로 다음과 같이 推計한다.

< 推計式 >

$$S''_i = S_i \cdot W_i$$

$$S'' = \sum_{i=1}^{47} S''_i$$

S'_i : 該当都道府縣의 (2)에 依한 畓田山林의 評價額

W_i : 該当都道府縣의 宅地評價額을 基礎로 塩田, 鉾泉地, 池沼, 牧場, 原野, 雜種地の 合計値의 評價額에의 推計比率

S''_i : 該当都道府縣의 塩田, 鉾泉地, 池沼, 牧場, 原野, 雜種地の 評價額

S'' : 全國의 塩田, 鉾泉地, 池沼, 牧場, 原野, 雜種地の 評價額

2. 非課稅地

(推計方法)

非課稅地에는 中央政府機關, 地方政府機關, 民間非營利團體 등이 包含된다. 中央政府機關 및 地方政府機關의 土地評價는 財産台帳 등의 評價額을 基礎로 하여 新 SNA 의 制度部門과 對替했다.

既存資料로서 土地評價額이 把握안되는 機關에 對해서는 필요에 따라 양키트 調査를 實施하였다.

民間非營利團體에는 宗教法人 教育機關 醫療機關의 土地保有가

많은데 各団体別로 面積에 單価를 곱하는 方式으로 推計한다.

한편 道路 하천등은 UN基準에서는 評價의 対象外이므로 評價를 아니하며 今後各國의 動向을 살피면서 対応한다.

(1) 中央政府機關

(가) 政府會計 (一般會計, 特別會計)

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國有財産特集)에 記載된 土地價格에 依한다.

- | | | |
|---|---|---------------------|
| i) 特殊銀行, 公庫 등
ii) 会社 公團 管團
iii) 事業團
iv) 特殊会社 | } | ○ 앙케트 調査등에 依해 集計한다. |
|---|---|---------------------|

(2) 地方政府機關

(가) 普通會計 (一般會計, 公官企業會計 以外의 特別會計)

自治省 「公共施設狀況 調査」에 依한 都道府縣分과 市町村 分の 土地面積을 都道府縣마다 宅地 畚田山林 및 其他 区分後에 各其의 面積에 都道府縣別 單価를 곱해서 推計한다.

1 公營企業會計

法適用企業에 있어서는 自治省編 「地方公營企業年總」의 貸借对照表의 土地価額에 依한다.

iii 財産區

財産區有地의 面積을 都道府縣別로 宅地 畚田 山林 原野 및 雜種地로 区分後 各其의 面積에 都道府縣別 單価를 곱해서 推計한다.

1v 公社關係

○ 土地開發公社

自治省調査의 「全國土地開發 公社의 先行 取得用地의
取得用地의 保有狀況에 依한다.

○ 道路公社

文書照會에 依해 面積과

價格을 調査集計 한다.

○ 住宅供給公社

土地評價額의 推計方法 概略

土地의 評價額은 課稅評價地에 關係되는 評價額, 非課稅
地에 關係되는 評價額 및 其他 土地에 關係되는 評價額
의 合算額으로 한다.

(1) 課稅評價地에 關係되는 評價額

宅 地

畓

田

山 林

(國定資産 概要調査에 依한 都道府縣

의 地目別 面積)

× (地価公示價格등에서 算出한 都市別

또는 都道府縣의 平均單価)

塩 田

鉱泉地

池 沼

牧 場

原 野

雜種地

固定資産 概要 調査書에 依해 固定資産

評價額을 基礎로 推計

(2) 非課稅地에 關係되는 評價額

國有地—大藏省調査의 財政金融統計 月報

에 依한 國有財産台帳 價格을 基礎로 推計

公有地—自治省調査의 公共施設狀況 調査에 依한

施設을 宅地 畚 田 山林 其他의 地目으로

区分 하고 施設의 土地面積에 都道府縣別

單價를 곱한다.

民間非營利団体—該当団体が 所有하는 土地의 所有面積

및 簿価등에 依해 推計

道路 都市公園—宅地의 評價額 등을 基礎로 하여 推計

湖沼・河川・海辺—評價아니한다.

(3) 其他 土地의 評價額

所屬未定地—國土地院公表의 面積등을 基礎로 하여 推計

< 제 41 차 >

78.1.25

1. 토지의 소유주체별 구분조사 필요성 검토

가. 국민대차 대조표상의 재생산 불능자산의 내용

11.1 토지 (Land)

11.1.1 건물, 구축물 부지

11.1.2 경작지

11.1.3 기 타

11.2 삼림 (Timber Trocts and Forests)

11.3 지하자원과 추출광상 (Subsoil assets and extraction sites)

11.3.1 석탄, 석유, 천연가스 매장분 및 광상

11.3.2 금속광물 매장분 및 광상

11.3.3 기타 비금속 광물 매장분 및 광상

11.4 수산자원 (Fisheries)

11.5 문화재 (Historic Monuments)

나. 국민 대차 대조표 작성을 위한 토지의 구분

1) 건물, 구축물 부지

2) 경작지

3) 기타 (개인소유의 오락지, 공원부지, 정원 등)

4) 임야지

다. 국민 B/S 상 산업별 분류

1) 재생산 가능자산 : 상품생산업, 도소매업, 기타산업,
정부서비스업으로 구분

2) 재생산불능자산 : 구분을 요하지 않음.

라. 국민 B/S 상 국민자산의 소유주체별 분류

1)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주체별 분류를 요구하지 않음.

2) 그러나 별도 필요에 의하여 재생산 가능 자산에 대하여
소유주체별 구분조사가 가능하나

3) 재생산 불능자산은 소유주체별 구분이 불가능한 부분

(수산자원, 문화재등)이 있으므로 그 분류의의를 상실함.

마. 따라서 재생산 불능자산에 대하여는 소유주체별 분류를 피하고
토지의 종류별로만 기존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추계하는 것이 효율적임.

<제 42 차>

78.1.27

1. 대동식물 평가 기준표 작성방법 검토

농수산부에서 시험 작성한 대동식물 평가 기준표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안을 작성토록 하였음. (별첨 1)

가. 대동식물중 동물은 유용, 운반사역용, 번식용, 종부용, 경주용이며 식물은 방풍림, 수원림, 과수, 뽕나무, 기타 재배 식물이며 판매목적의 육축(肉畜)은 재고자산, 관산용, 홍행용, 대부용, 의료용 애완용은 기구, 비품에 분류함.

나. 평가 기준표상의 분류,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평가액 산출방법을 명시토록 하였음.

다. 자산분류 및 내용년수표상의 대동식물을 포괄하도록 하고 동 표의 육성년수에 부합되도록 함.

라. 이상의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 시안을 78.2.20부터 국부 통계 실무자회의에 상정하여 검토하기로 하였음.

2. 국부통계를 위한 홍보계획 검토

조사 본부에서 준비한 자료(별첨 2)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

가. 조사본부 주관으로 시행할 제물선전의 경비는 각 기관이 부담하되 기관당 200만원 이내로 함.

나. 가두 선전중 육교현판은 국부통제가 실시되는 3월초, 정부부문
및 개인기업(농림업) 부문이 실시되는 5월초, 법인 부문 및
개인기업(비농림 어업) 부문이 실시되는 7월초 등 3회에
 걸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함.

다. 제물선전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음.

1) TV대담 문안 준비

가) 국부에 관한 해설 중심(한국은행)

나) 국부통제조사에 관한 광고중심(국민은행)

2) 반상회(78.2월) 회보수록 문안준비(중소기업은행)

3) 매스콤을 통한 뉴스 보도자료 문안준비(한국산업은행)

첨부: 1. 대동식물 평가기준표(시험안)

2. 홍보 계획서(초안)

< 별첨 1 >

대동식물 평가기준표 (시험안)

돼지 및 기타가축 평가기준표

	중 돼 지		큰 돼 지		염 소 (큰 것)		토 끼		닭	집 오리	젖 산양
	암 컷	수 컷	암 컷	수 컷	암 컷	수 컷	새 끼	어 미	(큰 것)	(큰 것)	(암 컷)
서 울	57,300	56,400	100,600	100,400	28,300	27,100	450	1,990	2,250	1,740	47,080
부 산	56,900	56,600	102,100	101,400	27,100	28,300	480	1,720	2,630	1,700	57,540
경 기	57,300	56,400	100,600	100,400	28,300	27,100	450	1,990	2,250	1,740	47,080
강 원	64,300	63,000	109,500	107,800	25,000	24,000	500	1,740	2,400	2,070	47,080
충 북	64,400	63,800	117,300	111,400	31,000	29,500	550	2,050	2,250	1,700	47,080
충 남	62,700	62,900	96,900	99,300	26,000	24,000	420	1,870	2,370	1,910	47,080
전 북	54,900	53,900	117,300	99,300	26,800	25,200	450	1,760	2,420	1,800	57,540
전 남	55,000	54,000	104,100	101,100	29,000	26,100	450	1,970	2,650	1,850	51,080
경 북	60,600	59,200	113,200	110,500	26,700	26,700	450	2,020	2,750	2,070	57,540
경 남	56,900	56,600	102,100	101,400	27,100	28,300	490	1,720	2,630	1,700	57,540
세 주	52,800	52,200	96,000	91,200	29,300	27,500	550	2,100	2,750	2,070	57,540

산출기초 : 1) 各道 統計出張所에서 市郡別 家畜市場의 12月中 價格임.

2) 市場去來가 없는 것은 飼育者에게 稟査조사한 것이므로 道別 價格차가 심한것은 道別價格을 全國平均하여 平均價格의 10% 上限과 下限으로 格차를 조정하였음.

3) 서울은 경기도 가격이며 부산은 경남가격을 적용함.

乳 牛 評 価

종류	년도	시 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암	당세	310,000	308,000	310,000	354,000	287,000
	2	870,000	718,000	817,000	737,000	730,000
	3	919,000	995,000	919,000	980,000	857,000
	4	1,009,000	1,043,000	1,009,000	1,020,000	1,007,000
	5	1,001,000	1,032,000	1,001,000	1,039,000	988,000
	6	974,000	969,000	974,000	1,005,000	969,000
	7	893,000	913,000	893,000	874,000	874,000
	8	801,000	900,000	801,000	794,000	794,000
	9	763,000	850,000	763,000	736,000	736,000
	10	673,000	747,000	673,000	611,000	611,000
수	당세	205,000	178,000	205,000	192,000	207,000
	2	470,000	466,000	470,000	424,000	498,000
	3	572,000	569,000	572,000	486,000	594,000
	4	639,000	582,000	639,000	534,000	661,000
	5	655,000	611,000	655,000	561,000	686,000
	6	672,000	621,000	672,000	591,000	722,000
	7	639,000	623,000	639,000	576,000	704,000
	8	618,000	600,000	618,000	565,000	691,000
	9	613,000	525,000	613,000	525,000	643,000
	10	586,000	524,000	586,000	524,000	640,000

- 算出根基 : 1) 各道農業統計出張所에서 市郡別 牛市場 또는
 2) 市郡別 價格을 道別로 平均하고 各道價格을
 差가 심한것은 調整하였음.
 3) 서울은 경기도 價格이며 釜山은 慶南價格임

基 準 表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40,000	306,000	297,000	356,000	308,000	350,000
827,000	677,000	731,000	792,000	718,000	800,000
1,020,000	857,000	905,000	969,000	995,000	1,047,000
1,070,000	952,000	1,008,000	1,164,000	1,043,000	1,300,000
1,060,000	1,000,000	1,111,000	1,197,000	1,032,000	1,197,000
1,004,000	969,000	1,034,000	1,138,000	969,000	1,184,000
874,000	874,000	963,000	1,114,000	913,000	1,168,000
794,000	794,000	878,000	971,000	900,000	971,000
736,000	736,000	833,000	900,000	850,000	800,000
611,000	611,000	720,000	747,000	747,000	611,000
207,000	185,000	176,000	200,000	178,000	169,000
411,000	407,000	456,000	407,000	466,000	400,000
436,000	533,000	527,000	486,000	569,000	486,000
541,000	550,000	631,000	601,000	582,000	541,000
561,000	561,000	628,000	647,000	611,000	600,000
593,000	591,000	633,000	614,000	621,000	722,000
576,000	576,000	615,000	609,000	623,000	704,000
565,000	565,000	615,000	609,000	600,000	691,000
525,000	526,000	615,000	609,000	525,000	642,000
524,000	524,000	615,000	609,000	480,000	640,000

飼育者에게 문의하여 調査한 12月中 價格임.

平均하여 平均價格의 上限(10%)과 下限(10%)을 정하여 價格格

1,000원 單位에서 切上함.

한 우 평 가

종류	시도 년령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암	당세	205,000	178,000	205,000	192,000	207,000
	2	319,000	276,000	319,000	275,000	323,000
	3	412,000	347,000	412,000	386,000	397,000
	4	479,000	407,000	488,000	425,000	479,000
	5	526,000	448,000	526,000	461,000	526,000
	6	546,000	469,000	546,000	481,000	546,000
	7	534,000	481,000	534,000	477,000	546,000
	8	522,000	478,000	522,000	476,000	534,000
	9	511,000	452,000	511,000	452,000	513,000
	10	488,000	447,000	488,000	446,000	498,000
수컷	당세	205,000	178,000	205,000	192,000	207,000
	2	415,000	363,000	415,000	369,000	401,000
	3	517,000	488,000	517,000	491,000	508,000
	4	587,000	556,000	587,000	528,000	582,000
	5	644,000	581,000	644,000	630,000	649,000
	6	637,000	595,000	637,000	555,000	672,000
	7	615,000	603,000	615,000	539,000	641,000
	8	609,000	594,000	609,000	539,000	635,000
	9	577,000	561,000	577,000	524,000	577,000
	10	577,000	561,000	577,000	524,000	577,000

- 산출근거 : 1) 各道農業統計出張所에서 市郡別 牛市場의 12月中
 2) 規格의 規定없이 年齡別로만 調査하고 年令別 去來
 平均하여 平均價格의 10% 上限과 下限으로 調整
 3) 서울은 경기도 가격이며 釜山은 慶南價格임.
 4) 1,000 원 單位에서 切上함.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7,000	185,000	176,000	200,000	178,000	170,000
323,000	277,000	308,000	307,000	276,000	264,000
412,000	378,000	367,000	395,000	347,000	337,000
479,000	434,000	409,000	443,000	407,000	392,000
526,000	464,000	445,000	470,000	448,000	431,000
546,000	456,000	452,000	488,000	469,000	447,000
546,000	475,000	451,000	494,000	481,000	447,000
534,000	464,000	439,000	491,000	478,000	437,000
513,000	447,000	421,000	475,000	452,000	420,000
498,000	434,000	407,000	470,000	447,000	407,000
207,000	185,000	176,000	200,000	178,000	170,000
419,000	356,000	371,000	390,000	363,000	343,000
506,000	461,000	438,000	489,000	488,000	417,000
571,000	507,000	491,000	542,000	556,000	500,000
619,000	544,000	543,000	587,000	581,000	640,000
645,000	555,000	555,000	594,000	595,000	678,000
641,000	539,000	539,000	576,000	603,000	659,000
631,000	501,000	539,000	587,000	594,000	659,000
577,000	514,000	472,000	564,000	561,000	577,000
527,000	473,000	472,000	564,000	561,000	577,000

價格임.

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道別價格을 全國
하였음. 따라서 年齡別 道別로는 10%以上 價格差가 없음.

品目別 成園

年 次	一 般 사 과	왜 성 사 과	배
1	28,150	85,590	45,604
2	51,950	157,360	74,074
3	82,300	188,390	108,044
4	118,840	297,120	148,814
5	156,410		200,054
6	201,370		260,074
7	251,620		337,184
8	311,220		
9	379,690		

育成価（土地用後売除外）

원

감	포	단	복
굴	도	감	숭
			아
88,290	60,450	41,710	42,310
163,090	105,140	68,660	70,100
239,680	166,710	99,520	107,680
319,850	240,200	133,090	154,740
406,010	328,330	175,180	
497,500		221,110	
593,940		275,720	
699,130			

品 目			一般 사과	왜성사과	배	감 귤
10a 当 株数			12	50	33	33
株当面積 (10a)			0.83	0.20	0.30	0.30
	耐用年数		25	20	20	35
	定 率		8.8%	10.9 %	10.9 %	6.4 %
	성원 육성가		534,490	365,920	457,584	836,730
76	1	1	487,454	326,035	407,707	783,179
75	2	2	444,696	290,540	363,322	732,975
74	3	3	405,678	258,705	323,512	686,119
73	4	4	369,867	230,530	288,278	642,609
72	5	5	337,263	205,647	257,162	600,972
71	6	6	307,332	182,960	228,792	562,283
70	7	7	280,607	163,200	204,082	526,303
69	8	8	256,021	145,270	181,661	492,834
68	9	9	233,038	129,536	161,985	461,038
67	10	10	212,727	115,265	144,139	431,753
66	11	11	194,020	102,824	128,581	404,141
65	12	12	176,916	91,480	114,396	378,202
64	13	13	161,416	81,600	102,041	353,937
63	14	14	146,985	72,818	91,059	331,345
62	15	15	134,157	64,768	80,992	310,427

평 가 기 준 표

포 도	단 감	복숭아	살 구	밤	비 고
50	33	33		33	
0.20	0.30	0.30			
10	35	12		25	
20.6 %	6.4 %	17.5 %		8.8 %	
414.330	335,920	200,620		165,480	
328,978	314,421	165,512		150,918	
261,028	294,266	135,622		137,679	
207,579	275,454	112,748		125,599	
164,489	257,987	92,887		114,512	
130,928	241,191	76,637		104,418	
103,997	225,728	67,195		95,151	
82,452	211,294	52,161		86,877	
65,464	197,857	43,133		79,265	
51,791	185,092	35,170		72,149	
41,433	173,335	29,291		65,861	
	162,249	24,275		60,069	
	151,836	20,062		54,774	
	142,094			49,975	
	133,024			45,507	
	124,626			41,535	

品 目			一般사과	왜성사과	배	감 귤
6 1	1 6	1 6	122,398	57,815	72,298	290,345
6 0	1 7	1 7	111,708	51,595	64,519	271,937
5 9	1 8	1 8	102,088	45,740	57,198	254,366
5 8	1 9	1 9	93,001	40,983	51,249	238,468
5 7	2 0	2 0	84,449	40,251	50,334	222,570
5 6	2 1	2 1	77,501			208,346
5 5	2 2	2 2	70,553			194,958
5 4	2 3	2 3	64,139			182,407
5 3	2 4	2 4	58,794			170,693
5 2	2 5	2 5	53,449			159,815
5 1	2 6	2 6				149,775
5 0	2 7	2 7				140,571
4 9	2 8	2 8				131,367
4 8	2 9	2 9				122,999
4 7	3 0	3 0				114,632

포도	단감	복숭아	살구	밤	비고
	116,564			37,895	
	109,174			34,585	
	102,120			31,607	
	95,737			28,794	
	89,355			26,146	
	83,644			23,995	
	78,269			21,843	
	73,231			19,858	
	68,528			18,203	
	64,161			16,548	
	60,129				
	56,435				
	52,739				
	49,380				
	46,021				

(별첨 2)

弘 報 計 劃 書 (초안)

1. 特別措置

- 總理談話文 ○ 總理指示文

2. 懸垂幕設置

- 担当機關別 設置 (6 個機關)

3. 新聞公告

- 談 話 文 (5 단 18 cm) ○ 서울 7 대 日刊紙
- 實施公告文 (5 단 9 cm) ○ 서울 4 대 經濟紙
- 지방 (영남 2 , 호남 2) 4 대
日刊紙

4. 매스컴을 통한 報導

- 신 문, ○ 라디오
- T V : 對談 및 解說

(15 ~ 20 일 전 放送局에 協調要請)

5. 街頭宣傳

- 光化門 아취 (不可)

< 참고 > 기승인 일자 (타기관)

- ① 3. 1 ~ 3. 1 절 행사
- ② 3. 3 ~ 조세의 날
- ③ 3. 11 ~ 근로자의 날
- ④ 3. 13 ~ 해운의 날
- ⑤ 3. 20 ~ 상공의 날

○ 陸橋懸板設置 (10 個所)

① 총무처에 승인요청 (의정 131 ~ 73.78.1.16 참조)

- 설치기간
- 설치육교현황 (별첨 2)
- 도 안

② 서울시에 許可要請

- 승인 공문사본
- 도 안

< 참고 >

- 현판기일 : 장기 30 일
- 연 락 처 : 총무처 - 의정과 (70-4335)
서울시 - 시설관리과 (72-6384)
제작소 - 23-5549, 28-8929

6. 예산내역 (별첨)

< 별첨 1 >

弘報活動을 위한 豫算內譯

弘 報 事 項	豫 算	備 考
1. 新聞公告		
(1) 談話文 (5 단 18 cm)		
① 서울 : 7 大日刊紙	5,395,500	
② 서울 : 4 大經濟紙	2,217,600	
③ 지방 (영남 2 , 호남 2)	2,178,000	
소 계	9,791,100	
(2) 實施公告文 (5 단 9 cm)		
① 서울 : 7 大日刊紙	2,697,750	
② 서울 : 4 大經濟紙	1,108,800	
③ 지방 : (영남 2 , 호남 2)	1,089,000	
소 계	4,895,550	
합 계	14,686,650	
2. 陸橋懸板製作 (10 組)		
20 万円 × 10 組		
= 200 万円	2,000,000	

弘 報 事 項	豫 算	備 考
3. 談話文		
(1) 用紙代 (120 mm g / cm ²)		
40 원 × 3 万 = 120 万원	1,200,000	
(2) 印刷費		
50 원 × 3 万 = 150 万원	1,500,000	
(3) 写真製版料		
1 원 × 3 万 = 3 万원	30,000	
합 계	2,730,000	
총 계	19,416,650	

주요 육교 현황

1. 신민당사앞 육교
2. 서울역 남영동 육교
3. 노량진 본동 육교
4. 신촌 로터리 육교
5. 광화문 교육회관앞 육교
6. 서대문 서울여상앞 육교
7. 미아리 길음시장 육교
8. 대한극장앞 육교
9. 아현국민학교앞 육교
10. 시청해운공사앞 육교
11. 왕십리 시장앞 육교
12. 신세계앞 육교
13. 신설동 시외전화국앞 육교

< 제 43 차 >

78.1.30

1. 별첨과 같은 자료(1977년 국부통제조사를 위한 제몽선전계획)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가. 국무총리 지시 시달

정부부문조사는 자체식에 의존하므로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단체(공공조합포함)에도 직접시달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나. TV를 통한 대담 및 해설

국부통제조사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2회의 대담(KBS 및 MBC) 외에 각 조사지부에서는 각 지부주관하에 1회씩 시행하도록 함.

다. 실시광고문의 신문광고

총 15종(서울 11, 지방 4)의 신문계재보다는 신문수를 줄이고 광고난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음.

라. 경비의 분담

본 계획에 따른 경비(약 1,300만원)는 각기관이 공동부담토록하며 별도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농수산부에서는 수용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첨 부 : 제몽선전계획

< 별첨 >

1977 年国富統計調査를爲한啓蒙宣傳計劃

項 目	內 容	時 期	豫 算	備 考
1. 国務總理 談話文 및 指示	1. 談話文 3만장 揭示 (內容別添) 2. 国務總理指示文示達 (內容: 別添)	3.1 ~ 8.31	2,730,000 (1) 用紙代 120 万 (2) 印刷費 150 万 (3) 写真製版料 3 万	
2. 陸橋懸板 設置	1. 서울市内 懸板設置 (10 個所)	○ 1 차 : 3.1 - 15 ○ 2 차 : 5.1 - 15 ○ 3 차 : 7.1 - 15	3,400,000 (1) 懸板 10 組製作 2,000,000 (2) 事後管理保全費 1,400,000	

	2. 地方主要 12 個市에 懸垂幕設置 (1 회) 一道庁所在地 및 仁川. 城南. 馬山等	7.1 ~ 7.15	1,800,000 (60 個製作)	部門別 担当機關 ○ 個人 (비농림 어업) ○ 法人
3. 매스컴을 通한 報導	○ 新聞 ○ 라디오 ○ TV : 對談 및 解説	3.2 ~ 3.5 (사이) " "	- (1) MBC : 未定 (2) KBS : "	
4. 實施公告文 新聞公告	新聞公告 (5 단 9 cm) (1) 서울 ㉞ 7 대 日刊紙 ㊦ 4 대 經濟紙 (2) 地方 ㉞ 嶺南 2 ㊦ 湖南 2	3.2 ~ 3.5 (사이) " " " "	4,895,550 2,697,750 1,108,800 1,089,000	
5. 懸垂幕設置	担当 機關別로 前面에 設置 (6 個機關)			機關別 負擔
6. 班常會 回 報를通한報導	2 月班常會 回報에 掲 載토록 內務部와 協議豫定			
			總 計 17,825,550	(地方都市懸垂幕 豫算 180 만원포함)

一 國富統計調査 (國富統計調査)

실시에 즈음하여 一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정부에서는 금년 3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1977년 12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국부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부통계조사는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富)의 존재량을 파악하여 경제적 국력을 측정하고, 경제개발계획을 비롯한 제반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기본통계조사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그간의 경제개발성과를 분석하여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이용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정부기관, 기업체, 각종단체, 가계등을 망라한 모든 경제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부 조사되어야 하므로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이 전문분야별로 분담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국부통계조사는 각 기관과 국민개개인의 전재산을 조사하여야 하는 방대한 국가적 사업이므로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제공하시는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는 법으로 그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시거나 방문하는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하실때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제 44 차 >

1978.2.8

1.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종합제몽선전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업무를 수행키로 하였음.
 - 가. 국무총리 담화문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농수산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제몽선전에 소요되는 경비는 농수산부를 제외한 5개기관이 균등 부담함.
 - 나. 신문공고문 게재시 4대경제지에 게재하지 않고 신문공고문안 규격을 5단×12cm로 함.
 - 다. 공고문안 중 농수산부 실시기간을 78.5.10 - 6.20 에서 78.7.11 - 8.20 로 변경함.
따라서 78.5.1 - 5.15 에 제몽선전계획은 취소함.
 - 라. 육교현판의 설치기간을 각각 1개월로 연장함.
 - 마. 국무총리 지시문안중 "특히 이번조사는 그간의 경제개발성과를 분석하여 제 5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수립에 이용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구는 삭제함.
그리고 실시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 주관아래 한국은행이 정부자산을 한국산업은행이 법인자산을 농수산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이 개인기업자산을 경제기획원 조사통제국이 가계자산을 각각 분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을 삽입키로 함.

바. 한국은행, 국민은행에서 작성한 국부통제에 관한 T V 대담문
안을 검토한 결과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키로 함.
(별첨 참조)

첨부 : 국부통제에 관한 T V 대담문안

(별첨 1-1)

國 富 統 計 調 查 對 談 參 席 者 名 單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長 (A)

諮門委員 (B)

韓國銀行 調查才 2 部長 (C)

司會

司 : 今年에 經濟企劃院 主管下에 國富統計調查를 한다고 이미 新聞에 報道된 바 있습니다만, 우선 一般國民의 理解를 돕기 위해서 國富라고 하면 대체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 內容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 원래 國富라고 하면 여러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漢字로 表示 (局長) 된 바와같이, 이번에 調查하려는 國富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全財産이라고 하면 一段 定義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財産하며는 무척 단순하게도 들립니다만 그 区分하는 基準에 따라 여러가지 種類가 있겠지요. 첫째로 財産이 形体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有形資產과 無形資產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無形資產의 代表的인 것들로 現金이나 各種債權과 같은 것을 例로 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資產들은 원래 國富統計調查의 対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建物, 構築物, 機械裝置 또는

家財와 같은 有形資産이 調査의 中心이 된다고 하겠읍니다.

司 : 國富統計調査에 관한 소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치 經濟學 講義室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군요.

統計가 날로 專門化되고 다양화되어 갈수록 一般國民들도 자주 統計와 關係를 맺게 되고 나아가서 統計調査가 生活의 一部로 登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시청자들도 統計調査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까 有形資産은 國富統計調査의 対象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土地나 森林도 有形資産의 一種이라고 생각되는 데 이번 調査에 이런 資産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하신 土地와 森林을 포함해서 地下資源 같은 것도 有形資産임에는 틀림없읍니다만 國富統計 調査對象이 되는 有形資産은 사람의 힘으로 再生産이 可能的한 有形資産으로 制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즉 재생産이 不可可能的한 土地나 森林과 같은 資産은 이번에 調査하지 않습니다.

司 : 그런데 제 생각에는 現金이나 債權과 같은 것은 一般國民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財産이라고 여겨지는데도 이번 國富통계조사에서는 왜 제외하든지 그 理由가 궁금하군요

A : 그렇습니다. 現金이나 債權이 個個人에 있어서 重要的 財産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國富라고 할 때는 個個人이 中心이 되는
 個別 經濟의 立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全体 國民經濟의
 立場에서 보기 때문에 이러한 資産들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國民經濟의 立場에서 볼때 어느 個人이
 債權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에 対応하는 債務를 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 國民經濟內에서는 債
 權과 債務가 서로 相計되어서 財産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와같은 理由로 現金은 물론, 각종 有價証券, 担保權, 工業
 所有權과 같이 추상적인 權利에 의해서 발생하는 資産은
 제외시키려는 것입니다.

B : (諮問委員)

지금까지 A 께서 國富統計의 調査對象이 되는 資産의 범위에
 관해서 体系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國富가 되는 資
 産들을 經濟的인 각도에서 달리 特徵지어 본다면 生産能力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國富統計調査의 目的
 은 一國 潛在的인 生産能力을 파악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런 점에서 이번 調査에서는 生産活動과 관련이
 없는 各種 文化財를 비롯하여 藝術品, 骨董品, 書籍들이 포함
 되지 않고 軍事施設이나 戰備品같은 軍用資産도 이번 調査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司 : 이번 國富統計調査에는 韓國銀行에서는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韓國銀行 調査 2 部長께서 資産種類를 調査對象기관별로

좀 더 具體的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C (調査部長) : 調査対象機關을 經濟活動主体別로 나누어 보면 다
아시는 바와같이 政府部門, 企業部門, 家計部門으로 区分됩니다.
이중에서 政府部門과 企業部門의 調査対象資產은 큰 차이가 없
습니다. 즉 두 部門은 각각 소유하고 있는 庁舍나 工場과
같은 建物들이 중요한 자산이 되겠고 이와함께 각종 機械設備
를 비롯해서 차량, 선박 在庫資產 등이 調査対象이 됩니다.
政府資產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道路, 堤方, 항만시설과 같은
社会間接資本도 調査를 하게 됩니다.
家計部門에는 住宅建物과 1년이상 使用할 수 있는 耐久消費財
가 調査対象이 되지요.

司 : 1년이상 使用할 수 있는 耐久消費財라면 種類나 價格의 高下
를 가리지 않고 全部 調査한다는 말씀인지요.

C : 耐久消費財로는 옷장, 냉장고, TV, 책상, 세탁기 등을 例로 들
수 있습니다만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재도구라면 종류나
가격의 制限을 받지 않고 모두 調査対象이 됩니다.

司 : 아까 B委員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읍니다만 이번에 国富統計
調査를 실시하는 目的은 무엇입니까?

B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4次에 걸쳐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수
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国富를 各部門別로 즉
産業別, 地域別, 資産種類別로 파악하지 않고는 經濟開發計劃이나
国土建設計劃이나 国土建設計劃, 國家動員計劃 등 여러가지 經濟

政策을 樹立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國富統計는 이와같은 國家的인 事業을 計劃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重要的 基礎資料가 되는 것입니다.

例를 들자면 5 백만톤의 시멘트를 生産하기 위해서 工場建物이나 機械設備, 原材料등의 規模가 각각 얼마나 所要되는지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즉 一定量을 生産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資本投資가 必要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一定量을 生産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資本 投資가 必要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더 專門的인 用語로 말씀드리자면 資本係數라고 하는데 國富調査結果를 利用하여 産業別 資本係數를 算出하며는 制限된 投資財源을 가지고 各産業에 가장 效率的으로 配分할 수 있게 됩니다.

또 地域別로 富의 分布를 파악함으로써 地方의 特定産業育成 施策을 세우는데도 利用할 수 있지요. 例컨대 기계공업단지의 対象地域을 선정할 경우에도 제철이나 운송같은 관련 産業의 地域別 分布상황을 고려해서 投資한다면 더욱 效率的이 될 것입니다.

A : 이상 두 분이 말씀해 주신 外에도 國富統計調査를 통하여 한 나라의 經濟적 国力을 파악함으로써 國際的인 比較를 할 수도 있고, 資本蓄積程度를 알게 되어 그 동안의 經濟開發成果를

測定, 評價할 수도 있습니다. 또 國富調査結果는 5大國民計定의 하나가 되는 國民貸借對照表를 作成하는데 基礎資料가 됩니다. 國民貸借對照表를 作成하는데까지 發展한다면 이번 國富統計調査는 여타 國民計定에 해당되는 國民所得統計, 國際收支統計와도 서로 대비할 수 있어 기존 통계체계를 改編, 整備한다는 데도 적지않은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자산을 다 調査하려면 業務量도 방대하고 또 무척 어려운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詳細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A: 調査業務量の 面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最大의 調査가 될 것입니다.

C: 그렇지요. 약 1만 8천개의 法人企業과 1만 7천개의 政府機關은 全部 다 調査하고 個人企業이나 家計部門은 標本調査를 하게 되는데 個人企業은 標本業체數가 약 4만, 그리고 家計가 1만 家口니까 아주 방대한 事業이지요.

그래서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農水産部, 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의 6개 機關이 分担調査하게 되었습니다.

司: 그러면 그걸 누가 다 調査합니까?

C: 法人企業, 個人企業, 家計部門은 各調査機關에서 採用한 調査員이 直接 対象處를 訪問하여 調査하게 되고 政府機關은 担当 公務員이 直接 調査表를 作成하게 됩니다.

司: 이렇게 많은 資産을 調査하여 어떻게 統一的으로 그 資産価値

를 評價하는지 궁금하군요.

A : 크게 두가지 基準이 있지요. 우선 하나는 資産의 價値를 評價하는데 帳簿에 載여 있는 價格을 그대로 資産價値로 認定하는 方法입니다.

所謂 말하는 「帳簿價格」을 基準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方法으로 하면 物價變動이 심할때는 實際 資産價値와 帳簿上의 資産價値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問題點이 發生하게 됩니다.

例를 들면 1977 年에 時價 千萬원 하는 建物を 1971 年에 6 백만원을 주고 샀을 境遇 1977 年末로 이 建物の 資産價値를 帳簿價格으로 評價한다면 6 백만원이 되지만 實際價値는 千萬원이므로 4 백만원의 差異가 發生하는 結果가 됩니다.

이러한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資産의 價値를 時價로 評價하는 結論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資産을 실제價格, 즉 실제로 去來되고 있는 時價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司 : 그렇다면 모든 자산의 時價를 全部 조사하여야 된다는 結論인데 資産에 따라서는 時價를 알 수 없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A :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資産의 時價를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商品과 같은 一部 資産만이 市場에서 거래가 되어 市場價格이 形成되고 있고, 기타 자산은 시장가격이 不完全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주 形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司 : 그렇다면 全的으로 時価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 아십니까?

A : 그래서 時価에 준하는 人爲的인 時価를 定하여 놓고 이를 基準으로 資産價值를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專門的인 用語로는 「再調達價格」이라 하지요. 이 「再調達價格」이란 평가하려고 하는 資産과 同一한 資産을 現在 다시 구입하려 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실제 이를 算出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가격, 즉 구입가격을 조사하여 여기에 취득以後 현재까지 当該資産에 대한 物価變動을 곱하여 주고 취득이후의 使用期間경과에 따라 소모된 부분을 감가상각하여 現在價值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B : 이번 우리나라 國富調査의 평가기준도 대개 이 方法에 의존할 예정입니다.

司 : 그렇다면 모든 資産의 物価變動과 감가상각정도를 별도로 調査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C : 그렇지요. 全 資産의 物価가 1910년부터 1977년까지 어떻게變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物価倍率表를 따로 作成하여야 합니다. 이 作業은 한국은행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中입니다.

司 : 外國의 國富調査 事例에 대해서도 말씀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C : 國富調査는 17世紀末 英國에서 처음 實施되었으니까 그 歷史가 매우 오랜 統計調査가 할 수 있지요.

以後 1930年代에 이르기까지 英國, 獨逸, 「오스트리아」等 「유럽」諸國을 中心으로 國富推計가 계속 實施되어 오다가 最近에 이르러서는 國民所得統計와 有機的인 關係를 맺고 世界 各國에서 國富推計가 實施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美國의 境遇에는 1930年代 以後 國民經濟調查局(NBER)을 中心으로 國民所得統計와 關聯하여 發展되고 있으며 特히 國富推計方法論에 關하여 獨創的인 理論을 정립한바 있습니다.

最近에는 商務省 企業經濟局을 中心으로 國富推計가 行해지고 있지요.

日本은 「아시아」에서는 最初로 1905년에 國富調査를 시작하였고 1955年 以後에는 經濟企劃庁을 中心으로 每5年마다 定期的으로 實施하고 있습니다.

特히 1955年과 1970年은 國富全數調査方法에 依하여 大規模로 實施한 바 있습니다.

B: 西獨에서는 特히 1970 以後 聯邦統計局과 獨逸經濟研究所를 中心으로 間接的인 方法에 의해 國富推計가 實施되고 있습니다. 또한 UN에서도 國富統計에 對한 統一的인 作成指針을 마련하여 各國에서 이를 採択, 實施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特히 國民計定體系의 整備라는 觀點에서 國富調査의 重要性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司: 잘 알겠습니다.

이번 國富調査를 實施함에 있어 우리 國民 모두가 깊은 關心과 理解를 가지고 參與함으로써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協助하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1-2 >

국 부 통 제 조 사 대 답

참 석 자

사 : 사회자

A : 경제기획 〇〇〇

B : 〇〇은행 조사부장

C : S대학교 B교수

바쁘신대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는 1968년에 이어 금년에 제2회 국부통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부통제조사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A 나와주셨습니다.

B 나오셨습니다.

C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1) 국부통제조사의 내용을 알기 위하여 국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A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A) 국부를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한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합계 즉 경제단위(정부·기업·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를 현재의 화폐가치로 평가한 총액에 대외 순자산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국부에는

첫째, 경제활동의 성과인 유형자산(건물·재고품등)

둘째, 경제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화는 아니나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되는 자연물로서의 토
지, 매장광물, 자연림등의 천연자원

셋째, 대외 순자산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부통제조사를 주로 경제분석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개념 자체의 범위도 그 폭
이 좁혀져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국민경제의 한 분파로서의
국부를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국부자산을 다음과 같이 한정
시키고 있습니다.

국부로서의 자산을 우리나라 국민경제내에 존재하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자산의 총액에 대외 순자산을 합한 국민자산에
한하며 국부자산의 조건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의미를 갖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의미의 자산이란 정부 기업 가계 및 비영리
단체등의 경제주체가 생산이나 가계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재로서 간주하기 힘들고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예술품, 문해재, 서적등은 제외됩니다.

둘째,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자본투자가 이루어진 유형
자산에 한합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이라도 대외적인 권리
관계는 예외로서 국부에 포함시킵니다.

단, 국부로서의 자산은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가) 지상권과 같은 용익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능을 제한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개별경제에서는 자산이라 생각되지만

국민경제상의 자산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 광업권이나 공업소유권도 개별경제에서는 그 독점적 기

능을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국민경제 전체에서

생각하면 자산으로서 국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 현금, 예금, 받을어음, 대부금, 투자자본등은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서로 상제되므로 국부로서의 자산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 무형의 권리관계가 국민경제 상호간 즉 대

외적 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으

로서 국부에 포함시킵니다.

세째, 재생산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국부는 경제활동에 의하여 투하된 자본의 구체적인 형태

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즉 재생산

가능한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자연으로서의 토지나 천

연자원등은 제외됩니다.

네째, 객관적으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국부는 객관적으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인

적자본도 능력개발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본투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오늘날 유형고정자산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경제적 평가가 어려우므로 국부에서 제외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국부통제조사에서의 국부의 개념은

(1) 국민경제내에 존재하는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재생산이 가능한 유형 자산과

(2) 대외 순자산으로 한정되며

이중 유형자산을 경제적인 기능면에서 분류하여 보면

(a) 생산활동과 직접 관계있는 자산

(b) 국민경제 전체를 뒷받침하는 공공시설

(c) 국민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화등 3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 2) 국부조사의 기원 및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답 B) 국부조사의 기원은 17세기말 영국의 윌리엄·페티(W.

Petty)가 1679년의 영국의 국부를 2억 5천만 파운드로 추계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국부조사는 영국에서 1850년에 실시하였으며 이후 스페인,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국부 추계가 발전되었고 1920-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각국에서 국민소득 추계와 더불어 국부조사가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구 재고 추정방법을 비롯한 근년의 국부추계 방법 및 이론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 전개되어 왔으며 미국의 국부조사는 비록 주기적으로는 아니나 비교적 빈번하게 국부추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05년 제1회 국부통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행하여 졌습니다.

(문3) 우리나라의 국부통제조사에 대해서 C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C) 정부는 1차 및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자본 존재량 혹은 자본 스톡에 관한 통제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하여 많은 애로를 느끼고 3차 5개년 계획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자본존재량을 파악하는 국부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66년초 통제위원 간담회에서 조사방법을 검토, 경제기획원 조사통제국,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가계부문, 정부 및 대외자산 부문 법인부문 개인기업 부문을 분담 조사하기로 하고 1968년 11월 21일 경제기획원 고시 제5호에 의거 지정통제 제21호로 지정 고시된후 196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96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부통제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후 197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우리나라의 국부구조가 급속히 변동되어 국민소득 계정에 있어서 "후로"와 "스톡"와의 관계를 밝혀 현재 진행중인 국민경제제산에 기여하고 제5차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197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2회 국부통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 4) 그러면 국부통계조사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A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답 A) C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에 이어 금년에 두번째로 국부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조사의 일반적인 목적은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존재량을 파악하여 첫째, 경제적 국력을 파악하여 타국과 국제비교를 행하고 둘째, 자본축적의 정도를 계측하여 그간의 개발성과를 측정하고, 셋째,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자본계수를 산출하고 넷째, 국민계정을 완성하여 경제개발계획, 국토건설계획등 제반 경제정책 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이번조사는 국민소득계정에 있어서 flow와 stock와의 관계를 밝혀 현재 진행중인 국민 경제 계산의 정비에 기여함은 물론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 5) 구체적인 조사대상에 대해서 B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답 B) 이번 조사는 국내에 소재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정부관계기관, 법인, 개인기업 및 비법인단체와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 재고자산, 대외순자산을 조사대상 자산으로 합니다.

따라서 천연토지, 자연림등 천연자원과 무형자산은 제외됩니다.
조사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선박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건설가재정에 계
상되어 있는 미완성의 자산, 대동식물 등이며 재고 자산은
원료, 반제품 및 제품품, 완제품 및 상품 저장품등 입니다.

(문 6) 조사담당기관에 대해서 C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C) 제 2 회 국부통제조사는 조사객체의 방대성과 조사기술상의

제문제등을 감안하여 단일 기관에서 실시하지 않고 정부 및
대의 자산 부문에 대해서는 - 한국은행

법인기업 자산 부문에 대해서는 - 산업은행

개인기업자산 부문중 산업에 따라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 농수산부 광업·제조업·전기·가스

업·건설업 도소매업은 - 중소기업은행운수·창고, 통신·금융

보험·부동산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 국민은행

가계 자산 부문에 대하여는 - 경제기획원

이 담당하여 전부 6 개기관이 국부통제조사를 분담하고 있

읍니다.

(문 7) 조사방법에 대해서 A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A) 전수조사방법과 표본조사방법을 병용하여 정부와 법인은

주로 전수조사방법, 개인과 가계는 표본조사방법을 주로 사용

하며 자산의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소유자 주의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부문은 산업별

자본계수 산출이 용이하도록 사용자주의 방법을 병용하고

있습니다.

(문 8) 조사기준시점 및 실시기간에 대해서 B께서 말씀해 주십

시오.

(답 B) 1977년 12월 31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며

정부자산은 78.4.24 - 7.31

법인자산은 78.7.11 - 8.20

개인자산은 78.7.11 - 8.10

이중 농림어업부문은 78.5.10 - 6.20

가계자산은 78.3.10 - 4.10 에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 9) 이 기회에 국부통제조사의 조사 대상이 되는 국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계시면 C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 C) 여러분께서 제공한 자료는 통제법에 의하여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순수한 통제목적외에는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 드리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를 위한 조사원이 기업이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을 방문할 때에는 비록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본조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양지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본조사의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제 45 차 >

1978. 2. 9

1. 한국은행에서 시도하려는 정부부문 물품자산 조사방법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물품조사내용

정부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물품자산에 관하여 정부의 소관부서(분임보관청 약 14,200개)에서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간접조사코자 함.
(별첨 참조)

구 분	재 물 조 사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	국부조사상물품
대상물품	중요물품(개당 5만원이상) 중요물품이외에 물품 (개당 5만원이하)	중요물품(개당 5만원 이상)	내용년수 1년 이상의 물품
조사시점	매년 6개월	매 년 말	77년말
대상기관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포함)	좌 동	좌 동
조사담당 기 관	조 달 청	조달청(중앙관서) 내무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평가액	현재액(장부가격)	좌 동	좌 동
분류내용	품종별, 회계별, 관리청 별, 산하기관별	품종별, 회계별, 관리청 별	품종별, 회계별 관리청별, 지역 별, 대여자산구 분

나. 문제의 제기

위와같은 방법으로 직접조사하는 경우 물품정의는 아래와 같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음.

1) 물품의 정의

정부자산의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자산중 다음에 제제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현 금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다) 부동산과 그 종물

라) 선박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마)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장치

① 부동산 또는 구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와 기구

② 내용년수가 5년을 초과하는 기계와 기구로서 그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것

③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④ 궤도차량

2) 문제점

가) 재물조사의 중요물품(5만원이상)과 중요물품이외의 물품(5만원이하)의 구분과 국부조사의 자산분류가 서로 상이하므로 일부자산의 누락이 예상됨. 또한 일부자산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75만여개에 달하는 물품을

일일이 공구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자산으로 구분하
기가 극히 곤란함.

나) 공구기구 및 비품뿐만 아니라 일부기계 및 장치, 선박, 차
량등 자산의 총국부, 순국부를 산출할 수 없음.

다) 재물조사의 물량은 대체로 정확하다고 인정되나 장부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물품자산이 저평가되고 있음.

다. 해결 방안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 가지 방
안으로 물품자산을 접근조사하는 방안이 있음.

1 안) 1450 개기관(관리청, 보관청)까지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하
고 그 하급기관인 분임보관청의 물품자산을 표본조사함.

2 안) 재물조사 자료를 중요물품(5만원이상) 중요물품이외의
물품(5만원이하)으로 구분하여 중요물품은 직접조사하고
중요물품이외의 물품은 재물조사의 자료를 이용함.

3 안) 재물조사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함. 다만 재물조사자료중
국부자산분류의 공구기구 및 비품자산이외에 자산은 별도로
파악하여 국부자산분류에 포함시키되 순국부, 총국부를
산출하기 위하여 별도 표본조사함.

라. 결 론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순국부, 총국부를 산출할 수 있고 일
부자산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원칙하에 재물조사의 분류
판계를 검토한 구체화된 안을 차기 실무자회의에 상정토의키
로 하였음.

첨부 : 물품조사방법 검토(안)

〈 별첨 〉

物品調査方法検討(案)

I. 問題의提起

1. 政府資産의 一種으로서 当支部의 調査対象이

되는 物品은 1977年末 現在額임.

2. 物品의 現在額에 關하여서는 政府의 所管 部署에

서도 每年 定期的으로 調査되고 있어, 이의 利

用可能 与否를 検討하고자 함.

3. 物品에 關한 政府의 調査資料內容(別添)

政府 調 査 資 料 内 容

区 分	物品増減及現在額報告	在 物 調 査	国部調査上の物品
法的 根拠	物品管理法 第 38 条 同施行令 第 43 条 地方財政法 第 61 条의 10 同施行令 第 77 条의 9	物品管理法 第 36 条의 2 同施行令 第 41 条의 2 地方財政法 第 61 条의 9 同施行令 第 77 条의 5	
対象 物品	重要物品 (個当 5 万圓以上)	重要物品 (個当 5 万圓以上) 重要物品以外の 物品 (個当 5 万圓以下)	左 同
調査 時点	毎 年 末	毎年 6 月末	77 年末
対象 機関	中央官署 地方自治団体 (教育委 包含)	左 同 :	左 同

区 分	物品増減及現在額報告	在 物 調 査	国富調査上の物品
調査担当機関	調達庁（中央官署） 内務部（地方自治団体）	調 達 庁	政府資産調査支部
評 価 額	現 在 額（帳簿価格）	左 同	左 同
分類内容	品種別，会計別，管理庁別	左 同 傘下機関別	左 同 地 域 別 貸与資産区分
資 料 名	「1976年度 物品増減 及 現在額 総計算書」 （大韓民国 政府）	「1976. 在物調査報告」 （調達庁）	

II. 政府調査資料 利用可能性 檢討

1. 当支部의 物品調査方法

가. 当支部의 調査表Ⅲ(物品調査表)에 依한 物品調査表의 樣式은 上記 現在額報告樣式 및 分類에 準하고 있으므로 重要物品의 경우에는 現在額報告書上의 金額을 当 調査表Ⅲ에 移記하여 調査하는데 不過함.

나. 重要物品以外의 物品(其他物品)의 現在額은 主로 그年度の 在物調査資料에서 얻은 金額을 当 調査表의 分類에 맞추어 記入함.

다. 따라서 当 調査表Ⅲ에 依한 物品調査도 事實上 上記 두 資料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実情임.

2. 間接調査의 長点

가. 豫算의 節約

既存資料를 利用하면 物品調査에 別途 随伴하는 調査表 印刷, 調査 公務員의 受講旅費支給, 実査指導, Card punch 및 電算集計 等の 固定資産調査와 거의 同一規模의 豫算과 人力을 節約할 수 있으며, 한편 調査対象機關에 對하여도 調査表作成에 따른 業務負擔을 輕減시킬 수 있음.

(公共組合을 除外한 固定資産調査單位는 943 機關인데 比하여 物品調査單位는 物品台帳을 實際保有하는 分任保管庁級으로 約 14,200 個에 達함.)

나. 1968 年度 国富調査結果에 依하면 全体 政府資産中 固定資産이 93.1% 物品이 6.9%를 차지하므로

(1970 年 日 本 政 府 資 産 調 査 結 果 는 固 定 資 産 92.6%,
物 品 7.4% 임)

間 接 調 査 로 因 하 여 節 約 되 는 時 間 과 人 力 을 資 産 構 成 比 重 이
높 은 固 定 資 産 調 査 에 集 中 的 인 努 力 을 기 울 일 수 있 음.

다. 物 品 調 査 의 精 度 向 上

- ① 間 接 調 査 方 式 을 採 하 면 全 體 物 品 을 總 體 的 으 로 把 握 하 게 되
므 로 調 査 表 에 依 한 機 關 別 調 査 方 式 보 다 重 複 이 나 漏 落 을
防 止 할 수 있 음.

(實 例)

今 般 試 驗 調 査 結 果 에 依 하 면 「 釜 山 國 土 管 理 庁 」 은 同 庁 이 調
査 時 點 現 在 使 用 하 고 있 는 「 中 央 裝 置 管 理 事 務 所 」 所 有 의
8 億 원 상 당 의 重 裝 備 을 自 己 所 有 처 럼 調 査 하 여 實 際 보 다 9 倍
가 량 過 大 計 上 하 였 음.

	在 物 調 査 金 額	試 驗 調 査 金 額	A/B	備 考
釜 山 國 土 管 理 庁	95,321 千 圓	908,353 千 圓	9.5 배	해 당 기 관 照 會 確 認

- ② 在 物 調 査 의 結 果, 物 品 의 亡 失 또 는 滅 失 에 對 하 여 는 辨
償 이 命 令 되 므 로, (物 品 管 理 法 36 條 4)

同 在 物 調 査 는 이 와 같 은 制 裁 措 置 가 없 는 國 富 統 計 調 査 보
다 더 精 度 가 높 을 것 으 로 豫 想 됨

3. 在 物 調 査 報 固 와 試 驗 調 査 結 果 比 較

- ① 國 富 統 計 試 驗 調 査 를 實 施 한 81 個 의 對 象 機 關 中 傘 下 機 關 을
全 部 包 含 하 여 調 査 한 中 央 官 署 22 個 機 關 의 物 品 現 在 額 을

在物調査 報告書上の 金額과 比較하여 본 結果 다음과 같
이 兩 調査의 金額이 近似하게 나타났음.

在物調査報告 A)	試驗調査結果 B)	A / B
10,261,668 千원	10,053,987 千원	1.02

② 이와같이 兩資料 結果値가 거의 同一하므로 調査表에 依
한 直接調査대신 既存 在物調査資料를 利用하는 것도 妥当
하다는 것을 立証하여 줌.

③ 機關別 比較表
(別 添)

機 関 別 比 較

단위 : 千원

機 関 別	在物調査 A)	試驗調査結果 B)	A / B
부 산 지 방 법 원	74,500	65,088	1.14
부 산 지 방 검 찰 청	66,772	65,595	1.02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17,117	17,888	0.96
부 산 대 학 교	705,232	705,232	1.00
부산 공업 전문 학교	89,553	98,410	0.95
부 산 수 산 대 학	159,084	170,068	0.94
부산 생사 검사 소	101,368	101,429	1.00
부 산 병 원	55,385	42,465	1.30
마산수출지역관리소	611	471	1.30

機 関 別	在 物 調 査 A)	試 驗 調 査 結 果 B)	A / B
김 해 소 년 원	13,683	15,914	0.86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29,421	29,919	0.98
영 남 작 물 시 험 장	91,533	121,823	0.75
부 산 공 작 창	3,574,094	3,792,328	0.97
동 물 검 역 소	75,938	36,194	2.10
철 도 청 부 산 보 급 소	4,391,857	2,689,525	1.63
부 산 항 만 청	164,088	86,539	1.90
부 산 교 도 소	61,773	123,967	0.50
부 산 검 역 소	24,435	55,920	0.44
부 산 세 관	384,077	720,133	0.53
부 산 조 달 청	77,615	184,917	0.42
마산도자기시험소	8,211	21,809	0.38
부 산 국 토 관 리 청	95,321	908,353 ¹⁾	0.10
계	10,261,668	10,053,987	1.02

註 1) 過大計上分 830,480 千圓 包含

(參考)

日本の 物品調査

1970年 日本の 国富調査에서는 物品(工具・器具 및 備品)을 「重要物品」과 「重要物品 以外の 物品」으로 나누어 調査하였음.
即 重要物品에 對해서는 各 省庁의 物品管理部(局)을 通하여 全部 調査하였고 重要物品以外の 物品에 對하여는 各 省庁에서 抽出한 (平均抽出率: $\frac{1}{5}$) 調査單位를 調査하였음.
그러나 重要物品에 限하여는 「各省別 集計値」가 大蔵省이 毎年 作成하고 있는 「物品増減報告書」와 큰 差異가 있을때는 「物品増減報告書」의 金額에 맞추어 国富調査 集計値」를 修正하였음.

「日本 国富統計關係 資料」 P 7~8 参照

Ⅲ. 既存資料 利用上的 問題點

1. 77年末 基準의 現在額 把握 問題

가. 內容; 「現在額報告」는 12月末을 基準으로 調査되나 重要 物品 以外の 物品」이 包含되지 않으며, 反面 全物品 을 包括하고있는 「在物調査報告」는 調査時點이 6月 末임.

따라서 全 物品의 1977年末 現在額이 總體的으로 集計되지 않음.

나. 對策; 在庫資産의 評價는 調査時點에서 實施한 在庫調査의 帳簿價格을 評價額으로 하되, 調査時點 現在 在庫調査

를 實施하지 않은 경우에는 調査時点에서 가장 가까운 時点에서 行한 在庫調査의 帳簿價格으로 評價토록 한 趣旨에 비추어 1977.6末 在物調査 資料를 利用하는 것도 可能하나, 兩 間接資料를 相互補完하는 한편 1977.6末 在物調査와 1978.6末 在物調査資料를 利用하여 1977末 基準 現在額을 推計할 수도 있음.

2. 貸与資産調査問題

가. 内容: 貸与資産調査는 資本係數 算出等を 目的으로 實際 經濟活動에 使用하고있는 資本 Stock를 把握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固定資産이 이에 該当되며, 物品도 調査對象에 包含됨.

그러나 物品을 間接調査할 때에는 貸与 与否를 가려내기 어려움.

나. 対策: 物品의 경우는 貸与가 거의 発生하지 않고,

(今般 試驗調査 結果 釜山・慶南地域에서는 物品의 貸与가 한件도 없었음.)

실사 貸与物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로 一般 行政機關 相互間일 경우가 많을 것인바, 物品에 限하여는 그 金額이 相對的으로 微弱한 點에 비추어 貸与 与否를 別途 調査할 必要性은 認定되지 않음

3. 「在物調査」對象에서 除外되는 資産의 調査問題

가. 内容: 在物調査에서 除外되는 資産으로는 國防部・中央情報

부의 物品과 糧穀・肥料・연연초 및 專売品 鉍石類・
動植物 等임.

나. 對策: 國防部 中央情報부의 物品은 「現在額報告」에 包含되
어 있고 糧穀・肥料・연연초 및 專売品은 政府企業의
B/S를 利用하며 動植物은 固定資産調査에 包含하여
調査함.

鉍石類는 主로 法人調査支部對象인 政府投資機關(浦項
綜合製鉄・鉍業振興公社等)의 保有資産임으로 政府資産
調査의 對象이 되지않음

(參考)

公共団体の 物品調査

上記 間接資料의 包括對象에는 公共団体の 物品이 包含되지 않으
므로 別途 調査하여야 함.

公共団体の 物品(工具 器具 및 備品, 在庫資産)은 法人企業調査
方法과 같이 調査表Ⅱ에 依하여 必要한 項目만을 調査토록 함.

IV. 結 論

物品調査는 既存資料를 利用하여 間接的으로 調査하는 것이 보
다 正確性을 期할 수 있으며 經濟的이라고 判斷됨.

따라서 政府部門의 物品調査는 部門分類가 仔細한 「在物調査報告
資料」를 主로 利用하고 「現在額報告資料」는 補完資料로 利用하고
자 함.

< 제 46 차 >

1978. 2. 15

1. 각 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 검토

각 지부에서 작성한 각 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2차안)을 조사담당기관별로 보완한 후 2.20 개최되는 실무자회의에서 경제기획국, 한국개발연구원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3차안을 작성기로 하였음.

2. 물품자산조사방법 검토

한국은행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문 물품자산조사를 조달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재물조사」를 이용하여 간접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별첨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되 본조사 세부 계획 제출시 물품에 관한 분류와, Net, Gross의 평가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음.

3. 계통선전계획

45차 실무자회의에서 결정된 계통선전계획중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조사본부에서 동 종합계획을 통보하도록 하였음.

가. 공고문 게재신문은 중앙경제지(4개) 및 지방지(8개)로 함.

나. 각 기관별 본판 전면에 부착할 현수막은 반듯이 3월, 7월 중 2달에 걸쳐 설치하되 3.2 - 8.20중 가급적 장기간 설치토록 함.

다. 각 기관별 제물선전 소요경비 (예산)

- 농수산부 : 국무총리 답화문 인쇄비 (1,800 천원)
- 기타 5개기관 : 1,908 천원 (9,540 천원 ÷ 5)

첨부 : 물품의 재조달가격 평가방법 적용상의 문제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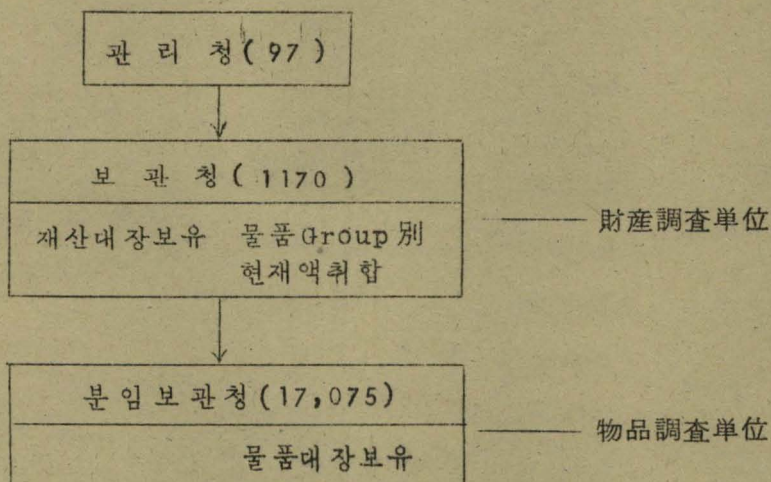
< 별첨 >

物品의 再調達價格 評價方法適用上의 問題點 檢討

I. 再調達價格適用의 困難點

政府所有物品도 再調達價格方式에 依하여 評價하기 위하여는 各 物品別로 取得年度 및 取得價格을 調整하여야 하나 實際 調査 上 다음과 같은 事項때문에 同 方式의 適用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判斷됨

1. 調査対象機關의 過多



- ① 各 物品別 取得年度 및 取得價格을 調査하기 위해서는 分 任保官庁을 対象으로 調査하여야 하나 이는 時間과 豫算・ 人力의 制限으로 困難함.

- ② 物品中 重要物品에 限하여 再調達價格方式을 適用한다 할지라도 取得年度・取得價格을 調査하여야 하므로 全物品調査體系를 分任保管庁을 調査對象으로 하지 않으면 안됨
(參考: 1976年 中央政府官署의 重要物品은 827 億원, 重要物品 以外の 物品은 410 億원임)

2. 業務量의 偏重

- ① 各 物品別로 取得年度 및 取得價格을 調査하려면 固有財産과 同一한 方式에 依하게 되는바 物品 1點과 財産 1點의 調査業務量이 같게되어 政府資産의 比重에 있어서 약 4% (在庫資産除外)에 不過한 物品의 調査業務量이 調査數量의 過多로 主要對象인 財産의 業務量보다 오히려 많아짐,

(76年 現在 固有財産 5,000千點)
物 品 760,000千點

II. 間接調査時 補完事項

— 間接調査 方式을 採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事項에 對하여는 補完하고자 함.

1. 資産分類方法

在物調査資料를 利用한다고 하더라도 同資料에는 車輛・船舶・機械 및 裝置 等の 具體的인 品目別로 表示되어 있으므로 品目에 따라 該當 國富資産의 分類(中分類, 小分類)대로 区分하고자 함.

〈在物調査 資料上の 品目〉

〈国富資産分類〉

의자. 책상	→	공구·기구 및 비품
트럭	→	차량 및 운반구
전동기	→	기계 및 장치
선박(20톤미만)	→	선박

註1) 耐用年数 5年以下

価格 100 萬원 以下の 機械와 器具임.

(物品管理法 施行規則 第102条)
(国有財産法 施行規則 第2条)

※ 日本: 耐用年数 5年以下 価格 50 萬원 미만 - 財産条例

物品會計条例

2. 在物調査 및 現在額報告 資料上の 「現在額」性格

間接資料는 主로 「現在額」基準으로 作成되어 있음.

原来 「現在額」이란 뜻은 「現在時点의 価値」라는 意味로서 国富調査上の Net 概念에 該当됨.

그러나 實際 現在額作成의 根幹이 되고있는 價格은 帳簿價格이나, 物品의 耐用年數가 短期的(最長5年)으로 그間의 物價上昇으로 因한 增加分과 減価償却에 따른 減少分이 거의 相殺되어 事實上 「現在時点의 価値」에 接近되고 있음.

따라서 現在額을 Net 概念으로 認定하여도 크게 無理가 없겠음

3. 物品의 Gross, Net 의 区分

上記 檢討한 바와같이 間接調査에 依하면 Net (現在額) 는
算出되나 Gross 가 計算되지 않음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補完作業이 必要할 것으로 判斷
됨.

- ① 物品의 耐用年數는 「 國富資產分類 및 耐用年數表 」에 依하
여 決定함.
- ② 機關別, 品目別, 標本調査에 依하여 平均 使用年數를 求함.
- ③ 現在額을 基準으로 Gross 評價額을 算出함.

$$\text{Gross 評價額} = \text{現在額 (Net)} \times \frac{1}{\text{殘價率}}$$

在物調査資料를 利用한 国部統計結果表 作成

在物調査 電算処理 内容	国富統計 結果表
1. 機關번호 : 전매청 - 청주연초제조장 (관리청) (보관청)	○ 機關別 分類 ○ 地域別 分類 (保管庁의 所在에 따라) ○ 産業別 分類 (保管庁의 機能에 따라)
2. 物品의 分類 : 郡別 및 品名別 分類 (자동차트레일러) (자전거) 싸이클	○ 国富資産別 分類 (별첨참조)
3. 會計別	○ 會計別
4. 帳簿上の 数量 및 金額	
5. 実査時の 数量 및 金額	○ 国富額 決定
6. 資原別 - 国産 및 外産	

有添 : 群級別 品名別 在物調査 集計表樣式

在物調査資料에 依한 国富資産別分類

1. 政府의 모든物品은 「政府物品分類表」(目次 別途)에 分類 明示되어있음.
2. 政府所有物品은 上記 「政府物品分類表」에 따라 群. 級. 品名 別로 区分되어 電算資料에 收錄되어 있음.
3. <同 分類表>를 基準으로 国富資産 該当品目만을 集計함.
4. 国富資産에 該当되지 않는 資産은 国富資産 集計에서 除外함.

例	10 群	무 기
	11 群	핵 무기
	76 群	書 籍
	7510	사무용消耗品
	7530	사무용紙類 및 樣式
	7540	標準樣式

5. 在庫資産의 分類

- ① 政府部門의 在庫는 政府企業(鐵道, 通信, 專売, 糧穀, 調達)에 限하여만 認定하고
餘他 一般行政機關이 保有한 物品은 固定資産(工具, 器具 및 備品等)으로 分類함.
- ② 政府企業의 경우에는 直接 生産活動에 關聯된 原材料, 商品 貯藏品에 該当되는 品目만을 在庫資産에 分類함.

< 제 47 차 >

1978. 2.20

방위목적 자산의 범위, Fifty Percent Method, 토지조성과 사회
간접자본의 차이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방위목적 자산의 범위

가. 정 의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 1)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시설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 2) 군수품관리법상의 전비품등을 말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

(전비품)

- o 군사기밀에 속하는 전비품
- o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기보호시설이나 지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 o 다음에 기재하는 갑류병기와 을류병기중 작전부대에서 사용
또는 보관하고 있는 구성품 및 부분품

나. 종 류

1) 군사시설

진지, 방책 장치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2) 군수품의 갑, 을 병기류

(갑류병기)

화기, 유도병기, 사격통제기기 등 주로 전투용무기

(을류병기)

차량, 유선통신기기, 갑류병기의 검사기 등 기타

다. 조사대상

가) 국방부소유 국유재산중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시설이외의 재산 (장교관사등)

나) 군수품중 통상품 (사무용기기, 악기, TV 등)

라) 일본의 예

1970년도 국부조사시 방위목적에 사용되는 군함, 항공기, 병기 및 직접 군수관련시설 (다만 병사는 포함되지만, 장교용 등 공무원 주택은 제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Fifty Percent Method

가. 정 의

Fifty Percent Method란 사회간접자본중 특히 도로자산에 대하여 순자산액 (Net Value)을 산출하기 위한 감가방법으로서 총자산액 (Gross Value)의 $1/2$ 을 순자산액으로 간주하는 방법임.

나. 근 거

Fifty Percent Method는 수식으로 산출된 결과는 아니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로자산등의 감가상각법으로 사용되고 있음.

1) 내용년수의 파악 곤란

내용년수의 작성은 감가상각법을 위한것인데 도로의 경우 그 속성이 토지에 준하므로 별도의 내용년수가 산정되어 있지 않음.

2) 경과년수의 파악 곤란

최근에 건설된 도로나 취득물품에 한하여는 경과년수를 알수 있

으나 전설년도가 오래된 대부분의 도로나 취득물품에 대하여는
경과년수를 명확히 파악하기 곤란함.

다. 일본의 예

일본의 1955년 국부조사의 경우 순도로와 공사중인 하천시설
에 대하여 Fifty Percent Method를 이용한 바 있음.

3. 토지조성과 사회간접자본의 차이점

가. 토지조성

토지의 속성은 변화시키지 않고 형태만 변화시켜 경제적가치를
높인 것이라 할수 있고 재생만 가능한 자산이라 하더라도재생
산 불가능한 자산인 토지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이므로
이번 국부통제조사에서는 제외하였음.

나. 사회간접자본

반면 사회간접자본의 경우는 토지의 속성과 형태가 모두 변화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형성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토지
조성으로서가 아니라 구축물의 일종으로써 조사가 됨.

< 제 48 차 >

1978. 2.22

1. 기작성 배부한 국부통계계획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정부부문, 가계부문의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표 일부를 수정하였음.

가. 정부부문 검토결과 (별첨 1 참조)

나. 가계부문 검토결과 (별첨 2 참조)

2. 제 49 차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 78.2.23 10:00

나. 장 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다. 안 건 : 각부문별 조사표 검토

첨부 : 1. 정부부문검토 결과

2. 가계부문검토 결과

<별첨 1>

정 부 부 문 검 토 결 과

지 적 사 항	검 토 의 견
1. 법인기업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인 "본 사계정업무 수행이란 모호한 점이 있어 구 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1) 본사계정 업무수행여부는 지점, 지사 출장소의 거주성 판별을 위한 것이므로 이익의 발생이 본사계정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함.
2. 물가배율표의 연도별 투입물 작성에 대한 언급	2) 물가배율표 작성시 연도별 투입 물을 조사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인 자료제약으로 연도별 투입물 작성은 곤란한 실정임. 또한 구체적인 투입물 내용은 물가배율표 지침에 명시키로 함
3. 동물원, 식물원의 동식 물 제외되는지 여부	3) 동물원, 식물원의 동식물 자산은 산업활동과 관련이 없고 주로 완상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므로 금번 국부조사시 조사대상 에서 제외함.

지 적 사 항	검 토 의 견
4. 물품조사를 민간기업과 일관성있게 적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4) 물품조사의 경우 기업부문과 같이 정부물품을 직접 조사하려면 물품수량의 과다로 주대상인 국유재산 조사에 비하여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증 됨. 또한 정확한 물품자산을 파악하기 곤란함. 따라서 조달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재물조사를 이용 간접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함.
5. 정부부문과 공공단체 조사표분리, 동식물 조사표분리, 자산재평가 조사항목 제외가 바람직함.	5) 정부부문 조사표에 의해서 공공단체 자산도 조사가 가능하고 정부의 동식물 소유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조사사항도 종류, 수량 육성년수별만 조사하면 됨. 또한 정부자산 재평가는 취득년도 취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므로 현 상태대로 업무를 추진함.
6. 취득가격 재평가액 시가의 어느하나를 기입	6) 취득가격은 반드시 기입하고 시가는 재평가액을 알 수 없는

지 적 사 항	검 토 의 견
하는지 불명함. 또한 대 여자산비율의 산정기준이 조사표상 불분명함. 7.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이동자산의 지역별 구 분방법	경우만 기입키로 함. 또한 대 여자산비율은 산정기준은 취득가 격 또는 재평가액임. 7)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이동자산 구분방법은 조사요령서에 선박은 선박지, 차량등은 등록지 또는 소유관서의 주소등을 기입하여 이동자산의 소유지를 명확히 구 분함.

< 별첨 2 >

가계 부문 검토 결과

지 적 사 항	검 토 의 견
1. 연간소득을 조사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함. 또한 주거부분은 전세, 월세를 집과 방으로 구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연간소득을 조사하는 이유는 소득 계층별 자산보유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임. 전세, 월세를 집과 방으로 분류하는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봄
2. 거주지 이외의 주택소유는 건물소유로 넓히는 것이 소유자주의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됨	2) 거주지 이외의 주거용건물은 가계 자산조사에서 조사하나 사업용 건물은 개인기업에서 조사하게 되므로 원상태로 함.
3. 가계부문조사 갑, 을표는 총자산액, 순자산액 산출에 불완전 상태임. 또한 구입시기 및 시기란은 지침서상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	3) 가계 자산 순자산액 평가는 $\text{갑품목} = 77 \text{년신품가격} \times \text{잔가율}$ $\text{을품목} = 77 \text{년신품가격} \times 50\%$ 임으로 조사표설계는 이를 추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데 완벽함. 또한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구입시기가 같은 동일품목은 함께 파악하기로 되어있는

지 제 사 항	검 토 결 과
4. 표본수 10,500 는 11개 시도, 자산계층별 분류하기에는 작은감이 있어 표본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5. 소득난 조사하는것 이 외에 지출항목을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지침에 완전히 일치함. 4) 가계부문표본수 10,500 가구는 현 여건 (예산과 인력) 하에서 조사 가능한 적절한 표본의 크기이며 조사성질상 표본오차보다는 비표본 오차가 전체적으로 클것으로 예상 되어 표본을 확대하는 것은 비표 본오차를 더욱 크게하여 조사의 정도를 오히려 낮게할 우려가 있 음. 따라서 현표본수대로 업무를 추진키로 함. 5) 근로자가구이의 (특히 농가) 의 소 득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극히 곤 란함. 따라서 지출항목을 추가하 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안을 채택 함.

< 제 49 차 >

78. 2. 23

1. 기작성 배부한 국부통계 계획에 관한 자문위원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법인부문, 개인부문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가. 법인부문 검토결과 (별첨 1 참조)

나. 개인부문 검토결과 (별첨 2 참조)

2. 제 5 차 국부통계 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 78. 2. 24 10:00

나. 장 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다. 안 전 : 중고품 자산재평가자산 평가방법

첨부 : 1. 법인부문 검토결과

2. 개인부문 검토결과

<별첨 1>

법 인 부 문 검 토 의 견

지 적 사 항	검 토 의 견
1. 임차자산에 대하여 보증금, 월세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의 타당성	1) 임차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을 직접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신품, 중고품으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키로 함. 또한 보증금, 월세등으로 임차자산을 간접 평가하는 것은 본 국부의 취지에 어긋나다고 판단됨.
2. 조사표(Ⅱ)의 취득원가, 총자산액, 순자산액 등의 조사이유, 종업원을 관리직, 생산직 추가의 필요성	2) 총자산액과 순자산액은 조사표 Ⅱ,Ⅳ를 기준으로 총국부 순국후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조사 결과 이를 결정키로 함. 또한 종업원의 기준과 정의는 조사표 뒷면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음.

직 적 사 항	검 토 의 견
3. 취득가격 불명한 자산과 분명한 자산을 함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조사표 심사상에 큰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분 조사토록 하였으나 이를 시험 조사후 결정키로 함.
4. 취득년도가 다른 세목 별자산의 합계를 시가로 파악하므로 정확한 시가 평가액 합계를 파악하기 곤란함. 또한 건물 조사시 건평과 연건평을 비고난에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시가 평가액이라함은 기업체의 자산재평가액을 의미하므로 중고 품 취득시와 마찬가지로 순국 부, 총국부를 산출할 수 있음. 또한 건평과 연건평을 기입하는 문제는 시험조사후 결정키로 함.
5. 산업분류를 소분류에서 세분류로 늘이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 바람직 함.	5) 산업분류를 세분류로 하는 것은 현 여건하에서 여러가지 자료 사정으로 볼때 어려운 실정임 또한 68년도 조사시 산업중분류까지 결과표를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현재 소분류로 하는 것도

지 적 사 항	검 토 의 견
6. 법인세법의 별표의 상각율을 적용하는 것이외에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액에 관한 항목 신설 요망.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생각됨. 6) 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율과 경제적 기술적 요인에 의한 감가 상각율은 실제로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를 동시에 구하는 것은 자산평가에 너무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됨. 또한 법인기업의 경우는 거의 자산 재평가를 하고 있어 별문제성이 제기되지 않음.

(별첨 2)

개 인 기 업 검 토 의 견

지 적 사 항	검 토 의 견
1) 개인기업 조사표는 규모별 (장부비치여부)로 조사표를 특성있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시험조사결과 대부분이 취득가격 또는 싼품가격으로 응답하였음. 한편,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서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함. 따라서 원상태대로 조사키로 함.
2) 개인기업과 개인사업의 구분은	2) 기업 : 생산과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 사업 :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경영하는 일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법인단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 적 사 항	검 토 의 견
3) 장부재고, 실지재고의 구분은 4) 농가조사는 농가의 가제를 같이 조사하는 방안 또한 농가의 공구, 기구 비품의 취득년도 취득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함.	개인사업체로 하는 것이 타당함. 3) 개인기업의 경우 대부분 장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 실지재고 자산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농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가제가 가지고 있는 가제자산은 현격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조사표 설계상, 조사 접근방법이 상이하므로 통합조사가 곤란한 실정임. 또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구, 기구 비품은 취득년도, 취득가격은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가제와 같이 신품가격을 산출하여 Net Gross 를 파악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함.

< 제 50 차 >

78. 2. 24

1. 중고품 및 재평가 자산의 평가방법

중고품 및 재평가 자산의 평가방법을 검토한 결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문제의 제기

1) 중고품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자산의 취득 당시 경과년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조사 기준시점 현재의 재취득 가액의 평가가 곤란함.

2) 재평가한 자산의 경우 중고품의 평가방법과 동일함.

나. 총자산액 (Gross) 과 순자산액 (Net) 의 평가

1) 취득시의 재취득가액 (Gross) 과 제조달가액 (Net)

$$\text{재취득가액} = \text{취득가액 (제조달가액)} \times \frac{1}{0.3161}$$

단, 0.3161은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1/2$ 이 경과한 후의 잔가율임.

(중고품 취득 당시의 경과년수를 내용년수의 $1/2$ 경과한 것은 평균 개념에 준한 것임)

제조달가액 = 취득가액

(중고품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은 시가로서 동 자산의 경과년수에 따르는 물가배율과 잔가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제조달가액으로 평가됨)

2) 조사기준시의 재취득가액과 제조달가액

재취득가액 = 취득시 재취득가액 × 취득후 경과년수에 따르는 물가배율

제조달가액 = 취득시 재취득가액 × 취득후 경과년수에 따르는 물가배율 × 취득후 경과년수에 따르는 잔가율

(여기서의 잔가율에는 동 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른 잔가율표에서 취득후 경과년에 해당되는 잔가율을 적용함)

3) 산 식

이상의 평가방법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G : 기준시 재취득가액

N : " 제조달가액

P : 취득시 가격

R : 취득후 경과년수에 따르는 물가배율

r : " " " 잔가율

기준시 재취득가액 (총자산액)

$$G = P \times \frac{1}{0.3161} \times R$$

< 제 51 차 >

78, 3, 3

1. 신품자산, 중고품자산, 임차자산의 평가방법을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신품자산

취득시기, 취득가격을 파악하고 물가배율을 적용하여 재취득가격을 구하고 잔가율을 곱하여 제조달가격을 구함.

나. 중고품 자산

제 50 차 실무 자회의에서 논의된 중고품 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해서 중고품 자산 경과년수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의 $1/2$ 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함. 단, 법인부분의 경우는 경과년수를 파악하여 중고품자산을 평가함.

1) 개인기업 시험조사결과 취득시 경과년수를 거의 포착할 수 없음.

2) 부분적으로 경과년수를 조정할 경우 경과년수를 아는 경우는 대부분 중고품 자산을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예상되어 평균개념에 어긋남.

다. 임차자산

종합지침서에 있는 기존방법과 같음.

2. 현수막설치

각 조사 담당 건물 전면에 부착할 현수막을 아래 기일까지
설치토록 함.

가. 중소기업은행 (3 . 6)

나. 농수산부 , 한국은행 , 한국산업은행 (3 . 8)

3. 제 52 차 국부통제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 78.3.6 14:00

나. 장 소 : 국부통제조사본부

다. 안 건 : 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 검토

< 제 52 차 >

78.3.7

- 1977 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부문별 조사표류 및 동 요령서 (안) 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부문별 최종 시험조사표류 및 동 요령서와 시험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안을 수립하여 검토하였던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자산별 신·중고의 구분

종합지침상의 중고품 평가는 동 자산의 취득시 결과년수를 동 자산의 내용년수의 $1/2$ 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중고품의 경과년수 파악을 제외함 .

단, 정부 및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확한 경과년수의 조사가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는 개인기업의 경우에만 적용됨 .

2. 신품가격과 시가의 조사

소유자산의 경우 신품 중고품을 구분하고 취득시기, 취득시 가격등을 조사하여 평가하므로 신품 가격과 시가의 조사가 필요없음 .

다만, 임차자산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임차시기와 신품가격을 조사토록 하여 재취득 가격과 재조달가격을 산출하도록 함 .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장부가 비치되지 않을 개인기업의 경우 취득시기, 취득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시험조사 결과 그 경우는 극소 (건물제외) 하고 건물의 경우는 취득시기만 파악되면 건물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가가 가능하므로 취득시 가격을 알 수 없는 자산이라 할지라도 유사한 자산과 비교하여 취득시 가격을 산출 기입하여 자산평가의 일원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됨.

3. 물가배율과 내용년수란의 설정여부

물가배율과 내용년수는 자산항목별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집계과정에서 일괄 Program 에 넣어 기계집계가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조사표를 간단히 하고 Cording 및 천공 작업량을 줄일 수 있으나 조사대상처 (정부 또는 법인) 별로 자산별 내용년수를 별도로 설정하였을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양한 품목에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Program 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자료 처리 요원과 재협의하기로 하였음.

4. 실무요원의 공동시험조사 건의

본 조사준비 자료는 기관별로 시험조사후 작성되었으나 실무요원이 이를 종합 조정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불명확하므로 실무요원의 공동시험조사를 겸하여 종합 조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

가. 자산분류별난의 설정 필요성

나. 소유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시 가격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

다. 임차자산의 신품가격조사 가능성

라. 조사항목의 배열 순서

마. 조사요령서의 내용조정등

< 제 53 차 >

1978. 3. 22

1. 각 부문별조사표 및 결과표 검토

가. 본 조사에 시행할 각부문별 조사표 및 결과표를 확정하기 위하여 3.15-3.21 7일간 각지부별 국부통제조사 실무자들이 공동 작업하여 작성한 조사표 및 결과표를 종합 정리하였음.

1) 각부문별 조사표의 용어 통일여부를 재확인하고 조사항목의 배열순서를 일부 재조정하였으며

2) 정부, 법인의 경우 별도의 내용년수를 적용하고 error check를 위하여 내용년수 난을 추가하였고

3) 종업원은 상시, 임시로 구분하였으며

4) 개인기업부문(농수산부) 임차자산 조사표에 취득시기를 임차시기로 취득가격을 신품가격으로 수정하였음.

나. 정부부문의 본조사가 4.24부터 실시예정이므로 빠른 사일 내에 책임자, 자문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표 및 결과표 양식을 확정키로 하였음.

2. 각종 평가 기준표 작성

각 지부별로 작성하고 있는 각종 평가기준표를 타부분에서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작성토록 촉구하였음.

건물평가기준표, 물가배율표 : 한국은행

잔가율표 : 한국산업은행

대동식물 평가기준표 : 농수산부

3. 토지, 산림자산 평가

부의 분배량을 파악하고 국토개발 계획수립 및 국민 대차대조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재생산 불가능한 자산인 토지, 산림자산의 추계가 필요함.

따라서 4.15부터 6개 조사담당기관의 협조아래 농수산부가 주로 담당하여 토지 및 산림자산을 평가하기로 하였음.

동 자산의 평가 방법은 기존자료에 의한 간접추계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부분 (정부, 법인등의 소유토지등)에 대하여는 실제 조사토록 함.

4. 제 2 차 계몽선전

가. 제 2 차 계몽선전기간 (78.7.1-7.31)에 다음과 같이 철도방송을 통한 계몽선전을 추가토록 함.

1) 기 간 : 78.7.1-7.31 (1개월간)

2) 대 상 : 전노선의 특급이상 열차 (92개열차)

3) 방송회수 : 1개열차당 1일 30초씩 2회

나. 경 비

1) 내 역 (부가가치세 포함)

방 송 료 $330,000 \times 2 \text{회} = 660,000 \text{원}$

제 작 비 $33,000 \times 2 \text{회} = 66,000 \text{원}$

726,000원

2) 부 담

농수산부를 제외한 5개 조사담당기관이 균등 부담함.

-422- (기관당 145,200 원)

< 제 54 차 >

1978. 3. 30

1. 4.7 개회 예정인 국부통계 자문위원, 지부장 합동회의에 상정할 아래와 같은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 보완하여 상정하기로 결정 하였음.

단, 각지부 별로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3.31 오전까지 조사본부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하고 확대실무자회의를 생략하기로 하였음.

가. 국부통계조사 종합계획 (안)

나. 토지 및 산림자산의 평가액 (안)

다. 국부통계조사 자료처리 계획 (안)

라. 종합계몽선전 계획 (안)

(본 회의에서 수정 보완한 내용은 자문위원 지부장 합동회의
의결 자료 참조)

첨부: 1. 회의자료

<별첨>

I. 국부통계 조사종합계획안

1. 심의이유

제2회 국부통계조사를 위하여 제2차, 제3차 책임자 회의에서 결정하고, 제6차 책임자회의 (78.1.26)에서 보완 의결한 조사계획 및 종합지침서에 따라 각 조사부분별 조사표(안) 및 결과표(안)를 종합심의 의결하여 본 조사에 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입안경위

가. 책임자 회의에서 의결한 조사계획 및 종합지침서에 의거 각 조사부분별 조사표 및 결과표 1차안을 작성하고 시험 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표 및 결과표 2차안을 작성하여 관제기관 및 자문위원회에 서면으로 검토의뢰한 바 있음.
나. 동 검토내용에 따라 78.2.8 ~ 78.3.22 까지 연9회에 걸쳐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보완 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

3. 종합계획내용

가. 조사계획

1) 조사목적

국민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의 측정량을 파악하여

○ 부의 분배상태파악

- 개발성과 측정
- 자본계수산출
-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자료 제공

2) 본 조사의 특징

- 가) 전 부분의 자산을 조사대상으로 한 대규모조사 임.
- 나) 소유자주의 방법과 아울러 업체가 사용하는 자산을 병행 조사하는 사용자주의 방법을 병용하여 정확한 자본계수작성이 가능하도록 함.
- 다) 각종 정의 및 분류를 New SNA 방식에 일치시킴.
- 라) 업종분류, 자산분류 및 품목분류를 세분하여 GNP 및 I - O부분 분류와 연결이 가능하도록 함.

3) 조사계획

- 가) 법적근거 : 통계법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제 21 호

(경제기획원고시 제 51, 1968.11.21)

- 나) 조사기준시점 : 1977.12.31

다) 부문별담당기관 및 조사시기

부 분	조사담당기관	조 사 시 기	비 고
총 괄	조사통계국	-	
정부및 대외순자산	한국은행	1978.4.24-7.31	
법 인	한국산업은행	1978.7.11-8.20	
개 인 기 업	농수산물부	1978.7.11-8.20	산업별로 분담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기 계	조사통계국	1978.3.10-4.10	

라) 조사대상

- ① 국민경제내에 소재하는 재생산 가능한 유형고정자산, 재고 자산과 대외순자산
- ② 국내에 소재하는(또는 거주)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 정부투자기관, 법인, 개인기업 및 일반가구

마) 부문별 조사방법

부 분	조 사	방 법	조 사 대 상 처 수
1) 일반정부	전수조사	자 계 식	약 15,000 기관
2) 정부기업	"	"	
3) 정부관리기업	"	"	
4) 법인기업	"	자 계 식 과	약 20,000 기업
5) 개인기업	"	타 계 식	총 310 만사업체 중 약 40,000 사업체
6) 일반가구	"	타 계 식	총 680 만가구 중 약 10,500 가구
7) 대외자산	기존통계 이용추계	"	
8) 토지 및 삼림	"		

바) 조사결과와의 공표

부분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1979.12.31 까지 공표

사) 평가기준의 설정

종 류	작성 기관	비 고
1) 물가배율표	한 국 은 행	1910년부터 1977년까지 년도별 물가상승율 작성
2) 잔가율표	한국산업은행	건물, 기계, 공구등 자산분류별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율 작성
3) 건물평가기준표	한 국 은 행	철근 콘크리트조, 목조등 구조별로 평가를 위한 단가를 작성
4) 대동식물평가기준표	농 수 산 부	품종별, 육성년수별, 평가액작성
5) 자산분류및 내용년수표	한국산업은행	유형고정자산에 관한 구조 및 용도분류와 품목별 내용년수 작성

아) 평가방법

① 조사항목 : 소유 및 차용별, 자산별, 취득시기 취득가격
외 약 30개 항목

② 적용기준표 : 5개기준표(“사”)항 - 평가기준 참조)

③ 평가방법

○ 재취득가격 : 취득가격 $\times$ 물가배율

○ 재조달가격 : 재취득가격 $\times$ 잔가율

㉠ 재취득가격을 합하여 총자산액을 산출하며 재조달가격을
합하여 순자산액을 산출 함.

㉡ 총자산액과 순자산액은 소유주체별, 사용주체별로 평가
함.

자) 표본설계

① 개인기업 및 가계부문

② 결사법 및 총화다단추출법에 의거 표본 추출

③ 비율 추정법에 의거 모수추정

나. 종합지침서(별첨 1 참조)

다. 조사표 및 결과표(안)

1) 결과표(안) (별첨 2 참조)

다음과 같은 제표원칙에 따라 결과표(안)을 작성 하였음.

가) 조사결과의 제표는 조사목적에 부합되는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작성 하였음.

나) 기본적인 제표는 매조사객체마다 자산항목별로 집계하고 조사객체의 속성에 따라 국부를 구성하는 유형자산전체에 대하여 소유자별과 경제부분별로 분류하고 기업부문은 다시 산업별로 분류 작성하였음.

다) 유형고정자산 평가액은 순자산액(제조달 가격)과 총자산액(재취득가격)으로 구분 제표토록 하였음.

라) 산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86개)별로 구분제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분류를 세분류로 구분제표하도록 하였음.

마) 조사되는 자산은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국부자산분류상의 소분류까지 집계 제표되도록 하였음

바) 지역별 분류는 11개 시, 도까지 파악 제표되도록 하였으며 가계부분에서는 다시 전국을 대도시, 시, 군부등으로도 구분하였음

2) 조사표(안) (별첨 3 참조)

조사대상 객체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과 자산평가액을 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각 조사지부 담당부분의 특성을 살려 조사사항을 설정하였음.

가) 제표 원칙에 의한 유별 및 지역별 자산평가액을 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설정하였음.

나) 자산의 평가가 순자산액(제조달가액)과 총자산액(재취득가액)에 의한 평가액의 구분포착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음.

다) 토지에 관하여는 **조사**가 가능한 정부 및 법인부문에서
토지종류별 (매지, 임야지, 논, 밭, 기타) 면적 및 최근
재평가 된 장부가액을 조사토록 하였음.

첨 부 : 1. 종합지침서

2. 결과표 (안)

3. 조사표(안) 각 1 부

II. 토지및삼림자산의평가계획(안)

1. 심의이유

재생산 가능한 자산중심의 1977년 국부통계조사 결과와
함께 재생산 불가능 자산 중 주요자산인 토지(조성 및
개량포함) 및 삼림(인공림포함) 자산을 평가하여 국민대차
대조표 완성 및 부의 분배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
는 것임.

2. 입안경위

가. 최초의 국부통계조사 계획에서는 토지조성 및 개량부분과
인공림을 평가할 계획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977년 국부통계조사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기로 하였음.

1) UN 권고에 따르면 토지 및 삼림자산을 재생산, 불가능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2) 토지의 개량 및 조성분은 그 소유주가 바뀔 경우 장부상
포착이 불가능 함.

3) 재생산 불가능자산 중 토지는 토지개량 및 조성분을 포함
하며 삼림은 인공림을 포함 함

나. 그러나 국민대차대조표를 완성하고 부의 분배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의 토지 자산평가방법 등
관계자료를 연구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
정하게 되었음.

3. 계획(안)내용

가. 목 적

국민대차대조표를 완성하고 부의 분배정책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 함.

나. 기준시점

1977.12.31

다. 작업기간

1978.4.1 ~ 1979.8.31

라. 평가대상

국민대차대조표상의 재생산 불가능자산 중

1) 토지 (Land)

가) 건물, 구축물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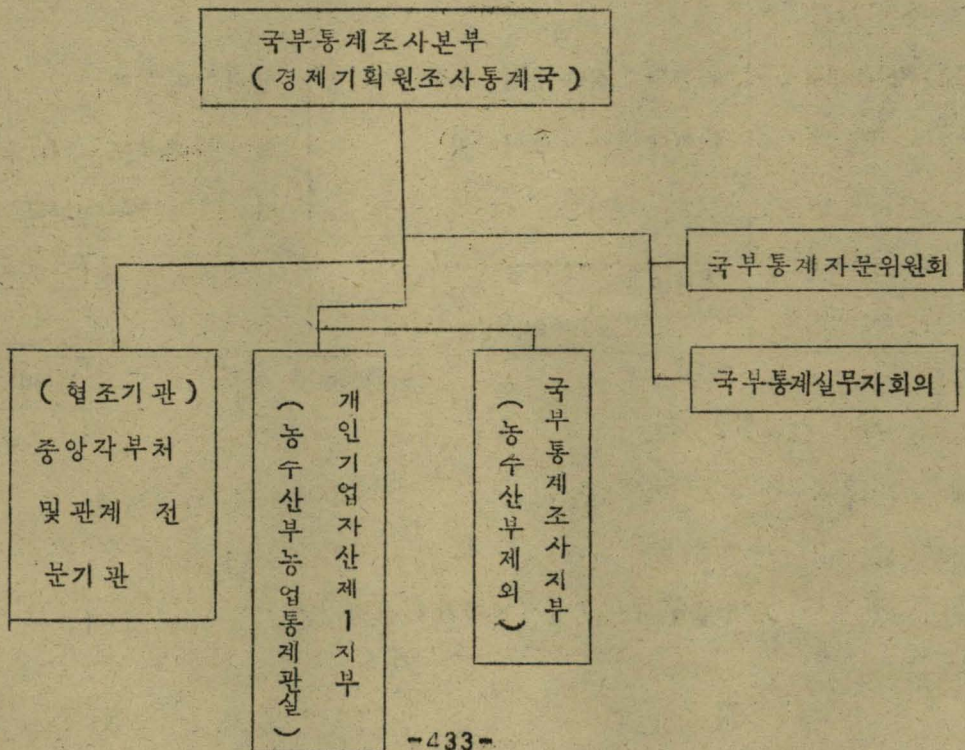
나) 경작지

다) 기타

2) 삼림 (Timber tracts and forests)

마. 작업기구

기존자료에 의한 간접추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실사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다음 도표와 같이 1977 년
국부통제조사 담당기관과 관련기관이 본 평가작업에 참여토록
하되 1977 년 국부통제조사 기본계획 (P . 6) 에 의거 농
수산부를 주담당기관으로 함 .



바. 조사 및 평가방법

1) 조사부문 및 방법

조 사 부 분	조 사 방 법	비 고
1) 정부 및 법인소유 토 지	정부 및 법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종별 장부가액을 조사 (1977 년국부 통제조사 에 첨부)	한국은행 및 한국 산 업은행에서 조사
2) 비법인비영 리단체소유토 지	양케트조사	별도조사
3) 삼 립	수종별 식목면적 조사 (기존생 정재통이용)	산림기본통계 기존 행정자료등을 이용하 여 추계하되 필요한
4) 기타부문	기존행정자료이용	부분에 한하여 조사

2) 평가방법

가) 토지평가

○ 과세지

지역별, 지목별면적×단가(시장가격)

○ 비과세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및 민간 비영리 단체의 소유
토지는 재산대장등의 평가액을 이용추계

나) 삼림평가

지역별 수종별 식목면적×단가(시장가격)

사. 평가결과의 공표

1977년 국부통계조사 종합편의 부록으로 1979.12.31 까지
발간 공표 함.

Ⅲ. 국부통계조사자료처리계획안

1. 심의이유

제2회 국부통계조사의 자료처리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
하여 1979년말까지 종합 및 부분별 결과의 제표 및 발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것임

2. 입안경위

가. 제6차 지부장회의 (78.1.26)에서 보완 의결한 종합지침
서(P.16)에 의하면 본 조사의 자료처리는 각 지부별로
수행토록 하였음.

나. 그러나 제표방법의 통일을 기하고, 기초자료의 종합보관 및 이용이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실무자회의 및 각 지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료처리내획(안)을 수립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

3. 자료처리계획

가. 조사표의 심사 및 테이프수록

각 조사지부는 담당부분의 조사표를 심사하고 테이프에 수록 내용검사를 필함.

나. 제 표

경제기획원 조사통제국에서 각 부분별 자료가 수록된 테이프를 수집하여 부분별 제표 및 종합편을 제표 함.

다. 자료처리의 실무자회의 구성

각 조사부분별 제표방법을 통일하여 자료를 테이프에 수록하고 제표하여야 하므로 조사본부 및 각 조사지부별 자료처리 담당자 (프로그래머)

각 1명씩으로 자료처리 실무자회의 (의장: 조사본부자료처리담당과장)를 78.4 월중에 구성하여 필요시 토의와 조사담당기관간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함.

라. 자료처리일정

- | | |
|-----------------|--------|
| 1) 자료처리실무자회의 구성 | 78.4 월 |
| 2) 세부제표계획수립 | 78.5 " |

3) 조사표검토천공및 테이프수록	78.5-79.5
4) 부문별집계 및 심사	78.12-79.7
5) 종합부문집계 및 심사	79.7 ~ 79.8

IV. 종합계몽선전계획 (보완안)

1. 심의이유

제 5 차 책임자회의 (77.11.29) 에서 결정한 원칙에 따라 수립 시행하고 있는 종합계몽선전계획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계몽선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입안경위

가. 제 5 차 책임자회의에서 결정한 원칙에 따라 종합 계몽선전계획을 확정 (78.2.16) 하여 제 1 차 계몽선전을 3 월중에 수행하였음 .

나. 제 2 차 계몽선전기간을 78.7.1 부터 7.31 까지로 설정하였으나 사업체 대상 본조사(법인 및 개인기업)가 동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동 계획에 철도 방송을 통한 계몽선전도 추가하도록 하는 실무자회의 의견에 따라 보완안을 작성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것 임 .

3. 보완안내용

가. 제2 차계몽선전기간 (78.7.1 ~ 7.31) 에 다음과 같이
철도 방송을 통한 계몽선전을 추가토록 함 .

1) 기 간 : 78.7.1 ~ 7.31 (1개월간)

2) 대 상 : 전 노선의 특급이상 열차 (92개열차)

3) 방송회수 : 1개열차당 1일 30초씩 2회

나. 경 비

1) 내역 (부가가치세 포함)

방송료 $330,000 \times 2 \text{ 회} = 660,000 \text{ 원}$

제작비 $33,000 \times 2 \text{ 회} = 66,000 \text{ 원}$

계 726,000 원

2) 부 담

농수산부를 제외한 5개조사담당기관이 균등부담

(기관당 145,200 원)

4. 종합계몽선전계획 (별첨참조)

첨부 : 종합계몽선전계획 1부 끝

< 제 55 차 >

1978. 4. 18

1.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계획

제 7 차 국부통계 지부장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한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작업을 위한 기구와 운영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음.

가. 평가작업기구

- 1) 조사통제국 주관하에 농수산부, 산림청,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부문별로 담당하도록 함.
- 2) 협조기관은 내무부, 한국감정원등 관계전문 기관으로 하며 다음의 기초있료를 구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토록 함.

협 조 기 관	기 초 자 료
내 무 부	(1) 지적통제 (77.12.31 현재) 지역별 지목별 면적
	(2) 과세표준액 (77.12.31 현재) 지역별 지목별 과세표준액
한 국 감 정 원	(1) 토지시가 조사결과 지역별 지종별 시가

나. 작업기구의 운영

1) 종합반에 실무자회의를 두고 실무자회의에서는 각부문별업무가 통일된 기준하에 추진되도록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책임자회의에 추진결과를 보고함.

2) 실무자회의의 구성원은 국부통계실무자회의 요원과 각 평가담당기관의 사무관 또는 조사역급으로 하고 종합반에서 수시로 회의 소집하되 필요시에는 연속회의를 개최함.

○ 본 실무자회의의 구성원은 토지 및 산림자산 평가를 위한 기본 계획수립, 종합결과분석, 각종 평가상 문제점 해결등 종합반의 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함.

3) 책임자회의의 구성원은 각평가반의 반장으로 함.

4) 실무자회의에서 검토된 실무안은 책임자회의에서 결정시행함.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부통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2. 국부통계 자료처리 실무자회의의 구성

제7차 국부통계 지부장 회의에서 확정한 국부통계 자료처리 계획에 따라 실무자회의를 구성하기로 하고 동 구성원은 각기관 프로그램어 1명씩으로 하고, 프로그램어가 없을 경우 집계담당직원으로함.

3. 기타사항

제61차 통계위원회의 의결안이 1977년 국부통계조사 종합계획(안)이므로 본 실무자회의의 요원은 전원 배석토록 하였음.

< 제 56 차 >

1978. 5. 2

1. 각지부별로 작성하고 있는 각종 평가기준표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대동식물 평가기준표

농수산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대동식물 평가기준표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정리, 유인하여 차기 본 회의에 제출토록 하였음.

- 기준표 작성방법
-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구분기준
- 평가기준표의 이용방법
- 평가기준표

나. 잔가율표

한국산업은행에서 별첨과 같이 매년별 시제열로 잔가율표를 작성하였으나 업무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국부조사용 자산취득년도 별분류와 같이 1950년이전, 1951-1961, 1962-1966, 1967-1968, 1969년부터 1977년까지는 매년 별로 하여 13개로 묶어서 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는 1950년 이전의 자산 취득년도를 정하는데에 따라 자산의 평가액이 달라지므로 타당성 있는 시기를 한국산업은행에서 검토하여 차기 실무자회의에서 논의키로 하였음.

다. 건물평가기준표, 물가배율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건물평가기준표, 물가배율표를
타부문에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5.8 까지 세부작성
지침서를 종합정리하여 실무자회의에서 검토기로 하였음.

2. 자료처리 계획

각조사 부문별 제표방법을 통일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 7 차 지부장회의에서 확정된 자료처리 실무자회의
를 금주중에 구성하고 내주초부터 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적인
time schedule 을 작성하는 동시에 자료처리 기본방향을
설정기로 하였음.

3. 개인기업 부문표본설계

농수산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에서 담당하는 개인기업 부문
의 구체적인 표본설계 내용을 유인하여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4. 기타사항

제 57 차 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 시 : 78.5.8 10:00

나. 장 소 : 조사통제국소회의실

다. 안 건 : 각종 평가기준표 검토

첨부 : 장가율표 (안) 별책부록편 참조

< 제 57 차 >

1978. 5. 8

1. 대동식물 평가기준표 검토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대동식물 평가기준표(안) (별첨 참조)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하여 78. 5. 15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하여 본 회의에서 다시 토의키로 하였음.

동물평가기준표

가. 젖소 및 한우의 평가기준표

1) 한우와 육우를 포괄하여 산출평균 하였으나 육우가 차지

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육우와 한우를 구분하여 평가기준표

를 작성토록 함.

2) 말을 경비용, 재래종으로 구분해서 연령별 전국 평균

가격을 산출토록 함.

3) 재확인사항

가) 제주도의 젖소 가격

나) 충북, 전북의 젖소 암컷의 10 세까지 가격

나. 돼지 및 기타 가축 평가기준표

1) 돼지를 큰돼지, 중돼지로 구분하는 것은 분류기준이 불명확하여 적용상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10 개월 미만, 10 개월 이상으로 구분함.

2) 염소, 산양, 면양, 닭, 집오리를 성숙, 미성숙의 구분한계를 정하여 평균가격을 적용 평가기준표를 작성함.

3) 77 년말 현재의 조사가 어려울 경우 현재 시가를 조사하여 농협의 농촌물가 및 임료금 조사결과에 나타난 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추정 작성함.

4) 재확인사항

가) 제주도의 돼지가격

나) 전북의 10 개월 이상 돼지가격

식물 평가기준표

가. 내용년수에 달한 식물자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잔존가율을 5 %로 함.

1) 기계 및 장치등의 자산과는 달라서 식물자산이 내용년수에 다달았을 때는 산업용 자산으로는 가치가 없음(잡목처리에 불과함)

2) 일본의 경우도 잔존가율을 5 %로 하고 있음.

나. 밤, 꾀나무도 유형고정자산 범주에 들어가므로 추가하여 작성함.

농기구 자산 표준가격표

농기구 자산뿐만 아니라 수산, 임업자산도 표준가격표를 작성토록 함.

또한 내용년수표도 별도로 작성(농기구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동자산을 평가하는데 이용토록 하였음.

2. 기타사항

가. 개인기업부문 표본설계

농림어업부문의 표본설계내용 중 어업 및 임업부문을 보완하여 차기회의에서 종합 검토키로 하였음.

나. 물가배율표 및 건물평가기준표 지침서 작성

한국은행에서 78.5.31까지 작성키로 한 물가배율표 및 건물평가 기준표의 작성지침서를 정리하여 78.5.15까지 조사본부에 제출토록 하였음.

다. 제 58차 실무자회의 개최(제 1차 자료처리 실무자회의 합동 개최)

1) 일 시 : 1978. 5. 11 14:00

2) 장 소 : 조사통계국 회의실

3) 안 전 : 가) 자료처리 계획(안)

나) 개인기업부문표본설계(안)

첨부 : ○ 대동식물 평가기준표(안)

<별첨>

대 동 식물 평가 기준표 안

1. 본표는 1977년 국부통제 조사의 동물 및 식물자산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표로서

가. 식물평가 기준표는 식물자산의 잔가의 한도는 자산의 육성
년수 가액으로 부터 경과년수가 내용년수에 도달할 때에
잔가율은 10%로 하고 정율제 산에 따른 정율표에 따라
잔존가액을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하였다.

$$S = C \cdot r.$$

S : 잔존가액

C : 육성가액

r : $(1 - d)^n$: 잔가율

d : 상각율

나. 동물평가 기준표는 1977.12.1~12.31 일 까지 139 개 시 .

읍·면의 5 일 장날을 약 5~6 회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작성한 것이다.

단, 동물평가기준표의 작성에 있어 유형고정자산의 동물과 재고자산의 동물 평가가 현시장 조사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동물 전체적으로만 작성하였음.

○. 유형고정자산동물

역용우(농우), 젖소암컷, 종마-2세이상

중돈, 유산양, 면양-10개월이상

산란용 닭-6개월이상

○. 재고자산의 동물

송아지, 고기소, 젖소수컷, 비육우(한우) 개, 육계(부화후 2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제외), 토끼, 검은염소, 오리, 칠면조, 거위 등 유형고정자산 동물 중 기준연령 미만의 전 동물

젖 소 및 한 우 의

종류	연 령		시 도 면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젖	소	당 세	310	308	310	354
			2	817	718	817	737
			3	919	995	919	980
			4	1,009	1,043	1,009	1,020
			5	1,001	1,032	1,001	1,039
			6	974	951	974	1,005
			7	893	913	893	840
			8	801	900	801	750
	소	젖	9	763	850	763	610
			10 이상	673	773	673	541
	한 우	암	당 세	205	178	205	192
			2	319	276	319	275
			3	427	347	427	386
			4	488	407	488	425
			5	533	448	533	461
			6	548	469	548	481
			7	534	481	534	477
			8	522	478	522	476

평 가 기 준 표

(단위:천원)

총 북	총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70	340	306	297	356	308	350
730	914	500	731	792	718	800
743	1,020	833	905	969	995	1,200
1,007	1,070	950	1,008	1,180	1,043	1,300
988	1,060	1,000	1,111	1,207	1,032	1,500
932	1,004		1,034	1,138	951	1,800
818	866		963	1,114	913	1,500
758	766		878	1,070	900	1,200
	648		833	961	850	800
	536		720	821	773	600
214	211	185	176	200	178	123
358	333	277	308	307	276	184
397	413	378	367	395	347	239
515	486	434	409	443	407	287
582	549	464	445	470	448	329
625	561	456	452	488	269	364
585	584	475	451	494	481	369
582	552	464	439	491	478	335

종 류 연 령		시 도 명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9	511	452	511	452
		10 이상	488	447	488	446
		당 세	205	178	205	192
(육 우 포 함)	수 컷 (젖 소 수 컷 포 함)	2	443	415	443	398
		3	545	529	545	486
		4	613	569	613	531
		5	650	596	650	594
		6	655	608	655	541
		7	627	613	627	518
		8	614	597	614	569
		9	605	521	605	511
		10 이상	587	531	587	520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571	532	447	421	475	452	310
553	527	434	392	470	447	285
214	211	185	176	200	178	123
532	419	366	414	384	415	360
611	489	497	483	488	529	434
697	554	529	561	572	569	500
744	590	522	571	617	596	620
672	619	545	580	604	608	864
641	601	526	575	593	613	825
635	573	501	565	626	597	800
606	550	514	545	602	521	750
606	561	527	548	589	531	750

돼 지 및 기 타

구 분 시 도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돼	큰 돼 지	암 컷	100,600	102,100	100,600	109,500
		수 컷	100,400	101,400	100,400	107,800
지	중 돼 지	암 컷	57,300	56,900	57,300	64,300
		수 컷	56,400	56,600	56,400	63,000
염 소	암 수	컷	28,300	27,100	28,300	25,000
		컷	27,100	28,300	27,100	24,000
젖산 양	암	컷	44,600	65,800	44,600	39,700
토	새	끼	450	480	450	520
끼	어	미	1,990	1,600	1,990	1,740
닭 (큰 것)			2,020	2,630	2,020	2,400
접 오 리 (큰 것)			1,740	1,700	1,740	2,490

가 축 평 가 기 준 표

단위 : 원

총 북	총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18,854	96,900	151,900	104,100	113,100	102,100	47,400
116,971	99,300	99,400	101,100	110,500	101,400	50,500
70,223	62,700	54,900	54,900	60,600	56,900	73,500
68,129	62,900	53,900	53,900	59,200	56,600	76,300
31,013	26,000	26,800	29,000	28,700	27,100	29,300
29,477	23,300	25,200	26,100	26,700	28,300	27,500
44,575	48,500	41,200	59,500	51,100	65,800	70,000
564	415	450	450	420	480	850
2,047	1,870	1,760	1,970	2,020	1,600	2,400
2,026	2,370	2,420	2,650	2,750	2,630	3,600
1,541	1,910	1,800	1,850	2,110	1,700	2,150

식물자산평

종 류 적 용 육 성 년 차 별 품 종 범 위 수	사	배	포	도	단	감
	전	전	전	전	전	전
	품	품	품	품	품	품
	중	중	중	중	중	중
	전	전	전	전	전	전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국
10	10	9	5		8	
제 1 년	111,404	101,141	134,667		4,405	
2	257,443	205,605	214,671		93,637	
3	358,533	305,650	298,048		134,132	
4	560,890	433,981	409,032		193,164	
5	690,476	560,468	515,414		253,767	
6	944,608	725,209			333,271	
7	1,111,853	868,737			409,884	
8	1,301,498	1,050,575			494,570	
9	1,482,542	1,229,351				
10	1,667,205					
10a 당 주 수	50	25	130		33	
수 당 면 적 (10a)	0.20	0.40	0.077		0.3	

가 기 준 표

북 송 아	살구, 자두	뽕 나 무 (낮 추 베 기)	뽕 나 무 (중 간 베 기)	뽕 나 무 (높 이 베 기)	호 프
전 품 종	전 품 종	전 품 종	전 품 종	전 품 종	전 품 종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7	6	3	4	4	3
71,067	41,903	131,804	111,518	101,471	459,844
135,083	79,157	214,429	194,143	184,096	864,255
204,031	114,425	298,860	278,574	268,527	1,279,549
295,382	168,009		360,761	350,714	
291,908	220,531				
403,861	286,813				
520,892					
33	33	740	347	154	300
0.3	0.30	0.013	0.029	0.065	0.01

내용 정월 성원 정월 성가		25	20	10	35
		8.8	10.9	20.6	6.4
		1,667,205	1,229,351	515,414	494,570
76	1	1,520,490	1,085,352	409,239	462,918
75	2	1,387,115	976,105	324,711	433,243
74	3	1,265,409	869,151	258,222	405,547
73	4	1,153,706	774,591	204,619	379,830
72	5	1,052,006	690,895	162,871	355,101
71	6	958,643	614,676	129,369	332,351
70	7	875,283	548,291	102,567	311,085
69	8	798,591	488,052	81,435	291,302
68	9	726,901	435,190	64,427	272,508
67	10	663,548	387,246	51,541	255,198
66	11	605,195	345,448		238,877
65	12	551,845	307,338		223,546
64	13	503,496	274,145		209,203
63	14	458,481	232,347		195,849
62	15	418,468	217,595		183,485
61	16	381,790	194,237		171,616
60	17	348,446	178,338		160,735
59	18	318,436	153,669		150,349
58	19	290,094	137,687		140,952

12	15	15	15	15	20
17.5	14.2	14.2	14.2	14.2	10.9
520,892	286,813	298,860	360,761	350,714	1,279,549
429,736	246,086	256,422	309,533	300,913	1,140,078
354,727	211,094	219,961	265,520	250,126	1,015,962
292,741	181,266	188,880	228,000	221,651	901,641
241,173	155,453	161,982	195,532	190,087	806,116
198,981	133,368	138,970	167,754	163,082	719,107
164,081	114,438	119,245	143,944	139,935	639,775
135,432	98,090	102,210	123,380	119,944	570,679
111,992	84,323	87,865	106,164	103,110	507,981
92,198	72,277	75,313	90,912	88,380	452,960
76,050	61,952	64,554	77,924	75,754	403,058
63,028	53,347	55,588	67,102	65,233	359,553
52,089	45,603	47,519	57,361	55,764	319,887
	39,293	40,944	49,424	48,048	285,339
	33,557	34,967	42,209	41,034	254,630
	28,681	29,886	36,076	35,071	226,480
					202,169
					180,416
					159,944
					143,309

내용 성점 율 성가		25	20	10	35
		8.8	10.9	20.6	6.4
		1,667,205	1,229,351	515,414	494,570
57	20	263,418	122,935		131,556
56	21	241,744			123,148
55	22	220,071			115,235
54	23	200,065			107,816
53	24	183,393			100,892
52	25	166,720			94,463
51	26				88,528
50	27				83,088
49	28				77,647
48	29				72,702
47	30				67,756
46	31				63,799
45	32				59,348
44	33				55,886
43	34				52,424
42	35				49,457
41	36				

농 기 구 자 산 표 준 가 격 표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류 별	농 기 구 명	규 격	단 위	전 국 표 준 가 격
원 동 기	엔 진	수 냉 디 이 젤 5 마 력	대	207,100
		수 냉 디 이 젤 8 마 력	〃	308,300
		수 냉 디 이 젤 10 마 력	〃	335,500
		공 냉 석 유 5 마 력	〃	104,500
		공 냉 석 유 7 마 력	〃	179,600
		수 냉 석 유 8 마 력	〃	231,700
		수 냉 석 유 10 마 력	〃	260,100
	발 동 기	수 냉 디 이 젤 30 마 력	〃	920,000
		수 냉 디 이 젤 38 마 력	〃	1,200,000
		수 냉 디 이 젤 45 마 력	〃	1,500,000
경 운 기	기본작업기 5종포함	공 냉 석 유 5 마 력	〃	628,200
		수 냉 석 유 8 마 력	〃	677,000
		수 냉 석 유 10 마 력	〃	710,600
	〃 (추레라 1톤)	수 냉 디 이 젤 8 마 력	〃	718,200
		수 냉 디 이 젤 10 마 력	〃	836,400
		수 냉 디 이 젤 12 마 력	〃	920,000
	본 체 (작업기 4종제외)	수 냉 석 유 8 마 력	〃	508,900
		수 냉 석 유 10 마 력	〃	537,300
		수 냉 디 이 젤 8 마 력	〃	585,500
		수 냉 디 이 젤 10 마 력	〃	655,800

류 별	농 기 구 명	구 격	단 위	전 국 표준 규격
트랙터	작 업 기	배 토 기	대	6,700
		쟁 기 (8 마력용)	〃	20,900
		쟁 기 (10 마력용)	〃	26,400
		추레라 0.5 톤	〃	76,700
		추레라 1 톤	〃	125,000
		파종기 (휴령 식)	〃	143,200
	본 체	수냉디젤 46 마력	〃	4,694,800
		공냉디젤 46 마력	〃	4,268,000
		수냉디젤 19 마력	〃	2,516,800
	작업기 (46 마력용)	트레일러 3.5 톤	〃	661,500
		쟁 기 3 련	〃	638,000
		로 타 베 이 타	〃	773,500
		디 스크 하 로	〃	245,400
		패 디 휠	〃	106,700
		로 다	〃	766,400
		도 자 6 W	〃	803,000
		디스크모아 CM151	〃	1,100,000
		리 저 C79	〃	452,100
		브로드 캐스트	〃	385,000
	작업기 (19 마력용)	디스크푸라스 3 F	〃	911,900
		칼 티 베 이 티	〃	639,100
		쟁 기 2 련	〃	228,800
		로 타 리	〃	525,800
		패 디 휠	〃	80,300

류 별	농 기 구 명	규 격	단 위	전 국 표 준 가 격
		트 레 일 러 1.2 톤	대	530,000
모심는기계	이 앙 기	2 조	〃	489,820
		3 조	〃	793,680
방제 기 구	동력분 무기	가 반 형 40A	〃	138,900
		주 행 형 40A	〃	159,100
		가 반 형 60A	〃	190,500
		주 행 형 60A	〃	210,600
		가 반 형 70A	〃	201,000
		주 행 형 70A	〃	221,200
	동력살 분무기	NF 04 DM-9	〃	91,800
방 제 기 구	인 력 분 무 기	배 부 식 스 테 제 18ℓ	〃	10,700
		지 렫 대 단 통 복 동	〃	14,500
양수 기 구	약 수 기	휴 갈 80m/m	〃	42,100
		자 흡 80m/m	〃	45,400
		휴 갈 100m/m	〃	53,100
	타 설 식 펌 프	JP420. 1/2마 력	〃	35,000
수확 용 기 구	콤 바 인	M×550 2 조	〃	2,371,600
	바 인 더	2 조	〃	720,000
	탈 곡 기	자 동 (소)	〃	142,700
		자 동 (대)	〃	200,000
		동 력	〃	76,000
		인 력 . 족 답	〃	26,700
사료 가 공 기	절 단 기	취 상 형 (중)	〃	135,600
		취 상 형 (소)	〃	120,000

류 별	농 기 구 명	규 격	단 위	전 국 표 준 가 격
곡물가공기	분쇄기	절 락 형	대	100,000
		한 마 식 (중)	//	250,000
		한 마 식 (소)	//	120,000
		순 환 식 12NCD(12석)	//	825,000
	전 조 기	순 환 식 30NCD(30석)	//	1,045,000
		평 면 식 2 평 용	//	385,000
		기 업 식 (대)	//	772,800
		기 업 식 (중)	//	627,300
	현 미 기	명 진 76 형	//	156,000
		명 진 특 호	//	300,000
	정 맥 기	합 동 식	//	180,000
	석 발 기	기 업 식 (대)	//	263,700
		기 업 식 (소)	//	154,600
		대 룩 식 (소)	//	130,000
짚가공기	가 마 니 틀	전 자 동 KM330	//	1,320,000
		반 자 동 모 타 놀 마 려 부 착	//	104,500
		인 력 족 답	//	50,000
	새 끼 틀	전 자 동 OK형	//	660,000
		반 자 동 모 타 놀 마 려 부 착	//	50,000
		인 력 족 답	//	28,000

<제 58 차>

1978. 5. 11

1. 개인기업 부문 표본설계

개인기업 부문 표본설계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고 개인기업 부문 표본설계(안)을 제출하지 않은 중소기업은행은 동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실무자회의에서 개인기업 부문 표본설계(안)을 검토한 후 자문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음.

가. 표본동 추출방법(중소기업은행의 표본설계)

개인기업 부문 표본설계 작업의 일환인 사업체 표본동 추출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대별됨. 따라서 이중 가장 타당성 있는 방법을 채택하여 표본동을 추출하기로 하되 가와 나)의 방법을 혼용토록 하였음.

- 1) 사업체가 많은 동부터 나열하고 추출율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어 표본동을 뽑는 방법(계통추출법)
- 2) 평균 사업체수($\frac{\text{총사업체}}{\text{총동수}}$)를 산출하여 추출율에 따라 평균에 가까운 동을 표본으로 뽑는 방법
- 3) 사업체수가 많은 동부터 적은 동까지를 몇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그중 각층별로 추출율을 달리하여(사업체가 많은 동은 추출율을 작게 사업체가 적은 동은 추출율을 크게) 표본동을 뽑는 방법(층화 2단추출법)

나. 표본오차

표본오차에는 자산분류별 표본오차, 산업분류별 표본오차등이

있으나 이번 국부조사시 개인기업 부문의 표본오차는 산업분류별 자산총액에 대한 표본오차 및 산업대분류별 자산중분류별 표본오차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기업부문 담당기관에 재 협의 후 확정기로 하였음.

2. 재고자산의 범위

가. 아래와 같은 미성숙동식물의 재고자산 삽입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재고자산의 범위에 ①수확 또는 채취한 후의 자산만 재고자산으로 파악함. ②1년이상 성숙하여야 상품가치가 있는 미성숙 동식물까지 재고자산으로 파악함.

이상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따라서 일본의 예와 우리나라 법인기업 회계처리상 문제를 감안하여 재고자산에 포함한계를 결정기로 하였음.

○ 미성숙동물 : 내수면에 양식중인 물고기, 바다에서 양식중인 어패류 해류등

○ 미성숙식물 : 인삼, 묘목등

나. 또한 일본의 경우 흥행용, 투전용, 애완용의 동물을 공구기구 및 비품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법인기업의 회계처리상 문제를 파악하여 결정기로 하였음.

3. 자료처리 계획

국부통제자료처리 실무자회의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다음사항을 추진토록 하였음.

가. 자료처리 과정에서 Cording, editing 평가, 제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문별 조사표를 자료처리 실무자들이 사전에 검토함.

나. 이 달안에 자료처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함.

4. 기타사항

59 차 실무자회의 개최

가. 일시 : 1978. 5. 15 10:00

나. 장소 : 조사통계국 회의실

다. 안건 : 1) 대 동식물 평가기준 표 (안)

2) 개인기업부문 표본설계 (안)

< 제 59차 >

1978.5.15

1. 동식물 평가기준표 검토

농수산부에서 작성한 동식물 평가기준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음.

가) 동물평가기준표

한우는 원안과 같이 지역별 연령별로 평가기준표를 작성하기로 하고 (별첨 1참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젓소, 고기소, 말은 연령별로 전국 평균가격을, 돼지, 토끼, 닭등은 성숙, 미성숙 시기별로 전국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평가기준표를 재정리하기로 하였음.

- 1) 지역별가격차가 크지 않음.
- 2) 업무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3) 동물자산이 전국부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

(76년말 현재 주요동물 현황)

젓 소 : 89,688 두

고기소 : 12,107 두

말 : 8,334 두

나. 식물평가기준표

별첨 2와 같이 결정 하였음. 단, 밤나무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보완키로함.

2. 미성숙 동식물의 조사대상 범위

별첨 (3)와 같은 미성숙 동식물의 조사대상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1년이하의 육성으로 수확 또는 수확이 가능한 동식물은 당해 년도의 상품으로 국민경제내에 투입되므로 제외하고 1이상 재배 또는 양식이 필요한 육성중의 미성숙 동식물은 재고자산으로 간주하여 파악키로 하였음. 단, 육성중의 동식물의 분류는 법인의 경우 해당법인의 회계처리에 따르고 농림어업 개인기업의 경우 미성숙 동물로 함.

3. 수산용 기계기구 표준가격표

수산피해 산정 기준(건설부 허가)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수산용 기계 기구의 내용년수와 신품가격(별첨 4)을 이번 국부조사시 수산용 자산에 적용시키는 문제가 논의 되었으나 이는 전수산 가계의 자산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타부문과 비교하여 볼 때 일광성이 결여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년수를 따르기로 하였으며 가격자료는 참고자료로 이용키로 하였음.

4. 일본에서 공구기구 비품으로 분류한 흥행용, 투전용, 애완용 동물은 우리나라 세법 규정상 별도 분류되지 않은 사항이며 법인의 경우 동자산소유 법인의 편의에 따라 대동식물로 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동 자산의 분류는 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르고 개인기업의 경우 대동식물로 분류함.

5. 기타사항

가. 위의 열거한 동식물(유형고정자산) 이외에 재고자산으로 간주되는 동식물은 시가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음.

나. 30평이상 집단 재배하는 식물에 한하여 유형고정자산으로 파악함.

다. 관상 수나 꽃을 판매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도소매업으로, 재배 겸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체는 농업으로 분류하기로 하였음.

라. 제 60 차 국부통계 실무자 회의 개최

1) 일시 : 1978.5.16 10:00

2) 장소 : 국부통계조사본부

3) 안건 : 개인기업 표본설계(안)

첨부 : 1. 동물평가기준표(안)

2. 식물평가기준표(안)

3. 미성숙 동식물 재배 및 양식기간

4. 수산용기제기구 가격기준표

종 류	시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년령						
암컷	1세	205	178	205	192	207	
	2	319	276	319	275	323	
	3	412	347	412	386	397	
	4	479	407	479	425	479	
	5	526	448	526	461	526	
	6	546	469	546	481	546	
	7	534	481	534	477	546	
	8	522	478	522	476	534	
	9	511	452	511	452	513	
	10세이상	488	447	488	446	498	
수컷	1세	205	178	205	192	207	
	2	415	363	415	369	401	
	3	517	488	517	491	508	
	4	587	556	587	528	582	
	5	644	581	644	630	649	
	6	637	595	637	555	672	
	7	615	603	615	539	641	
	8	609	594	609	538	635	
	9	577	561	577	524	577	
	10세이상	577	561	577	524	577	

산출근거 : 1) 각도 농수산통제출장소 (139개)에서 시군별 우시장
 2) 서울은 경기도 가격에서 부산은 경남의 가격임.
 3) 1,000원 단위에서 절사 하였음.

기 준 표

(단위 : 천원)

총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07	185	176	200	178	170
323	277	308	307	276	264
412	378	367	397	347	337
479	434	409	443	407	392
526	464	445	470	448	431
546	456	452	488	469	447
548	475	451	494	481	447
534	464	439	491	478	437
513	447	421	475	452	420
498	434	407	470	447	407
207	185	176	200	178	170
419	356	371	290	363	343
506	461	438	489	488	417
571	507	491	542	556	500
619	544	543	587	581	640
645	555	553	594	595	678
641	539	539	576	603	659
631	501	539	587	594	659
577	514	472	564	561	577
527	473	472	564	561	577

의 77.2월중 가격임.

젖 소 평 가

시 도 종류 년 령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암	1 세	310	308	310	354	287
	2	817	718	817	737	730
	3	919	995	919	980	857
	4	1,009	1,043	1,009	1,020	1,007
	5	1,001	1,032	1,001	1,039	988
	6	974	969	974	1,005	969
	7	893	913	893	874	874
	8	801	900	801	794	794
	9	763	850	763	736	736
컷	10세이상	673	747	673	611	611
수	1 세	205	178	205	192	207
	2	470	466	470	424	498
	3	572	569	572	486	594
	4	639	582	639	534	611
	5	655	611	655	561	686
	6	672	621	672	591	722
	7	639	623	639	576	704
	8	618	600	618	565	691
	9	613	525	613	525	643
컷	10세이상	586	524	586	524	640

기 준 표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40	306	297	356	308	350
827	677	731	792	718	800
1,020	857	905	969	995	1,047
1,070	952	1,008	1,164	1,043	1,300
1,060	1,000	1,111	1,197	1,032	1,197
1,004	969	1,034	1,138	969	1,184
874	874	963	1,114	913	1,168
794	794	878	971	900	971
736	736	833	900	850	800
611	611	720	747	747	611
207	185	176	200	178	169
411	407	456	407	466	400
486	533	527	486	569	486
541	550	631	601	582	541
561	561	628	647	611	600
593	591	633	614	621	722
576	576	615	609	623	704
565	565	615	600	600	691
525	526	526	525	525	642
524	524	524	524	480	640

고 기 고 평 가

시 도		서 울	부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종류	연 령					
암	1 세	339	33 0	339	383	268
	2	462	481	462	567	654
	3	693	633	693	850	804
	4	955	732	955	800	912
	5	784	784	784	784	939
	6	759	759	759	759	759
	7	739	739	739	739	739
	8	716	716	716	716	716
컷	9	684	684	684	684	684
	10세이상	649	649	649	649	649
수	1 세	506	650	506	450	286
	2	788	750	788	633	728
	3	958	780	958	957	842
	4	1,084	790	1,084	894	922
	5	894	894	894	894	949
	6	881	881	881	881	881
	7	866	866	866	866	866
	8	837	837	837	837	837
컷	9	798	798	798	798	798
	10세이상	770	770	770	770	770

- 산출근기 : 1) 각도 농수산통제출장소(139개)에서 조사한 시군별
 2) 규격규정없이 연령별로만 조사하고 연령별 거래가
 상한과 하한으로 조정하였음. 따라서 연령별 도별로
 3) 서울은 경기도 가격이며 부산은 경남가격임.
 4) 1,000원 단위에서 절상하였음.

기 준 표

단위 : 천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50	396	390	383	330	350
430	476	623	509	481	481
543	735	719	708	633	633
668	833	760	793	732	732
728	856	784	830	783	783
726	840	759	828	759	640
706	790	739	790	739	615
700	740	716	753	716	600
680	690	684	735	684	575
660	650	649	677	649	575
353	458	380	453	650	350
527	568	671	630	750	375
626	874	738	885	780	475
730	1,125	814	907	790	725
783	988	894	951	894	797
798	988	881	889	881	850
864	863	866	887	866	850
841	814	837	863	837	830
881	775	798	805	798	800
780	750	770	792	770	760

우시장의 77.12월당 평균 가격임,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별가격을 전국평균하여 평균가격의 10%의
는 10%이상 가격차가 없음.

기 타 동 물

		돼 지			토 끼	
		6 개월 미 만	6 개월 이상 ~ 10 개월 미만	10 개월 이상	6 개월 미 만	6 개월 이상
서	울	22,750	56,850	100,500	450	1,990
부	산	23,760	56,750	101,750	480	1,720
경	기	22,750	56,850	100,500	450	1,990
강	원	23,800	63,650	108,650	520	1,740
충	북	25,270	64,100	114,350	550	2,050
충	남	25,000	62,800	98,100	420	1,870
전	북	22,240	54,400	108,300	450	1,760
전	남	22,060	54,500	102,600	450	1,970
경	북	23,440	59,900	111,850	450	2,020
경	남	23,760	56,750	101,750	480	1,720
제	주	22,300	52,500	93,600	550	2,100

평 가 기 준 표

단위 : 원

육 계		산 란 용 탕		염 소	
3 개 월 미 만	3 개 월 이 상	6 개 월 미 만	6 개 월 이 상	10 개 월 미 만	10 개 월 이 상
1,350	1,900	1,400	2,200	17,000	34,000
1,018	1,838	1,447	2,215	18,474	31,053
1,350	1,900	1,400	2,200	17,000	34,000
1,400	2,300	1,500	2,100	18,500	29,300
1,360	1,790	1,418	2,140	18,435	32,629
1,247	2,019	1,547	2,205	18,067	28,734
1,286	2,203	1,794	2,537	18,704	29,746
1,525	2,329	1,862	2,685	18,057	29,455
1,260	2,028	1,463	2,437	17,104	31,043
1,080	1,838	1,447	2,215	18,474	31,053
1,500	2,200	1,500	2,500	19,165	32,819

기 타 동 물

		적 산 양		면 양	
		10 개월 미만	10 개월 이상	10 개월 미만	10 개월 이상
서	울	23,000	48,000	(전국)	(전국)
부	산	30,833	53,178	21,683	59,117
경	기	23,000	48,000		
강	원	25,000	43,900		
충	북	24,138	45,975		
충	남	25,567	44,834		
전	북	24,680	44,625		
전	남	30,050	57,250		
경	북	22,844	54,031		
경	남	30,833	53,178		
제	주	25,995	53,178		

평 가 기 준 표

집 오 리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1,350	1,900
1,018	1,838
1,350	1,900
1,400	2,300
1,360	1,790
1,247	2,019
1,286	2,203
1,525	2,329
1,260	2,028
1,080	1,838
1,500	2,200

		경주용 말	사역용 말
암	1세		30,000
	2		58,500
	3		72,000
	4		89,500
	5		103,500
	6		110,000
	7		105,000
컷	8		101,500
	9		88,500
	10세이상		78,500
수	1세		36,000
	2		71,200
	3		88,400
	4		116,500
	5		138,500
	6		155,000
	7		158,500
컷	8		145,000
	9		128,500
	10세이상		118,500

< 별첨 2 >

식 물 평 가

종류 적용범위 육성육성 년차별	사 과	배	포 도	감	복숭아
	전 품 종	전 품 종	전 품 종	전 품 종	전 품 종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10	9	5	8	7
제 1 년	111,404	101,141	134,667	49,405	71,067
2	257,443	205,605	214,671	93,637	135,083
3	358,533	305,650	298,048	134,132	204,031
4	560,890	433,981	409,032	193,164	295,382
5	690,476	560,468	515,414	253,767	291,908
6	944,608	725,209		333,271	403,861
7	1,111,853	868,737		409,884	520,892
8	1,301,498	1,050,575		494,570	
9	1,482,542	1,229,351			
10	1,667,205				
10a 당주 수	50	25	130	33	33
주당면적 (10a)	0.20	0.40	0.077	0.3	0.3

기 준 표

살구자두앵두	뽕나무 (낮추베기)	뽕나무 (중간베기)	뽕나무 (높이베기)	호프	감귤
전 품종	전 품종	전 품종	전 품종	전 품종	전 품종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전 국
6	3	4	4	3	8
41,908	131,804	111,518	101,471	459,844	105,490
79,157	214,429	194,143	184,096	864,255	197,490
114,425	298,860	278,574	268,527	1,279,549	291,280
168,009		360,761	350,714		388,650
220,531					492,010
286,813					600,700
					714,340
					836,730
33	740	347	154	300	33
0.30	0.013	0.029	0.065	0.01	0.30

내용년수	25	20	10	35	12
정율	8.8	10.9	20.6	6.4	17.5
성원육성가	1,667,205	1,229,351	515,414	494,570	520,892
1	1,478,978	1,058,348	381,973	454,015	405,827
2	1,311,924	911,072	283,117	416,774	316,181
3	1,163,709	784,326	209,825	382,550	246,330
4	1,032,333	675,283	155,500	351,194	191,897
5	915,796	581,360	115,247	322,361	149,496
6	812,429	500,469	85,404	295,951	116,471
7	720,566	430,888	63,293	271,667	90,739
8	639,206	370,895	46,903	249,362	70,685
9	567,016	319,262	34,790	228,936	55,058
10	502,996	274,883	25,771	210,143	42,922
11	446,144	236,650	19,122	192,882	33,441
12	395,794	203,703	14,174	177,056	26,045
13	351,113	175,428	10,514	162,565	20,315
14	311,434	150,964	7,783	149,212	15,783
15	276,256	129,942	5,773	136,996	12,293
16	245,079	111,871		125,720	9,584
17	217,404	96,381		115,433	7,501
18	192,896	82,981		105,937	5,834
19	171,055	71,425		97,282	
20	151,716	61,468		89,270	

1 5	1 5	1 5	1 5	2 0	3 5
1 4 . 2	1 4 . 2	1 4 . 2	1 4 . 2	1 0 . 9	6 . 4
286,813	298,860	360,761	350,714	1,279,549	836,730
234,900	244,766	295,463	287,235	1,101,564	768,118
192,365	200,445	241,962	235,224	948,274	705,112
157,546	164,164	198,166	192,647	816,352	647,211
129,008	134,427	162,270	157,751	702,856	594,162
105,662	110,100	132,904	129,203	605,099	545,381
86,531	90,166	108,842	105,810	520,904	500,699
70,871	73,848	89,144	86,661	448,482	459,616
58,051	60,489	73,018	70,985	386,040	421,879
47,525	49,521	59,778	58,113	332,299	387,322
38,921	40,555	48,955	47,592	286,107	355,527
31,894	33,233	40,117	38,999	246,313	326,325
26,100	27,196	32,829	31,915	212,021	299,549
21,368	22,265	26,877	26,128	182,592	275,033
17,524	18,260	22,042	21,429	157,129	252,441
14,341	14,943	18,038	17,536	135,248	231,774
11,731	12,223	14,755	14,344	116,439	212,697
9,608	10,012	12,085	11,749	100,317	195,298
7,887	8,219	9,921	9,645	86,370	179,228
6,453	6,724	8,117	7,891	74,342	164,585
5,277	5,499	6,638	6,453	63,977	151,080

내용년수	25	20	10	35	12
정 율	8.8	10.9	20.6	6.4	17.5
성원육성가	1,667,205	1,229,351	515,414	494,570	520,892
21	134,543	52,862		81,950	
22	119,372	45,609		75,224	
23	105,868	39,216		69,042	
24	94,030	33,807		63,404	
25	83,360	29,013		58,211	
26	74,024	25,079		53,414	
27	65,521	21,514		49,061	
28	58,185	18,563		45,006	
29	51,683	15,982		41,346	
30	45,848	13,769		37,934	
31	40,680			34,818	
32	36,012			31,949	
33	32,010			29,328	
34	28,342			26,954	
35	25,175			24,729	
36	22,341			22,701	
37				20,821	
38				19,140	
39				17,557	
40				16,123	

15	15	15	15	20	35
14.2	14.2	14.2	14.2	10.9	6.4
286,813	298,860	360,761	350,714	1,279,549	836,730
4,331	4,513	5,447	5,296	55,021	138,646
3,556	3,706	4,473	4,349	47,471	127,267
2,897	3,018	3,644	3,542	40,818	116,808
				35,188	107,269
				30,197	98,483
				26,103	90,367
				22,392	83,004
				19,321	76,142
				16,631	69,951
				14,331	64,177
					58,906
					54,053
					49,618
					45,602
					41,837
					38,406
					35,226
					32,381
					29,704
					27,277

<별첨 3>

어 종 별 양 식 기 간

어 종	구 분	성 장 기 간	비 고
패 류	굴 투 석 식	2 년 후	종패, 종묘, 치어틀투입
	굴 수 하 식	"	하여 시장 판매가 가능
	반 지 락	"	함.
	백 합	3 년	
	꼬 막	"	
	피 조 개	2 - 3	
	기 타 패 류	3	
어 류	잉 어	3 년	
	뱀 장 어	2 년	
	금 붕 어	3 년	
	비 단 잉 어	"	
인 삼		4 년	

< 별첨 4 >

수 산 용 기 계 기 구

단위 : 원

종류별	기 기 명	규 격	단위	가 격	내용년수
어 선					
동력선	선 체	강 선	隻	1,050,000	10
		목 선	"	900,000	6
무동력선		"	"	500,000	6
기 관		디 젤	HP	70,000	5
		소 구	"	40,000	5
		선외기	"	40,000	5
어로장비					
	SSB 송신기	10 W	대	500,000	5
	SSB "	30 W	"	600,000	5
	SSB "	50 W	"	750,000	5
	DSB "		"	1,560,000	5
	" 수신기		"	1,200,000	5
	방 탐 기		"	650,000	5
	어 탐 기		"	800,000	5
	로 랑		"	1,400,000	5
	래 이 다	10Kw	"	2,000,000	5
어 망					
	정 치 망	대	통	6,369,000	6
	"	중	"	3,644,000	6
	"	소	"	625,000	6

종류별	기 기 명	규 격	단 위	가 격	내용년수
어 망	안 강 망	대	통	1,478,000	6
	"	소	"	451,000	6
	삼 치 유 망	30 반	구	1,635,000	6
	조 기 "	45 "	"	2,567,000	6
	꽁 치 "	40 "	"	2,289,000	6
	상 어 "	40 "	"	1,476,000	6
	상 어 연 승	20 톤	"	365,000	6
	범 선 저 인 망		통	194,000	6
	오징어일본조		척	138,000	6
	기 타	잡어 구	통	398,000	6
	기 타 어 엽	범선연승		55,000	6

< 제 60 차 >

1978.5.16

1. 표본설계(안) 검토

개인기업부문 담당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표본설계(안)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동 자료를 조속히 정리하여 조사본부에 제출키로 하였음.

가. 산업별 모집단수

1) 모집단수

산 업 별	국세청자료 (77.10.31기준)	각 종 센 서 스 자 료
광 업	2,142	1,768(73년 광공업센서스)
제 조 업	91,861	84,725(73년 광공업센서스)
전기 가스업	5	-
건 설 업	4,109	1,982(76년 건설업통제조사)
도 소 매 업 (음식숙박업포함)	606,164	528,497(76년 도소매업센서스)
제	704,281	616,972

2) 자료의 성질

가) 각종센서스 자료는 종업원 규모별 자료까지 파악되나, 최근자료의 경우 4인이하 사업체수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시차관계로 유고사업체 및 누락사업체가 많음.

나) 국세청 자료는 최근자료(77.10.31 현재)이므로 모집단의

누락 또는 유고를 최소화 하였으나 종업원 규모별 자료가 없음.

다) 따라서 모집단 수가 정확한 국세청 자료를 직접이용토록하고 종업원 규모별 자료가 없는 제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세분류까지 분류하여 표본추출하기로 하였음.

나. 전수조사 대상업체

다음 조건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사업체 (약 4,069 업체)를 전수조사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음.

- 1) 외형 거래액이 3천만원 이상 사업체
- 2) 종업원 규모가 50인 이상 (기타 제조업 및 의복제조업 100인 이상) 사업체
- 3) 산업세분류중 중요한 업종의 70개 사업체
- 4) 전기가스업 사업체

다. 표본설계 내용

산업별특성에 따라 표본 추출방법을 2가지로 구분하여 표본설계를 하였음.

- 1) 광업, 제조업, 도매업

표본추출방법 : 지역별 (11개시도), 산업세분류별로 층화추출법 (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

추출율 : 1/15

단, Cell이 너무 세분되므로 중요 산업세분류 사업체는 전수조사함 (70개)

2) 일반소매 및 음식숙박업

표본추출방법 : 첫째 일반소매, 음식점, 소매업으로 구분하고 지역별(11개시도), 사업체동을 뽑은다음 층화된 사업체동에서 다시 대상사업체를 추출하는 층화이단 집락추출법(Stratified two 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

추출율 : 1차 : $1/10$ (표본동 추출)

2차 : $1/15$ (각층별로 추출율을 달리함)

(사업체 추출)

라) 표본오차

산업대분류별 자산중 분류별 표본오차를 산출토록 하되, 산업소분류별 총자산액에 대한 표본 오차도 병행 산출토록함.

마. 보완내용

- 1) 국세청 자료를 모집단으로 이용할 경우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나 실제 모집단수와 국세청 자료간에는 일부 누락 또는 중복이 예상되므로 표본사업체 확인 조사시 최소의 표본,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체수를 조사하여 국세청자료와 실제 모집단수의 차이정도를 측정함이 국부통계 이용시 유용할 것임.
- 2) 중소기업은행의 조사원확보 예산인원이 300명인바 조사대상사업체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을 경우 파대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실사상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표본설제를 할때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체를 선정하되 너무 지역적으로 편재되

지 않도록 표본설계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2. 농림어업부문의 조사대상

가. 어업부문의 조사대상은 어업사업체이므로 어가중 고용자가구는 제외됨.

나. 농업부문의 경우 임금 농업 노동 가구는 본 조사대상에서 제외함.